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품명 · 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 예시: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 700개



관세청

2020. 4. 28.

<수정이력>

1. 최초배포(2020. 1. 13.)
2. 수정배포(2020. 3. 5.)
3. 수정배포(2020. 4. 28.)

순서

I. 품명·규격 작성 원칙	1
II. 품명·규격 작성 표준 예시	8
1. 특성별 / 8 2. 종류별 / 14	
III. 수출입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수출입승인 면제 등	27
IV. 개별법령별 수출입승인 면제 등	29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6. 전파법	
2. 약사법 7. 어린이제품안전특별	
3. 화장품법 8. 원자력법	
4. 의료기기법 9. 사료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0. 산업안전관리법	
V. 집중관리품목(HSK 700개) 작성 가이드	50
참고 HSK 품목 색인표	750

I

품명·규격 작성 원칙

□ 품명·규격

- (정의)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의 총칭
 -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품명·규격 작성 요령

-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품명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 다만, 관세율표상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
상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모델·규격	생산방식·타입·양식 /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
성분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1) 품명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p>③0 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예)OPTICAL DISK DRIVE (8471.70-2039)··· 9단위 CINEMATOGRAPHIC FILM(3702.96-1010)··· 8단위 LOBSTER(바다가재, 1605.30-1000)··· 6단위 ANTI-KNOCK PREPARATION (3811.19-0000)···5단위 PAPER LABELS(지제라벨,4821.10-0000)···4단위 ○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품명은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하며 4단어 이내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어를 초과할 경우 단순한 수식어는 빼고 4단어 이내로 기재 ○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 시약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품명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기재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KS (7317.00-2000 특게) - RABBIT MEAT (0208.10-0000) - 7108.13-1010의 경우 관세율표상 WIRE 이나 GOLD WIRE (금선)로 표기 - 품명: TOY PART 1. CAP0000, ZZZ 2. BUTTON, XXX 3.

2) 거래 품명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
㉓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으로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영어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ELECTRONIC GAMES(9504.90-2000) - 거래품명: TAMAGOCHI ○ 학명은 CITES대상품목, 한약재, 조정관세 적용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LOACHES(미꾸라지, 0301.99-9070) - 거래품명: DOJO LOACH(SP: KICHULCHOIA BREVIFASCIATA) 	- VIETNAM ROBUSTA COFFEE BEAN

3) 상표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
㉔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에 등록된 경우는 대표 상표코드를 기재, 미등록의 경우는 “ZZZZ”로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는 “XXXX”로 기재 ○ 상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NO”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ND” 라는 단어는 기재할 수 없음 - 상표가 둘 이상인 경우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도형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해당 상표명(도형)을 기재. - 상표는 지식재산권 확인, 원산지 확인, 가격심사 등에 필수적인 기재요소로서 상표가 있는 물품을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 - NIKE

4) 모델·규격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
㉔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기재 *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 모델명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은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규격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은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등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규격은 주로 관세율표상에 OF, FOR, WITH 등의 단어로 표현되므로, 규격 기재 시 가능하면 관세율표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 - 물품에 따라 세관심사에 필요한 규격사항을 기재 * 냉동홍어의 경우 냉동여부만 기재 품명: SKATE(홍어, HS 0303.82-2000) 규격: FROZEN * 엔진의 경우는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기재 품명: ENGINE 규격: GASOLINE ENGINE 2,500CC, FOR SEDAN, 1998YEAR ○ 미술품 모델·규격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TLE(작품명), - ARTIST(작가), - YEAR(제작년도), - DIMENSION(크기) 	<p>- MODEL: M520T</p>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										
㉔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의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식용, 공업용, 사료용, 비료용, 의약용, 동물의약용, 연구·실험용, 기타 등의 용도를 영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기타’라고 표기한 경우 ()안에 구분 가능한 용도를 영문 또는 한글로 기입한다. ·표기방법 USE: EDIBLE <li style="margin-top: 10px;"><용도 기재사례>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식용: EDIBLE</td> <td style="width: 50%;">-공업용: INDUSTRIAL</td> </tr> <tr> <td>-화장품용: COSMETICS</td> <td>-사료용: FEEDING</td> </tr> <tr> <td>-미끼용: BAIT</td> <td>-비료용: FERTILIZER</td> </tr> <tr> <td>-의약용: MEDICINAL</td> <td>-동물의약용: ANIMAL MEDICINAL</td> </tr> <tr> <td>-연구·실험용: RESEARCH</td> <td></td> </tr> </table> <li style="margin-top: 10px;">○ 자동차 모델·규격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형식: [모델명],[차대번호],[주요특성]의 순서로 기재 - 모델명: BMW520i, BENZ320S등으로 기재 - 차대번호: 17단위. 모델명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주요특성: 배기량, 제작년도, 주행거리, 차체형상, 변속기형식, 엔진번호 등을 차대번호 다음에 각 주요특성마다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 - 2대 이상인 경우 줄을 바꾸어 기재 - 란을 초과(100대 이상)하는 경우 새로운 란에 기재하거나 수입 B/L분할신고방법으로 신고가능 <li style="margin-top: 10px;">* 주요특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기량: 1997CC, -제작년도: 2001년식, -주행거리: 35,758 MILE -차체형상: 4D 세단 (FOUR DOOR SEDAN), -변속기형식: 수동,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 등 -엔진번호: 1G 6831372, -기타 수입신고서 기재 필요사항 	-식용: EDIBLE	-공업용: INDUSTRIAL	-화장품용: COSMETICS	-사료용: FEEDING	-미끼용: BAIT	-비료용: FERTILIZER	-의약용: MEDICINAL	-동물의약용: ANIMAL MEDICINAL	-연구·실험용: RESEARCH		<p style="margin-top: 10px;">USE: EDIBLE USE: INDUSTRIAL</p> <p style="margin-top: 10px;">BENZ320S,WBDGA33 EOTA312272,1997CC ,2001YR,MILE 35758,4D,AUTO,1G 6831372</p>
-식용: EDIBLE	-공업용: INDUSTRIAL											
-화장품용: COSMETICS	-사료용: FEEDING											
-미끼용: BAIT	-비료용: FERTILIZER											
-의약용: MEDICINAL	-동물의약용: ANIMAL MEDICINAL											
-연구·실험용: RESEARCH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③③모델·규격	<p>○ 규격의 유형별 기재사례</p> <p><타입 기재사례> - 수평형, 수직형: VERTICAL, HORIZONTAL -제어방식: CNC, PLC, ATC - 작동방식: PORTABLE, PNEUMATIC, HYDRAULIC</p> <p><상태 기재사례> -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 PASTE, LIQUID, PELLET, POWDER, GAS, CRYSTALLINE POWDER - 가공 상태 · CRUDE, RAW, LIVE, FRESH, FROZEN, DRIED, DEHYDRATED</p> <p><조립여부 기재사례> - KNOCKDOWN, UNASSEMBLED, -UNFINISHED</p> <p><사이즈 기재사례> - SCARF: W 500MM X L 500MM, -SHEET: T 20MM X W 300MM X L 1,500 - TILE: T 2MM X W 200MM X L 200M, -DISTRIBUTER: T 1,400MM X D 746MM X H 2,025MM - TUBE: T 20MM X ID 200MM X OD 250MM</p> <p><생산년도, 등급 기재사례> - 몇 년도 산: YEAR1995, YEAR1996, -연령: 17YEARS OLD, -GRADE: A</p> <p>○ 모델·규격 기재 오류 사례 - 품명: COFFEE(커피, HS 0901.11-0000) 거래품명: COLOMBIAN GREEN COFFEE, 모델·규격: 미기재 오류사항: 볶은 것인지 여부 및 카페인 제거여부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 품명: SUITCASE(슈트케이스, HS 4202.11-1040) 거래품명: SUITCASE, 모델·규격: BLACK, 오류사항: 재질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p> <p>○ 품명 또는 용도 표준화 코드에 따라 기재</p>	

5) 성분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p>㉔성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성분 기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은 당해물질의 성분 및 함량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한다.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성분 기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바지는 주된 성분의 함량만을 기재하나 청바지용 직물은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중량 등을 기재 하여야 함 품명: COTTON WOVEN FABRIC(HS 5208.11-0000) 성분: COTTON 100%, 40G/m² 품명: BLUE JEAN(청바지, HS 6203.42-1000), 성분: COTTON 100% - 농산물 혼합물 기재사례 품명: SEASONING(양념, HS 2103.90-9090), 거래품명: TATEKI 성분: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ALT 18%, WATER 42%, GARLIC POWDER 7%, ONION POWDER 5% ○ 성분 기재오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LACTOSE(유당, HS 1702.19-1000), 성분: REFINED USABLE FINE POWDER 오류: 유당의 함유량 미표기로 세번 분류 불가(99%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 품명: COCOA PREPARATION (HS 1806.20-9010) 성분: 15%(18M/T) USD4,554. 오류: 함량표기 불분명(밀크분 함유50%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II

품명·규격 작성 표준예시

□ 물품 특성별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모델	생산방식	생산방법에 따라 가격(상품가치)이 달라지는 경우 표기 ○ 양식(FARMING) 여부: N(NATURAL, 자연산), R(RAISE, 양식) ○ 재배(GROWING) 여부: N(NATURAL, 자연산), R(RAISE, 재배) ○ 어획(CAPTURED) 방법: H(HOOK, 채낚기), L(LONG LINE, 연승), N(NET, 어망) ○ 채취(COLLECTED) 방법: M(MANUAL, 수작업), S(SHIP, 선박)	FARMING(N) GROWING(R) CAPTURED(H) COLLECTED(M)
	타입	기계류의 작동 원리, 동력원, 제어 방식 등 기재 ○ 작동방향: HORIZONTAL(수평형), VERTICAL(수직형) ○ 작동방식: PNEUMATIC(압축공기식), HYDRAULIC(유압식), MANUAL OR HAND-OPERATED(수동식), ELECTRIC MOTOR(전동식), ELECTRIC OR ELECTRICALLY OPERATED(전기작동식), BATTERY OR ACCUMULATOR OPERATED(건전지), 기타 자동제어식(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 제어방식: CNC(수치제어), PLC(논리연산제어), ATC(열차자동제어)	
	제품식별코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품목 고유부호	
규격	재질	제품의 부위별 기초 원재료 기재 ○ 섬유: COTTON(면), LINEN(아마), RAMIE(저마), WOOL(양모), SILK(견) RAYON(레이온), NYLON(나일론), POLYESTER(폴리에스테르), ACRYLIC(아크릴)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 RUBBER(고무), PLASTIC(플라스틱), LEATHER(가죽), FURSKIN(모피) TEXTILE MATERIAL(방직용 섬유재료), COMPOSITION LEATHER(컴퍼지션레더) * 갑피(UPPER)와 바깥 바닥(OUTER SOLE)으로 구분하여 기재 ○ 케이스 : GOLD(금), SILVER(은), METAL(금속), PLASTIC(플라스틱), WOOD(나무), LEATHER(가죽), PAPER BOARD(판지) ○ 위생용품 흡수체 재질 : PAPER PULP(제지용펄프), PAPER(종이), SAP(고분자흡수체), CELLULOSE FIBERS(셀룰로오스섬유) 	<p>UPPER: POLYESTER 100%, OUTER SOLE: RUBBER 100%</p>
	가공상태	<p><가공상태> 제품의 제조방법 및 가공, 조제 또는 보존 처리된 정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CHILLED(냉장), FRESH(신선), LIVE(살아있는), FROZEN(냉동), DRIED(건조), RAW(날것의), ROASTED(볶은), DEHYDRATED(탈수된), SALTED(염장), BRINED(염수장), SMOKED(훈제), STEAMED(찐 것), BOILED(삶은 것), FRIED(튀긴 것), COOKED(조리한 것), PRESERVED BY ACETIC ACID(식초로 조제한 것), PREPARED BY VINEGAR(초산으로 보존처리한 것) ○ 섬유: WOVEN(직물),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KNOTTED(결절), TUFTED(터프트), NONWOVEN(부직포), FELT(펠트제) ○ 농축여부: CONCENTRATE(농축), NFC(비농축) ○ 철강: COLD ROLLED(냉간압연), HOT ROLLED(열간압연), HOT DRAWN(열간인발), HOT EXTRUDED(열간압출)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암: GRINDING(연마), POLISHED(광택), FLAME(화염) ○ 기타: DENATURED(변성된), NATURED(변성되지 않은), RAW(가공하지 않은), CHEMICALLY MODIFIED(화학적으로 변성된), CRUDE(정제되지 않은) ○ 타일: GLAZED(유약처리), GRINDING(연마), POLISHED(광택) <p><축·수산물 거래부위 및 절단방법> 거래단계에서 제시된 절단 또는 가공된 상태 및 부위별 명칭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고기: CHUCK(목살), RIB(갈비), SIRLOIN(등심), TENDERLOIN(안심), SHANK(사태), TAIL(꼬리), THIN SKIRT(안창살), THICK SKIRT(토시살) ○ 돼지고기: LOIN(등심), TENDERLOIN(안심), RIB(갈비), BELLY(삼겹살), SHANK(사태), PICNIC(전지), FOOT(족발), PORK SKIRT(갈매기살), PORK NECK(항정살), BOSTON BUTT(목살) ○ 닭고기: WING(날개), BREAST(가슴살), THIGH(넓적다리살), FEET(발) ○ 수산물: WHOLE ROUND[W/R](원형), FILLET(포 뜬 것), MILT(곤이), ROE(알), WING(지느러미), HEAD(머리), SURIMI(연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CUT(단순절단), HEADED & GUTTED TAIL ON[HG](머리, 내장제거, 꼬리포함), HEADED & GUTTED WITHOUT TAIL[HGT](머리, 내장, 꼬리제거), HEAD ON & GUTTED[HOG](머리포함, 내장제거) - 냉동새우: HOSO(머리, 껍질있음), HLSO(머리 제거, 껍질있음), CPTO(자숙, 껍질제거, 꼬리포함), CPD(자숙, 껍질 및 내장제거), PD(껍질 및 내장제거), PDTO(껍질 및 내장제거, 꼬리포함)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p><외형적 형상> 제품의 제시된 물리적 특성 또는 모양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S(기체), LIQUID(액체), POWDER(가루), SOLID(고체) - WIRE(전선), CABLE(케이블), BRAIDS(편조), STRIP(스트립), BARS(봉) - LOTION(로션), CREAM(크림), GEL(겔), STICK(스틱), MASK(마스크팩) <p><기타 측정단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물질 함유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편광도수): POLARIZATION ~% ○ 브릭스 값: BRIX: 9 ○ 알콜 도수: 00% MIN AT 00 DEGREES ○ 중합도: 5 ○ 타일 수분흡수계수: 0.7% ○ 1.25mm체 통과비율: 95% 	
	<p>유관기관 품목별 관리번호</p>	<p>요건확인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부호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종별코드: T001~T010(영·유아용, 만3세이하), T121~T140(기초화장용), K001~K212(기능성화장품) ○ 비철금속 KS규격 번호: KSD6001(황동주물), KSD6002(청동주물), KSD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CAS NO. 1341-49-7 ○ 미국알루미늄협회 합금번호: AA1235(알루미늄 함량 99.35%) 	
	<p>용도</p>	<p>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실제 용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EDIBLE(식용), INDUSTRIAL(공업용), COSMETICS(화장품용), FEEDING(사료용), BAIT(미끼용), FERTILIZER(비료용), MEDICINAL(의약용), ANIMAL MEDICINAL(동물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 확인대상: SALES(판매용), SAMPLE PRODUCTION(견본 제작용), PRIVATE USE(자가사용), MARKETING RESEARCH(시장조사용), AID(구호용), DECORATION(장식용), BREEDING(번식용) ○ 감면 여부: RESEARCH(연구실험용), MARKETING RESEARCH(시장조사용), LEASE(임대용), EXHIBIT(전시용), SALES(판매용), REPAIR(수리용), PROCESSING(가공용), PRODUCTION(생산용), TEST(시운전용), RE-IMPORT(재수입용), PRIVATE(자가사용), SAMPLE(견본용) ○ 품목분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WORKING(목재용), METAL WORKING(금속용), MACHINES(기계용) - VISION CORRECTION(교정용), TREATMENT(치료용), DIAGNOSTIC(진단용) - CHILDREN(어린이용), ADULT(성인용), PATIENT(환자용) - TELECOMMUNICATIONS(전기통신용) - HYGIENE(위생용) 	
	조립여부	<p>완성품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현품 상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CKDOWN(현지조립형 반제품), UNASSEMBLED(조립되지 않은) - UNFINISHED(반가공) 	
규격	사이즈	<p>최소 수량단위 제품의 측정 단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RF: W 500mm × L 500mm - SHEET: T 20mm × W 300mm × L 1,500mm - TILE: T 2mm × W 200mm × L 200mm - DISTRIBUTER: T 1,400mm × D 746mm × H 2,025mm - TUBE: T 20mm × ID 200mm × OD 250mm 	

구분	특성별	표준예시	작성예
규격	작업능력	기계·기구 등 제품별로 부여되는 처리 능력 기준 제시 - 처리속도: A4 15 SHEET/M - 처리용량: 20kg, 600ℓ - 배출풍량: 18,000CMH	
	정격전압	전기기기의 사용조건과 그 성능의 범위	
		- 정격전압: AC 200V, DC 220V, 50/60HZ - 정격용량: 10KVA, 100KAVH - 정격소비전력: 3,000W , 29.3KW	
	생산년도 기준연령	요건 확인 및 인증 등 기준 판단을 위한 생산시기 및 사용연령 기재 - 생산년도: YEAR 2019 - 연령: 13YEARS OLD - 월령: 12M, 12M~18M, UNDER 36MONTH	
	거래등급	가격심사 자료 요구 및 등급별, 국가별 거래단위가 다르고 가격 차이가 큰 품목 ○ 소고기(GRADE: PRIME) - 미국산: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 호주산: A, S, GF	
	최소단위 포장방법	최소 포장 상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품목 - VACUUM 00G(진공), BOTTLE 00G(병입), CAN 00G(캔입), ZIPPER-BAG 00G(지퍼백), PLASTIC BOX 00KG	

□ 물품 종류별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식품류 (육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 FRESH(신선), CHILLED(냉장), FROZEN(냉동), SALTED(염장), BRINED(염수장), DRIED(건조), SMOKED(훈제) - 조리한 것: BOILED(끓인 것), STEAMED(증기로 찐 것), GRILLED(석쇠로 구운 것), FRIED(프라이한 것), ROASTED(볶은 것), BREADED(빵가루를 입힌 것), SEASONED(조미한 것) * 조리한 것은 16류로 분류, 부가세 과세 ○ 구체적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 SIRLOIN(등심), TENDERLOIN(안심), RIB(갈비), SHANK(사태), NECK(목살), LEG(다리살) * BONE IN(뼈 있는 것), BONELESS(뼈 없는 것) 구분하여 기재 - 설육: HEAD MEAT(머리살), CHEEK MEAT(볼살), FEET(발), HEART(염통), TONGUES(혀), SKIRTS(횡격막) - 다른 류(05류)로 분류되는 부위: BLOOD(피), STOMACH(위), GUT(장), BLADDER(방광), BONE(뼈) - 등급: 등급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은 등급 기재 ○ 포장: 밀폐용기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필수 기재 ○ 용도: EDIBLE(식용), FEEDING(사료용), BAIT(미끼용), MEDICINAL(의약품) 	<p>CHILLED, BEEF SHORT RIBS, PRIME, PACKING: 5KG/VAC, USE: EDI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임 등급의 식용 신선한 소갈비로 5KG씩 진공 포장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식품류 (어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 LIVE(살아있는 것), FRESH(신선), CHILLED(냉장), FROZEN(냉동), DRIED(건조), SALTED(염장), BRINED(염수장), SMOKED(훈제) - 조리한 것: BOILED(끓인 것), STEAMED(증기로 찐 것), GRILLED(석쇠로 구운 것), FRIED(프라이한 것), ROASTED(볶은 것), BREADED(빵가루를 입힌 것), SEASONED(조미한 것) * 조리한 것은 16류로 분류, 부가세 과세 ○ 구체적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물품의 명칭 기재, 종(種)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학명 필수 기재 * 거래품명에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 - 형태: WHOLE ROUND[W/R](원형), FILLET(포 뜬 것), MILT(곤이), ROE(알), WING(지느러미), HEAD(머리), SURIMI(연육) - 가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CUT(단순절단), DRESS(머리, 아가미, 내장제거), SKINLESS(껍질제거), HG(머리, 내장제거, 꼬리포함) · 냉동새우: HOSO(머리, 껍질 있음), HLSO(머리 제거, 껍질 있음), CPTO(자숙, 껍질제거, 꼬리포함), CPD(자숙, 껍질 및 내장제거), PD(껍질 및 내장제거), PDTO(껍질 및 내장제거, 꼬리포함) ○ 사이즈: 크기 또는 중량 기재 ○ 포장: 밀폐용기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필수 기재 ○ 용도: EDIBLE(식용), FEEDING(사료용), BAIT(미끼용), RESEARCH(연구실험용) 	<p>FROZEN, SKATES WINGS SKINLESS, SIZE: 400-500G, PACKING: 5KG/CT, USE: EDI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을 벗긴 식용 냉동홍어 날개가 400~500G 사이즈로 5KG씩 카톤 포장 <p>FARMING(N);SIZE(S)/ FROZEN SMALL YELLOW CROAKER, PACKING: 10KG/CT, USE: FEED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산;마리당 중량 150G미만 사이즈 / 사료용 작은 냉동부세가 10KG씩 카톤 포장 * 표준품명이 있는 경우 표준품명상의 규격을 정확하게 선택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식품류 (과실· 견과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 FRESH(신선), FROZEN(냉동), BOILED(끓인 것), DRIED(건조), STEAMED(증기로 찐 것), PRESERVED IN BRINE(염수로 보존처리한 것) - 형상: WHOLE(원형의 것), SLICED(얇게 썬 것), CHOPPED(잘게 썬 것), SHREDDDED(채 썬 것), STONED(씨를 제거한 것), PULPED(펄프상태의 것), GRATED(부스러진 것), PEELED(껍질을 벗긴 것), SHELLED(껍데기를 벗긴 것) ○ 구체적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과류: COCONUTS(코코넛), ALMONDS(아몬드), WALNUTS(호두), CHESTNUTS(밤), PINE-NUTS(잣), GINGKO-NUTS(은행) - 과실: BANANA(바나나), DATE(대추야자), ORANGE(오렌지), GRAPE(포도), MELON(멜론), APPLE(사과), APRICOT(살구) - 껍질: PEEL OF CITRUS FRUIT(감귤류의 껍질), PEEL OF MELONS (멜론의 껍질), PEEL OF WATERMELONS(수박의 껍질) ○ 용도: EDIBLE(식용), FEEDING(사료용) ○ 원산지 및 생산년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상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의 경우 성단위 지역명, 미국산의 경우 주단위 지역명 기재 	<p>WEIGHT(L);EQUALITY(L)/ FROZEN DRIED PERSIMMONS, PACKING: 3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8.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당평균중량 30G이상; 고르기 5%초과/식용 냉동 건조한 감(장형)이 3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둥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11월 * 표준품명이 있는 경우 표준품명상의 규격을 정확하게 선택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식품류 (채두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 CHILLED(냉장), FRESH(신선), FROZEN(냉동), DRIED(건조) - 조리·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 BOILED(끓인 것), FRIED(프라이한 것), ROASTED(볶은 것), PRESERVED BY SUGAR(설탕으로 저장처리 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은 20류로 분류 ○ 용도: EDIBLE(식용), SEED(종자용), FEEDING(사료용) ○ 원산지 및 생산년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상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의 경우 성단위 지역명, 미국산의 경우 주단위 지역명 기재 	<p>DIAMETER(LL);PERFECTNESS(H)/NON GMO YELLOW SOYBEAN, PACKING: 35KG/BAG, USE: EDIBLE, ORIGIN: CANADA, YEAR: 2018.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곡직경 7.5MM이상; 정립률 95%이상/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용 노란 대두가 35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캐나다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11월
식품류 (커피·차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ROASTED(볶은 것), NOT ROASTED(볶지 않은 것), FERMENTED(발효한 것), NOT FERMENTED(발효하지 않은 것), DECAFFEINATED(카페인을 제거한 것), NOT DECAFFEINATED(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여부와 카페인 제거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 달라짐에 유의 ○ 용도: EDIBLE(식용), RESEARCH(연구실험용) 등 	<p>NOT DECAFFEINATED, ROASTED, SUPREMO CAPSULE COFFEE, PACKING: 500G X 24EA/CT, USE: EDI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식용 슈프리모 캡슐커피가 500G씩 24개로 카톤 포장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식품류 (주스)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HILLED(냉장), FRESH(신선), FROZEN(냉동), CONCENTRATED(농축), NFC(NOT FROM CONCENTRATE 비농축) ○ 구체적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STRAWBERRY(딸기), PEACH(복숭아), CRANBERRY(크랜베리), BLUEBERRY(블루베리), LEMON(레몬), CALAMANSI(칼라만시) 등 - 브릭스(BRIX) 값 기재 ○ 포장: 밀폐용기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필수 기재 ○ 용도: EDIBLE(식용), RESEARCH(연구실험용) 	<p>CHILLED, CONCENTRATED PRIMA ORANGE JUICE, BRIX: 27, PACKING: 1L X 12BOTTLES /CT, USE: EDIBLE</p> <p>- 식용 농축한 냉장 프리마 오렌지 주스(브릭스 값 27)가 1L씩 12병에 카톤 포장</p>
식품류 (주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변성 주정인 경우 변성 여부 및 방법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성여부: DENATURED(변성된) - 변성방법: BITREX 8PPM ○ 구체적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주: BEER(맥주), SPARKLING WINE(발포성 포도주), RED WINE(붉은 포도주), WHITE WINE(흰 포도주), CHEONGJU(청주), YAKJU(약주) · 증류주: SOJU(소주), COGNAC(꼬냑), SCOTCH WHISKY(스카시 위스키), GIN(진), VODKA(보드카), GINSENG WINE(인삼주), TEQUILA(테킬라) - 알코올 도수: 도수 및 기준 온도 기재 - 생산년도: YEAR 2019 ○ 포장: 포장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필수 기재 ○ 용도: EDIBLE(식용), INDUSTRIAL(공업용), MEDICINAL(의약용) 	<p>WHISTLE PIG STRAIGHT RYE WHISKEY, ALC.45%, PACKING: 750ML X 5EA/CT, USE: EDIBLE</p> <p>- 식용 휘슬 피그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 도수는 45%이고 750ML씩 병에 담아 5병을 1카톤으로 포장</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의약· 의약 외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APSULE(캡슐), LIQUID(액체), POWDER(분말), TABLET(정제된 둥근형태) ○ 구체적 물품설명: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분류번호 및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포장방식: 상세 포장단위 기재 EX) 100ml VIAL, 100ml/BOTTLE, 250mg 100CAP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로 분류 ○ 용도: EDIBLE(식용), MEDICINAL(의약용), ANIMAL MEDICINAL(동물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p>LIQUID, AMOXICILLIN AND CLAVULANATEPOTASSIUM (4:1), LOT NO: HF7078D3, PACKING: 1KG/DRUM, USE: MEDICINAL</p> <p>-의약용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칼륨의 혼합 용액(4:1), LOT NO는 HF7078D3, 1KG씩 드럼 포장</p>
	성분	<p>혼합 의약제의 경우 성분비 또는 중량 기재</p>	<p>AMOXICILLIN 72%, CLAVULANIC 18%, WATER 10%</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건강기능 식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 FROZEN(얼린), DRIED(건조), CRUSHED(부순), GROUND(잘게 부순), POWDER(분말) - 조리·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 FERMENTED(발효한), BOILED(삶은), SWEETENED(설탕에 절인) ○ 용도: EDIBLE(식용), INDUSTRIAL(공업용), COSMETICS(화장품용), FEEDING(사료용), MEDICINAL(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p>DRIED PEONY ROOT EXTRACT POWDER, PACKING: 2KG/CT, USE: EDIB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말린 작약뿌리추출물 분말이 2KG씩 카톤 포장
의료 기기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모델명, S/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원자력안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른 용량, 용도를 기재 ○ 용도: MEDICINAL(의약용), ANIMAL MEDICINAL(동물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p>A04010.01 MOIST HEAT BEST-TYPE, MODEL: DS610, S/N: 180641, PACKING: 1EA/CT, USE: RESEA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B형소용량고압증기 멸균기로 모델명은 DS610, SERIAL NO는 180641이며 연구시험용임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어린이 제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p>KNITTED, WHITE DRESSES, 12~18M, MODEL: ABC, STYLE NO .12345, PACKING: 10PCS/CT</p> <p>- 유아용 편물제 희색 드레스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개씩 포장</p> <p>WOOD, SPACE ROBOT, MODEL: WF-17ST, FOR CHILDREN, SIZE: W200MM X H310MM, PACKING: 12EA/CT</p> <p>- 목제 우주 로봇 (어린이용), 모델명 WF-17ST, 사이즈는 W200MM X H310MM이고 12개씩 포장</p>
		<p>○ 가공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제품류: KNOTTED(매듭이 있는 것), WOVEN(직조), KNITTED(편물), TUFTED(터프트), FLOCK(플록), FELT(펠트), NON-WOVEN(부직포), HAND-WOVEN(손으로 짠 것), BRAID(브레이드), PILE(파일) - 완구류: WOOD(나무), PLASTIC(플라스틱), RUBBER(고무), GLASS(유리), TEXTILE MATERIALS(방직용 섬유) <p>○ 구체적 물품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예) 12M, 12M~18M, UNDER 36M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p>○ 용도: OFFICE(사무실용), EXPERT(전문가용), HYGIENE(위생용)</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화장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p>○ 구체적 물품 설명 - 모델명: L7715900, C203800777 - 제형/성상: LOTION(로션), CREAM(크림), GEL(겔), STICK(스틱), POWDER(분말) 등 - 종별코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종별코드(K001~K212) 기재 예) K121(수렴·유연·영양 화장수), K122(마사지크림), K123(에센스), K124(오일), K125(파우더), K126(바디), K127(팩), K128(마스크), K129(눈 주위 제품), K130(로션), K131(크림) 등</p> <p>○ 용도: COSMETICS(화장품), MEDICINAL(의약용), ANIMAL MEDICINAL(동물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HYGIENE(위생용)</p>	<p>LIQUID, GREEN TEA CALMING CLEANSING OIL, MODEL: 3293400 K133, PACKING: 15ML X 5EA/BOX, USE: COSMETICS</p> <p>- 기능성 화장품용인 그린티 카밍 클렌징 오일, 모델명은 3293400 이고 종별코드는 K133, 15ML씩 담아 5개를 1상자에 포장</p>
여성용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p>○ 구체적 물품설명: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분류번호 및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p> <p>○ 용도: COSMETICS(화장품), MEDICINAL(의약용), HYGIENE(위생용)</p>	<p>X-LARGE TRAINING PANT, MODEL: 39-44 LB, SIZE: W250MM X H250MM, PACKING: 80EA/CT, USE: HYGIENE</p> <p>- 위생 팬티, 모델명 39-44 LB이고 사이즈는 W250MM X H250MM, 80개씩 포장</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섬유 제품 (방직용 섬유 및 제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및 품명에 따라 필요기재사항을 제작방법→원재료→염색여부 등 순으로 기재 ○ 제작방법: 의류의 경우는 편물 또는 비(非)편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WOVEN FABRIC(직물) - 편물: KNITTED FABRIC(편물), WARP KNIT FABRIC(경편직) - 특수직물·편물: NONWOVENS(부직포), FELT(펠트), WADDING(워딩), RACE(레이스), PILE(파일), CHENILLE(셔닐), TERRY(테리), NARROW(세폭), IMPREGNATED(침투시킨 것), COATED(도포한 것), COVERED(피복한 것), LAMINATED(적층한 것) ○ 원재료: 성분란에 혼방률 기재(함유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섬유: COTTON(면), LINEN(아마), RAMIE(모시), WOOL(양모), SILK(견), FINE ANIMAL HAIR(섬수모), KASHMIR(캐시미어) - 인조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섬유: NYLON(나일론), ACRYLIC(아크릴), POLYESTER(폴리에스테르),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PVA(폴리비닐알코올) · 반합성(재생)섬유: CELLULOSE ACETATE(초산셀룰로오스), VISCOSE RAYON(비스코스레이온), CUPRAMMONIUM RAYON(구리암모늄레이온) ○ 제품의 종류: 제품의 경우 종류 기재 ○ 폭: 섬유의 경우 너비 기재 150CM WIDTH ○ 염색여부: DYED(염색한 것), PRINTED(날염한 것), BLEACHED(표백한 것, 백색염색직물포함), UNBLEACHED(표백하지 않은 것),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다른 색실로 된 것) 	<p>HAND-WOVEN, WOOL RUG, MODEL: ABC, SIZE: W 200CM X L 200CM, PACKING: 5E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직조한 모델명 ABC의 양모제 러그, 사이즈는 W 200CM X W 200CM, 카톤 당 5개씩 포장 <p>PILE, BEIGE BATH MAT, MODEL: ABC-001, SIZE: W 400 CM X L 500CM, PACKING: 40E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직물의 베이지 컬러 화장실용 매트, 모델명은 ABC-001이고 사이즈는 W 400 X L 500CM, 카톤 당 40 개씩 포장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혼방률은 「성분」란에 중량이 많은 원재료부터 성분 및 구성비 기재 	<p>COTTON 70%, POLYESTER 30%</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섬유 제품 (의류)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방법: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는 제작방법 구분 기재 · 편물: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 용도 구분이 필요한 세번은 「품명」란에 남성용(소년용), 여성용(소녀용), 유아용을 구분하여 품명 기재 	<p>KNITTED, SHORT SLEEVE NIGHTDRESS, MODEL: ABC, PACKING: 40PCS/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 모델명 ABC의 짧은 소매의 나이트드레스. 카톤 당 40개씩 포장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혼방률은 「성분」란에 중량이 많은 원재료부터 성분 및 구성비 기재 	<p>POLYESTER 80%, COTTON 20%</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생활화학 제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QUID(액체), FLAKE(조각), POWDER(분말), GEL(겔) ○ 구체적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 물품별 특성에 따라 기재해야 할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 예) HS 8543.70-4010호(니코틴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은 천연니코틴인 경우 추출재료를 표기(LEAF, ROOT, STEM 등) ○ 용도: INDUSTRIAL(공업용), COSMETICS(화장품용), MEDICINAL(의약용), ANIMAL MEDICINAL(동물의약용), RESEARCH(연구실험용) 	<p>MANUFACTURING METHOD(01)/ MODEL: ABC, CAS NO: 54-11-5, NICOTINE FROM LEAF, 1.1MM/PC, PACKING: 1,500EA/CT</p> <p>- 천연니코틴 추출 전자담배용액으로 모델번호 ABC, 니코틴은 연초의 앞에서 추출하였고 개당 1.1MM이며 카톤 당 1,500개 포장</p>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 함유 제품인 경우 화학물질 필요정보를 기재서류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인하여 니코틴 함량을 확인, 성분란에 “NICOTINE:” 기재한 후 “%”를 포함하여 반드시 신고 	<p>NICOTINE: 0.98%</p>

품목군	구분	표준예시	작성예
전기 용품류	모델·규격	<p>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p>	<p>DIAMOND CORE DRILL, MODEL: ABC, VOLT: AC 220V, 2,100W, PACKING: 10EA/CT - 다이아몬드날을 장착한 코어드릴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220V이고 정격입력은 2,100W, 카톤 당 10개씩 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물품설명: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필요시):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0MM X L 500MM 등 ○ 용도(필요시): INDUSTRIAL(공업용), RESEARCH(연구실험용) 등 	

III

수출입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수출입승인 면제 등

□ 수출입관련 규제 및 수출입요령

수출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통합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 ○ 적용법령: 약사법 등 56개 법령 및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세관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 중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함.(세관장 확인고시) ○ 적용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38개 법령(통합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포함)
수출입승인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입 승인을 면제함. ○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중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함

□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식물방역법」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 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 차. 「통신비밀보호법」
 -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 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IV

개별법령별 수출입승인 면제 등

□ 요건확인 비대상 사유 구분

-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물품이 요건확인 비대상인 경우 ①요건비대상, ②요건면제, ③요건제출생략 대상, ④기타로 구분하여 신고

<p>용도비대상</p>	<p>신고물품의 용도가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예) 사료용, 미끼용, 공업용 등</p>
<p>요건면제</p>	<p>신고물품이 요건확인 대상이나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또는 「개별법령」에서 수출입요건 확인을 생략 또는 면제하는 경우 예) 국제특송화물이용 자가소비용, 무상반입 견본용 등</p>
<p>요건제출생략</p>	<p>AEO기업, 기타 우수기업으로 요건기관(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품질관리법)이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제출생략대상”건에 대하여 요건확인기관에서 통관이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통관자료 제공 예) 법령별로 AEO 또는 특정기업 적용여부를 관리(수입자, HSK 등 통보항목을 전산으로 통보)</p>
<p>기 타</p>	<p>요건비대상, 요건면제, 요건제출생략대상이 아닌 경우의 비대상인 경우 예) CITES 비대상 경우 등</p>

□ 개별 법령별 요건확인 비대상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89”)

■ 관련 근거조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용 사료 그릇 ○ 가죽모피 세척용으로 식품첨가물 아님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기구 여부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식품 등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용 암염으로 비식용 ○ 의약품 제조용 원료 ○ 미끼용 냉동오징어 	사료용, 미끼용, 공업용, 비료용, 의약품, 화장품용, 연구실험용 등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외국대사관 수입하는 공용물품 ○ 국제특송화물 이용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 무상반입 견본 또는 광고물품 ○ 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류 ○ 무상반입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잔 받침대 ○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 ○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 아.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 자.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차.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 5. (기재 생략)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2) 약사법

■ 요건확인대상 법령 : 약사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01”)

■ 관련 근거조문 : 약사법 제42조 제2항(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57조,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2조

■ 세관장확인대상(「약사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향신료(로즈마리)로 비대상 ○ 시나몬파우더(계피가루)로 비대상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의약품 등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용의 오가피 ○ 사료용의 지방분해효소 리파제 	사료용, 공업용, 비료용, 식품용, 화장품용 등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약사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규칙 제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 구호용 ○ 제조시공용 ○ 연구시험용 ○ 견본용 ○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 해외수탁제조약품의 원료약품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약사법]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안전규칙 제5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의 생략)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품목허가나 수입 품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제5호에 따른 의약품 등 중 제4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2.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3.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등
4.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칙 제62조 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5. 제62조 제5호에 따른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
6. 자가치료용 및 구호용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제2조(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①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7.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이하 "해외수탁제조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

3) 화장품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70”)

■ 관련 근거조문 : 화장품법 제2조,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2조

■ 세관장확인대상(「화장품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용 방향제로 화장품법 비대상 ○ 애완용 배편패드(물휴지 아님)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화장품용 등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용 콜라겐 파우더 ○ 연구실험용 혈청 ○ 사료용의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사료용, 공업용, 비료용, 식품용, 연구실험용 등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화장품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 구호용 ○ 제조시공용 ○ 연구시험용 ○ 견본용 ○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제2조(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①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조사용 의약품외품 및 화장품
7.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이하 "해외수탁제조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

4) 의료기기법(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72”)

■ 관련 근거조문 : 의료기기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요건면제규정 제3조

■ 세관장확인대상(「의료기기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돋보기(시력보정용 안경 아님) ○ 산업용 온도계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의료기기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32조, 요건면제규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또는 제조·수입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 제품의 실물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의료기기 ○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시험검사 등을 의뢰받아 수입하는 의료기기 ○ 구호용 의료기기 ○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4.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5.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 5의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제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 5의3.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6.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7. 삭제 <2018.12.31>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관리체계, 검사성능 및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절차·대상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기기 수입 요건확인 면제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추천기관
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또는 제조·수입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제조허가·인증을 받기위한 의료기기는 외국에 전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마.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바. 제품의 실물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의료기기 사. 의료기기 품목지정, 등급심사,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심사 등 심사용 의료기기 아.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시험검사 등을 의뢰받아 수입하는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자. 구호용 의료기기 차.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카.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23”)

■ 관련 근거조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2조

■ 세관장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장치가 없는 양모카페트 ○ 전기장치가 없는 침대 ○ 에어매트로 공기주입물놀이 기구 아님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정격전압, 정격입력 등이 아닌 경우 용도와 사유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용으로 정격전압 DC 12V용임(DC 42V초과~1000V이하 미해당) ○ 정격입력 75KW의 냉각팬 (정격입력 1KW 이하 미해당)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 	정격 전압·입력, 특수구조 여부 기재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조,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제품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8.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6) 전파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39”)

■ 관련 근거조문 : 전파법 제58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 세관장확인대상(「전파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장치가 없는 양모카펫 ○ 전기장치가 없는 침대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전파법 대상이 아닌 경우 용도와 사유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환풍기) 	특수구조 여부 기재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전파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조,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평가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용 기자재 ○ 제품·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 ○ 전시회 등에 진열용 기자재 ○ 국제회의·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용 기자재 ○ 국내 시장조사 목적 견본품용 기자재 ○ 외국 기술자가 일정기간 내 반출조건으로 반입용 기자재 ○ 개인 사용기자재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나. 삭제 <2015.12.22> 다. 삭제 <2016.1.27>
 -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에 다른 적합등록

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88”)

■ 관련 근거조문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8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6조

■ 세관장확인대상(「전파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에어베개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아님 ○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 실험실용 트레이(유아용 캐리어 아님)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어린이용 제품 등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용 의자(높이 450MM이상) ○ 서류바인더 등 사무용품 	공업용, 실험실용, 사무용 등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 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26조,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전시회나 박람회출품할 목적으로 수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한 물품 ○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 이미 인증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등 	면제확인서

붙임 2 관련법 규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③ ○⑥ 생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원자력안전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53”)

■ 관련 근거조문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규정,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 세관장확인대상(「원자력안전법」)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동위원소와 화합물 미포함 ○ 방사선발생장치 없음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규정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방사선의 최대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붙임 1 관련법 규정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성발생장치)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싱크로트론(SYNCHROTRON) 4.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데 그래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10”)

■ 관련 근거조문 :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 세관장확인대상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 비누제조용 원료	
용도 비대상	해당물품이지만 사료용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기재	○ 식품용 마그네슘염화물	공업용, 비료용, 의약용, 연구실험용 등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사료관리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 시행규칙 20조3항 별표6	○ 시장성조사용 무상 샘플 ○ 지방자치단체 반입 물품	

붙임 1 관련법 규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별표 6】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
 -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10) 산업안전보건법 (세관장확인대상법령코드 “48”)

■ 관련 근거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 세관장확인대상 비대상 사유 작성 예

구분	작성요령	작성 예	비고
기타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 구체적 물품설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 미함유 UV경화 접착제 ○ 벤젠함유(2%) 고무풀(벤젠함유량 5%미만) 	
요건 면제 대상	해당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요건면제 대상인 경우 사유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5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 	면제확인서

붙임 1 관련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안전인증의 면제)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②, ③ 생략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V

집중관리품목(HSK 700개) 작성 가이드

1. 신선·냉장 쇠고기 갈비 (0201.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VINE SHORT R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쇠고기가 아닌 경우 학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ASIATIC BUFFALO(SP: ASIBUBALUS ARN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SHORT R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등급 등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LED, BEEF SHORT RIBS, GRADE: PRIME, PACKING: 5KG/VAC,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م 등급의 식용 신선한 소갈비로 5KG씩 진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RT R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에만 성분을 입력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일반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나 야생소의 신선한 고기나 냉장한 고기를 분류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외(제0511호),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는 0201.10호에 분류, 뼈 없는 것은 0201.3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 냉동 기타 돼지고기 (0203.2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 목살: FROZEN COLLAR 2. 냉동 전지: FROZEN PICNIC 3. 냉동 로인 부위: FROZEN LOIN(TENDER LOIN INCLUDED) 4. 냉동 사태: FROZEN SHANK 5. 냉동 뼈: FROZEN BONE(BACK BONE, NECK BONE) 6. 냉동 족: FROZEN HOCKS 7. 냉동 항정살: FROZEN JOWL 8. 냉동 기타: FROZEN SWINE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OL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돼지고기가 아닌 경우(멧돼지 등) 학명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SUIDAI(SP: SUS SCRO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COL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NE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KG/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ORK COLLAR, PACKING: 5KG/VAC, USE: EDIBLE ○ 냉동의 식용 돼지고기 목살로 5KG씩 진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ELESS PORK SHOULDER BUT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에만 성분을 입력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 (일반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전지(FROZEN PICNIC)의 경우 전완골의 포함 여부에 따라 돼지의 족(HS0206.49-1000호)과 품목번호가 경합되며 세율차가 발생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 냉동 닭의 기타 절단육 (0207.14-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OTHER CUTS OF FOW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가 아닌 경우 학명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BLACK GROUSE(SP: LYRURUS TETR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INCED CHICKEN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CKEN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 X 10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INCED CHICKEN MEAT, PACKING: 1KG X 10PACK/CT, USE: EDIBLE ○ 냉동의 식용 다진 닭고기가 1KG씩 10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CKEN NECK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에만 성분을 입력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 (일반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207.1호 이하 세번은 닭고기의 신선·냉장·냉동한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가공상태 및 부위 등에 따라 이하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가공방법에 따라 HS16류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 염장·염수장·건조·훈제 돼지고기의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10.1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LLIES(STREAKY) MEAT OF SW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돼지고기가 아닌 경우(멧돼지 등) 학명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SUIDAI(SP: SUS SCRO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OKED BAC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ALTED(염장), IN BRINE(염수), DRIED(건조), SMOKED(훈제)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 X 20PACK/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OKED, SLICED BACON, PACKING: 1KG X 20PACK/VAC, USE: EDIBLE ○ 훈제하고 절단된 식용 베이컨이 1KG씩 20팩이 진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에만 성분을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BELLIES 92.3%, WATER 5.3%, SUGAR 0.7%, SALT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 (일반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210.1호 이하 세번은 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방법으로 조제된 돼지고기가 분류되며 부위에 따라 이하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HS0209호), HS 16류로 분류되는 조제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 염장·염수장·건조·훈제 기타 돼지고기 (0210.1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돼지껍질: PORK SKIN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SKIN ■ SALTED MEAT OF SW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ALTED MEAT OF SWINE (염장 돼지고기)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돼지고기가 아닌 경우(멧돼지 등) 학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UIDAI(SP: SUS SCRO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PORK MEAT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ALTED(염장), IN BRINE(염수), DRIED(건조), SMOKED(훈제)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G X 20PACK/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SLICED PORK HAM, PACKING: 150G X 20PACK/VAC, USE: EDIBLE ○ 염장한 절단된 식용 돼지고기 햄이 150G씩 20팩이 진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 축산물의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에만 성분을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95%, SALT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5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 (일반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210.1호 이하 세번은 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방법으로 조제된 돼지고기가 분류되며 부위에 따라 이하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HS0209호), HS 16류로 분류되는 조제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 활 기타 뱀장어(앙귤라 종) (0301.92-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물장어: LIVE RIVER EELS(ANGUILLA JAPONICA) 2. 무태장어: LIVE MARBLED EELS 3. 기타 민물장어: LIVE E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RIVER EELS (ANGUILLA JAPO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EEL(SP: ANGUILLA JAPO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RTFIN RIVER EELS (SP: ANGUILLA JAPO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ARMING(양식여부): R, N {양식⇒FARMING(R), 자연산⇒FARMING(N)}, 1KG당 마리수(EA/KG): 2마리이하⇒SIZE(L), 3마리~4마리⇒SIZE(M), 5마리이상 ⇒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를 기재, 양식 어류의 경우 생산국내 양식지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GUANGDONG,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M)/LIVE SHORTFIN RIVER EELS, USE: EDIBLE, ORIGIN: GUANGDONG, CHINA ○ 자연산,1KG당 3마리~4마리/식용 숫핀 민물장어 산지는 중국 광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이 ANGUILLA JAPONICA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민물장어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 확인 ■ 앙귤라종의 양식용이 아닌 뱀장어가 분류되며, CITES 대상 요건회피 및 저세율의 이식용으로 신고 적발 사례 등이 다수인 품목으로 유의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뱀장어 ; LIVE EELS(ANGUILLA) <지정기간: 2019.2.1 ~ 2020.1.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 활 잉어 [0301.93-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 잉어(향어): LIVE ISRAEL CARP 2. 잉어: LIVE C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ISRAEL C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CARP(SP: CYPRINUS CARP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RAEL CARP(SP: CYPRINUS CARP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ISRAEL CARP, USE: TRANSPL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용 이스라엘 잉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C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이식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이 CYPRINUS CARPIO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이스라엘 잉어(향어): LIVE ISRAEL CARP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이 호에는 [사이프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I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I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D)·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특계된 종만 분류하며, 특계되지 않은 잉어의 종은 0301.99-9096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 활 먹장어 [0301.99-7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활먹장어: LIVE HAG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HAG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GFISH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AUSTRALIA HAG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GFISH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AUSTRALIA HAGFISH, USE: TRANSPLANT ○ 이식용 호주 활먹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HAGFISH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이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활먹장어 ; HAGFISH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 활 미꾸라지 (0301.99-907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미꾸라지: LOA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A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LOACHES(SP: MISGURNUS MIZOLEP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ACHES(SP: MISGURNUS MIZOLEP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ACH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LOACHES, USE: TRANSPLANT ○ 이식용 활 미꾸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LOACH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이식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학명이 MISGURNUS MIZOLEPI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미꾸라지 ; LOACHES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 신선·냉장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302.55-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신선냉장명태: FRESH OR CHILLED ALASKA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OR CHILLED ALASKA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POLLACK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ALASKA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LACK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EX(암수구분): F, M (암컷⇒SEX(F), 수컷⇒SEX(M)), SIZE(마리당 평균중량): 700G이상⇒ SIZE(UL), 500G-700G미만⇒ SIZE(XL), 400G-500G미만⇒ SIZE(L), 300G-400G미만⇒ SIZE(M), 300G미만⇒ 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X(M);SIZE(UL)/FRESH ALASKA POLLACK(W/R), PACKING: 10KG/CT, USE: EDIBLE ○ 수컷;사이즈 700G이상/식용 신선 명태원형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X(M);SIZE(UL)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냉장명태 ; FRESH OR CHILLED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지정기간: 2017.2.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 신선·냉장 가오리와 홍어(라지대 과) (0302.8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장홍어: FRESH SKATE 2. 가오리: RAYS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SKATE ■ CHILLED 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CHILLED RAY(냉장 가오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KATES WINGS (SP: ZEARAJA NASU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SKATE WING (SP: ZEARAJA NASU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400-50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SKATE WING, SIZE: 400-500G,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신선 홍어 날개가 400~500G 사이즈로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지대(RAJIDAE)과의 홍어와 가오리만 제0302.82호에 분류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제0302.89호 이하)에 분류되므로 라지대과에 해당하는 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 - 라지대과에 속하는 학명에는 ZEARAJA SPP, DIPTURUS SPP, LEUCORAJA SPP 등이 있고 속하지 않는 학명에는 BATHYRAJA SPP, HIMANTURA SPP 등이 있음 ■ STINGRAY의 경우 라지대 과가 아닌 색가오리 과에 해당되어 0302.89-9090로 분류되므로 수입신고 전 관세율표상의 품명 및 학명 재확인 요망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냉장홍어 ; FRESH SKATES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 신선·냉장 갈치 (0302.89-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1. 신선 또는 냉장갈치: HAIR-TAIL, FRESH OR CHI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TAIL, FRESH OR CHI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T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HAIR-T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LED SWORD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CAPTURED(어획방법): H, L, N 채낚기⇒CAPTURED(H), 연승⇒CAPTURED(L), 어망⇒CAPTURED(N), SIZE(마리당 평균중량: 600G이상⇒SIZE(XL), 400G-600G미만⇒SIZE(L), 200G-400G미만⇒SIZE(M), 200G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TURED(H);SIZE(L)/FRESH HAIR-TAIL(W/R), PACKING: 1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낚기 어획방법;마리당 평균중량 400-600G미만 사이즈/식용 신선 갈치원형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TURED(H);SIZ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갈치 ; HAIR-TAIL, FRESH OR CHILLED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 냉동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303.67-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명태(내장제거): FROZEN ALASKA POLLACK(GUTTED) 2. 냉동명태(머리,내장제거): FROZEN ALASKA POLLACK(DRESSED) 3. 냉동명태(원형): FROZEN ALASKA POLLACK(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ALASKA POLLACK(DRES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ALASKA POLLACK(H/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ROES(포란여부): N, Y {알이 없는 것⇒ROES(N), 알이 있는 것⇒ROES(Y)}, SIZE(21.5KG당 마리 수): 20마리아하⇒ SIZE(XL), 21마라-33마라⇒ SIZE(L), 34마라-69마라⇒ SIZE(M), 70마리아상⇒ 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ES(N);SIZE(M)/FROZEN ALASKA POLLACK(H/G), PACKING: 10KG/CT, USE: EDIBLE ○ 알이 없고, 21.5KG당 34마리~69마리 사이즈/식용 냉동명태(머리, 내장제거)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ES(N);SIZ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 냉동 홍어(라지대 과) (0303.82-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KATES WINGS SKINLESS(SP: ZEARAJA CHILEN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KATES WINGS SKINLESS (SP: ZEARAJA CHILEN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W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400-50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KATES WINGS SKINLESS, SIZE: 400-500G, PACKING: 5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을 벗긴 식용 냉동홍어 날개가 400-500G 사이즈로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WHOLE ROUND SK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지대(RAJIDAE)과의 홍어만 0303.82-2000에 분류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0303.89-9099)에 분류되므로 라지대과에 해당하는 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 냉동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0303.89-3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냉동옥돔: RED HORSE HEAD FISH(BRANCHIOSTEGUS JAPON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HORSE HEAD FISH (BRANCHIOSTEGUS JAPON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HORSE HEAD FISH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HORSE HEAD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LE FISH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 예) SIZE: 150-20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HORSE HEAD FISH, SIZE: 150-200G,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냉동 옥돔이 150-200G 사이즈로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600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HORSE HEAD FISH(백옥돔)는 학명이 BRANCHIOSTEGUS ALBUS이므로 다른 세번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 냉동 조기 (0303.89-5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참조기: FROZEN REDLIP CROAKER 2. 냉동부세: FROZEN YELLOW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YELLOW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CORV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 YELLOW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ARMING(양식여부): R, N {양식⇒FARMING(R), 자연산⇒FARMING(N)}, SIZE(마리당중량): 700G이상⇒SIZE(UL), 500G-700G미만⇒SIZE(XL), 300G-500G미만⇒SIZE(L), 150G-300G미만⇒SIZE(M), 150G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S)/FROZEN SMALL YELLOW CROAKER, PACKING: 10KG/CT,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산;마리당 중량 150G미만 사이즈/사료용 작은 냉동부세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어와 혼동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작성 시 민어의 경우에도 CROAKER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송품장에 CROAKER로만 기재된 경우 조기인지, 민어인지 확인 필요 (조기 - 0303.89-5000, 민어 - 0303.89-9091)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냉동조기 ; FROZEN CORVINA(CROAKER)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 냉동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0303.89-905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FISH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DUSKY ROCK FISH(H/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 FISH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300-50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DUSKY ROCK FISH(H/G), SIZE: 300-500G,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냉동 떡볼락이 300~500G 사이즈로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EDIBLE) DRESSED 40G-70G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0303.91호부터 0303.99호에 분류되므로 해당품목의 부분부위 일 경우 상세히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 냉동 민어 (0303.89-90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민어: OTHER FROZEN CROAKER 2. 냉동긴가이석태: FROZEN BOBO CROAKER 3. 냉동민어: FROZEN BROWN CROAKER 4. 냉동영상가이석태: FROZEN LONGNECK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BOBO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BO CROAKER(W/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ARMING(양식여부): R, N {양식⇒FARMING(R), 자연산⇒FARMING(N)}, SIZE(25KG박스당 마리수): 60마리아하⇒SIZE(UL), 61마라-70마리⇒SIZE(XL), 71마라-80마리⇒SIZE(L), 81마라-100마리⇒SIZE(M), 101마리아상⇒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S)/FROZEN BOBO CROAKER(W/R), PACKING: 25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산;25KG박스당 101마리 이상 사이즈/식용 냉동긴가이석태 원형이 2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CROAKER(학명: LARIMICHTHYS CROCEA)의 경우 품명에 CROAKER가 들어가진 하나 부세(조기)에 해당하는 어류로 0303.89-5000으로 분류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 냉동 기타 어류 (0303.89-90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식용의 냉동 기름치: FROZEN OILFISH(INEDIBLE) 2. 식용 냉동 기름치: FROZEN OILFISH(EDIBLE)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OILFISH(EDIBLE) ■ FROZEN RAY W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FROZEN RAY WINGS (냉동 가오리 날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RAY WINGS (SP: BATHYRAJA PARMIF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AY WINGS SKIN ON (SP: BATHYRAJA PARMIF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 W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200-50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AY WINGS SKIN ON, SIZE: 200-500G, PACKING: 4.5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이 있는 식용 냉동 가오리 날개가 200-500G 사이즈로 4.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AY W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이 BATHYRAJA PARMIFERA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치의 경우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보통 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나, 식품검역을 받아 수입되는 건은 우리나라에서 가공 후 수출되는 것으로 수입신고서상 18번(종류)에 외화획득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바람 ■ 라지대과에 속하지 않는 홍어, 가오리 등이 분류됨 (BATHYRAJA SPP, HIMANTURA SPP.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 냉동 어류의 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 (0303.9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OD H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ROZEN COD HEAD (냉동 대구 머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COD HEAD(SP: GADUS MACROCEPHA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ACIFIC COD HEAD (SP: GADUS MACROCEPHA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01)제0303.11.0000호의 것, (02) ~ (65)생략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60-80G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FROZEN PACIFIC COD HEAD, SIZE: 60-80G, PACKING: 20KG/CT, USE: EDIBLE ○ 0303.63.0000호의 것/식용 냉동 대구머리가 60-80G 사이즈로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ACIFIC COD HEAD 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이 GADUS MACROCEPHALU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SWIM BLADDER)와 그 밖의 식용의 어류 설육은 05류로 분류되지 않고 03류 분류 ■ 어류 비늘(SCALE)의 경우는 0511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 건조 명태(북어) (0305.59-3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어(통북어): DRIED ALASKA POLLACK(GUTTED) 2. 북어(절개): DRIED ALASKA POLLACK(INCISED) 3. 북어채: DRIED ALASKA POLLACK(SHRED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ALASKA POLLACK(SHRED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POLLACK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POLLACK S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한 후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RIED(건조방법): F, N {동결건조⇒DRIED(F), 일반건조⇒DRIED(N)}, SIZE(크기): 43CM이상⇒SIZE(UL), 39CM-43CM미만⇒SIZE(XL), 36CM-39CM미만⇒SIZE(L), 33CM-36CM미만⇒SIZE(M), 33CM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F);SIZE(M)/ALASKA POLLACK(INCISED), PACKING: 10KG/CT, USE: EDIBLE ○ 동결건조;33CM-36CM미만의 사이즈/식용 북어 슬라이스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POL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어는 가공방법, 건조방법, 크기에 따라 표준품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입검사 결과 신고내용이 현품과 다른 적발사례 다수 발생. 신고 시 확인 필요 ■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북어포는 0305.32-1000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 건조 기타 어류 (0305.5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밴댕이: DRIED BIG EYED HERRING 2. 붉은 메기: DRIED ARMORED BROTLA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IG EYED HERRING ■ DRIED SILVER STRIPE ROUND HER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DRIED SILVER STRIPE ROUND HERRING(건조 셋줄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CROAKER(SP: TOTOABA MACDONAL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HERRING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AIL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9-11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HERRING FISH, SIZE: 9-11CM, PACKING: 1.5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건조 밴댕이가 9~11CM 사이즈로 1.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A(6-8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 밴댕이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MACKEREL), 돛새치(SAILFISH) 등은 0305.54-9000 으로 분류/명태(ALASKA POLLACK)는 0305.59-3000 으로 분류 → 신고오류 많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 냉동 기타 닭새우류(팔리누루스 종 · 파누리루스 종 · 자수스 종) [0306.1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OCK LOB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PINY LOBSTER(SP: PANULIRUS JAPON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PINY LOBSTER (SP: PANULIRUS JAPON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OTHER SHRIMP(LITOPENAEUS VANNAM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형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새우는 머리제거, 껍질유무 등을 기재(예) HOSO(머리와 껍질이 있는 새우 원형), HLSO(머리만 제거한 두절 새우), CPTO(껍질을 제거하고 꼬리가 있는 자숙 새우), CPDTO(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꼬리가 있는 자숙 새우), PD(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새우), PDTO(껍질을 제거하고 꼬리가 있는 새우살) 등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20-30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IQF 1KG/BOX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D, SPINY LOBSTER, SIZE: 20-30CM PACKING: IQF 1KG/BOX,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냉동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닭새우가 20~30CM 사이즈로 개별급속 냉동하여 1KG씩 박스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LOBSTER 200G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머리·몸통의 껍질 모두 제거한 냉동새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명 신고 필요 → BLACK TIGER SHRIMP(블랙타이거 새우), VANNAMEI SHRIMP(흰다리 새우)를 동 세번으로 오신고하는 사례 많음 ■ 냉동새우는 구체적인 처리형태를 기재 → 머리와 몸통의 껍질을 모두 제거한 새우, 자숙한 새우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검역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처리형태: 새우 원형, 머리만 제거한 두절 새우, 머리만 있고 껍질만 제거한 새우, 새우머리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 냉동 기타 꽃게 (0306.14-3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삶은 꽃게(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FROZEN BOILED SWIMMING CRAB 2. 삶은 꽃게(다리에 한한다): FROZEN BOILED SWIMMING CRAB CUT 3. <삭제>: FROZEN BOILED SWIMMING CRAB PINCERS 4. 기타: OTHER 5. 냉동 꽃게(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FROZEN SWIMMING CRAB 6. 냉동 꽃게(다리에 한한다): FROZEN SWIMMING CRAB CUT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WIMMING CRAB ■ FROZEN SWIMMING CRAB PE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ROZEN SWIMMING CRAB PELLET(냉동 꽃게 펠릿)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UT SWIMMING CR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R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OZEN(냉동), BOILED(삶은)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200-300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UT SWIMMING CRAB, SIZE: 200-300G, PACKING: 4KG/CT, USE: EDIBLE ○ 식용 절단된 냉동 꽃게가 200-300G 사이즈로 4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제한 꽃게는 HS 0306.14-3010호에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 적용 시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냉동꽃게 ; FROZEN SWIMMING CRAB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 건조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 종 · 크란곤 크란곤) (0306.95-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새우: DRIED SHRIMP 2. 건새우(두절새우): DRIED HEADLESS SHRIMP 3. 건새우분: DRIED SHRIMP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HR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HRIMP(SP: PANDALUS BORE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HRIMP (SP: PANDALUS BORE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RIMP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포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EFECTIVENESS(파품혼입율): H, L 10%이상⇒DEFECTIVENESS(H), 10%미만⇒DEFECTIVENESS(L),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SIZE(길이): 4CM이상⇒SIZE(L), 3CM-4CM미만⇒SIZE(M), 3CM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EQUALITY(L); SIZE(M)/DRIED SHRIMP, PACKING: 10KG/CT, USE: EDIBLE ○ 파품혼입율 10%미만;고르기 10%이상;길이 3CM-4CM미만/식용 건새우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EQUALITY(L); SIZE(M)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 PANDALUS BOREALI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종)가 아닌 새우는 0306.95-90이하(그밖의 새우류)로 분류되므로 학명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 염장·염수장 기타 새우류 (0306.95-903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장새우(새뱅이새우): SALTED FRESHWATER SHRIMP 2. 염장새우(젓새우): SALTED OPOSSUM SHR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OPOSSUM SHR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SAWTOOTH CARIDINA SHRIMP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HRIMP(SP: ACETES ERYTHRAE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ALTED OPOSSUM SHRIMP (SP: ACETES ERYTHRAE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RIMP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EFECTIVENESS(이물): H; L 10%이상⇒DEFECTIVENESS(H), 10%미만⇒DEFECTIVENESS(L),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SIZE(마리당 평균길이): 4CM이상⇒SIZE(L), 3CM-4CM미만⇒SIZE(M), 3CM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SALTED(염장), IN BRINE(염수)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EQUALITY;(H); SIZE(L)/FROZEN SALTED OPOSSUM SHRIMP, PACKING: 10KG/CT, USE: EDIBLE ○ 이물 10%미만;고르기 10%미만;마리당 평균길이 4CM이상/냉동 염장새우(젓새우)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EQUALITY;(H); SIZE(L)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RIMP 75%, SALT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DRUM/21KGS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학명이 ACETES ERYTHRAEU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 대상, 건조한 기타 새우류는 HS 0306.95-9020호에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 적용 시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 염장새우(젓새우); SALTED OPOSSUM SHRIMP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 활·신선·냉장 가리비 (0307.2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가리비(국자가리비): LIVE JAPANESE BAKING SCALLOP 2. 활가리비(큰가리비): LIVE YESSO SCALLOP 3. 활가리비(비단가리비): LIVE KOREA SCALLOP 4. 활가리비(기타가리비): LIVE OTHER SCALLOP 5. 냉장가리비살: FRESH SCALLOP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KOREA SCAL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L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KOREA SCALLOP BAB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L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ARMING(양식여부): R, N {양식⇒FARMING(R), 자연산⇒FARMING(N)}, SIZE(마리당중량: 200G이상⇒SIZE(L), 100G-200G미만⇒SIZE(M), 100G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R);SIZE(S)/LIVE KOREA SCALLOP BABY, USE: TRANSPLANT ○ 양식;마리당중량 100G미만/이식용 새끼 활가리비(비단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MING(N);SIZE(M)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이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한 것은 0307.22-0000,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HS 16류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가리비 ; SCALLOPS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 냉동 오징어(오마스트레페스 · 로리고 · 노트토다루스 · 세피오투디스 종) (0307.43-2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ID(OMMASTREPHEs BARTRA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NEON FLYING SQUID (SP: OMMASTREPHEs BARTRA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NEON FLYING SQUID (SP: OMMASTREPHEs BARTRA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NEON FLYING SQUID,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냉동빨강오징어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ON FLYING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07.4 ‘갑오징어와 오징어’ 세번은 가공상태와 오징어 종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세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학명을 기재하고 가공상태 확인요망 ■ 품목분류 결정사항에 의해 DOSIDICUS GIGAS종은 0307.43-2090으로 분류됨 ■ 냉동빨강오징어(NEON FLYING SQUID)는 OMMASTREPHEs BARTRAMI종으로 0307.43-2010 로 분류됨 ■ 뉴질랜드 해역에 서식하는 노트토다루스 종 오징어의 경우, 통상적 명칭이 ‘NEW ZEALAND ARROW SQUID’ 로 불려지고 있어, 상업서류에 오징어임에도 ‘ARROW SQUID’ 로만 표기되어 한치로 신고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확인요망(조정관세대상임)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 냉동 기타 오징어 (0307.43-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GIANT SQUID(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GIANT SQUID (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GIANT SQUID, PACKING: 20KG/CT, USE: EDIBLE ○ 식용 냉동아메리카 대왕오징어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ANT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07.4 ‘갑오징어와 오징어’ 세번은 가공상태와 오징어 종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세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학명을 기재하고 가공상태 확인요망 ■ 냉동아메리카대왕오징어(DOSIDICUS)는 HS0307.43-2010호에서 열거한 4종의 이외의 종으로 HS0307.43-209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 활 · 신선 · 냉장 낙지 (0307.5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낙지: LIVE POULP SQUID 2. 신선한 낙지: FRESH POULP SQUID 3. 냉장한 낙지: CHILLED POULP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OULP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ULP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HIPARM OCTOP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ULP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IZE(마리당중량: 500G이상⇒ SIZE(UL), 300G-500G미만⇒ SIZE(XL), 200G-300G미만⇒ SIZE(L), 100G-200G미만⇒ SIZE(M), 100G미만⇒ 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UL)/FRESH WHIPARM OCTOPUS, PACKING: 5KG/CT, USE: EDIBLE ○ 마리당중량 500G이상/식용 신선낙지가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용 낙지(살아있는 것에 한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 신선낙지로 이식용 낙지가 아니므로 비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한 것은 0307.52-2000,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HS 16류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활낙지 ; LIVE POULP SQUID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 냉동 문어 [0307.5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문어(원형): FROZEN OCTOPUS(ROUND) 2. 냉동문어(내장제거): FROZEN OCTOPUS(GUTTED) 3. 냉동문어(절단문어): FROZEN OCTOPUS(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OCTOPUS(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TOP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TOPUS L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TOP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REEZING(냉동방법): B I {블록냉동⇒FREEZING(B), 개별냉동⇒FREEZING(I)}, SIZE(마리당중량: 8KG이상⇒SIZE(UL), 5KG-8KG미만⇒SIZE(XL), 3KG-5KG미만⇒SIZE(L), 1KG-3KG미만⇒SIZE(M), 1KG미만⇒SIZE(S) FOR SUSHI(초밥용 또는 횡감용여부): N Y 초밥용 또는 횡감용이 아닌 것⇒FOR SUSHI(N), 초밥용 또는 횡감용⇒FOR SUSHI(Y)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ING(B);SIZE(M);FOR SUSHI(N)/OCTOPUS LEG, PACKING: 5KG/CT, USE: EDIBLE ○ 블록냉동;마리당중량 1KG~3KG미만;초밥용 또는 횡감용이 아닌 것/식용 문어 다리가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ING(B);SIZE(M);FOR SUSH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신선·냉장한 것은 0307.51-9000,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HS 16류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특히, 문어의 경우 데치거나 삶은 후 냉동하여 수입되는 물량이 많고, 그 삶은 정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유의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 활 · 신선 · 냉장 바지락 (0307.71-4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선냉장바지락: BABY CLAMS, FRESH OR CHILLED 2. 활바지락: LIVE BABY CL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BABY CL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L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SHORT NECKED CL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L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COLLECTED(채취방법): M, S 손으로 채취⇒COLLECTED(M), 배로 채취⇒COLLECTED(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SHELLED(탈각여부): N, Y{탈각하지 않은 것⇒SHELLED(N), 탈각한 것⇒SHELLED(Y)}, SIZE(1KG당 수량: 60알미만⇒SIZE(L), 60알~80알미만⇒SIZE(XL), 80알~100알미만⇒SIZE(L), 100알~120알미만⇒SIZE(M), 120알이상⇒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LECTED(S);EQUALITY(H); SHELLED(N);SIZE(XL)/ LIVE SHORT NECKED CLAM, USE: EDIBLE ○ 배로채취; 고르기 10%미만; 탈각하지 않은 것; 1KG당 수량이 60알~80알 미만/식용 활바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LECTED(S);EQUALITY(L); SHELLED(N);SIZE(S)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307.7 이후 세번은 가공상태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차이가 있으며,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HS 16류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 활 · 신선 · 냉장 기타 조개류 (0307.7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참꼬막: LIVE HAIGAI(TEGILLARCA GRANOSA) 2. 활개조개: LIVE PURPLISH WASHINGTON CLAM 3. 활개랑조개: LIVE HEN CLAM 4. 활동죽: LIVE SURF CLAM 5. 활새꼬막: LIVE ARK SHELL(SCAPHARCA SUBCRENATA) 6.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ARK SHELL(SCAPHARCA SUBCRENATA) ■ LIVE GIANT CL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LIVE GIANT CLAM(활대왕조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GRANULAR 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CL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GRANULAR ARK,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활새꼬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307.7 이후 세번은 가공상태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차이가 있으며,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HS 16류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 활 · 신선 · 냉장 기타 우렁쉥이(멍게) [0308.90-1019]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우렁쉥이: LIVE SEA-SQUIRT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SEA-SQUIRTS ■ LIVE FALSE SEA-SQU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LIVE FALSE SEA-SQUIRTS (활 끈멍게)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LSE SEA-SQU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LOCYNTHIA RORE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VE(살아있는),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 FALSE SEA-SQUIRTS,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활 끈멍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0308.90 이후 세번은 가공상태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멍게 종묘(이식용)는 HS 0308.90-1011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용도를 필수 기재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활우렁쉥이; LIVE SEA-SQUIRTS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TED CHEESE OF ALL KI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ES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REDDED CHEE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ED CHEES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GRATED(갈은), POWDERED(가루모양의)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TED, SHREDDED CHEESE, PACKING: 1KG/CT, USE: EDIBLE ○ 채 형태로 갈아서 만든 식용 치즈가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PORT CHARGES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RILIZED MILK 95%, CHEESE CULTURES 3%, SALT 0.6%,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W: 14,664.779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과 HS0406.30-0000호(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 가공치즈)는 한-호주 FTA 협정세율(FAU) 세율차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 천연꿀 [0409.0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H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BEE CACTUS H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 X 12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BEE CACTUS HONEY, PACKING: 500G X 12JAR/CT, USE: EDIBLE ○ 식용 하이비 선인장 꿀이 500G씩 12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HONEY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꿀·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제1702호)하며 한-미 FTA 협정세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기타 동물성 생산품 (0410.0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폴리스: PROPOLI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POLIS ■ PROPOLIS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PROPOLIS EXTRACT (프로폴리스 추출물)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물품인 경우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SOFT-SHELLED TURTLE EGG (SP: PELODISCUS MAACK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 PROPOLIS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 JE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ML X 12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 PROPOLIS POWDER, PACKING: 30ML X 12BOTTLE/CT , USE: EDIBLE ○ 식용 벌꿀 프로폴리스 분말이 30ML씩 12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 PROPOLIS EXTRAC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BRAZ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산지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용 자라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산물, 축산물,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이식용 자라알 아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벌꿀 분말로 CITES 비대상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벌꿀 분말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 녹용 전지 (0507.90-11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화록녹용전지(건조): DRIED MANCHURIAN VELVET ANTLER(WHOLE) 2.~11.: 생략 12. 기타녹용전지(냉동): OTHER FROZEN VELVET ANTLER(WHOLE)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ANCHURIAN VELVET ANTLER(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MANCHURIAN HORN(WHOLE) (SP: CERVUS NIPPON MANCHUR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ANCHURIAN HORN(WHOLE) (SP: CERVUS NIPPON MANCHURI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ER H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BOTTOM-TYNES(밀가지수): 1, 2,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BOTTOM-TYNES(1), 2개⇒BOTTOM-TYNES(2), 없음⇒BOTTOM-TYNES(N), SIZE(중량: 9KG이상⇒SIZEA), 7.5KG이상-9KG미만⇒SIZEB), 6KG이상-7.5KG미만⇒SIZEC), 4.5KG이상-6KG미만⇒SIZED), 3KG이상-4.5KG미만⇒SIZEE), 2.1KG이상-3KG미만⇒SIZEF), 1.5KG이상-2.1KG미만⇒SIZEG), 0.9KG이상-1.5KG미만⇒SIZEH), 0.9KG미만⇒SIZEI)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TYNES(N);SIZE(F)/FROZEN MANCHURIAN HORN (WHOLE), PACKING: 15KG/CT, USE: MEDICINAL ○ 밀가지수 없음;중량 2.1KG이상~3KG미만/한약재용 냉동 매화록녹용전지가 1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TYNES(N);SIZ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 별표5,6에 계기된 의약품목, 한약재, 동물용의약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ERVUS NIPPON MANCHURICU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또는 가공처리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 신선·냉장 양파 [0703.1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색양파: FRESH RED ONIONS 2. 기타양파: FRESH ONIONS 3. 적색 깎양파: FRESH PEELED RED ONIONS 4. 기타 깎양파: FRESH PEELED O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RED O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EELED RED O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IAMETER(수평지름): L, M, S 10CM이상⇒DIAMETER(L), 7CM-10CM미만⇒DIAMETER(M), 7CM미만⇒DIAMETER(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M);EQUALITY(L)/FRESH PEELED RED ONIONS, PACKING: 15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 수평지름 7CM~10CM미만;고르기 10%이상/껍질을 깎 식용 신선적색양파가 15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이며 수확 연도는 2019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M);EQUALIT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양파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양파,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양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된 양파는 0710.80-1000으로 분류 ○ 양파를 건조하여 절단하거나 가루를 낸 경우 0712.20-0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 껍질을 깬 신선·냉장 마늘 (0703.2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마늘(육쪽): FRESH GARLIC, PEELED (HARD STEM) 2. 간마늘(다쪽): FRESH GARLIC, PEELED (SOFT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GARLIC, PEELED (HARD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E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EELED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WEIGHT/EA(개당평균중량): L, M, S 4G이상⇒WEIGHT(L), 3G-4G미만⇒WEIGHT(M), 3G미만⇒WEIGHT(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S);EQUALITY(L)/FRESH PEELED GARLIC, PACKING: 15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 개당평균중량 3G미만;고르기 10%이상/식용 신선간마늘(육쪽)이 15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9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S);EQUALIT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전분용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신선(냉장) 간마늘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 확인 ■ 신선한 것이나 냉정한 껍질을 깬 것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마늘,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마늘이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된 마늘은 0710.80-2000으로 분류 ○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탄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한 것으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마늘은 0711.90-1000으로 분류 ○ 마늘을 건조하여 절단하거나 가루를 낸 경우 0712.90-1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 신선·냉장 기타 마늘 (0703.2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선마늘(육쪽): FRESH GARLIC (HARD STEM) 2. 신선마늘(다쪽): FRESH GARLIC (SOFT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GARLIC (SOFT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HOLE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IAMETER(개당평균크기): 수평지름 L, M, S 5.5CM이상⇒DIAMETER(L), 4.5CM-5.5CM미만⇒DIAMETER(M), 4.5CM미만⇒DIAMETER(S) DEFFECTIVENESS(결점구혼입율): A B 10%미만⇒DEFFECTIVENESS(A), 10%이상⇒DEFFECTIVENESS(B)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SEED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JIANGSU, CHINA, YEAR: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M);DEFECTIVENESS(A)/FRESH WHOLE GARLIC, PACKING: 5KG/BAG, USE: EDIBLE, ORIGIN: JIANGSU, CHINA, YEAR: 2019. 10. ○ 개당평균크기 4.5CM-5.5CM미만;결점구혼입율 10%미만/식용 신선 통마늘(다쪽)이 5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중국 장쑤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9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M); DEFECTIVENESS(A)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신선(냉장)통마늘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신선·냉장한, 껍질을 깬마늘(0703.20-1000)외의 모든 마늘은 이 호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마늘,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마늘이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된 마늘은 0710.80-2000으로 분류 ○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한 것으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마늘은 0711.90-1000으로 분류 ○ 마늘을 건조하여 절단하거나 가루를 낸 경우 0712.90-1000으로 분류 ■ 육쪽마늘인지 혹은 다쪽마늘인지에 따라 모델규격란의 개당평균크기 기준이 다름에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 신선·냉장 당근 (0706.1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당근: FRESH CARR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CARR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OTS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ASHED CARR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O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WEIGHT/EA(개당평균중량): L, M, S 250G이상⇒WEIGHT(L), 200G-250G미만⇒WEIGHT(M), 200G미만⇒WEIGHT(S) ○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HEBEI, CHINA, YEAR: 20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L)/FRESH WASHED CARROTS, PACKING: 10KG/CT, USE: EDIBLE, ORIGIN: HEBEI, CHINA, YEAR: 2018. 9. ○ 개당평균중량 250G이상;고르기 10%이상/식용 신선 세척당근이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허베이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L)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당근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당근,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당근이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썰서 조리된 당근은 0710.80-4000으로 분류 ○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한 것으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당근은 0711.90-4000으로 분류 ○ 당근은 건조하여 절단하거나 가루를 낸 경우 0712.90-204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 신선·냉장 무 (0706.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RAD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CHUAN ZHAC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HITE RAD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WHITE RADISH, PACKING: 1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신선 무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무(TURNIPS)는 HS0706.10호에 분류함 ■ HS0706호에는 당근 셀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세리리아크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가 분류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 신선·냉장 도라지 (0706.90-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LATYCODON GRANDIFL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ESE HER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EELED ROOT OF BALLOON FL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OON FL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EELED ROOT OF BALLOON FLOWER, PACKING: 1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을 벗긴 식용 신선 도라지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OT OF BALLOON FL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도라지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 냉동 감자 (0710.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OTAT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E FOOD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MALL POT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ATO 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MALL POTATO, PACKING: 1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냉동 작은 감자가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KG/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경우 제20류 등에 분류하며, 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 냉동 기타 채두류 (0710.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LEGUMINOUS VEGET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IGEON P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IGEON PEAS, PACKING: 5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냉동 비둘기 콩이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LLETS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는 제20류 등에 분류하며, 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 냉동 마늘 (0710.8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간마늘(육쪽): FROZEN GARLIC, PEELED (HARD STEM) 2. 냉동간마늘(다쪽): FROZEN GARLIC, PEELED (SOFT STEM) 3. 냉동다진마늘: FROZEN GARLIC, MAS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GARLIC, PEELED (HARD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EELED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WEIGHT/EA(개당평균중량): L, M, S 4G이상⇒WEIGHT(L), 3G-4G미만⇒WEIGHT(M), 3G미만⇒WEIGHT(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H)/FROZEN PEELED GARLIC, PACKING: 10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9. 10. ○ 개당평균중량 4G이상;고르기 10%미만/식용 냉동간마늘(육쪽)이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9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냉동마늘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냉동 간마늘(FROZEN GARLIC, PEE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쪽(HARD STEM) 마늘의 한 품종으로 줄기가 굵고 잎이 비교적 큼. 6-8개의 마늘쪽이 생기고 마늘 밑과 쪽이 크며 저장성이 좋음 ○ 다쪽(SOFT STEM) 마늘의 한 품종으로 비교적 껍질이 얇음. 9~10개의 마늘쪽이 생기고 주로 장아찌를 담가 먹음 - 국내반입 냉동마늘은 대부분 육쪽마늘이며 알이 굵기와 크기가 고른 물품이 상급이며 다쪽에 비해 육쪽이 단가가 높음 ■ 냉동 다진마늘(FROZEN GARLIC, MAS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안으로 식별 시 빛깔이 고르고 노란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 상급임 ○ 국내 반입 냉동마늘은 주로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 매운맛이 강하고 동그란 형태. 11월 이전에 반입되는 냉동마늘은 전년도 생산품이고 당해 연도 생산품은 11월 이후 반입가능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 냉동 고추류 (0710.80-7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고추(익도홍):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YIDOUHONG) 2. 냉동고추(금탑):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JINTA) 3. 냉동고추(청양):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CHEONGYANG) 4. 기타 냉동고추: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THERS) 5. 냉동피망: FROZEN PIMENT 6. 냉동파프리카: FROZEN PAP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PEPPER (YIDOUH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CHIL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EPPER DI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LENGTH(개당평균길이): L, M, S 13CM이상⇒LENGTH(L), 10CM-13CM미만⇒LENGTH(M), 10CM미만⇒LENGTH(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JILIN, CHINA, YEAR: 20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GTH(M);EQUALITY(L)/FROZEN RED CHILLI, PACKING: 10KG/CT, USE: EDIBLE, ORIGIN: JILIN, CHINA, YEAR: 2018. 9. ○ 개당평균길이 10CM-13CM미만;고르기 10%이상/냉동고추(익도홍)이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길림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GTH(M);EQUALIT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냉동고추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냉동고추(FROZEN RED PEPPER)의 경우 수분함량에 따라 건조고추(0904.21-0000)와 품목번호가 경합 되므로 유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냉동고추 ; FROZEN RED PEPPER <지정기간: 2019.2.1 ~ 2020.1.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 (0711.90-5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RAD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SALTED RADISH (염장 무)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CHINESE RAD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RVED VEGE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양과 또는 케이퍼 (02) 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ALTED(염장)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SALTED CHINESE RADISHES, PACKING: 10KG/CT, USE: EDIBLE ○ 기타/중국산 염장무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G X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SH 85%, PURIFIED SALT WATER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장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탄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를 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 ■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인 경우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 건조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 종) [0712.3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흑목이버섯: DRIED BLACK WOOD EARS 2. 백목이버섯: DRIED WHITE WOOD E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WHITE WOOD E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EARS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WHITE FUNG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GU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포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GROWING(재배여부): N R {자연산⇒GROWING(N), 재배⇒GROWING(R)}, SIZE(갈): 7CM이상⇒SIZE(L), 5CM-7CM미만⇒SIZE(D), 4CM-5CM미만⇒SIZE(M), 4CM미만⇒SIZE(S), DEFECTIVENESS(이물): H L {1%이상⇒DEFECTIVENESS(H), 1%미만⇒DEFECTIVE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 X 12BAG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ING(R);SIZE(M); DEFECTIVENESS(H)/DRIED WHITE FUNGUS, PACKING: 500G X 12BAG, USE: EDIBLE ○ 재배한:1KG당 송이 개수 15개~20개미만;이물 1%이상/마른 백목이버섯이 500G씩 12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ING(R);SIZE(M); DEFECTIVENESS(H)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 건조 고사리 (0712.90-2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사리(빠차이): DRIED BRACKEN(ARRANGED) 2. 건조사리(산차이): DRIED BRACKEN(TANG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RACKEN(TANG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C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RACKEN F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C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LENGTH(개당평균길이): L, S {15CM~20CM=LENGTH(L), 기타=LENGTH(S)}, BLOOMING(잎 끝이 퍼진 것의 비율): H, M,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이상⇒BLOOMING(H), 5%~10%미만⇒BLOOMING(M), 5%미만⇒BLOOMING(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GTH(L);BLOOMING(M)/DRIED BRACKEN FERN, PACKING: 1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당평균길이 15CM~20CM;잎 끝이 퍼진 것의 비율 5%~10%미만/건조사리(산차이)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GTH(S);BLOOMIN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 건조 양배추 (0712.90-206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양배추(통배추): DRIED CABBAGES(WHOLE) 2. 건조양배추(편): DRIED CABBAGES(FL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CABBAGES(FL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B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LARGE CABBAGE FL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B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IZE(한 변의 길이): 20MM이상⇒SIZE(XL), 15MM-20MM미만⇒SIZE(L), 10MM-15MM미만⇒SIZE(M), 10MM미만⇒SIZE(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DEFECTIVENESS(부스러기함량: H/L{5%이상⇒DEFECTIVENESS(H), 5%미만⇒DEFECTIVE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XL);EQUALITY(L); DEFECTIVENESS(L)/DRIED LARGE CABBAGE FLAKE, PACKING: 20KG/CT, USE: EDIBLE ○ 한 변의 길이 20MM이상;고르기 10%이상;부스러기함량 5%미만/식용 건조 큰 양배추 플레이크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S);EQUALITY(L); DEFECTIVENESS(L)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BAGE 94%, GLUCOSE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 건조 토란줄기 (0712.90-207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O 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TARO 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O STEM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TARO STEMS, PACKING: 20KG/CT, USE: EDIBLE ○ 식용 건조한 토란줄기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TARO STEM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 건조 기타 채소 (0712.90-2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슬리: PARSLEY 2. 고추냉이: HORSERADISH 3. 참취: ASTER SCABER THUNB 4. 청경채: PAK CHOI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SLEY ■ JICAMA S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JICAMA SLICE (히카마 슬라이스)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SLEY FLAK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LL T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ARSLEY FLAKES,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건조 파슬리 플레이크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2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 건조 기타 녹두 (0713.3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녹두(탈피한 것): DRIED MUNG-BEANS, PEELED 2. 건조녹두(나물재배용): DRIED MUNG-BEANS FOR SPROUTING 3. 기타 건조녹두: DRIED MUNG-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MUNG-BEANS, PEE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ELED MUNG 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NG 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이상/이하⇒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HEILONGJIANG, CHINA, YEAR: 20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H)/DRIED PEELED MUNG BEANS PACKING: 500G/BAG, USE: EDIBLE, ORIGIN: HEILONGJIANG, CHINA, YEAR: 2018. 9. ○ 정립률 95%이상/식용 건조녹두(탈피한 것)가 500G씩 포대포장 산지는 후룡강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건조녹두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비그나 명고 (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 BLACK GRAM이라고도 한다)과 비그나 라디아타 (L.) 월체크(VIGANA RADIATE의 (L.) WILCZEK)종의 녹두만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 건조 기타 팥 [0713.32-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팥(적색): DRIED SMALL RED BEANS 2. 건조팥(회색): DRIED SMALL GRAY BEANS 3. 건조팥(탈피한 것): DRIED SMALL BEANS, PEELED 4. 건조팥(기타): DRIED SMALL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MALL RED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ZUKI 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93%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 DIAMETER(알곡크기): L, S {직경4.5MM이상⇒DIAMETER(L), 직경4.5MM미만⇒DIAMETER(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HEILONGJIANG, CHINA, YEAR: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H);DIAMETER(L)/DRIED ADZUKI BEAN, PACKING: 20KG/BAG, USE: EDIBLE, ORIGIN: HEILONGJIANG, CHINA, YEAR: 2017. 11. ○ 정립률 95%이상;알곡크기 직경 4.5MM이상/식용 건조팥(적색)이 20KG씩 포대포장 산지는 흑룡강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H);DIAMETE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⑮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건조 팥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팥 ; SMALL BEANS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 냉동 고구마 (0714.20-4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고구마: FROZEN SWEET POTATO 2. 냉동고구마(슬라이스): FROZEN SWEET POTATO(SLICE) 3. 냉동고구마(펠리트): FROZEN SWEET POTATO(PE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WEET POT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TEAMED SWEET POT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POT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FREEZING(냉동방법): B I {블록냉동⇒FREEZING(B), 개별냉동⇒FREEZING(I)}, BLANCHING(데침여부): N, Y {가타⇒BLANCHING(N), 데친 것⇒BLANCHING(Y)}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ING(I);BLANCHING(N)/FROZEN STEAMED SWEET POTATO, PACKING: 5KG/BAG, USE: EDIBLE ○ 개별냉동;데치지 않은 것/식용 냉동 전고구마가 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ING(I);BLANCHIN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0714.20 하위세번은 고구마가 분류되며 가공상태에 따라 세번 및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건조한 고구마줄기는 HS0712.90-2080, 고구마로 만든 전분은 HS1108.19-1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 냉동 기타 과실과 견과류 (0811.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딸기: BLACKBERRY 2. 블루베리: BLUEBERRY 3. 망고: MANGO 4. ~ 9.: 생략 10.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GO ■ FROZEN APPLE MA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FROZEN APPLE MANGO (냉동애플망고)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ANGO S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FRU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MANGO SLICE,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냉동망고 슬라이스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을 분류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여부는 상관없음 ■ 냉동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조리(살균 등 가공처리)한 과실과 견과류는 HS 제2008호로 분류되며 부가세 과세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 건조 감 (0813.4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꺾감(장형): DRIED PERSIMMONS(TALL TYPE) 2. 기타: DRIED PERSIMM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ERSIMMONS(TALL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SIMM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DRIED PERSIMM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SIMM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WEIGHT/EA(개당평균중량): LL, L, M, S 40G이상⇒WEIGHT(LL), 30G이상⇒WEIGHT(L), 20G이상⇒WEIGHT(M), 20G미만⇒WEIGHT(S) EQUALITY(고르기): H:ML(2%이하⇒EQUALITY(H), 5%이하⇒EQUALITY(H), 5%초과⇒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L)/FROZEN DRIED PERSIMMONS, PACKING: 3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8. 11. ○ 개당평균중량 30G이상;고르기 5%초과/식용 냉동건조한 감(장형)이 3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L);EQUALIT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꺾감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건조 감으로서 원상태의 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건조, 숙성과정을 거쳐 상온에서 보관,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된 것은 냉동 여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 반 건조 감으로서 원상태의 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조각으로 자르거나 벗긴 상태로 건조, 숙성하여 특유의 뚫은맛이 없어지고 과육 내부는 젤리 상태이나 표면에 막이 형성된 것은 냉동 여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에 막이 형성된 것”이란 상온(냉동품인 경우에는 완전 해동된 상태의 것을 말한다)에서 과육이나 수분이 표면의 막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는 상태의 것을 말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0901.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ROASTED, NOT DECAFFEIN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SULE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ROASTED(볶은), NOT DECAFFEINATED(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 X 24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CAPSULE COFFEE, NOT DECAFFEINATED, PACKING: 500G X 24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식용 캡슐커피가 500G씩 24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하지 않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세 과세품목임에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 발효하지 않은 녹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 내용물에 직접 포장) [0902.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ESE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ANG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GREEN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0G X 48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ANGEL, PACKING: 300G X 48JAR/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그린엔젤이 300G씩 48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99920GR MARIAGES FRERES REA BOX G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LEAF 99.7%, JASMINE FLOWER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인공향료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미가공식품 부가세 면세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이하, 내용물에 직접 포장) [0902.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RKSHIRE GOLD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ERMENTED(발효한), PARTLY FERMENTED(부분적으로 발효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0G X 15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RKSHIRE GOLD TEA(FERMENTED), PACKING: 600G X 15PCS/CT, USE: EDIBLE ○ 식용 요크셔 골드 티(발효한 것)가 600G씩 15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TEA150G X 80P/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TEA LEAF 98.9% BERGAMOT FLAVOURING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인공향료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 발효차 (0902.4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LACK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S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A BLACK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ERMENTED(발효한), PARTLY FERMENTED(부분적으로 발효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A BLACK TEA(FERMENTED), PACKING: 2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UVA 블랙 티(발효한 것)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MINE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TEA LEAF 98% BERGAMOT FLAVOURING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차추출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인공향료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 마테 (0903.0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RBA 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YERBA MATE LEAF, PACKING: 20KG/BAG, USE: EDIBLE ○ 식용 건조 예르바 마테 잎이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IGHT CHARG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테는 감탕나무과 중 일렉스 파라구아아렌시스(LLEX PARAGUARENSIS) 종의 잎을 말린 것임 ■ 마테 티백(TEA BAG)과 같은 조제품은 21류로 분류되므로 주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 부수거나 잘게 부순 후추 (0904.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D OR 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 BLACK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RUSHED(부순), GROUND(잘게 부순)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2G X 12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 BLACK PEPPER, PACKING: 52G X 12JAR/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게 부순 식용 후추추가 52G씩 12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PEPP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1.24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추는 HS 0904.1호 이후 세번에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과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으로 세번이 나뉘며 한-터키 FTA 협정세율(FTR) 등 일부 FTA 협정세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상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 고추류 (0904.2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고추(익도홍): DRIED RED PEPPER(YIDOUHONG) 7.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청양):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ED(CHEONGYANG) 2. ~ 6., 8. ~ 11.: 생략 12. 꼭지만 제거한 기타의 건고추: OTHER DRIED RED PEPPER, STEMMED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RED PEPPER, STEMMED AND SEEDED(CHEONGYA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RED CHIL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RED CHI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RIED BY(건조방법): SUN, ARTIFICIALITY {양건⇒DRIED(S), 화건⇒DRIED(A)}, LENGTH(개당평균길이): L, M, S {13CM이상⇒LENGTH(L), 10CM-13CM미만⇒LENGTH(M), 10CM미만⇒LENGTH(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S);LENGTH(M);EQUALITY(L)/DRIED RED CHILLI, PACKING: 15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7. 11. ○ 건조방법 양건;개당평균길이 10CM-13CM미만;고르기 10%이상/식용 건고추(청양)가 15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둥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S);LENGTH(M);EQUALIT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RED PEPP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RED CHIL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만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건고추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수분함량에 따라 냉동고추(0710.80-7000)와 품목번호가 경합 되므로 유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건고추 ; DRIED RED PEPPER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 부수거나 잘게 부순 건조 고추류 (0904.2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춧가루(금탑): RED PEPPER, GROUND OR CRUSHED(JINTA) 2. 고춧가루(익도홍): RED PEPPER, GROUND OR CRUSHED(YIDOUHONG) 3. 고춧가루(청양): RED PEPPER, GROUND OR CRUSHED(CHEONGYANG) 4. 기타 고춧가루: RED PEPPER, GROUND OR CRUSHED(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EPPER, GROUND OR CRUSHED(JIN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을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EPPE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RIED BY(건조방법): SUN, ARTIFICIALITY {양건⇒DRIED(S), 화건⇒DRIED(A)}, MESH(입도): H, M, L{30MESH이상⇒MESH(H), 10MESH~30MESH미만⇒MESH(M), 10MESH미만⇒MESH(L)}, MOISTURE(수분 함량): VH, H, M, L {23%이상⇒MOISTURE(VH), 20%이상~23%미만⇒MOISTURE(H), 15%~20%미만⇒MOISTURE(M), 15%미만⇒MOISTURE(L)} SEED(고추씨 함량): VH, H, M, L, N {20%이상⇒SEED(VH), 15%~20%미만⇒SEED(H), 10%~15%미만⇒SEED(M), 10%미만⇒SEED(L), 씨 없음⇒SEED(N)}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RUSHED(부순), GROUND(잘게 부순)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50G X 12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S);MESH(H);MOISTURE(L); SEED(L)/GROUND, RED PEPPER POWDER, PACKING: 350G X 12JAR/CT, USE: EDIBLE ○ 건조방법 양건;입도 30MESH이상;수분 함량 15%미만;고추씨 함량 10%미만/잘게 부순 식용 고춧가루(금탑) 분말이 350G씩 12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A);MESH(H);MOISTURE(L); SEED(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EPPER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2103.90-9090호 중 고추다대기 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HS0904호의 고세울 품목으로 분류되므로 신고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0906.1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CINNAMOMUM ZEYLANICUM BLU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50G X 12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STICKS, PACKING: 23G X 12JAR/CT, USE: EDIBLE ○ 식용 막대 계피가 23G씩 12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STICKS 70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NNAM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피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의 나무나 관목의 어린 가지의 속껍질인 계피로 한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 부수거나 잘게 부순 육두구 (0908.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 NUTM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D OR 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MEG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M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RUSHED(부순), GROUND(잘게 부순)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 X 10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 NUTMEG POWDER, PACKING: 500G X 10JAR/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게 부순 식용 육두구가 분말 500G씩 10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M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MEG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BAG X 2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커민의 씨 (0909.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S OF CUMIN, NOT CRUS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ITHER CRUSHED NOR 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CUMIN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50G X 48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CUMIN SEEDS, PACKING: 150G X 48PCS/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흑커민 씨가 150G씩 48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MIN SEE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MIN SEE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신선·냉장 생강 [0910.1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선냉장생강(원강): FRESH GINGER 2. 신선냉장생강(재강): BROKEN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HER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BIG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TYPE(품종): L, S {대강⇒TYPE(L), 소강⇒TYP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SEED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L)/FRESH BIG GINGER, PACKING: 10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7. 3. ○ 품종 대강/식용 신선 큰 생강(원강)이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G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신선냉장생강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품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에 따른 분류: 원강, 재강(BROKEN) 구분기준(세원심사과-4076, 201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강: ① 생강의 가지 수가 세 개 이상의 것 ② 인위적으로 절단한 것 - 재강: 원형에서 떨어진 작은 생강으로 원강 이외의 것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2. 사프란 (0910.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F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PICE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N NEGIN SAFF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PIC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G X 10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N NEGIN SAFFRON, PACKING: 2G X 100BOTTLE/CT, USE: EDIBLE ○ 식용의 이란 네긴 사프란이 2G씩 100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N NEGIN SAFFRO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FR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FRON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프란은 조미료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하므로 세관장 확인대상 판별을 위해 용도를 필히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3. 심황[강황(薑黃)] [0910.3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RMERIC(CURCU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GALANGA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CUMA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LANGA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0G X 48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CUMA POWDER, PACKING: 200G X 48PCS/CT, USE: EDIBLE ○ 식용 강황 분말이 200G씩 48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RMERIC (CURCUMA)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CUMA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CUMA XANTHORRHIZA ROOT SLICES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황이나 강황은 선향색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도사프란(INDIAN SAFFRON)”으로 잘못 불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강황의 근경은 원래 모양으로 거래하기도 하지만 가루로 더 많이 거래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4. 기타 귀리 (1004.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ESHING 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THRESHING OATS, PACKING: 10KG/CT,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캐나다산 탈곡한 귀리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LING 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탈곡(THRESHING)이나 풍취(WINNOWING)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정]도 분류, HS제1104.22-0000호(그 밖의 가공을 한 귀리(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모양인 것 등)와 세율차가 있으므로 가공상태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5. 메밀 (1008.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1. 메밀: BUCKW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ERE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ESE BUCKW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ERFECTNESS(개당평균길이): H, M, L {95%이상 ⇒PERFECTNESS(H), 90%~95%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DIAMETER(알곡크기): L, S {직경4.5MM이상⇒DIAMETER(L), 직경4.5MM미만⇒DIAMETER(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SEED, USE: FEEDING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H),DIAMETER(L)/CHINESE BUCKWHEAT, PACKING: 10KG/CT, USE: FEEDING, ORIGIN: SHANDONG, CHINA, YEAR: 2018. 11. ○ 정립률 95%이상;알곡크기 직경4.5MM이상/사료용 중국산 메밀이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EIZEN GANZKOMBUCKWHEAT GR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메밀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을 한 곡물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6. 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3-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L OF MAIZE(C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A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TAVA PURPLE CORN M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G X 2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TAVA PURPLE CORN MEAL, PACKING: 500G X 2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설탕바 자색 옥수수 거친가루가 500g씩 20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ZE (C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BAG X 2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류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7. 가공 옥수수 (1104.23-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BBLED OF MAIZE(C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A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 GMO CORN FLAKING GR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 GMO CORN FLAKING GRITS, PACKING: 1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식용 껍게 빵은 옥수수 조각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BBLED OF MA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FREIGHT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규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8. 기타 곡물로 만든 가공 곡물 [1104.2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칸메밀: BUCKWHEAT, HU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HU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GRO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95%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SIZE(알곡의 크기): L, S {3.5MM이상⇒SIZE(L), 3.5MM미만⇒SIZE(S)}, COLOR(푸른색알곡의 비중): H, M, L {푸른색알곡 80%이상⇒COLOR(H), 푸른색알곡 70%이상~80%미만⇒COLOR(M), 푸른색알곡 70%미만⇒COLOR(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M);SIZE(S);COLOR(M)/ BUCKWHEAT GROATS, PACKING: 25KG/BAG, USE: EDIBLE ○ 정립률 90%이상~95%미만;알곡의 크기 3.5MM미만;푸른색알곡의 비율 70%이상~80%미만/식용 메밀의 부순알곡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M);SIZE(S);COLOR(M)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ECTNESS(M); SIZE(S);COLOR(M)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뿔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9. 사고·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4호의 것) [1106.2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사바 분말: CASSAVA POWDER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SAVA POWDER ■ SWEET POTATO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WEET POTATO POWDER (고구마 분말)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PLE SWEET POTATO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PLE SWEET POTATO POWDER, PACKING: 25KG/BAG,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자색 고구마 분말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PLE SWEET POTATO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PLE SWEET POTATO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AGS(850KG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이 78% 초과하는 것은 고구마전분(제1108호)으로 양허관세 대상임. 고구마가루에 고구마전분을 섞어 고구마분말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 전분함유량이 90% 초과하는 카사바 분말,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이 혼합된 것은 전분(제1108호)으로 분류함 ■ 카사바 분말을 2303-10.0000(전분박, 이와 유사한 박류) 세율 0% 저세율로 신고한 사례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0.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1106.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OF N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I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I POWDER, PACKING: 25KG/BAG,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노니 분말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I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I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BAGS(25KG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한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주스를 건조·분말화 한 것은 HS 제2009호에 분류 ■ 1.25MM 금속망체에 95%이상 통과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1. 밀의 글루텐 (1109.0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GLU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75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L WHEAT GLU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TE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L WHEAT GLUTEN, PACKING: 20KG/BAG, USE: FEEDING ○ 사료용 바이탈 밀 글루텐이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GLUTE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GLUTE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의 첨가로 영양가를 높인 밀가루(제1101호), 소맥 글루텐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일반적으로 제3504호), 글루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밀의 글루텐이나 섬유공업의 광택제나 완성가공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밀의 글루텐(제3506호나 제3809호)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2. 콩나물용 기타 대두 (1201.90-3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태: SOYBEAN FOR BEAN SPROUTS(WITH YELLOW TESTA) 4. 서목태: SOYBEAN FOR BEAN SPROUTS(SMALL SEED WITH BLACK TESTA) 2. ~ 3, 5. ~ 7.: 생략 8. 기타 콩나물용 콩: OTHER SOYBEAN FOR BEAN SPRO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YBEAN FOR BEAN SPROUTS (SMALL SEED WITH BLACK TE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을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 SEED WITH BLACK TESTA FOR BEAN SPRO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Y 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IAMETER(알곡직경): LL, L, M, S {7.5MM이상⇒DIAMETER(LL), 6.3MM이상⇒DIAMETER(L), 5.6MM이상⇒DIAMETER(M), 5.6MM미만⇒DIAMETER(S)}, SPROUTING RATIO(발아율): HIGH, LOW {85%이상⇒SPROUTING RATIO(H), 85%미만⇒SPROUTING RATIO(L)}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95%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CANADA YEAR: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SPROUTING RATIO(H);PERFECTNESS(M)/SMALL SEED WITH BLACK TESTA FOR BEAN SPROUTS, PACKING: 25KG/BAG, USE: EDIBLE, ORIGIN: CANADA, YEAR: 2017. 11. ○ 알곡직경 5.6MM미만;발아율 85%이상;정립률 90%~95%미만/ 식용 서목태가 25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캐나다이며 수확 연도는 201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SPROUTING RATIO(H);PERFECTNESS(M)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콩나물용 콩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콩나물 전체중량대비 찻의 길이 2CM미만의 것의 비율이 15%이내인 경우 동 물품을 제0709.99-9000호로 분류, 15%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것을 제1201.90-3000호로 분류 ■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3. 기타 대두 (1201.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태: SOYBEAN(WITH YELLOW TESTA) 2. ~ 7: 생략 8. 기타 대두: OTHER SOY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YBEAN(WITH YELLOW TE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을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 GMO YELLOW SOY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Y 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IAMETER(알곡직경): LL, L, M, S {7.5MM이상⇒DIAMETER(LL), 6.3MM이상⇒DIAMETER(L), 5.6MM이상⇒DIAMETER(M), 5.6MM미만⇒DIAMETER(S)}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95%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CANADA YEAR: 20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LL);PERFECTNESS(H)/NON GMO YELLOW SOYBEAN, PACKING: 35KG/BAG, USE: EDIBLE, ORIGIN: CANADA, YEAR: 2018. 11. ○ 알곡직경 7.5MM이상;정립률 95%이상/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용 노란 대두가 35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캐나다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OYB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식량작물), 목초, 사료, 녹비재배용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201.90 하위 세번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협정세율, 세관장확인사항이 달라지므로 용도 확인 필요 ■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이 호에 분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콩(대두) ; SOY BEAN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택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4.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기타 땅콩 (1202.4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피땅콩: GROUND-NUTS, IN 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NUTS, IN 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SHELL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S IN 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C/100G(100G당 꼬투리 수: L, S {39-46개/100G⇒SIZE(L), 기타⇒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L)/PEANUTS IN SHELL, PACKING: 5KG/CT, USE: EDIBLE ○ 100G당 꼬투리 수 39~46개/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이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GROUND-NUTS)[피넛(PEANU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껍데기를 벗긴 것인지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음. 볶거나 그 밖의 조리한 땅콩은 제20류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5. 껍데기를 벗긴 기타 땅콩 (1202.4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1. 알땅콩: GROUND-NUTS, SHE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NUTS, SHE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ELLED, WHETHER OR NOT BR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KER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C/100G(100G당 껍투리 수): L, S {120-134개/100G⇒SIZE(L), 기타⇒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역심사대상물품] “ORIGIN:”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ORIGIN: SHANDONG,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L)/PEANUT KERNEL, PACKING: 10KG/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G당 껍투리 수 120~134개/식용 땅콩 알맹이가 10KG씩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역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내피땅콩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탈각 및 탈피하여 데친 땅콩으로 열처리 결과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 않은 땅콩은 이 호로 분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땅콩(껍데기를 벗긴 것) ; GROUND-NUTS, SHELLED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역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6. 아마씨 (1204.0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X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FLAX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X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FLAXSEED, PACKING: 20KG/BAG, USE: FEEDING ○ 사료용 골든 아마씨가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X SEED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씨가 파종용의 종자라 하더라도 특게세번인 1204.00-000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7. 해바라기씨 (1206.0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바라기씨: SUNFLOWER SEEDS 2. 해바라기씨(파쇄한 것): SUNFLOWER SEEDS(BR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FLOWER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FLOWER SEEDS, WHETHER OR NOT BROKEN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B SUNFLOWER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시(/)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IZE(1G당 수량: L, M, S 20개미만⇒SIZE(L), 20개~23개미만⇒SIZE(M), 23개이상⇒SIZE(S), PERFECTNESS(정립률): H, M, L {95%이상⇒PERFECTNESS(H), 90%~95%미만⇒PERFECTNESS(M), 90%미만⇒PERFECTNESS(L)}, DEFECTIVENESS(파쇄된 씨 함량: H, L {95%이상⇒DEFECTIVENESS(H), 90%미만⇒DEFECTIVENESS(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SEED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M);PERFECTNESS(L); DEFECTIVENESS(H)/H&B SUNFLOWER SEEDS, PACKING: 10KG/CT, USE: SEED ○ 1G당 수량 20개~23개미만;정립률 90%미만;파쇄된 씨 함량 5%이상/종자용 H&B 해바라기씨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M);PERFECTNESS(L); DEFECTIVENESS(H)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종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씨가 파종용의 종자라 하더라도 특계세번인 1206.00-000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8. 참깨 (1207.4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깨(황깨): YELLOW SESAME SEEDS 2. 참깨(흑깨): BLACK SESAME SEEDS 3. 참깨(탈피): SESAME SEEDS, HU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AME SEEDS, HU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AMUM SEEDS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UA HULLED SESAME 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EFECTIVENESS(이물): H, L 1%이상⇒DEFECTIVENESS(H), 1%미만⇒DEFECTIVENESS(L) ORIGIN(산지): C, O {중국⇒ORIGIN(C), 기타⇒ORIGIN(O)}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SEED, USE: INDUSTRIAL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VOLUME:”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 수확 연도, 용적중량을 기재 - 예) ORIGIN: INDIA, YEAR: 2017. 11., VOLUME: 540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ORIGIN(O)/AQUA HULLED SESAME SEED, PACKING: 30KG/BAG, USE: EDIBLE, ORIGIN: INDIA, YEAR: 2019. 10, VOLUME: 540G/L ○ 이물 1%미만;산지 기타/껍질을 벗긴 식용 아쿠아 참깨가 30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인도, 수확 연도는 2019년 10월, 용적중량은 540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L);ORIGIN(O)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참깨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1.25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 동 세번으로,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1208.90-0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연도, VOLUME: 용적중량”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89. 양귀비씨 (1207.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PPY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CHSCHOLTZIA CALIFORNIA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RED POPPY(SP: PAPAVER RHO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OPPY(SP: PAPAVER RHO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PPY SEED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TRANSPLAN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OPPY, PACKING: 1KG/CT, USE: TRANSPLANT ○ 이식용 꽃양귀비씨가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POPPY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PAPAVER RHOEAS로 마약에 해당하는 학명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씨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품명에 양귀비씨의 학명을 기재 ■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0. 들깨 (1207.9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들깨: PERILLA SEEDS 2. 들깨(탈피한 것): PERILLA SEEDS, HU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KEN PERILLA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DEFECTIVENESS(이물): H, L 1%이상⇒DEFECTIVENESS(H), 1%미만⇒DEFECTIVENESS(L) ORIGIN(산지): C, O {중국⇒ORIGIN(C), 기타⇒ORIGIN(O)}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SEED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VOLUME:”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 수확 연도, 용적중량을 기재 - 예) ORIGIN: JILIN, CHINA, YEAR: 2017. 11., VOLUME: 400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H);ORIGIN(C)/ BROKEN PERILLA SEEDS, PACKING: 30KG/BAG, USE: EDIBLE, ORIGIN: JILIN, CHINA, YEAR: 2017. 11, VOLUME: 400G/L ○ 이물 1%이상;산지 중국/식용 부순 들깨가 30KG씩 포대포장 산지는 중국 길림성, 수확 연도는 2017년 11월, 용적중량은 400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ECTIVENESS(H);ORIG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들깨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들깨를 POWDER 형태로 만든 경우 HS1208.90-0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VOLUME: 용적중량”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1. 채유에 적합한 기타 종자와 과실 [1207.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마종자: HEMP SEED 2. 고추씨: RED PEPPER SEED 3. 포도씨: GRAPE PIPS 4. 케이폭씨: KAPOK SEED 5. 캔들너트: CANDLENUT 6.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POK SEED ■ MORINGA 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MORINGA SEED (모링가 씨앗)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KAPOK 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KAPOK SEED, PACKING: 1KG/BAG,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유기농 케이폭씨가 1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KAPOK S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2. 채유에 적합한 기타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1208.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추씨 분말: RED PEPPER SEED, POWDER 2. 들깨분말: PERILLA SEED, MEAL 3. 치아씨분말: CHIA SEED POWDER 4. 포도씨분말: GRAPE SEED POWDER 5. 기타: OTHER 6. 참깨분: SESAME POWD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 MEAL ■ MORINGA SE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MORINGA SEED POWDER (모링가 씨 분말)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S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S POWDER, PACKING: 20KG/BAG, USE: EDIBLE ○ 식용 들깨 분말이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S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ILLA SEED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MM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동 세번으로,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1207.40-0000으로 분류 ■ 특정용도에 적합하게하기 위하여 상당히 북아서 분쇄한 참깨분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생산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참깨분 ; SESAME POWDER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3. 신선·냉장·건조 마황(麻黃) [1211.5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EPHED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 CHILLED OR DRI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EPHEDRAE HER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HEDR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EPHEDRAE HERBA STEM, PACKING: 20KG/BAG,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용 말린 마황줄기가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EPHEDRAE HER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HEDRA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한약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페드라(마황)는 줄기와 가지를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4. 신선·냉장·건조 부자(附子) [1211.90-11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NITI TU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NITI TUBER LE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PERI RHIZOM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ACONITI TUBER LEAF, PACKING: 25KG/BAG, USE: MEDICINAL ○ 한약재용 말린 부자잎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ACONITI TUBER LEAF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NITI TUBER LEAF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한약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아코니툼 나펠러스)는 뿌리와 잎을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5. 신선·냉장·건조 용안육(龍眼肉) [1211.90-19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GANAE ARIL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LONGAN FRUIT MEA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ETNAMESE LONGANAE ARIL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GANAE ARILLU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600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VIETNAMESE LONGANAE ARILLUS, PACKING: 600G/BAG, USE: MEDICINAL ○ 한약재용 말린 베트남산 용안육이 600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VIETNAMESE LONGANAE ARILLU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GANAE ARILLU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안육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한약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6. 신선·냉장·건조 박하 [1211.90-194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 M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 MINT LE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EPPER MINT LEAF, PACKING: 10KG/CT, USE: EDIBLE ○ 식용 건조한 박하 잎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BAL PEPPER MINT LEAF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 MINT LEAF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7. 건조한 도라지 [1211.90-196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LATYCODON GRANDIFL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ALLOON FLOWER RO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LL FLOWER SEED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ALLOON FLOWER ROOT, PACKING: 10KG/CT, USE: MEDICINAL ○ 한약재용 건조 도라지 뿌리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ALLOON FLOWER ROO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OON FLOWER ROO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경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한약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하지 아니한 도라지뿌리(길경)은 고세율인 HSK 0706.90-4000호에 분류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건조한 도라지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8. 신선·냉장·건조 구기자 [1211.90-197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구기자(식품용): LYCIUM CHINESE MILLER(LYCII FRUCTUS)(EDIBLE) 2. 구기자(의약품용): LYCIUM CHINESE MILLER(LYCII FRUCTUS)(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YCIUM CHINESE MILLER(LYCII FRUCTUS)(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YCIUM CHINESE MILL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GOJIBE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YCIUM CHINESE MIL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GOJIBERRY, PACKING: 225G X 30BOTTLE/CT, USE: MEDICINAL ○ 한약재용 건조 구기자가 225G씩 30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YCIUM CHINESE MILLER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JI BERRY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기자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한약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부과 품목 ■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99. 신선·냉장·건조 식물성 생산품 [1211.90-19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기(식품용):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EDIBLE) 12. 산수유(의약품용):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MEDICINAL)(산수유) 2. ~ 11, 13. ~ 14.: 생략 99.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MEDICINAL) ■ DRIED MARIGOLD P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DRIED MARIGOLD PETAL (말린 메리골드꽃잎)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PERONY ROOT(SP: PAEONIA OBOV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IGOLD P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B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MARIGOLD PETAL, PACKING: 1KG/CT, USE: EDIBLE ○ 식용 말린 메리골드꽃잎이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MARIGOLD P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IGOLD PETA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산지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툼(KRATOM), 페이오투(PEYOTE)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삼, 구기엽, 대황, 만형자, 목과, 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등 ○ 보건복지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별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 중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백출, 광향, 당귀, 맥문동, 반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메리골드 꽃잎으로 마약 비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메리골드 꽃잎으로 CITES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 중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중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황기 :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EDIBLE)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0.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식물성 생산품 [1211.9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ACONITI TU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PERONY ROOT(SP: PAEONIA OBOV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ACONITI TUBER RO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OZEN(냉동)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ACONITI TUBER ROOT, PACKING: 20KG/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냉동 부자 뿌리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MACA ROO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NITI TUBER ROO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산지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툼(KRATOM), 페이오투(PEYOTE)와 그 엽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엽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공업용 냉동 부자 뿌리로 조사료 아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냉동부자 뿌리로 마약류 비대상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냉동부자 뿌리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에 적합한 것(1211.90-9010 기본 45%)과 적합하지 않은 것(기본 3%)의 세율 차가 크므로 용도를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1. 냉동하지 않은 기타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9-90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WE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COPHYLLUM NODOSUM KELP M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LP M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ESH(신선), CHILLED(냉장), DRIED(건조)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FEEDING, USE: FERTILIZER,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ASCOPHYLLUM NODOSUM KELP MEAL, PACKING: 20KG/BAG, USE: FEEDING ○ 말린 사료용 노트드랙 해조 분말이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EAWE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WEED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삼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용 기타 해조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이식용 해조류 아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212.29-9091호는 냉동한 것, HS1212.29-9099호는 그 외의 것이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가공상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2. 꽃가루 [1212.99-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식용 꽃가루(화분): BEE POLLEN(INEDIBLE) 2. 식용 꽃가루: BEE POLLEN(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 POLLEN(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FLOWER SPANISH BEE POL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FLOWER SPANISH BEE POLLEN, PACKING: 25KG/CT, USE: EDIBLE ○ 식용 스페인산 꿀든 꽃가루가 2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EN FLOWER SPANISH BEE POL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 POLLE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용 꽃가루는 미가공 식품품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3. 사료용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214.90-9011]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CERNE ALFALFA BALE FOR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UM ALFALFA STR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FAL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 CUT WRAPPED 500KG/BULK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UM ALFALFA STRAW, PACKING: 1/2 CUT WRAPPED 500KG/BULK,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프리미엄 알팔파 짚이 반으로 커팅하고 랩핑처리되어 500KG씩 벌크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FALFA H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FALFA STRAW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 식물방역법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팔파의 가공상태가 거친 가루(MEAL) 또는 펠릿(PELLET)일 경우 1214.10이하 세번에 분류하며, STRAW 또는 HAY 형태로 가공될 경우 1214.90이하 세번에 분류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4. 인삼 추출물 가루 (1302.19-11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GINSENG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물품인 경우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GINSENG(SP: PANAX NOTOGINS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SENG EXTRACT POWDER (SP: PANAX NOTOGINS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DE DEDRO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AX NOTOGINSENG EXTRACT POWDER, PACKING: 5KG/CT, USE: COSMETICS ○ 화장품용 삼칠인삼추출물 분말이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SENG EXTRAC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AX NOTOGINSENG EXTRACT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MEDICINAL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 제조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삼칠인삼추출물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 혼합물은 제외(제2106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5. 캐슈너트 셸액 (1302.1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HEW NUT SHELL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HEW OI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CASHEW NUT SHELL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CASHEW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CASHEW NUT SHELL LIQUID, PACKING: 50KG/DRUM, USE: INDUSTRIAL ○ 공업용 정제된 캐슈너트 셸액이 50KG씩 드럼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HEW NUT SHELL LIQUID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HEW NUT SHELL LIQUI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6.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1302.19-9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CTS OF AL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POL POWDER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ALOE VERA GEL POWDER(SP: ALOE V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OE VERA GEL POWDER (SP: ALOE V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OE VERA JUI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E DRIED ALOE VERA GEL POWDER, PACKING: 1KG/CT, USE: COSMETICS ○ 화장품용 동결건조된 알로에 베라 겔 분말이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OE VERA GEL POWD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OE VERA GEL POWDER 95%, MALTODEXTRI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PPING COST USD275 ○ 성분과 관련 없는 규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알로에제품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ALOE VERA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302호(기8%)는 식물성 수액과 엑스 등이 분류되고 HS2009호(기50%)에는 주스 즉, 채소나 과일의 즙이 분류 ■ 수액이나 추출에 의해서 채취된 식물성 생산품은 일반적으로 HS1302호에, 채소나 과일을 압착에 의해서 채취된 경우라면 HS2009호에 분류 ■ 원산지 표시대상 - 현품 및 최소포장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7. 콜라 추출물 [1302.19-902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ETABLE EXTRAC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FLUID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FLUID EXTRACT, PACKING: 20KG/DR, USE: EDIBLE ○ 식용 콜라 추출물이 20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FLUID EXTRAC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A NUT EXTRACT 90%, PURIFIED WATER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 4507516097) ○ 성분과 관련 없는 규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COLA(KOLA) 추출물]: 콜라너트(COLA NUTS)[여러 가지 COLA종(예: COLA NITIDA)의 씨]에서 얻어지며 주로 어떤 음료의 제조에 사용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8. 작약(芍藥) 추출물 [1302.19-9033]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EONIAE RADIX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PEONY ROOT(SP: PAEONIA LACTIFL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EONY ROOT EXTRACT (SP: PAEONIA LACTIFL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RUS PEEL DRY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EONY ROOT EXTRACT POWDER, PACKING: 2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말린 작약뿌리추출물 분말이 2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PEONY ROOT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ONY ROO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 작약뿌리추출물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11호 물품 중 작약추출물은 세번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세번인 HS1302.19-9039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09. 기타 식물[제1211호]의 추출물 [1302.19-903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BALM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LEMON BALM POWDER (레몬 밤 분말)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LEMON BALM(SP: MELISSA OFFICIN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LEMON BALM EXTRACT POWDER(SP: MELISSA OFFICIN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POWD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01)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02) 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DRIED LEMON BALM EXTRACT POWDER, PACKING: 25KG/CT, USE: EDIBLE ○ 기타/식용 말린 레몬밤추출물분말이 2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BALM EXTRACT POWD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BALM EXTRAC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EDIBL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식용레몬밤 추출물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11호 물품 중 당귀,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추출물은 1302.19-9031호~1302.19-9035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세번인 동 세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0.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 (1302.19-90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ILLA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ILLA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ILLA FLAV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ILLA EXTRACT POWDER, PACKING: 1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바닐라 추출물 분말이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ILLA EXTRACT 65% PROPYLENE GLYCOL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G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규격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우더 형태 추출물도 포함 ■ 건품, 광고용품 제조를 위한 원료성 물품을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품, 광고용품은 완성품 개념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1. 기타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302.19-9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SWELLIA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URTICA DIOICA LEAF EXTRACT (췌기 풀잎 추출물)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BOSWELLIA EXTRACT POWDER(SP: BOSWELLIA SERR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SWELLIA EXTRACT POWDER (SP: BOSWELLIA SERR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제중국인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인 것 (02) 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DRIED BOSWELLIA EXTRACT POWDER, PACKING: 20KG/CT, USE: EDIBLE ○ 기타/식용 말린 보스웰리아 추출물 분말이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OSWELLIA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SWELLIA EXTRACT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오일(해쉬쉬오일), 대마추출물과 킵크췌어, 코카 페이스트(COCA PAST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인삼제품, 홍삼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보스웰리아 추출물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품목 아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보스웰리아 추출물로 CITES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우더 형태 추출물도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2.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 [1302.3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CILAGES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AGEENAN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RTILIZER,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PPA CARRAGEEN POWDER, PACKING: 25KG/BAG,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 카파 카라기난 분말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PPA CARRAG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AGEENA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에 분류되는(분석희보) 카라기난(홍조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다당류)은 용도에 따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용도비대상 등 정확히 기재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3.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 (1504.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FISH OIL(SP: PANGASIANODON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FISH OIL, PACKING: 20KG/DR,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연어유가 20KG씩 드럼통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FISH OIL(SALMON) 99%, MIXED FORMULATI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A 및 DHA 함유유지제품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사료용 연어유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의 간유의 그 분획물은 HS 제1504.10호에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의 세율차가 있으며, 고세율인 HS 제1518호, 제2106.90-9099호 등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동 세번으로 신고, 적발사례 다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4. 기타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506.0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라유: TURTLE OIL 2. 뱀유: SNAKE OIL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RTLE OIL ■ HORS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HORSE OIL(마유)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HORSE OIL(SP: EQUUS PRZEWALSK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GOLIAN HORS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GOLIAN HORSE OIL, PACKING: 20KG/DR, USE: COSMETICS ○ 화장품용 몽골리안 마유가 20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NTRATED HORS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LIQUID HORSE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화장품제조용원료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몽골리안 마유로 CITES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돼지·가금(家禽)류·소·면양·산양·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 지방과 라드유(LARD-OIL)·올레오유(OLEO-OIL)·텔로우 유(TALLOW-OIL)·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기름과 울그리스(WOOL GREASE)에서 얻어진 기름을 제외한 모든 동물기름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5. 버진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1509.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ML X 1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EXTRA VIRGIN OLIVE OIL, PACKING: 200ML X 10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200ML씩 10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EXTRA VIRGIN OLIVE 100%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OLIVE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SS 342KG NET162KG, 60BOXES X 6BOTTLES LOTTO: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제추출(SOLVENT EXTRACTION)한 올리브유의 경우 HS 1510.00-0000호 기타 올리브유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6.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1509.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제유: REFINED OLIVE OIL 2. 혼합물: MIXTURE OF REFINED OLIVE OIL AND VIRGIN OLIVE OIL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OLIVE OIL ■ REFINED OLIVE OIL FR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REFINED OLIVE OIL FRACTIONS (정제한 올리브유 분획물)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L X 12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OLIVE OIL, PACKING: 1L X 12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푸어 올리브유가 1L씩 12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OL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OLIVE OIL 90%, PRESSED OLIVE OI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AL NET 459KG 170BOXES X 6BOTT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오직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만을 포함하며 코코넛이나 아보카도 오일 등은 타 세번에 분류(오신고 사례 빈번 발생)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7. 정제 해바라기씨유 [1512.19-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SUNFLOWER-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HIGH OLEIC SUNFLOWER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FLOWER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ML X 2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HIGH OLEIC SUNFLOWER-SEED OIL, PACKING: 500ML X 20BOTTLES/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정제된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가 500ML씩 20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SUNFLOWER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SUNFLOWER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OCM1763763BATCH NO.OCM17637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되지 않은 CRUDE OIL상태의 조유의 경우 HS 제1512.11-1000호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8. 기타 해바라기씨유 [1512.19-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UNFLOWER-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WAR SUN FLOWER-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FLOWER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L X 3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WAR SUN FLOWER-SEED OIL, PACKING: 5L X 3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나와르 해바라기씨유가 5L씩 3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WAR SUN FLOWER-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FLOWER-SEED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 RTN TOTE CONTRAT BALANCE 50 TO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19. 야자로 만든 조유(粗油) [1513.1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CRUD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D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0ML X 12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COCONUT OIL, PACKING: 200ML X 12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엑스트라 버진 야자유가 200ML씩 12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OIL(CRUDE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5ML X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자유와 그 분획물은 가공상태에 따라 HS 1513.1 하위 세번이 달라지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에 따른 협정관세 배제여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0. 기타 야자유 [1513.1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40ML X 24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COCONUT OIL, PACKING: 540ML X 24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푸어 야자유가 540ML씩 24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COCONUT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COCONUT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ML (1,796.85KG)2020.0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유지 또는 조제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경합되는 세번(제1517호)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1. 기타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LIN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SUPP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LINSEED OIL, PACKING: 25KG/DR,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정제된 아마씨유가 25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LIN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XSEED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07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2. 기타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 [1515.9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달맞이꽃종자유: EVENING PRIMROSE OIL 2. 포도씨유: GRAPESEED OIL 3. 아몬드유: ALMOND OIL 4. 아보카도유: AVOCADO OIL 5. 시어버터: SHEA BUTTER 6. 아르간 오일: AGRANIA SPINOSA KERNEL OIL 7. 들장미열매오일: ROSE HIP OIL 8.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OCADO OIL ■ BLACK CUMIN SEED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BLACK CUMIN SEED OIL (흑커민씨 오일)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AVOCADO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FOR MAKING SO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L/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AVOCADO OIL, PACKING: 25L/DR, USE: COSMETICS ○ 화장품용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가 25L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VIRGIN AVOCADO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OCADO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ML X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선택 오류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씨유, 옥수수유, 피마자유, 참기름, 들기름, 쌀겨기름, 동백유, 호호바유(JOJOBA OIL), 동유(TUNG OIL) 이외의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3. 팜유와 그 분획물 (1516.20-2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LM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RIN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RTENING SH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공정] PARTLY HYDROGENATED(부분적으로 수소 첨가), WHOLLY HYDROGENATED(전체적으로 수소 첨가), INTER-ESTERIFIED(인터에스테르화), RE-ESTERIFIED(리에스테르화), ELAIDINISED(엘라이딘화)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LY HYDROGENATED SHORTENING SH 38, PACKING: 20KG/CT, USE: EDIBLE ○ 식용으로 부분적으로 수소첨가된 쇼트닝 SH 38이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DROGENATED RBD PALM STEARI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LM OIL 99.98%, TOCOPHEROL 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였으나 식물유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팜유(분획물 포함)는 HS1516.20-2020호에 분류되나, 화학적 변성가공된 식물성 오일로서 식물유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경우는 HS1516.20-2090호로 분류되며,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세율차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4. 기타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 식용 혼합물 · 조제품 [1517.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DE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RUDE FISH OIL(정제 어유)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3 3626 TG FIS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포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3 {유지의 무게가 10퍼센트 초과 15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SHAPE(1),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SHAPE(2), 기타⇒SHAPE(3)}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공정] PARTLY HYDROGENATED(부분적으로 수소 첨가), WHOLLY HYDROGENATED(전체적으로 수소 첨가), INTER-ESTERIFIED(인터에스테르화), RE-ESTERIFIED(리에스테르화), ELAIDINISED(엘라이딘화)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MG X 365CAPSULE/BOTTLE 2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3)/RE-ESTERIFIED OMEGA3 3626 TG FISH OIL, PACKING: 1000MG X 365CAPSULE/BOTTLE 20BOTTLE/CT,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리에스테르화한 오메가3 3626 TG 어유가 1캡슐당 1000MG이며 365캡슐이 담긴 병에 포장하여 총 20병이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공정,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INED FISH OIL 99.48%, VITAMIN E 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ASS 250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됨 ■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 ■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USE: 용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5. 소시지 [1601.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S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RIZO IBERICO EXTRA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J IBERICO SAUS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SAG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G X 12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JJ IBERICO SAUSAGES, IBERICO, PACKING: 100G X 120EA/CT, USE: EDIBLE ○ 식용 냉동 JJ 이베리코 소시지가 100G씩 120개 카톤 포장, 품종은 스페인 이베리코 흑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00347 (USE: EDIBL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K 75.13%, ONION 6.67%, EGG WHITE 4.51%, TAPIOCA STARCH 3.76%,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 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6.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돼지의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M IN AIRTIGHT CONT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AIRTIGHT CONT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돼지고기가 아닌 경우(멧돼지 등) 학명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SUIDAI(SP: SUS SCRO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RMEL CANNED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60G X 80CAN/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RMEL CANNED HAM, HAMPSHIRE, PACKING: 160G X 80CAN/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호멜 캔에 든 햄이 160G씩 80캔에 카톤 포장, 품종은 미국 햄프셔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OKED BONELESS 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M 83%, WATER 11%, SALT 3%, DEXTROSE 2%,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햄으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용기에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밀폐용기: 공기를 뺀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유효기간 동안 변질·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밀폐포장을 밀폐용기로 혼동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7.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소고기 (1602.5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㉑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포: BEEF JERKY 2. 자비우육: BOILED BEEF MEAT AND EDIBLE MEAT OFFAL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JERKY ■ BULGOGI TO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BULGOGI TOPPING(불고기 토핑)
㉒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식용 쇠고기가 아닌 경우 학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ASIATIC BUFFALO(SP: ASIBUBALUS ARN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AL BEEF JER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M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㉓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OOKED(조리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0G X 14EA/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AL BEEF JERKY, PACKING: 120G X 14EA/CT, USE: EDIBLE ○ 식용 오리지널 소고기 육포가 120G씩 14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JER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㉔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99.6%, SALT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COMMERCIAL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㉕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육포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용기에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밀폐용기 : 공기를 뽑고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유효기간 동안 변질·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밀폐포장을 밀폐용기로 혼동 주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8.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육·설육·피 [1602.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동번데기: FROZEN SILKWORM CHRYSALI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ILKWORM CHRYSALIS ■ FROG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ROG POWDER(개구리 분말)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LED FROZEN SILKWORM CHRYS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CHICKEN KARA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BOILED(삶은)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LED FROZEN SILKWORM CHRYSALIS, PACKING: 4KG/CT, USE: EDIBLE ○ 식용 삶아서 냉동한 번데기가 4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ILKWORM CHRYSAL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WORM CHRYSALI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FOR F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데기는 제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번데기로 비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용기에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밀폐용기 : 공기를 뽑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유효기간 동안 변질·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밀폐포장을 밀폐용기로 혼동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29. 쥐치포 [1604.19-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른 조미 쥐치포(타원형): DRIED JERK FILEFISH(OVAL TYPE) 2. 마른 조미 쥐치포(사각형): DRIED JERK FILEFISH(SQUARE TYPE) 3.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쥐치포: OTHER PREPARED OR PRESERVED JERK FILE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JERK FILEFISH(SQUARE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EASONED FILE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FILE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COLOR(색상): B, M, W 갈색⇒COLOR(B), 흰색과 갈색 혼합⇒COLOR(M), 흰색⇒COLOR(W), SIZE(크기): 1,000㎝²이상⇒SIZE(XL), 600㎝²~1,000㎝²미만⇒SIZE(L), 300㎝²~600㎝²미만⇒SIZE(M), 300㎝²미만⇒SIZE(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EASONED(조미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B);SIZE(L)/DRIED SEASONED FILEFISH, PACKING: 10KG/CT, USE: EDIBLE ○ 색상 갈색; 포의 면적 600㎝²~1,000㎝²미만/식용 마른 조미 쥐치포(사각형)가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B);SIZ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EFISH 86.9%, SUGAR 8.6%, D-SORBITOL 2.6%, L-GLU 1.1%, REFINED SALT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EASONED FILE FISH SIZE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1604.19-90 하위 세번은 쥐치포와 기타 어류로 구분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등의 양허폭이 다르며, 오적용 적발 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어류 [1604.19-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2. 대구: DRIED SEASONED COD 3. 명태: DRIED SEASONED ALASKA POLLACK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EASONED ALASKA POLLACK ■ SEASONED TILAPIA FI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SEASONED TILAPIA FILLET (조미한 틸라피아 필레)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CROAKER(SP: TOTOABA MACDONAL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LAPIA BELLY S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ED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EASONED(조미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G X 50EA/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SEASONED TILAPIA BELLY SLICE, PACKING: 50G X 50EA/BAG, USE: EDIBLE ○ 식용 냉동 조미한 틸라피아 뱃살 슬라이스가 50G씩 50개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PREPARED TILAPIA KABAYAKI SLIC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LAPIA 80.6%, SOY SAUCE 13%, SUGAR 4.2%, SALT 1.2%, ETHANOL 0.6%, CORN STARCH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식용 TILAPIA 뱃살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치포(JERK FILE FISH, FILE FISH)는 1604.19-9010으로 분류하므로 신고품명상의 어종 필히 기재(FAS, FCO, FCE협정세율 상이) ■ 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생선소시지 및 어묵종류는 1604.20호에 속하므로 조제품의 정확한 명칭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1. 캐비아 대용물 (1604.3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비아 대용물(기타): CAVIAR SUBSTITUTES(OTHER) 2. 캐비아 대용물(날치알): CAVIAR SUBSTITUTES(FLYING FISH ROE) 3. 캐비아 대용물(열빙어알): CAVIAR SUBSTITUTES(CAPELIN R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VIAR SUBSTITUTES (SALMON R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R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VIAR SUBSTITU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RESERVING(저장방법): F, O 냉동한 것⇒PRESERVING(F), 기타의 것⇒PRESERVING(O)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RVING(F)/SALMON ROE, PACKING: 10KG/CT, USE: EDIBLE ○ 저장방법 냉동한 것/식용 냉동 연어 알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RVING(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ROE 95%, STARCH SYRUP 1.7%, SOY SAUCE 1.65%, ACIDULANTS 0.51%, AMINO ACID 0.47%,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N U17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비아는 HS 1604.31-0000로 신고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2. 조미오징어 (1605.54-20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미오징어채(자이안트): SEASONED SQUID, SHREDDED(GIANT) 2. 조미오징어채(포클랜드): SEASONED SQUID, SHREDDED(FALKLAND) 3. 조미오징어채(기타): SEASONED SQUID, SHREDDED 19. 기타 조미오징어: OTHER SEASONED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SQUID, SHRED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품목분류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QUID(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SQUID (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EASONED(조미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0G X 20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 [사전세역심사대상물품]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제조일자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YEAR: 20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SEASONED SQUID, SHREDDED, PACKING: 70G X 200EA/CT, USE: EDIBLE, YEAR: 2019.11 ○ 식용 조미오징어채가 70G씩 200개를 카톤 포장, 2019.11월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징어다리 89.91%설탕 5% D솔르비톨 1% 소금 2.5%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ID SHREDDED 89.91%, SUGAR 5%, SALT 2.5%, MSG 1.5%, D-SORBITOL 1%, POTASSIUM SORBATE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명: OMMASTREPHES BARTRAMII ○ 성분란에 학명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 세번 내에서 오징어 종에 따라 한-아세안 FTA(FAS) 및 한-중 FTA(FCN) 협정세율 등 세율 차가 있음 ■ 오징어채만 사전세역심사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전세역심사대상으로 “YEAR: 제조일자”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오징어 [1605.54-20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징어(삶은 것): FROZEN BOILED SQUID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BOILED SQUID ■ FROZEN ARROW SQUID FILLET GRIL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FROZEN ARROW SQUID FILLET GRILLED(냉동화살오징어 필레)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 및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SQUID(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EADED GREEN LAVER SQUID FILLET(SP: DOSIDICUS GIG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BREADED(빵가루를 묻힌)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1.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BREADED GREEN LAVER SQUID FILLET, PACKING: 11.5KG/CT, USE: EDIBLE ○ 식용 파래 빵가루를 묻힌 냉동오징어 필레가 11.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ID 40%, BREAD CRUMB 29.6%, BUTTER MIX 24.998%, GREEN LAVER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명:TODARODES PACIFICUS (USE: EDIBLE) ○ 성분란에 학명과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DOSIDICUS GIGAS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P: 영문학명”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4.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사탕무당 [1701.12-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사탕무당: BEET SUGAR(POLARIZATION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T SUGAR (POLARIZATION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POLARIZATION EXCEEDING 98.5°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T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당도 등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는 “POLARIZATION”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예) POLARIZATION 99%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ARIZATION 99%, SOLID BEET SUGAR, PACKING: 5KG/CT, USE: EDIBLE ○ 당도 99도의 식용 고체 사탕무당이 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ZUM06BROWN SUGAR 5GR(5K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T SUGA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사탕무당(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BEET SUGAR(POLARIZATION EXCEEDING 98.5)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OLARIZATION: 당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5.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 HONEY MUSCOVADO CANE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 HONEY MUSCOVADO CANE SUGAR, PACKING: 20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스톤허니 무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이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 HONEY MUSCOVADO CANE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W: 6,00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6. 당도가 98.5도 이하인 기타 사탕수수당 [1701.14-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OF A POLARIZATION NOT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POLARIZATION NOT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 BROWN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당도 등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는 “POLARIZATION”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예) POLARIZATION 98%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ARIZATION 98.38%, SOFT BROWN SUGAR, PACKING: 450G/BAG,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 98.38도의 식용 연갈설탕이 450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 BROWN SUGAR (POLARIZATION 9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 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OLARIZATION: 당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7.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기타 사탕수수당 (1701.14-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OF A POLARIZATION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POLARIZATION EXCEEDING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MERARA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당도 등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는 “POLARIZATION”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예) POLARIZATION 99%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ARIZATION 99%, DEMERARA SUGAR, PACKING: 25KG/BAG,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 99도의 식용 디메라라 설탕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G OF 25KG 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 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OLARIZATION: 당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8.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설탕 [1701.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탕무 설탕: BEET SUGAR(A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2. 사탕수수 설탕: CANE SUGAR(A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A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BLEND CINNAMON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50G X 10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BLEND CINNAMON SUGAR BLEND, PACKING: 750G X 2PACK/CT, USE: EDIBLE ○ 식용 AAC BLEND 계피설탕이 750G씩 2팩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RGE USD: 12.05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96.5%, CINNAMON POWDER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INVERTED SUGAR SYRUP, CARAMEL, ANTI-CAKING AGENT: GLYCEROL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 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사탕무설탕; BEET SUGAR(A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39. 기타 설탕 [1701.9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탕무 설탕: BEET SUGAR(OTHER) 2. 사탕수수 설탕: CANE SUGAR(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S CASTER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S CASTER SUGAR, PACKING: 25KG/BAG, USE: EDIBLE ○ 식용 CRS 입자가 고운 흰 설탕이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S CASTER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E SUGA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3682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1701호는 고체 상태인 것에 한정하며, 당도 및 향미제나 착색제 첨가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사탕무설탕, BEET SUGAR(OTHER)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0. 단풍당시럽 (1702.2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PLE SYR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TULOSE LIQUID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MAPLE SYR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PLE SUGA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0ML X 4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E A GOLDEN PURE MAPLE SYRUP, PACKING: 250ML X 4BOTTLE/CT, USE: EDIBLE ○ 식용 A 골든 등급 퓨어 단풍당시럽이 250ML씩 4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MAPLE SYRUP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MAPLE SYRUP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E: VERY DARK COLORSTRONG TAST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대상- 소매용 최소포장, 포장상자, 용기 등에 표기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1. 속을 채우지 않은 블록 · 슬래브 · 막대 모양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06.3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FILLED CHOCOLATE IN B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CO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SHEY' MILK CHOCOLATE WITH ALMO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CO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NOT FILLED(속을 채우지 않은)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SHAPE:” 이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모양을 기재 예) SHAPE: BLOCK, SHAPE: SLAB, SHAPE: BAR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예) PACKING: 41G X 40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FILLED, HERSHEY' MILK CHOCOLATE WITH ALMONDS, SHAPE: BAR, PACKING: 41G X 1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을 채우지 않은 식용 바 모양의 허쉬 밀크 초콜릿 워드 아몬드가 41G씩 1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SHEY' MILK CHOCOLATE WITH ALMO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CHOCOLATE 64.4%(SUGAR, COCOA BUTTER, MILK, COCOA MASS, SKIM MILK, BUTTER OIL, LECITHIN, VANILLIN, SALT) ALMOND 34.5%(ALMOND, CANOLA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 F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에 크림, 크러스티드슈가, 말린 코코넛 등에 초콜릿을 입힌 형태나 초콜릿 전체에 곡물, 과일 견과류 등이 박혀있는 것은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2.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밀크·크림 조제품 (1901.90-2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REPARATION OF A FAT CONTENT NOT EXCEEDING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30%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UD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지방분의 비중을 기재 예) FAT: 17%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5G X 25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UDDING FAT: 17%, PACKING: 105G X 10EA/CT, USE: EDIBLE ○ 지방분이 17%인 식용 밀크 푸딩이 105G씩 1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UDDIN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NSED MILK 30%, DAIRY PRODUCTS 14.9% (VEGETABLE OIL, POWDERED SKIM MILK, WHEY POWDER, MILK SUGAR), SUGAR 11%, COCOA 1%,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 세번 분류가 달라지므로 지방함량 필수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만 분류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1901.90-2020으로 분류 ■ 코코아가 함유된 경우, 함유량에 따라 세번 분류가 달라지므로 코코아함량 필수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물품은 제1806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FAT: 지방분의 비중"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3.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밀크·크림 조제품 (1901.90-2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M PREPARATION OF A FAT CONTENT EXCEEDING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LAC GOLD WHIPPING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ILK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지방분의 비중을 기재 예) FAT: 35% - 예) PACKING: 1KG X 2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LAC GOLD WHIPPING CREAM FAT: 35%, PACKING: 1KG X 2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이 35%인 식용 밀락 골드 휘핑 크림이 1KG씩 2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LAC GOLD WHIPPING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TTER MILK 61.4%, SOYBEAN OIL 31.5%, CREAM 8.6%,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 D8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의 함량에 따라 세번 분류가 달라지므로 지방함량 필수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하는 것만 분류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이하인 것은 제1901.90-201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FAT: 지방분의 비중”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4. 쌀가루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1.90-90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PREPARATIONS OF RICE FL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RICE FL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ROLL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STEAMED(찐)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400G X 24BA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ETNAMESE STEAMED RICE ROLL MIX, PACKING: 400G X 4BA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의 찐 베트남산 라이스 롤 믹스가 400G씩 4포대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ETNAMESE STEAMED RICE ROLL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FLOUR 68.18%, TAPIOCA STARCH 3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전현미분말, 대두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5. 기타 곡물가루로 만든 조제 식료품 [1901.90-9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밀가루의 것: WHEAT FLOUR PREPARATION 2. 타피오카전분의 것: TAPIOCA STARCH PREPARATION 3. 고구마전분의 것: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FLOUR PREPARATION ■ BUCKWHEAT FLOUR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BUCKWHEAT FLOUR PREPARATION (메밀가루로 만든 조제품)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PRE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ETABLE EXTRACT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G X 4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ODLE PREMIX BUCKWHEAT FLOURS, PACKING: 150G X 4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메밀가루로 만든 면 프레믹스가 150G씩 4개가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ODLE PREMIX BUCKWHEAT FLO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CKWHEAT 88.5%, WHEAT GLUTEN 11%, GUAR GUM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 및 전분조제품의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 세번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요건 미 충족 시 감자 전분(제1108.13-0000호) 등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6. 스파게티 [1902.1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GHET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DI AI TARTUFO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TARRA EGG PA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T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 X 12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TARRA EGG PASTA, PACKING: 500G X 12PACK/CT, USE: EDIBLE ○ 식용 치타라 예그 파스타가 500G씩 12팩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GHETTI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UM WHEAT 67.5%, EGG 20%, WATER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7. 국수 (1902.1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O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STICK_HU TIEU KHO_BICH CHI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AI RICE NOO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T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0G X 24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AI RICE NOODLES, PACKING: 250G X 24EA/CT, USE: EDIBLE ○ 식용 타이 쌀국수가 250G씩 24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CKER FE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74.58%, TAPIOCA STARCH 13.42%, WATER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M 500CT5MM 100CT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분의 함량이 80%이상인 국수는 조정관세 대상인 당면(1902.19-2000)에 해당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8. 라면 (1902.3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EN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ODL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MUSHROOM RA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NOODL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82.5G X 24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EF MUSHROOM RAMEN, PACKING: 82.5G X 24PCS/CT, USE: EDIBLE ○ 식용 쇠고기라면이 82.5G씩 24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X5X8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ODLE 86.2%, SEASONING POWDER 10.3%, MEAT AND VEGETABLE SOUP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탕면: 밀가루, 팜유, 정제소금, 탄산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49.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 (1904.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ROASTED CEREAL FLAKES OF MUSLI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USLI TYPE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OLA 5-FRUIT MUS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OATM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0G X 4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OLA 5-FRUIT MUSLI, PACKING: 1,000G X 4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비올라5-과일 무슬리가 1,000G씩 4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ONTO 3.5%.EUR19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LEGRAIN FLAKE 75.8%, DRY FRUIT MIX 15%, CORN FLAKE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COMMERCIAL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1904호 하위 세번은 가공방법에 따라 세번이 차이가 있으며, 기타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HS 1904.20-2000), 콘 플레이크(HS 1904.10-1000),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 또는 볶은 조제식료품(HS 1904.10-9000)로 신고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0. 찌거나 삶은 쌀 [1904.90-1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찌거나 삶은 쌀(현미): STEAMED OR BOILED HUSKED RICE 2. 찌거나 삶은 쌀(흑미): STEAMED OR BOILED DARK RICE 3. 찌거나 삶은 쌀(찹쌀): STEAMED OR BOILED GLUTINOUS RICE 4. 찌거나 삶은 쌀(백쌀): STEAMED OR BOILED RICE 5. 찌거나 삶은 쌀(혼합): MIXED STEAMED OR BOILED 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ED OR BOILED GLUTINOUS 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STUFF COOKED RIC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BOO 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LED RI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STEAMED(찐), BOILED(삶은)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G X 36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ORIGIN:”, “YEAR:”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와 수확 연도를 기재 - 예) ORIGIN: VIETNAM, YEAR: 201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ED, BAMBOO RICE, PACKING: 30G X 36PCS/CT, USE: EDIBLE, ORIGIN: VIETNAM, YEAR: 2018. 5. ○ 식용 찐 대나무 쌀이 30G씩 36개로 카톤 포장 산지는 베트남이며 수확 연도는 201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BOO RIC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TINOUS RICE 53% BROWN SUGAR 13% SWEET POTATO 10% DRY GRAPES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VIETNAM 수확시기: 2018년11월 ○ 성분란에 산지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찌거나 삶은 쌀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 ■ 부분 조리된 쌀은 1006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YEAR: 수확년도”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1. 스위트 비스킷 (1905.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BISCU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CUI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CADILLY LEMON CURD BISCU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CKER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0G X 36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CADILLY LEMON CURD BISCUITS, PACKING: 200G X 36EA/CT, USE: EDIBLE ○ 식용 피카딜리 레몬 커드 비스킷이 200G씩 36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CADILLY LEMON CURD BISCUI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RICHED FLOUR 34.82%, MACADAMIA NUT 25.03%, SALTED BUTTER 20.25%, SUGAR 16.5%, ETC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넛·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임 ■ HS 제1905.3 하위 세번은 물품에 따라 세번과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2. 파이와 케이크 (1905.90-10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K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EAD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LANTA CHEESE C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K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417G X 15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LANTA CHEESE CAKE, PACKING: 1,417G X 5PCS/CT, USE: EDIBLE ○ 식용 애틀란타 치즈 케이크가 1,417G씩 15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2018.11.17.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ESECAKE BATTER 46%, HONEY CRUST 32%, SOUR CREAM TOPPING 15%,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225.6 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1905.90-10호 하위 세번은 물품에 따라 세번과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3. 라이스 페이퍼 (1905.90-9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CHIP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VIETNAM RICE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CHIP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0G X 24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VIETNAM RICE PAPER, PACKING: 300G X 24PCS/CT, USE: EDIBLE ○ 식용 뉴 베트남 라이스 페이퍼가 300G씩 24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F CHARG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IOCA STARCH 43%, RICE FLOUR 40%, WATER 14%, SALT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1680.00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1905.90-90호 하위 세번은 물품에 따라 세번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4. 전분 페이스트로부터 만든 유사한 물품 [1905.9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ILAR PRODUCTS MADE BY COOKING FROM STARCH PAS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WER R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CU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G X 100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WER ROLL, PACKING: 20G X 100PCS/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플라워 롤이 20G씩 100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W 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FLOUR 74%, PURIFIED WATER 20%, SUGAR 5%, YEAST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17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1905.90-90호 하위 세번은 물품에 따라 세번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5.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마늘 (2001.90-906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산간마늘(육쪽): GARLIC, PEELED AND PRESERVED BY ACETIC ACID(HARD STEM) 2. 초산간마늘(다쪽): GARLIC, PEELED AND PRESERVED BY ACETIC ACID(SOFT STEM) 3. 초산통마늘(육쪽): GARLIC, PRESERVED BY ACETIC ACID(HARD STEM) 4. 초산통마늘(다쪽): GARLIC, PRESERVED BY ACETIC ACID(SOFT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PEELED AND PRESERVED BY ACETIC ACID(SOFT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RVED GARLIC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PEELED AND PRESERVED BY ACETIC AC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WEIGHT/EA(개당평균중량): L, M, S 4G이상⇒WEIGHT(L), 3G-4G미만⇒WEIGHT(M), 3G미만⇒WEIGHT(S) EQUALITY(고르기): H, L {10%미만⇒EQUALITY(H), 10%이상⇒EQUALITY(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PRESERVED(보존처리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S);EQUALITY(H)/GARLIC, PEELED AND PRESERVED BY ACETIC ACID, PACKING: 25KG/CT, USE: EDIBLE ○ 개당평균중량 3G미만;고르기 10%미만/식용 초산간마늘(다쪽)이 25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IGHT(S);EQUALITY(H)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LIC 60%, WATER 25.9%, SALT 10%, ACETIC ACID 0.6%,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6,560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1호에 분류 ○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 ○ 육질내부에 함유한 소금농도가 12% 미만 ■ 육질내부의 소금농도가 12%이상일 경우 염장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6.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 [2001.9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ETABLE PREPARED BY VINE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PEPPER PREPARED BY VINE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팜허트, 전분의 함량이 전 중량의 5퍼센트 이상 함유된 양·고구마 및 유사한 식물의 식용부분⇒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PREPARED(조제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KG X 5BA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GREEN PEPPER BY VINEGAR, PACKING: 4KG X 5BAG/CT,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초산피망이 4KG씩 5포대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PEPPER 59.86%, WATER 30.74%, REFINE SALT 8.5%, ACETIC ACID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EAX0.35KG)-2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1호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 ○ 육질내부에 함유한 소금농도가 12% 미만 ■ 육질내부의 소금농도가 12%이상일 경우 염장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7.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완두 (2005.4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P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ED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ABI GREEN PEAS SN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RIED(튀긴), PREPARED(조제한), PRESERVED(보존처리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0G X 3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IED, WASABI GREEN PEAS SNACK, PACKING: 70G X 3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튀긴 고추냉이 완두 과자가 70G씩 30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ABI GREEN PEAS SN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 59.4%, CORN STARCH 11.1%, CANOLA OIL 10.4%, SUGAR 7.3%, WHEAT FLOUR 5.8%,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CT/16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하고,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하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8.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껍데기를 벗긴 팥 [2005.51-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통팥: SMALL BEANS, SHELLED(WHOLE) 2. 팥(분말): SMALL BEANS, SHELLED(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 BEANS, SHELLED(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PAST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CM-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IAMETER(알곡직경): L, M, S {직경10MM이상⇒DIAMETER(L), 직경8MM~10MM미만⇒DIAMETER(M), 직경8MM미만⇒DIAMETER(S)} ADDITION(당 첨가물): Q, S {올리고당⇒ADDITION(O), 설탕⇒ADDITION(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BOILED(삶은), PREPARED(조제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4KG X 5BA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ADDITION(S)/PREPARED RED BEAN CM-65, PACKING: 4KG X 5BAG/CT, USE: EDIBLE ○ 알곡직경 8MM미만;당 첨가물 설탕/식용 조제한 통팥 CM-65가 4KG씩 5포대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ADDITION(S)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35.6%, SUGAR 44%, WATER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회보서:B-17-04962(2017.12.13.)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하고,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하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59.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팥 [2005.5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팥: OTHER PREPARED OR PRESERVED SMALL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ED OR PRESERVED SMALL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 RED BEANS PREPARATION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BEA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DIAMETER(알곡직경): L, M, S {직경10MM이상⇒DIAMETER(L), 직경8MM~10MM미만⇒DIAMETER(M), 직경8MM미만⇒DIAMETER(S)} ADDITION(당 첨가물): O, S {올리고당⇒ADDITION(O), 설탕⇒ADDITION(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BOILED(삶은), PREPARED(조제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 X 2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ADDITION(S)/PREPARED RED BEAN JAM, PACKING: 1KG X 20BOTTLE/CT, USE: EDIBLE ○ 알곡직경 8MM미만;당 첨가물 설탕/식용 조제한 팥 잼이 1KG씩 20병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ETER(S);ADDITION(S)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LED RED BEAN 26.1%, SUGAR 38.6%, WATER 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V/SAMPL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하고,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하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죽순 [2005.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BAMBOO SH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ETABLES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NED BAMBOO SH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BOO SH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BOILED(삶은), PREPARED(조제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950G X 5CAN/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CANNED BAMBOO SHOOTS, PACKING: 2,950G X 5CAN/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하고 캔에 든 식용 죽순이 2,950G씩 5캔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NED BAMBOO SH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BOO SHOOT 53%, WATER 46.99%, CITRIC ACID 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2020년04월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하고,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하므로 가공방법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1. 김치 (2005.9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추김치(포기김치): CHINESE CABBAGE KIMCHI(WHOLE) 2. ~ 16.: 생략 17. 기타 김치: OTHER KIM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ESE CABBAGE KIMCHI(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GIL KIM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KG X 2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GIL KIMCHI, PACKING: 10KG X 2PACK/CT, USE: EDIBLE ○ 식용 한길 김치가 10KG씩 2팩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GIL KIM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KLED CABBAGE 72%, RADISH 5%, SALTED SHRIMP 4%, GARLIC 3%, ONION 3%, RED PEPPER POWDER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한 김치는 2004.90-9000에 분류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김치 ; KIM-CHI® <지정기간: 2017.3.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우말랭이: SEASONED DRIED RADISH 2. 들깨잎: SEASONED PERILLA LEAVES 3. 양파: ONION PREPARATION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DRIED RADISH ■ CUCUMBER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UCUMBER PREPARATION (오이 조제품)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CUMBER S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RRY 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SEASONED(조미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ED CUCUMBER SLICE, PACKING: 1KG/CT, USE: EDIBLE ○ 조미한 식용 오이 슬라이스가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ICE PICKLED CUCU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CUMBER 66.7%, WATER 32.7%, CALCIUM LACTATE 0.5%, VITAMIN C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CT = 4 PLASTIC BAGS =50 RETORT POUCHED BAGSX 40G)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3.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 · 과피 (2006.0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PRESERVED BY SUG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GUA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DRAINED(드레인한), GLACE(설탕을 입힌), CRYSTALLISED(설탕에 절인)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G X 20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YSTALLISED, DRIED GUAVA, PACKING: 100G X 20PACK/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에 절인 건조 식품 구아바가 100G씩 20팩으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A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UAVA 67.97% SUGAR 32% CITRIC ACID 0.02% SODIUM METABISULFITE 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호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 ○ 외관상 과육이 수축 없이 원형 상태를 거의 유지 할 것 ○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스며들었을 것 ○ 과육 내부·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파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를 것 ■ 삼투달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경우 제2008.99-9000호로 분류하나 동 세번으로 오신고 사례 다수 발생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4. 과실의 균질화한 조제품 (2007.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OGENISED PREPARATIONS OF FRUIT PU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OGENISED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BER 1ST FOODS AP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42G X 20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BER 1ST FOODS APPLES, PACKING: 142G X 200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거버 1단계 푸드 애플이 142G씩 200명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BER 1ST FOODS AP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E 99%, VITAMIN C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31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질화한 조제품” 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5. 감귤류의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 (2007.9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RUS FRUIT MARMAL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MALA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UCKER' S SWEET ORANGE MARMAL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JEL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40G X 10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UCKER' S SWEET ORANGE MARMALADE, PACKING: 340G X 100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스머커 오렌지 마멀레이드가 340G씩 1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 SEVILLE ORANGE P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FRUCTOSE CORN SYRUP 35%, CORN SYRUP 30%, ORANGE PEEL 18%, ORANGE JUICE 16%,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이나 감압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프리저브 스타일(PRESERVE STYLE), 장식(TOPPING)용 및 충전(FILLING)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 감귤류의 과실(CITRUS FRUIT)로 만든 잼, 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란 동호에 분류, 그 외의 재료로 만든 것은 2007.99-1000호에 분류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등의 차이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6. 기타 과실의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 (2007.9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A STRAWBERRY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40G X 20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A STRAWBERRY JAM, PACKING: 340G X 20JAR/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다나 딸기잼이 340G씩 20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A STRAWBERRY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WBERRY 45%, GLUCOSE SYRUP 30%, SUGAR 23%, PECTIN 1%, CITRIC ACID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R 34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이나 감압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프리저브 스타일(PRESERVE STYLE), 장식(TOPPING)용 및 충전(FILLING)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 ■ 감귤류의 과실(CITRUS FRUIT)로 만든 잼, 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는 2007.91-100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7. 기타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페이스트 (2007.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퓨레: FRUIT PUREE 2. 페이스트: FRUIT PASTE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PUREE ■ DURIAN P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DURIAN PASTE(두리안 페이스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GO PU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GO PUREE, PACKING: 1KG/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망고 퓨레가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GO PU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MANGO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2021년06월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퓨레는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 ■ 상업서류 상 품명이 퓨레로 되어 있는 경우 HS 제2008.99-9000호의 과실조제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동 세번으로 오인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호 →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이나 감압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 ○ 2008호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것, 2007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이외의 방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8. 피넛버터 [2008.1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넛버터(크리미): PEANUT BUTTER(CREAMY) 2. 피넛버터(크런치): PEANUT BUTTER(CRUNCHY) 3. 피넛버터(잼 혼합): PEANUT BUTTER(INCLUDING J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CREA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ERICAN CLASSIC ORGANIC PEANUT BU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PACKAGE(포장종류): B, G, P {BULK(박스 등)⇒PACKAGE(B), 소매용 유리병⇒PACKAGE(G), 소매용 플라스틱⇒PACKAGE(P)}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G X 2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CKAGE(P)/AMERICAN CLASSIC ORGANIC PEANUT BUTTER, PACKING: 100G X 20BOTTLE/CT, USE: EDIBLE ○ 포장종류 소매용 플라스틱/식용 아메리칸 클래식 유기농 피넛버터가 100G씩 2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ERICAN CLASSIC ORGANIC PEANUT BUTT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PEANUT 93% SUGAR 5% VEGETABLE OIL 1% SAL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 12 X 12 OZ/CASE(SMOOTH)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008.11호 하위 세번은 피넛버터와 기타 물품이 한-미 FTA 협정세율(FUS)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69.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땅콩 [2008.1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볶은 피땅콩: ROASTED GROUND-NUT, IN SHELL 2. 볶은 내피땅콩: ROASTED GROUND-NUT, SHELLED 3. 볶은 알땅콩: ROASTED GROUND-NUT, PEELED 4. 볶은 알땅콩(반태): ROASTED GROUND-NUT, PEELED(HALF) 5. 볶은 알땅콩(파쇄): ROASTED GROUND-NUT, PEELED(CRUSH) 6. 볶은 알땅콩(분말): ROASTED GROUND-NUT, PEELED(POWDER) 7. 튀긴 땅콩: FRIED GROUND-NUT 8. 기타 조제땅콩: GROUND-NU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ND-NU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TERS HONEY ROASTED PEA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PORTION-PEANUT(땅콩함량): H, L 80%이상⇒PORTION-PEANUT(H), 80%미만⇒PORTION-PEANUT(L)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10G X 16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 [사전세역심사대상물품] “ORIGIN:”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산지를 기재 - 예) ORIGIN: SHANDONG,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ION-PEANUT(H)/PLANTERS HONEY ROASTED PEANUTS, PACKING: 210G X 16PACK/CT, USE: EDIBLE, ORIGIN: SHANDONG, CHINA ○ 땅콩함량 80%이상/식용 플랜터스 허니 볶은 땅콩이 210G씩 16팩으로 카톤 포장 산지는 중국 산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TERS HONEY ROASTED PEA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90%, SUGAR 6%, HONEY 1.7%, SALT 0.8%, CORN SYRUP 0.3%, PEANUT OIL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NGDAO 2018YEAR 6MON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세역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규격 기재요령에 의한 조제땅콩의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확인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땅콩조제품 : ROASTED GROUND-NUTS, SHELLED ROASTED GROUND-NUT, PEELED ROASTED GROUND-NUT, PEELED(HALF OR CRUSH OR POWDER)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사전세역심사대상으로 “ORIGIN: 산지”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밤 (2008.1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제밤(홀): CHESTNUT, PREPARED OR PRESERVED(WHOLE) 2. 조제밤(편): CHESTNUT, PREPARED OR PRESERVED(SLICE) 3. 조제밤(다이스): CHESTNUT, PREPARED OR PRESERVED(D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STNUT, PREPARED OR PRESERVED(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ST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PEELED CHESTN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STN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IZE(개당평균중량): XL, L, M, S {25G이상⇒SIZE(XL), 15G~25G미만⇒SIZE(L), 10G~15G미만⇒SIZE(M), 10G미만⇒SIZE(S)} ADDITION(당 첨가물): N, Q, S 무첨가⇒ADDITION(N), 올리고당⇒ADDITION(O), 설탕⇒ADDITION(S)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G X 5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S);ADDITION(N);PACKAGE(P)/ ROASTED PEELED CHESTNUT, PACKING: 8G X 50EA/CT, USE: EDIBLE ○ 개당평균중량 10G미만; 첨가물 무첨가;포장 파우치포장/껍질을 벗기고 볶은 식용 밤(홀)이 8G씩 50개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S);ADDITION(N);PACK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STNU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LUDING PLATE CHARGE RMB9,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과 경합세번인 HS 0811.90-1000호는 세율 및 부가세 면제 여부 등이 차이가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및 물품상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1호 → 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찐 것 ○ 2008호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것, 2007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이외의 방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1.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코코넛 (2008.1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ENDEE ROASTED COCONUT C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ROASTED(볶은)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G X 36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ENDEE ROASTED COCONUT CHIPS-HONEY FLAVOR, PACKING: 40G X 36PACK/CT, USE: EDIBLE ○ 식용 글렌디 벌꿀향 볶은 코코넛 칩이 40G씩 36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C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62.5%, SUGAR 25%, HONEY 11.5%, SAL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2021년06월0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코코넛 견과류는 HSK 2008.19-2000 에 분류하므로, 신고 시 2007호(견과류의 퓨레, 페이스트), 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등에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2.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견과류 [2008.1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깨: SESAMUM PREPARATIONS 4. 피스타치오: PISTACHIOS 2. ~ 3, 5. ~ 8.: 생략 9. 기타: OTHER 10. 볶은 참깨분: ROASTED SESAME POWD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STACHIOS ■ ROASTED SACHA IN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ROASTED SACHA INCHI (볶은 사차인치)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HOT & SPICY PISTACHIOS IN-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MO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ROASTED(볶은)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G X 12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HOT & SPICY PISTACHIOS IN-SHELL, PACKING: 150G X 12PACK/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볶은 식용 HOT & SPICY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가 150G씩 12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 & SPICY PISTACHIOS IN-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STACHIO 91.3%, SUGAR 6.3%, SALT 1.4%, CHILI POWDER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CKING IN VACUUMED BAGS OF 500 GRAMS NET EACH, 40 PACKS/CARTON TOTAL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견과류 분류, 가공방법에 따라 세번 및 세율차가 크므로 가공 상태 확인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볶은 참깨분: ROASTED SESAME POWDER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3.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체리 (2008.6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RRY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DRIED TART MONTMORENCY CHER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PRESERVED(보존처리한)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KG X 4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DRIED TART MONTMORENCY CHERRIES, PACKING: 1KG X 4JAR/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유기농 건조 타르트 몽모랑시 체리가 1KG씩 4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FR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RRY 81%, SUGAR 18%, SUNFLOWER OI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12,30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과 경합세번인 HS 0812.10-0000호는 세율 및 부가세 면제 여부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가공방법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4.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과실·채소 (2008.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망고: MANGO PREPARATION 2. 삶은(찐) 옥수수: QUICK FROZEN BOILED CORN 3. 연근: SALTED LOTUS ROOTS 4. 바나나: BANANA PREPARATION 5. 고구마: SWEET POTATO PREPARATION 6. 알로에베라: ALOE VERA PREPARATION 7.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POTATO PREPARATION ■ PRUNE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PRUNE PREPARATION (프룬 조제품)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POTATO CROQUE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POT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⑫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BOILED(끓인), ROASTED(볶은)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G X 3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STED SWEET POTATO CROQUETTE, PACKING: 20G X 3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볶은 고구마 크로켓이 20G씩 3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GX30X10(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⑬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POTATO 60.4%, BREAD CRUMB 18.1%, WATER 14.7%, CORN POWDER 2.6%, SESAME 1.8%, 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⑭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아서 찐 옥수수는 제2008.99-9000호, 냉동옥수수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5. 기타 오렌지주스 (2009.1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ANGE JUICE OF A BRIX VALUE EXCEEDING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MA ORANGE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ONCENTRATED(농축), NFC(비농축)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브릭스 값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BRIX:”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L X 12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NTRATED PRIMA ORANGE JUICE, BRIX: 27, PACKING: 1L X 12BOTTLE/CT, USE: EDIBLE ○ 식용 농축한 프리마 오렌지 주스(브릭스 값 27)가 1L씩 12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MA ORANGE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ANGE JUICE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68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렌지주스의 경우, 냉동여부 및 BRIX 값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고, 협정세율 적용 시 세율차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BRIX: 브릭스 값”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6.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레몬주스 (2009.3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JUICE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OF FRUIT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YA LEMON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OF FRUIT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ONCENTRATED(농축), NFC(비농축)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브릭스 값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BRIX:”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946ML X 2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GOYA LEMON JUICE, BRIX: 5.6-6.3, PACKING: 946ML X 20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농축하지 않은 고야 레몬 주스(브릭스 값 5.6-6.3)가 946ML씩 20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YA LEMON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79%, CONCENTRATED LEMON JUICE 21%, LEMON OIL 0.01%,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G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⑮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X 값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FUS) 등 세율차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BRIX: 브릭스 값”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7.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 CITRUS FRUIT JUICE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AMANSI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CONCENTRATED(농축), NFC(비농축)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브릭스 값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를 위해 “BRIX:”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L X 6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C, CALAMANSI JUICE, BRIX: 6.8, PACKING: 1L X 60BOTTL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농축하지 않은 칼라만시 주스(브릭스 값 6.8)가 1L씩 6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AMANSI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AMANSI EXTRAC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DCX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주스와 채소 주스는 브릭스(BRIX) 값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반드시 브릭스(BRIX) 값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BRIX: 브릭스 값”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8. 크랜베리 이외의 기타 과실주스 [2009.89-1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OCONUT WATER(코코넛 워터)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G ISLAND COCONUT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ONI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 자두주스, (02) 블루베리 주스, (03) 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CONCENTRATED(농축), NFC(비농축)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0ML X 3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NFC, KING ISLAND COCONUT WATER, PACKING: 250ML X 30BOTTLE/CT, USE: EDIBLE ○ 기타/식용 농축하지 않은 킹 아일랜드 코코넛 워터가 250ML씩 3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G ISLAND COCONUT WATER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WATER 95%, COCONUT SUGAR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UNITS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지 과실로 만든 주스를 분류하며 혼합주스는 HS 제2009.90-9000호로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등의 세율차가 있음 ■ 동세번의 과실을 압착하여 제조한 고세율의 주스를 저세율의 식물성 추출물(제1302.19-9099호), 조제식료품 (제2106.90-9099호)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분석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79.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MOUNTAIN COFFEE BLE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 CLUB PRODUC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G X 12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MOUNTAIN COFFEE BLEND, PACKING: 100G X 12PCS/CT, USE: EDIBLE ○ 식용 블루마운틴 커피 블렌드가 100G씩 12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MOUNTAIN COFFEE BLEND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COFFE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 RYAN EUR40.00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과 HS2101.12-1000호는 한-중 FTA 협정세율(FCN)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필리핀, 태국) 등의 차이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0. 커피의 추출물 · 에센스 · 농축물 [2101.11-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CONCENT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D BREW COFFEE CONCENT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473ML X 12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D BREW COFFEE CONCENTRATE, PACKING: 473ML X 12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콜드브루 커피 농축물이 473ML씩 12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D BREW COFFEE CONCENT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CONCENTRAT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Y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S) · 농축물(CONCENTRATES)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 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짐.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를 함유(함유량에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1.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2101.1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OF INSTANT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COFFE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ESPRESSO INSTANT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NT COFFE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8G X 100STI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ESPRESSO INSTANT COFFEE, PACKING: 8G X 100STICK/CT, USE: EDIBLE ○ 식용 G7 에스프레소 인스턴트 커피가 8G씩 100스틱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ESPRESSO INSTANT COFFE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46.9%, VEGETABLE CREAMER 35.1%, INSTANT COFFEE 13%, MALTODEXTRIN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BEANS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차 또는 마태(커피·차·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 ■ 동 세번과 HS2101.11-1000호는 한-중 FTA 협정세율(FCN)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필리핀, 태국) 등의 차이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2. 차나 마테의 추출물 · 에센스 · 농축물 (2101.2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차 추출물: GREEN TEA EXTRACT 2. 홍차 추출물: BLACK TEA EXTRACT 3. 마테 조제품: MATE PREPARATION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EXTRACT ■ MATCHA P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MATCHA PASTE(마차 페이스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EXTRACT POWDER, PACKING: 30KG/CT, USE: EDIBLE ○ 식용 녹차추출물 분말이 3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EXTRACT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EXTRAC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저세율의 식물성 추출물(제1302.19-9099호), 기타의 조제식료품(제2106.90-9099호) 등으로 오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3. 제빵효모 (2102.1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KERY YE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GEL INSTANT DRY YEAST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YEAST GOLD LAB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YEAST GOLD LABEL, PACKING: 1KG/CT, USE: EDIBLE ○ 식용 냉동 효모 골드 라벨이 1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ZEN YEAST GOLD LABE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99%, SORBITAN FATTY ACID ESTER 0.5%, VITAMIN C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 LABEL 3.5KGX4BOX=4 CT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2102.10 하위 세번은 그 용도 등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4. 불활성 효모 [2102.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CTIVE YEA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ED BREWER YEAS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KOSEL INACTIVE YEA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KOSEL 2000 INACTIVE YEASTS, PACKING: 25KG/BAG, USE: FEEDING ○ 사료용 알코셀 2000 불활성 효모가 25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KOSEL 2000 INACTIVE YEAST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CTIVE YEAST 99% FORTIFYING NUTRIENT 0.5%, 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사료용사료성분등록증CCBIQ0004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활성 효모는 주로 식용이나 동물사료용으로 사용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5. 기타 클로렐라 (2102.20-3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말상의 것: OF POWDER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ELLA OF POWDER ■ CHLORELLA CONCENT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HLORELLA CONCENTRATE (클로렐라 농축물)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WORKS CHLORELLA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E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0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 A ORGANIC, HEALTHWORKS CHLORELLA POWDER, PACKING: 70G/BAG, USE: EDIBLE ○ USDA 오가닉 등급을 받은 식용 헬스웍스 클로렐라 분말이 70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WORKS CHLORELLA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ELLA POWD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렐라는 형태에 따라 WTO협정관세율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2.20-3010호 정제(TABLET): 22.9% ○ 2102.20-3090호 기타: 30%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6. 기타 단세포 미생물 (2102.2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CELL MICRO-ORGANIS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G SINGLE CELL PROTE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CTIVE YEA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G SINGLE CELL PROTEIN, PACKING: 10KG/CT, USE: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MSG 단세포 프로틴이 1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G SINGLE CELL PROTE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ACTIVE YEAST 99.5% FORTIFYING NUTRIENT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사료용 사료성분등록증CCBIQ0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사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미생물 배양제(효모를 제외한다)와 백신(제3002호),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효소(ENZYMES)[아밀라아제·펩신·레네트(RENNET) 등](제3507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7. 토마토 소스 [2103.2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1. 토마토 소스: TOMATO SAU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MATO SAU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IXED SEASO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ITROSE TOMATO PASTA SAU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50G X 6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WAITROSE TOMATO PASTA SAUCE, PACKING: 550G X 6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 기타/식용 웨이트로즈 토마토 파스타 소스가 550G씩 6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MATO 95% ORGANIC VEGETABLES 4.3% SALT 0.6%, BASIL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M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 구별될 것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8. 마요네스 [2103.90-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YONNA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IXED SEASONING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LMANNS REAL MAY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RNIC BBQ SAU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0G X 20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LMANNS REAL MAYO, PACKING: 300G X 20JAR/CT, USE: EDIBLE ○ 식용 헬만스 리얼 마요가 300G씩 20병에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LMANNS REAL MAYO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YBEAN OIL 75%, WATER 12.4% EGG 7.5%, DISTILLED VINEGAR 2.5%, WHITE SUGAR 1.2%, 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RCODE: 4770491214922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89. 혼합조미료 (2103.90-90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혼합조미료: MIXED SEASO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ED SEASO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DON SOUP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N PAST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G X 5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UDON SOUP POWDER, PACKING: 50G X 50EA/CT,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우동 수프 분말이 50G씩 5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T 29.6% SOY SAUCE POWDER 29.5%, SUGAR 28.9%, GLUCOSE 7.2% HYDROLYZED PROTEIN 1.8%, SPRING ONION 1.4%, 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BE SOLD INDIVIDUALLY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 은 조정관세 대상이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원료(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의 구성비를 상세하게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0. 기타 혼합조미료 (2103.9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분말상의 것): MIXED SEASONINGS POWDER 2. 고춧가루 혼합조미료(페이스트상의 것): MIXED SEASONINGS PASTE 3. 기타 혼합조미료: OTHER MIXED SEASO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ED SEASONINGS P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TE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USE(용도): H, K, S, O 고추장 제조⇒USE(H), 김치제조⇒USE(K), 탕 제조⇒USE(S), 기타용도⇒USE(O), PEPPER(고추함량): VH, H, L, M 35%~40%⇒PEPPER(VH), 30%~35%미만⇒PEPPER(H), 25%~30%미만⇒PEPPER(L), 20%~25%미만⇒ PEPPER(M)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O);PEPPER(VH)/TATEKI, PACKING: 20KG/CT, USE: EDIBLE ○ 기타용도; 고추함량 35%~40%/식용 다대기가 20KG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O);PEPPE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44%, RED PEPPER POWDER 40%, ONION 9%, RADISH POWDER 5%, SPRING ONION POWDER 1%, SAL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CHIMI TOUGARASHI 300G/50 CHILLI PE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다대기 분류기준(모두 충족한 것에 한하여 고추다대기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일 것 ○ 전체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대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야하고 이들의 합이 중량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전체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20% 이하일 것 ○ 전체성분 중 총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45% 이상일 것 ○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가 불가능할 것 ■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은 조정관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1. 기타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 (2104.1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P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거래품명(학명): BEAN(SP: EUCHRESTA JAPO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SEASONED MIXE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0G X 3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SEASONED MIXED POWDER FOR SOUP, PACKING: 400G X 3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인 수프용 옥수수조미혼합분말이 400G씩 3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CCOLI S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MING POWDER 30.3%, SUGAR 19.5%, CORN POWDER 18.9%, SALINE 10.1%, POTATO POWDER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WEIGHT: 72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옥수수조미분말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2104.10 하위 세번은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성분 기재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2.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BEAN(SP: EUCHRESTA JAPON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BER ORGANIC CARROT SWEET POTAT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FOOD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25G X 50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RBER ORGANIC CARROT SWEET POTATOES, PACKING: 125G X 50JAR/CT, USE: EDIBLE ○ 식용 거버 유기농 당근 고구마가 125G씩 5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MA CALABAZA BIO 315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CARROT 38%, ORGANIC SWEET POTATO 38%, WATER 20%,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FOOD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식용 고구마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3. 기타 아이스크림 (2105.0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 N CHOCOLATE IC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OCO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6KG X 4TUB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NUT BUTTER N CHOCOLATE ICE CREAM, PACKING: 6KG X 4TUBE/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피넛버터 N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6KG씩 4튜브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 CONFETTI IC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M 21.5%, PEANUT BUTTER RIBBON 14.5%, SUGAR 11.5%, SKIM MILK 10.5%, GLUCOSE SYRUP 3.5%,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5.4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POPS)]를 분류.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본 재료와 혼합물은 제외(예: 제1806호·제1901호나 제2106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4.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2106.90-102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MELON SYRUP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TIME G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MON JUI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8KG X 20JAR/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1)/LEMON TIME GOLD, PACKING: 1.8KG X 20JAR/CT, USE: EDIBLE ○ 체형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식용 레몬 타입 골드가 1.8KG씩 2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1)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NTRATED LEMON JUICE BASE 79% [FRUCTOSE SYRUP 47.2%, WATER 25.8%, LEMON EXTRACT 6%(5.5TIMES SOUR)], LEMON PULP 17%, CITRIC ACID 2.0%, LEMON FLAVOR 0.51%, SUGAR 0.8%,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4KG ○ 성분란에 중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주스 농축물로써 제2009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또는 알코올(0.5%)을 함유하는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5.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의 베이스 [2106.90-1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 THISLE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BAS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ML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ARTI THISLE TEA AMPLE, PACKING: 10ML X 10EA/CT,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아티 씨슬 차 앰플이 10ML씩 1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HOKE EXTRACT 75%, WATER 20%, STEVIA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농축액 MIXED EXTRACT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을 계기 ○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6. 기타 홍삼 조제품 (2106.90-302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GINSENG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GOOD DAILY RED GINSENG 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S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G X 3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GOOD DAILY RED GINSENG STICKS, PACKING: 10G X 3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스위트굿데일리 홍삼스틱이 10G씩 3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GOOD DAILY RED GINSENG 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72.5%, HONEY 17.5%, RED GINSENG EXTRACT 10% (SOLID CONTENT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GINS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제품의 경우 제2106.90-3010호에 해당하므로 신고에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7.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2106.90-90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CREAM FLAVOU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GURLETTO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CREAM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li style="padding-left: 20px;">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PACKING: 1KG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YOGURLETTO MIX, PACKING: 1KG X 10EA/CT, USE: EDIBLE ○ 체형 기타 식용 요거레또 믹스가 1KG씩 10개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GURT POWD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67%, GLUCOSE 22%, MIXED SKIM MILK POWDER 4%, MILK CREAM POWDER 2%,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FER BISCUITS KG.3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성분 기재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8.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 (2106.90-904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 AUTOLYZED YEAST AND OTHER YEAST EXTRA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LYZED YEAST AND OTHER YEAST EX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TASTE B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EXTRACT POWDER FLAVOR MATE 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li style="padding-left: 40px;">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2.68KG/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FM950-50 YEAST EXTRACT POWDER FLAVOR MATE 950, PACKING: 22.68KG/BAG,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FM950-50 효모 추출물 분말 FLAVOR MATE 950이 22.68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EXTRACT POWDER FLAVOR MATE 95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AST EXTRACT 85%, SALT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사료 제조용 원료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199.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2106.90-90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OF H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PREPARATIO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PLUS L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0ML X 1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PLUS LIME, PACKING: 250ML X 10BOTTLE/CT, USE: EDIBLE ○ 식용 허니 플러스 라임이 250ML씩 1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PLUS LIM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EY 87%, LIME JUICE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G03275A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0. 기타 조제 식료품 (2106.90-9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FOOD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학명은 CITES 대상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학명을 기재 - 예) 거래품명(학명): FISH OIL(SP: CAECOBARBUS GEERT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ME HEALTH LUTEIN OMEGA 3 TRI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PRODUC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1, 2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SHAPE(1), 기타⇒SHAPE(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0G X 10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PRIME HEALTH LUTEIN OMEGA 3 TRIPLE, PACKING: 250G X 10BOTTLE/CT, USE: EDIBLE ○ 체형 기타/식용 프라임 헬스 루테인 오메가 3 트리플이 250G씩 10병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MON OIL 92.2%, LUTEIN 7.6%, VITAMIN D3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연어성분의 오메가3제품으로 CITES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1. 과실주스 음료 (2202.99-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VERAGE OF FRUIT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NK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NEAPPLE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EVERAG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20ML X 12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NEAPPLE JUICE WITH NATA DE COCO, MODEL: 58633, PACKING: 320ML X 12EA/CT, USE: EDIBLE ○ 나타데코코가 들어간 식용 파인애플 주스, 모델명은 58633이고 320ML씩 병에 담아 12병을 1카톤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C2480BC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50%, PINEAPPLE JUICE 25%, NATA DE COCO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GAR, APPLE JUICE, GRAPE JUICE ○ 구체적인 함량을 추가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 과실이나 채소주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음)는 제200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2. 기타 무알코올 음료 (2202.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맥아음료: NON-ALCOHOLIC MALT BEVERAGE 2. 알로에음료: ALOE VERA BEVERAGE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ALCOHOLIC MALT BEVE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DR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75ML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MILK DRINK WITH MANGO, MODEL: 503694000, PACKING: 375ML X 10EA/CT,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고가 들어간 식용 코코넛우유, 모델명은 503694000이고 375ML씩 병에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MILK 74.5%, COCONUT WATER 10%, MANGO PUREE 10%, SUGAR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ALCOH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 과일이나 채소주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음)는 제200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3. 발포성 포도주 (2204.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LING W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MPAGNE LETE VAUTR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알코올 도수 등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50ML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MPAGNE LETE VAUTRAIN BRUT MILLESIME 2011 ALC.12.5% PACKING: 750ML X 10EA/CT, USE: EDIBLE ○ 식용 샴페인 레테 보트랑 브뤼트 밀레지메 2011년산, 도수는 12.5%이고 750ML씩 병에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X 6 BOTTL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DE LIQUID OF GRAPE 99.9%, SUGAR 0.05%, SULFUR DIOXIDE 0.025%, CARBON DIOXIDE 0.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WEIGHT: 45KG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주를 기본 재료로 한 음료는 제2205호에 분류,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은 제200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4.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2207.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ATURED ETHYL ALCOH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ED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ATURED HYDROUS EXTRA NEUTRAL ALCOH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ED LIQUIDS FOR HYDRAULIC TRANS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NATURED(비변성), DENATURED(변성)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변성방법 등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0KL/BUL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ATURED, HYDROUS EXTRA NEUTRAL ALCOHOL, BITREX 10PPM, PACKING: 1,000KL/BULK, USE: INDUSTRIAL ○ 공업용 변성 함수 엑스트라 중성 알코올, 변성방법은 BITREX 10PPM이고 1,000KL 벌크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ATURED FOR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HYL ALCOHOL 95%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성하지 않은 주정이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은 제2208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5. 라이(RYE) 위스키 (2208.3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YE WHI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COHO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STLEPIG STRAIGHT RYE WHISK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SK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NATURED(비변성)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도수 등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750ML X 5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ED, WHISTLE PIG STRAIGHT RYE WHISKEY, ALC.45% PACKING: 750ML X 5EA/CT, USE EDIBLE ○ 변성하지 않은 식용 휘슬 피그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 도수는 45%이고 750ML씩 병에 담아 5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 B80105-B80134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YE 51%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WEIGHT: 11.25KG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성하지 않은 주정이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은 제2208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6.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 (2301.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LS OF 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L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EAN STEAM DRIED FISH M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FLOUR(고운 가루), MEAL(거친 가루), PELLET(펠릿)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KG/BUL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FERTILIZER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UR, CHILEAN STEAM DRIED FISH MEAL, PACKING: 100KG/BULK, USE FEEDING ○ 사료용인 칠레산 찌서 건조한 어류의 고운 가루, 100KG씩 벌크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 731250J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TEIN 68%, MOISTURE 10%, FAT 10%, ASH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FEEDING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동식물성 잔재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동식물성 잔재물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뼈·뿔·딱딱한 껍질 등은 제외한 전 동물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7. 암염(岩鹽) [2501.00-1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MALAYA PINK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AL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MALAYA PINK FINE SALT 0.3MM-0.5MM, PACKING: 25KG/BAG, USE: EDIBLE ○ 식용 히말라야 핑크 솔트, 직경은 0.3MM에서 0.5MM이고 2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BLE SAL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 SAL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MALAYA SALT ○ 구체적인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러리 소금(CELERY SALT)과 같이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는 제21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8. 천일염 [2501.00-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용 천일염: EDIBLE SEA SALT 2. 비식용 천일염: INEDIBLE SEA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EDIBLE SEA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EDIBLE SOLAR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EDIBLE INDIAN SOLAR SALT 2MM, PACKING: 3KG/BAG, USE: INDUSTRIAL ○ 공업용 인도산 천일염, 직경은 2MM이고 3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SA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CL 9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 식용 천일염 ; EDIBLE SEA SALT <지정기간: 2019.8.1 ~ 2020.7.31.>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09. 청(靑)석면 (2524.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CIDOL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ASBEST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ASBESTOS, CAS NO: 12001-28-4, PACKING: 1G/PACK, USE: INDUSTRIAL ○ 공업용 청석면, CAS NO는 12001-28-4이고 1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4272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ASBESTOS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ASBESTOS ○ 구체적인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더 가공[카드(CARDED)·염색(DYED) 등]한 섬유상의 것과 석면의 완제품은 제681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0. 갈[褐]석면 (2524.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N ASBEST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N ASBESTOS, CAS NO: 12172-73-5, PACKING: 1G/PACK, USE: INDUSTRIAL ○ 공업용 갈석면, CAS NO는 12172-73-5이고 1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4144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N ASBESTOS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N ASBESTOS ○ 구체적인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석면[AMOSITE; 12172-7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더 가공[카드(CARDED)·염색(DYED) 등]한 섬유상의 것과 석면의 완제품은 제681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1. 백(白)석면 (2524.9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YSOT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ASBEST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ASBESTOS, CAS NO: 12001-29-5, PACKING: 1G/PACK,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백석면, CAS NO는 12001-29-5이고 1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617.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ASBESTOS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ASBEST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암석 형태인 가공하지 않은(CRUDE) 석면·원료 상태나 두들겨서 퍼거나 세척한 섬유 상태의 것(길이 등급으로 선별했는지에 상관없음)·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가루(POWDER)와 석면 웨이스트(WASTE)를 적용. 이 호에는 보다 더 가공[카드(CARDED)·염색(DYED) 등]한 섬유상의 것과 석면의 완제품은 제외(제6812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2. 방청유 [2710.19-74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CORROSI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MPING FLUID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BRICATING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LUBRICATING PREPARATIO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BRICATING OILS, LOT NO: S000763492,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 공업용 방청유, LOT NO는 S000763492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Z-5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BRICATING OIL 70%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C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녹방지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 가솔린 슬러지와 유연 안티녹 슬러지(제2620호), 석유나 역청유가 전 중량의 70% 미만인 조제품(제3403호, 제3819호),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 중량의 70%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이나 석유나 역청유 이외의 물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제3403호, 제3808호, 제3811호, 제3814호, 제3824호)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3. 오산화인 [2809.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PHOSPHORUS PENTAOX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OSPHORUS PENTAOX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 X 5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OSPHORUS PENTAOXIDE 99.5%, CAS NO:1314-56-3, PACKING: 500G X 5EA/CT, USE: RESEARCH ○ 순도 99.5% 연구실험용 오산화인,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1314-56-3이고 500G씩 병에 담아 5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75100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O5 99.5%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명세서 접수번호: 041706220186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오산화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4.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2826.19-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AMMONIUM OR SODIUM FLU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MONIUM OR SODIUM FLU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UORID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FLU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UORID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TYPE(품종): 01, 02, 03, 04 플루오르화암모늄⇒TYPE(01), 산성플루오르화암모늄⇒TYPE(02), 산성플루오르화나트륨⇒(03), 플루오르화나트륨(기타)⇒TYPE(04)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04)/SODIUM FLUORIDE CRYSTAL INDUSTRY GRADE 98%, CAS NO: 7681-49-4, PACKING: 25KG/BAG, USE: INDUSTRIAL ○ 순도 98% 공업용 플루오르화나트륨,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7681-49-4이고 2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4F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FLUORIDE 98%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 수입 신고증 제109-184777111972호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이플루오르화 암모늄[AMMONIUM BIFLUORIDE; 1341-4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나트륨[SODIUM FLUORIDE; 7681-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암모늄[AMMONIUM FLUORIDE; 12125-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5. 염화칼슘 [2827.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CHL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CHL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UARIUM PRODUC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FERTILIZER,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CHLORIDE 94% MIN, LOT NO: C3663, PACKING: 1,000KG/BAG, USE: INDUSTRIAL ○ 순도 94% 공업용 염화칼슘, LOT NO는 C3663이고 1,000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500M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CHLORIDE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취디졸-비씨지액 제조용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제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6. 마그네슘염화물 [2827.3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IDE OF MAGNES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HLOR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AGNES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FERTILIZER,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99%, LOT NO: M2807, PACKING: 5KG/BAG,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 의약품 마그네슘염화물, LOT NO는 M2807이고 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NO.: 7786-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의약품 제조용 원료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의약품 제조용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염화마그네슘[비스초파이트(BISCHOFITTE)]은 제2530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7. 크롬산칼륨 (2841.5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ASSIUM CHRO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HROMATE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ASSIUM CHRO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ASSIUM CHROMATE 99%, CAS NO: 7789-00-6, PACKING: 500G/PACK, USE: RESEARCH ○ 순도 99% 연구실험용 크롬산칼륨,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7789-00-6이고 500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ASSIUM CHROMATE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45039877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8. 아지드화물 (2850.0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AZ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AZIDE 98%, CAS NO: 26628-22-8, PACKING: 250G/PACK, USE: RESEARCH ○ 순도 98% 연구실험용 아지드화나트륨,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26628-22-8이고 250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AZIDE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NO:26628-22-8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지드화 나트륨[SODIUM AZIDE; 26628-22-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D(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III)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지드화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아지드화연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19. 염화에탄(염화에틸) [2903.11-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OETHANE (ETHYL CHL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OETHANE (ETHYL CHL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ML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OMETHANE 99.5%, CAS NO: 75-00-3, PACKING: 200ML X 10EA/CT, USE: RESEARCH ○ 순도 99.5% 연구실험용 염화에탄 용액,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75-00-3이고 200ML씩 병에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UMENTATION CHARG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OMETHANE 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5036SHBJ6334,5454932444900283918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염화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0. 요드메탄 [2903.39-3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DOM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DOMETHANE, REAGENT 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ML X 3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HYL IODIDE 97%, CAS NO: 74-88-4, PACKING: 500ML X 3EA/CT, USE: RESEARCH ○ 순도 97% 연구실험용 요드메탄 용액,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74-88-4. 500ML씩 병에 담아 3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ID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DOMETHANE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0-9-17-3185-1001 호(유독물질 수입신고증)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1. 엘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2903.8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기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기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D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D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ML X 3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DANE 95% CAS NO: 57-74-9, PACKING: 10ML X 3EA/CT, USE: RESEARCH ○ 순도 95% 연구실험용 클로르덴 용액,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57-74-9이고 10ML씩 병에 담아 3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666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LORDANE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150BCBV6140,802529688349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브로마이드(HEPTA CHLORO ALDRIN METHYL BROMID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덴[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0%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브로마이드 성분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2. 레시틴 (2923.2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ITH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PREPARATIO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IG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FEEDIN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ITHIN 90%, LOT NO: 827122, PACKING: 2KG/DRUM, USE: COSMETICS ○ 순도 90% 화장품용 레시틴, LOT NO는 827122이고 2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IGHT CHARG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ITHIN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001-119242/2018.10.01 화학물질 확인번호: 041810120157(2018.10.12)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⑮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 원료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3. 티오산 [2930.90-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OAC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THIOGLYCOLATE SOLUTION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OGLYCOLIC AC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G X 2PACK/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OGLYCOLIC ACID 98%, CAS NO:123-93-3, PACKING: 100G X 2PACK/CT, USE: RESEARCH ○ 순도 98% 연구실험용 티오산,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123-93-3이고 100G씩 팩에 담아 2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7881-1GMESO-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OACIDS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50 LB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캅토아세트산[(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126-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렌 메르캅토아세테이트[ETHYLENE MERCAPTOACETATE; 123-8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 법 확인 대상 성분 미포함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4. 기타 비타민C와 이들의 유도체 [2936.27-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C DERIV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CORBIC ACID 6-PALMI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COSMETICS, USE: FEEDING,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CORBIC ACID 6-PALMITATE 99%, LOT NO: UQ80106025, PACKING: 5KG/BAG,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 연구실험용 비타민C, LOT NO는 UQ80106025이고 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CORBIC ACID 6-PALMITATE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97996654504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성의약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실험실 시약으로 식품 아님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타민 C2 나 P (씨트린 · 헤스페리딘 · 루토시드(루틴) · 에스쿨린)는 제2938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5. 니코틴과 그 염 [2939.79-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니코틴과 그 염(니코틴 함유량 1% 미만): NICOTINE AND ITS SALTS(NICOTINE LESS THAN 1%) 2. 니코틴과 그 염(니코틴 함유량 1% 이상): NICOTINE AND ITS SALTS(NICOTINE NOT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AND ITS SALTS(NICOTINE NOT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MANUFACTURING METHOD(제조방법): 01, 02 천연⇒(01), 합성⇒(0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UFACTURING METHOD(02)/A12399 NICOTINE 99.9%, CAS NO: 54-11-5, PACKING: 1,000KG/DRUM,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9% 공업용 A12399 합성 니코틴 용액,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54-11-5 이고 1,000KG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1844I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NICOTINE:” 기재 후 니코틴 농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041612120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NICOTINE AND ITS SALTS) 및 그 중 하나를 1%(W/W : 중량비율)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니코틴 농도를 “NICOTINE:” 기재한 후 “%” 를 포함하여 반드시 신고 ■ 화학물질 필요정보를 기재서류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를 확인하여 니코틴 함량 확인 		

226.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 의약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포장] (3002.1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OF BLOOD FRACTION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G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 BIOLINE SYPHILIS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ML X 5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PHILIS 3.0 MODEL: 06FK10, PACKING: 10ML X 30VIAL, USE: MEDICINAL ○ 매독균항체 진단용 키트 10MG, 모델명은 06FK10이고 10ML씩 약병에 담겨 3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INITY SYPHILI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수입: 인혈청 알부민, 프라스마네이트, 혈청 ○ 원료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은 제3502호, 글로불린[혈액글로불린과 혈청글로불린은 제외]은 제35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7. 면역혈청 (3002.12-9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S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LOOD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ANTI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ML X 50TUB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MBINANT ANTIBODY N3-8 DERIVED FROM HUMAN OR HUMAN ORIGIN SAMPLE, LOT NO: M21425-01, PACKING: 20ML X 50TUBE/BOX, USE: RESEARCH ○ 인간 샘플에서 채취한 재조합된 연구실험용 면역혈청, LOT NO는 M21425-01이고 20ML씩 튜브에 담아 5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LING/ICE CHARG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은 제3502호, 글로블린[혈액글로블린과 혈청글로블린은 제외]은 제35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8.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3002.12-904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 PLA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ORATORY CELL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PLA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ML X 10PACK/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PLASMA, LOT NO: P100001081, PACKING: 500ML X 10PACK/BOX,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 사람 혈장, LOT NO는 P100001081이고 500ML씩 팩에 담아 10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OUT RECEIPT AND STORAGE CHARGES 1/5/2019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 가축전염병예방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사람혈청알부민, 프라즈마네이트, 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은 제3502호, 글로불린[혈액글로불린과 혈청글로불린은 제외]은 제35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29.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포장) (3002.15-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MUNOLOGICAL PRODUCTS, PACKING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ORATORY REA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INICAL TRIAL MED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ML X 5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RATUMUMAB 400MG, MODEL: D11-C04, PACKING: 5ML X 5VIAL/BOX,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다라투무맙 400MG, 모델명은 D11-C04이고 5ML씩 물약병에 담겨 5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ORT PACK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수입: 인혈청 알부민, 프라스마네이트, 혈청 ○ 원료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0. 기타 면역물품 (3002.1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브리노겐과 피브린: FIBRINOGEN AND FIBRIN 2. 혈액알부민(치료용 또는 예방용): BLOOD ALBUMIN PREPARED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3. 단일클론의 항체: MONOCLONAL ANTIBODIES 4. 항체조각: ANTIBODY FRAGMENTS 5. 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 ANTIBODY CONJUGATES AND ANTIBODY FRAGMENT CONJUGATES 6.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OCLONAL ANTIBO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A FRACTION V, 50G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OCLONAL ANTI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BLOOD AND SERUM ○ 타 세번의 거래품명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ML X 10PACK/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OCLONAL ANTIBODY, LOT NO: AVEGF408-3, PACKING: 10ML X 10PACK/CT, USE: MEDICINAL ○ 의약품인 단일클론 항체, LOT NO는 AVEGF408-3이고 10ML씩 팩에 담아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LIDATED TEMPERATURE CONTROLLED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 가축전염병예방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사람혈청알부민, 프라즈마네이트, 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231. 인체의약품 백신 (3002.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CCINES FOR HUMAN MEDI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RMACEUTICAL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DRUG SUB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UG SUBSTANC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생백신(ACTIVATED), 사백신(INACTIVATED) 여부 등을 함께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ML X 12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OF INACTIVATED CELL 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DRUG SUBSTANCE, PACKING: 1ML X 12VIAL/BOX, USE: MEDICINAL ○ 의약품인 일본뇌염 바이러스 사백신 샘플, 1ML씩 물약 병에 담아 12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30130.01LOT NOKV0018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KAYAMA STRAI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 AROLC173A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대한적십자사 수입: 인혈청 알부민, 프라스마네이트, 혈청 ○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2. 미생물 배양체 (3002.90-4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BIAL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ING PREPARATION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TOBACIL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RTILIZ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FEEDING, USE: FERTILIZER,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TOBACILLUS SPRAY-DRIED POWDER(HET KILLED), LOT NO: 45498, PACKING: 1KG/BAG, USE: EDIBLE ○ 식용 락토바실러스 분무 건조 가루, LOT NO는 45498이고 1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21 400B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주명·함량, 물품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 변경 가능성으로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TOBACILLUS SUBTILIS×10⁸CFU/G, SUGAR 60%, CALCIUM LAC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RIAL NO 90656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㉗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상세 항목은 HS 해설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세 항목은 HS 해설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 및 진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유산균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 법 확인 대상 성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주명·함량(LACTOBACILLUS SUBTILIS×10⁸CFU/G), 물품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세번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3.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3002.90-5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VIR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N INFLUENZA VIR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US AND ANTI-VIR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ML X 25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FEEDING, USE: FERTILIZER,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S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LOT NO: 160418, PACKING: 1.5ML X 25VIAL/BOX,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험용인 구체적 바이러스 샘플, LOT NO는 160418. 1.5ML씩 물약 병에 담아 25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P6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DV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R0482-15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 규제등에관한법률 (상세 항목은 HS 해설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세 항목은 HS 해설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 및 프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에 따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신고 시 성분을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4.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의약품 (3003.1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CONTAINING PENICILL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CONSISTING OF TWO OR MORE CONSTITU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XICILLIN AND CLAVULANATE POTASS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XICILLIN AND CLAVULANATEPOTASSIUM (4:1), LOT NO: HF7078D3, PACKING: 1KG/DRUM,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칼륨의 혼합 용액(4:1), LOT NO는 HF7078D3이고 1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N60580(202.3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대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5. 기타 항생물질 함유한 혼합의약품 (3003.2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CONTAINING ANTIBI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RITHROMYCIN GRAN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01)칼로람 페니콜제제,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CLARITHROMYCIN 37.8-46.2%, LOT NO: 1805202732, PACKING: 3KG/DRUM,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순도 37.8-46.2% 클래리스로마이신, LOT NO는 1805202732 이고 3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I024100050, EXP: 30.11.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6. 비타민제제 (3003.90-93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CONTAINING VITAM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TAMIN B12 1% (PHARMA GRADE), LOT NO: S180504, PACKING: 5KG/BAG, USE: MEDICINAL ○ 의약품인 비타민 B12 1% 가루, LOT NO는 S180504이고 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946530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7. 기타 혼합의약품 (3003.90-99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CONSISTING OF CONSTITU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GA 3 CAPS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01)로열젤리체제,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0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OMEGA 3 CAPSULE, LOT NO: 18219, PACKING: 4,000EA/CT, USE: ANIMAL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의약품인 오메가3 캡슐, LOT NO는 18219이고 4,000개를 1카톤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2236(200KG), 702237(20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COLD V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대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8.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소매의약품 (3004.1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CONTAINING PENICILLIN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ASY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G X 30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ASYN IV, LOT NO: T50089, PACKING: 3G X 30VIAL/BOX,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우나신 IV, LOT NO는 T50089이고 3G씩 물약병에 담아 30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 306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39.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3004.2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TUBERCULOSIS LEVOFLOXAC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TUBERCULOSIS PREPARATIONS, ANTHELMINTIC PREPA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그대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MG X 50TABLET/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TUBERCULOSIS LEVOFLOXACIN, LOT NO: ELJ100, PACKING: 250MG X 50TABLET/PACK, USE: MEDICINAL ○ 의약품인 항결핵제 레보플록사신 250MG, LOT NO는 ELJ100이고 정제 50개를 1팩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LITY ANALYSING CHARG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0. 기타 항생물질 함유한 소매의약품 (3004.20-99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CONTAINING ANTIBIOTIC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CID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MG X 10VIAL/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CIDAS, LOT NO: R015900, PACKING: 50MG X 10VIAL/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칸시다스 시약, LOT NO는 R015900이고 50MG씩 병에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1. 인슐린을 함유한 소매의약품 (3004.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CONTAINING INSULIN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INICAL TRIAL MED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LIN LISP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ULIN LISPRO, LOT NO: C1079648, PACKING: 5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인슐린라이스프로 용액, LOT NO는 C1079648이고 5개를 1 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4515032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2.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CONTAINING PITUITARY HORMONE FOR RET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TASA SLOW RELEASE TABL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INICAL TRIAL MEDICATION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3MG X 2VIAL/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ELLED KIT CONTAINING 1XGENOTROPIN (SOMATROPIN), LOT NO: X66426, PACKING: 5.3MG X 2VIAL/CT, USE: MEDICINAL ○ 의약품인 제노트로핀 포함 키트, LOT NO는 X66426이고 5.3MG씩 물약병에 담아 2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000032703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는 3004.39-1020에 분류.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3. 기타 비타민 함유한 소매의약품 (3004.5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용 의약품: ANIMAL MEDICAMENT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L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RI-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G X 5TUB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RI-PLUS GEL 120, LOT NO: 6Y9Y, PACKING: 5G X 5TUBE/BOX, USE: ANIMAL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의약품인 뉴트리플러스 겔 120, LOT NO는 6Y9Y이고 5G씩 튜브 포장하여 5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000032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4. 아스피린제제 (3004.90-91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CONTAINING ASPIRIN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PIRIN PROTECT 100MG T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0MG X 10TABLET/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PIRIN PROTECT 100MG, PACKING: 100MG X 10TABLET/BOX, USE: MEDICINAL ○ 의약품인 아스피린 100MG 정제, 10알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5. 항히스타민제제 (3004.90-92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CONTAINING ANTI-ALLERGIC AGENT FOR RET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YZ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MG X 10TABLET/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YZAL, LOT NO: 18B07, PACKING: 50MG X 10TABLET/BOX, USE: MEDICINAL ○ 의약품 씨알 50MG 정제, LOT NO는 18B07이고 10알을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1821-0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6. 기타 소매용 의약품 (3004.90-99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MINT FIELD INHA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CC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PERMINT FIELD INHALER, LOT NO: 8375101, PACKING: 2CC X 1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페퍼민트 필드 흡입 용액, LOT NO는 8375101이고 2CC씩 병에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15032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페퍼민트 흡입용액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의약품은 제300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7. 반창고 (3005.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 PLAS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WOVEN SURGICAL TA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ROL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WOVEN SURGICAL TAPES(BIOPORE), LOT NO 801145177, SIZE: W 12.5MM X L 9.1M, PACKING: 5ROLL/BOX, USE: MEDICINAL ○ 의약품 부직포 외과용 테이프, LOT NO는 801145177이고 사이즈는 W 12.5MM X L 9.1M, 5개 롤이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TAP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151-00171000637609231378536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61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8.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3005.1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복재: DRESSING 2. 파스: PAS 3. 테이프: TAPES 4. 냉감시트: COOLING GEL SHEET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LING GEL 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NG PLA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LING GEL 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ROL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ETSUSAMA COOLING SHEET, LOT NO: 800227119, SIZE: W 4CM X L 12CM, PACKING 6ROLL/BOX, USE: MEDICINAL ○ 의약품 네츠사마 냉감시트, LOT NO는 800227119이고 사이즈는 W 4CM X L 12CM, 6개 롤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X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투여시스템 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은 제3004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49. 탈지면 (3005.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D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D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ROL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BANDAGE, LOT NO: 4418469, SIZE: W 15CM X L 12CM, PACKING: 30EA/BOX, USE: MEDICINAL ○ 의약품 탈지면, LOT NO는 4418469 이고 사이즈는 W 15CM X L 12CM, 30 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W-3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PLASTIC BAGS/CS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61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0. 거즈 (3005.9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U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UZE SPO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ORBENT GAUZE SPONGE, LOT NO: 190224, SIZE: W 5CM X L 5CM, PACKING: 30EA/BOX, USE: MEDICINAL ○ 의약품 흡수성 거즈 스펀지. LOT NO는 190224이고 사이즈는 W 5CM X L 5CM, 30개씩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0002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ROLLS/DOZEN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즈제품을 만들기 위한 평직물 상태의 원단은 제52류로 분류 ■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61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1. 붕대 (3005.9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D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ASTIC BAND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ROLL/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ELASTIC BANDAGE, LOT NO: 900204171, SIZE: W 10CM X L 2.15M, PACKING: 20ROLL/CT, USE: MEDICINAL ○ 의약품인 면 재질의 탄력 있는 붕대, LOT NO는 900204171이고 사이즈는 W 10CM X L 2.15M, 20롤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W PACK), BULK - PACKED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CM X 4.5M STRETCHED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619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2.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3005.90-4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DRESS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HEALTH CARE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FOAM DRES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D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7070.03, DRESSING OCCLUSIVE HYDROGEL, HYDROPHILIC DRESSING MEDIFOAM, LOT NO: 800101112, SIZE: W 20CM X L 20CM, PACKING: 10EA/BOX, USE: MEDICINAL ○ 의약품인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제, 분류번호는 B07070.03인 습윤성 메디폼, LOT NO는 800101112이고 사이즈는 W 20CM X L 20CM, 10개씩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DROPHILIC POLYURETHANE FOAM 98%, PROVIDONE-IODIN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UCH LOT NO:874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 동물성의약외품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제, 비고착성창상피복제,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3. 기타 소매용 의료 용품 (3005.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드레이프: SURGICAL DRAPE 2. 패치: PATCH 3. 액체피복재: LIQUID DRESSING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GICAL DR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ILITY DR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ND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ILITY DRAPE, MODEL: JSS-22, PACKING: 50EA/BOX,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용인 유틸리티 드레이프, 모델명은 JSS-22이고 5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SN-SP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물질을 도포나 칩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4. 살균한 봉합재 (3006.10-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RILE SUTUR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SSING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CRYL PLUS V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SSING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SILK BLK, MODEL: W537H, PACKING: 5EA/BOX, USE: MEDICINAL ○ 의약품인 USSILK BLK 봉합재, 모델명은 W537H이고 5개씩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 - CO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32-001SE72838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폴리글리콜산봉합사, 폴리글리코네이트봉합사, 폴리글락틴봉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기타 사유: BLK봉합재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하지 않는 봉합재는 특성에 따라 해당 부분에 분류(예: 캐터트(제4206호)·견계·방섭용 섬유계 등 (제11부)·금속선(제71류 또는 제15부)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5. 살균한 외과용 · 치과용 기타 유착방지제 (3006.10-5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ADHESION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ADHESION GEISTLICH BIO-G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SUPP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ADHESION GEISTLICH BIO-GIDE, LOT NO: 7BYSEP065A, PACKING: 10EA/BOX,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험용인 가이스트리히 치과용 유착 방지제, LOT NO는 7BYSEP065A 이고 10개씩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SUE SAM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PORCINE COLLAGE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 NO54521316OK37139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멸균견제불합사, 멸균견제불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3006.10-5010) 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3006.10-5020) 등 특게 세번 물품이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6. 혈액형 분류용 시약 (3006.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GROUPING RE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GROUPING RE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SUPPLI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ML X 10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02010.01, IVD REAGENTS FOR ABO-RHD BLOOD TYPING RED CELL AGGLUTINATION, ANTI-SM C BIOCLONE, LOT NO: SCB409AX, PACKING: 5ML X 10VIAL/BOX,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인 ABORHD혈액형검사시약, 분류번호 D02010.01인 항SM C 바이오클론, LOT NO는 SCB409AX이고 5ML씩 물약병에 담아 1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730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HDIA ANTI-A, B, D 10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O-RHD혈액형검사시약, ABO-RHD이외의혈액형검사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257.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3006.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ACIFYING PREPARATIONS FOR X-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RMACEUTICA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HEXOL IMAX SOLUTION FOR INJ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SUPPLI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ML X 10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HEXOL IMAX SOLUTION FOR INJECTION LOT NO: 16LK8798, PACKING 150ML X 10VIAL/BOX,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인 이오헥솔 아이맥스 솔루션 주사 용액, LOT NO는 16LK8798이고 150ML씩 물약병에 담아 1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HIODIZED OI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 분류하는 진단용 시약(미생물성 진단용 시약 포함)은 주사나 입 등으로 투여됨. 환자에 투여하지 않는 진단용 시약(예: 혈액·뇨 등 검사용과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재료에 따라 그 물품이 해당하는 합당한 호에 분류(제28류·제29류·제3002호·제3822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8. 환자 투여용 진단용 시약 (3006.3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GNOSTIC RE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TRAVIST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GNOSTIC REA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0.2ML X 60VIA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REHENSIVE SKIN TEST CABINET, LOT NO: 850101, PACKING: 0.2ML X 60VIAL/BOX,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 컴프리헨시브 피부 진단용 시약, LOT NO는 850101이고 0.2ML 씩 물약병에 담아 6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EO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 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동물용의약품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 분류하는 진단용 시약(미생물성 진단용 시약 포함)은 주사나 입 등으로 투여됨. 환자에 투여하지 않는 진단용 시약(예: 혈액·뇨 등 검사용과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재료에 따라 그 물품이 해당하는 합당한 호에 분류(제28류·제29류·제3002호·제3822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59. 치과용 시멘트 (3006.4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C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DENTAL FILLING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BOND GLASIONOMER C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0-0272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G/PACK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1010.01, CEMENT WATER-BASED GLASS POLYALKENOATE, GLASIONOMER CEMENT TYPE II, LOT NO: C710HFE134, PACKING:15G/PACK,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인 치과용수성시멘트, 분류번호 C11010.01인 글라시오노머 시멘트 타입2, LOT NO는 C710HFE134이고 15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D A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ASS POLYALKENOAT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882-001EH11982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치과용수성시멘트, 치과용산화이연비유지놀시멘트, 치과용산화이연유지놀시멘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곱게 분쇄한 플라스틱과 치과용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각각 제2520호·제3407호). 또한 외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들고 세포간질이 흡수되어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도록 결정체 상태의 세포간질을 제공하는 뼈 이식 대체물은 제외(제3004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0. 치과용 충전제 (3006.4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FIL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FIL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IA DIRECT SYRINGE FAR EAST P-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G/SYRINGE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06050.01, RESIN FILLING COMPOSIT, GRADIA DIRECT SYRINGE FAR EAST P-A1, LOT NO: 596931IPS, PACKING: 4G/SYRINGE,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험용인 심미수복용복합레진, 분류번호 C06050.01인 그라디아 다이렉트 주사 용액, LOT NO는 596931IPS이고 4G씩 주사기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 A2 10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 FILLED HYBRID RESI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직접금충전제, 치과아말감용합금, 치과용수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곱게 분쇄한 플라스틱과 치과용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각각 제2520호·제3407호). 또한 의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들고 세포간질이 흡수되어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도록 결정체 상태의 세포간질을 제공하는 뼈 이식 대체물은 제외(제3004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1. 뼈 형성용 시멘트 (3006.4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E RECONSTRUCTION C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E G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0.5G/VIAL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3190.01, ORTHOPAEDIC CEMENT NON-MEDICATED, INTER OSS, LOT NO: IO1807103, PACKING: 0.5G/VIAL,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 골시멘트, 분류번호 B03190.01인 인터오스 용액, LOT NO는 IO1807103 이고 0.5G씩 물약병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3504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 METHYL METHACRYLAT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041G18291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골시멘트, 향균골시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곱게 분쇄한 플라스틱과 치과용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각각 제2520호·제3407호). 또한 의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들고 세포간질이 흡수되어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도록 결정체 상태의 세포간질을 제공하는 뼈 이식 대체물은 제외(제3004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2. 구급상자와 구급대 (3006.5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AID K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INING BOX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VIVAL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CAS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VIVAL KIT 330 AIRCRAFT PARTS, MODEL: 5A2925-52, PACKING: 5EA/CT, USE: MEDICINAL ○ 의약품인 비행기용 구급상자, 모델명은 5A2925-52이고 5개씩 1카톤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DY SE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용의 정교한 의료대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3. 피임성 화학조제품 (3006.6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CONTRACEPTIVE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HEMICAL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I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1TABLET X 10BOX/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ILON, LOT NO: R018219, PACKING: 21TABLET/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머시론 피임약, LOT NO는 R018219이고 21개씩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17/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4. 폐(廢)의료용품(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3006.92-4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TE PHARMACEUTIC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HEADING 30.05 OR 3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GNOSTIC RE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DIC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G X 10SPRAY/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09010.01, IVD REAGENTS FOR OTHER TESTS(EXPIRED), OMNISCAN 0.5 PFS, PACKING: 15ML X 10EA / BOX, USE: RESEARCH ○ 연구시험용,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타 검사용 시약, 의료기기 분류번호 D08010.02, 15ML씩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05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A 287MG(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 린넨사, 폴리에스터봉합사 등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A4030) ○ 폐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용품(예: 유효기간의 종료)이 분류되며, 유효기간이 남은 물품은 제외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5. 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ID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COL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SET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ID RED 27 POWDER, LOT NO: T1800101, PACKING: 25KG/BAG,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빨간색 산성 염료 가루, LOT NO는 T1800101이고 2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AP4207038-100K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6.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3-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DYE STUF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HYL VIOLET 2B, PACKING: 25KG/DRUM,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메틸바이올렛 염기성 염료 용액, 25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METHYL VIOLET 2B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17102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MALACHITE GREEN, SALTS)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4-[A-[4-(디메틸아미노)페닐]벤질리딘]시클로헥사-2,5-디엔-1-일리딘] 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및 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7.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4-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DIRECT DYES YELLOW, PACKING: 25KG/BAG, USE: INDUSTRIAL ○ 공업용 노란색 직접 염료 가루, 2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ER DYE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YELLOW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S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렉트 블랙 38[C.I. DIRECT BLACK 038; 1937-3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렉트 브라운 95[C.I. DIRECT BROWN 095; 16071-86-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다이렉트 블랙 38 및 다이렉트 브라운 95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8.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4.17-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S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DYE STU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DYESTUFF BLUE 15:3, LOT NO: 44509, PACKING: 25KG/BAG,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파란색 안료 색소 가루, LOT NO는 44509이고 25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2619F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69. 기타 합성 유기 착색제 (3204.1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TURE OF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TA CAROT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CAN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TA CAROTENE, PACKING: 20KG/CAN,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베타 카로틴 용액, 20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 OIL 69%, BETA-CAROTENE 30%, VITAMIN 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2018514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2-나프틸아민과 그 염산염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합성 유기착색제는 제3212호에 분류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0. 기타 합성 유기 생산품 (3204.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YNTHETIC ORGANIC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LLIANT FLUORESCENT INK BASE P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PRODU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ML X 12CAN/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LLIANT FLUORESCENT INK BASE PINK, LOT NO: 1815-1802, PACKING: 20ML X 12CAN/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형광성의 분홍색 합성 유기 염료, LOT NO는 1815-1802이고 20ML 씩 캔에 담아 12개에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착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것) 제29류로 분류 ■ 루미노포로 사용하는 종류의 유기물끼리 혼합되었거나, 합성 유기착색제와 혼합된 것은 이 호에 분류. 그러나 무기안료와 혼합된 것은 제3206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1. 플라스틱 안료 색소 (3205.0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PLASTIC COLOUR B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MATERIA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PLASTIC COLOUR B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MATERIA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PLASTIC COLOUR BASES 50453982 MICROLEN YELLOW 2070 MCN, LOT NO: 8757, PACKING: 5KG/BOX, USE: INDUSTRIAL ○ 공업용 마이크로렌 노란색 플라스틱 안료 색소, LOT NO는 8757이고 5KG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32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안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2.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S BASED ON CHROMIUM COMPO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URING A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TIUM CHROMATE L203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KG/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TIUM CHROMATE L203E, CAS NO: 7789-06-2, PACKING: 2KG/BOX,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험용 크로뮴산 스트론튬 가루, 화학물질 등록번호는 77775-11-3이고 2KG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TIUM CHROMATE 50%, ETC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중크로뮴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로뮴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로뮴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로뮴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수 크로뮴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생활화학제품및생활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 ■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의 착색제(예: 염기성 탄산염 ; 철·납·크로뮴·아연의 산화물 ; 아연·수은의 황화물 ; 크로뮴산납(제28류) ; 슈바인푸르트그린(아세트아비산동)는 제294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3.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49-6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S BASED ON CADMIUM COMPO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MIUM PIG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MIUM PIGMENT RED 208, CAS NO: 8048-07-5, PACKING: 10KG/BAG,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빨간색 카드뮴화합물 안료, 화학물질 번호는 8048-07-5이고 10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MIUM 24% M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카드뮴화합물 25% 미만 함유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함유량을 기재 ■ 화학적으로 단일인 무기의 착색제(예: 염기성 탄산염; 철·납·크로뮴·아연의 산화물; 아연·수은의 황화물; 크로뮴산납(제28류); 슈바인푸르트그린(아세트아미산동)는 제294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4.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3206.4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LOURING MA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ITTE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01, 02 감청 또는 육시안철엽을 기재로 함⇒SHAPE(01), 기타⇒SHAPE(0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G/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NAIL GLITTER 003T-XKLS23, LOT NO: K-01897, PACKING: 10G/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네일 글리터 003T-X, LOT NO는 K-01897이고 10G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I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IL 100%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토(제2507호), 탄산칼슘(제2509호·제2836호), 황산바륨(제2511호·제2833호), 규조토(제2512호), 슬레이트(SLATE)(제2514호), 백운석(제2518호), 탄산마그네슘(제2519호·제2836호), 석고(제2520호), 석면(제2524호), 운모(제2525호), 활석(제2526호), 방해석(ICELAND SPAR)(제2530호), 수산화알루미늄(제2818호), 앞의 물품 중 두 가지 이상 물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3824호)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5. 기타 에나멜 함유 페인트 (3209.90-901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S (INCLUDING ENAM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PA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A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CAN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PAINTS, LOT NO: 100038001, PACKING: 25K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에나멜을 함유한 수성 페인트, LOT NO는 100038001이고 25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인트와 바니시를 포함한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는 물질 중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208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6. 기타 페인트 (3210.00-109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③0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AINTS (INCLUDING ENAM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③1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LSON AEROSOL PA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AI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③3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ML X 12SPRAY/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LECTIVE SPRAY INVISIBLE BRIGHT, MODEL: AF1E34C, PACKING: 100ML X 12SPRAY/BOX,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인비지블 브라이트 반사 스프레이, 모델명은 AF1E34C이고 100ML씩 스프레이에 담겨 12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PARTS(PA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③4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④9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루 페인트(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 등을 함유하며 열 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목적물에 사용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7. 스탬프용 박[箔] (3212.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MPING FO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FIN MTS SATINGLOSS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MPING FO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ING TAP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ROLL/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MPING FOILS_GRAY PARTS FOR MOBILE PHONE SM-G892A GH01-01322A, LOT NO: L1166, PACKING: 10ROLL/BOX, SIZE: W 1.34M X L 6.000M,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핸드폰 (모델명: SM-G892A, GH01-01322A)에 부착하는 회색 스탬프용 박, LOT NO는 L1166이고 사이즈는 W 1.34M X L 6.000M, 10롤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011162737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IL PAP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WT: 9KG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연이나 해머링으로 만든 금속박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예: 제7108호의 금박·제7410호의 구리박·제7607호의 알루미늄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8.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S PACKING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TAIL PACKING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OZ X 10CAN/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TAIL PACKING DYESTUFF ARIATE LEAF GREEN, LOT NO: 87754, PACKING: 8OZ X 10CAN/BOX,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 포장을 한 공업용의 초록색 염료, LOT NO는 87754이고 8OZ씩 캔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MAI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문신용 염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용 물감· 학생용 물감· 간판도장공용 물감· 색조 수정용 물감· 게임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모양)· 튜브들이· 병들이· 접시들이와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은 제3213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79. 도장용 충전제 (3214.1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ERS ' FIL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SEAL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L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L X 10SPRAY/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SEALANT, MODEL: 1440B1, PACKING: 3L X 10SPRAY/BOX,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실리콘 충전제, 모델명은 1440B1이고 3L씩 스프레이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 1440 B 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RUBBER 80%, ECT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 3277, TY.2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접합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는 제3006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0. 인쇄용 흑색 잉크 (3215.1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PRINTING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FOR INKJET PRINTING MACHIN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0ML X 5PACK/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REGGIANI IRIS BLACK, LOT NO: 78070983, PACKING: 600ML X 5PACK/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검정색 프린트 잉크, LOT NO는 78070983이고 600ML씩 팩에 담아 5팩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용 잉크·토너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너(카본 블랙과 열가소성 수지의 혼합)와 캐리어(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하는 것은 제3707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1. 인쇄용 기타색 잉크 [3215.1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색의 것: RED 2. 노란색의 것: YELLOW 3. 파란색의 것: BLUE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PRINTING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INK FOR PRI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STAR HI-PRO YELLOW PRINTING INK, LOT NO: WP810275,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DIGISTAR HI-PRO 노란색 프린터 잉크, LOT NO는 WP810275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인쇄용 잉크·토너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너(카본 블랙과 열가소성 수지의 혼합)와 캐리어(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하는 것은 제3707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2. 기타 잉크 (3215.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MARKER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ML X 10PACK/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MARKER (BM)BLUE, LOT NO: 1030418-2, PACKING: 10ML X 10PACK/BOX,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파란색 보드마카 잉크, LOT NO는 1030418-2이고 10ML씩 팩에 담아 10팩을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펜의 교환대치심으로 볼포인트와 잉크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제9608호에 분류하고 단순히 잉크만 충전되어 있는 보통 만년필용의 카트리지는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3. 기타 감귤류 정유 (3301.1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맨더린: OF MANDERINE 2. 클레멘타인: OF CLEMENTINE 3. 라임: OF LIME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OIL OF L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M ESSENC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E ESSENTIAL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41-5 LIME ESSENTIAL OIL DISTILLED TERPENELESS, LOT NO: 0000102548, PACKING: 10KG/DRUM,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4641-5 테르펜이 없는 증류된 라임 정유, LOT NO는 0000102548이고 10KG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E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NO: 8008-26-2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감소효과를 주는 조제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화장품으로 조제된 경우에는 제3304호 또는 제3307호등에 분류되어 약사법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 ■ 추출할 때 사용한 소량의 용제를 함유하는 것은 포함되나, 희석제나 증량제를 첨가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330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284. 기타 감귤류 외의 정유 (3301.2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질 또는 바디안의 것: OF BADIAN OR BASIL 2. 바닐라 또는 로즈메리의 것: OF VANILA OR ROSEMARY 3. 자스민 또는 파인의 것: OF JASMINE OR PINE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OIL OF ROSE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GRANC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OILS OF ROSE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OUND FLAVO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OILS OF ROSEMARY, LOT NO: 0000110829, PACKING: 10KG/DRUM,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로즈메리 정유, LOT NO는 0000110829이고 10KG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SENTIAL OI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EMARY OI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IFF NO 33012941 34129/LH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감소효과를 주는 조제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화장품으로 조제된 경우에는 제3304호 또는 제3307호등에 분류되어 약사법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 ■ 추출할 때 사용한 소량의 용제를 함유하는 것은 포함되나, 희석제나 증량제를 첨가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330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5. 기타 올레오레진 (3301.90-48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질 또는 바디안의 것: OF BADIAN OR BASIL 2. 시나몬의 것: OF CINNAMON 3. 로즈메리의 것: OF ROSEMARY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ORESIN OF ROSE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ESSENTIAL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ORESIN OF ROSE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DRUM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ORESIN OF ROSEMARY, LOT NO: C6-0330-180613, PACKING: 5KG/DRUM, USE: EDIBLE ○ 식용인 로즈메리 올레오레진, LOT NO는 C6-0330-180613이고 5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IN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EMARY EXTRACT(OLEORESI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IFF NO33019030 38103/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올레오레진은 제1301호, 바닐라올레오레진은 제1302호, 추출할 때 사용한 소량의 용제를 함유하는 것은 포함되나, 회석제나 증량제를 첨가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330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6.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302.10-2011)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㉑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OUND FLAVO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㉒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APPLE FLAV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MPOUND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㉓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APPLE FLAVOR JAX-5888, LOT NO: 11910121, PACKING: 1KG/CAN, USE: EDIBLE ○ 식용인 JAX-5888 사과향 알코올성 음료, LOT NO는 11910121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WEIGHT 8K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㉔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PYLENE GLYCOL 77%, ETHANOL 8%, APPLE EXTRACTS 7.55%, APPLE FLAVOUR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00530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㉕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제조용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제22류에 분류되는 완제품 주정음료(예: 꼬냑, 리큐르, 고량주, 위스키 등)와는 구별되는 물품임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7. 향수 (3303.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U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ATURES SET TR 18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 MALONE LONDON RR COLOG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ERFUM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ML X 5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 MALONE LONDON RR COLOGNE - BLACKBERRY&BAY, MODEL: L8CK010000, PACKING: 100ML X 5EA/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조말론런던 블랙베리엔 베이 코오롱, 모델명은 L8CK010000 이고 100ML씩 담아 5개를 1상자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39034MIS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는 제3307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8. 화장수 (3303.0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ILET W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DY M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30ML X 10SPRAY/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MUSK BODY MIST, MODEL: WHS2090, PACKING: 230ML X 10SPRAY/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화이트 머스크향 바디 미스트, 모델명은 WHS2090이고 230ML씩 스프레이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826505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용 비니거는 제3304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89. 립스틱 (3304.1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 MAKE-UP PREPARATION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 MAKE-UP PREPARATION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OZ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PLIFIED LIPSTICK-DUBON, MODEL: M3LN110000, PACKING: 1OZ X 2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앰플리파이드 립스틱 튜브, 모델명은 M3LN110000이고 1OZ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0600272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0.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 (3304.1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립글로스: LIP GLOS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 BA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 LIP BA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5G X 1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OR ADDICT LIP GLOW COLOR AWAKENING HYDRATING LIP BALM PINK, MODEL: F202703005, PACKING: 3.5G X 10CASE/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디올 애딕트 립 글로우 컬러 어웨이크닝 하이드레이팅 립밤, 모델명은 F202703005이고 3.5G씩 케이스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 T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1. 아이섀도 (3304.2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 SHADO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UP KI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EYE SHADO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 MAKE-UP PREPARATION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0.8G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NZE POWDER SHADOW, MODEL: TT622 004, PACKING: 0.8G X 2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브론즈 가루 섀도, 모델명은 TT622 004이고 0.8G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EA/SET (1.5G*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2. 기타 눈화장용 제품 (3304.2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스크라: MASCARA 2. 눈썹그리개: EYEBROW PENCILS 3. 아이라이너: EYE LINER 4.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EYE MAKE-UP REMOVER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 LI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INK EYE LI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UP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7ML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AQUA XL INK LINER M-14, MODEL: 1000518862, PACKING: 1.7ML X 20CASE/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블랙 아쿠아 XL 잉크 라이너 M-14, 모델명은 1000518862이고 1.7ML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4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신용 염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문신용 염료가 아닌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3. 네일 에나멜 (3304.3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IL ENAM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IL ENAM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UP COSMETIC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ML X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IL LACQUER INDIAN PINK, MODEL: TOTP-06-0000, PACKING: 12ML X 10EA/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인디안 핑크색 네일 래커, 모델명은 TOTP-06-0000이고 12ML씩 병에 담아 1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 FIX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은 제3307호,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4. 기타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 (3304.3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페디큐어용 광택제: NAIL POLISHES FOR USE IN PEDICURE 2. 바니시와 바니시 제거제: NAIL VARNISHES, NAIL VARNISH REMOVERS 3. 각피제거제: CUTICLE REMOVER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IL POLISHES FOR USE IN PEDIC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IL POLISHES FOR PEDIC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ML X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PE NAIL POLISH-06 PARADISE, MODEL: WHS2715, PACKING: 12ML X 10EA/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하이프 네일 폴리쉬 06 파라다이스, 모델명은 WHS2715이고 12ML 씩 병에 담아 10병을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2003557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리용 조제품은 제3307호,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5. 페이스파우다 (3304.9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E POW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UP PREPARATIO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MW FACE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2G X 1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TRA HD MICRO FINISHING PRESSED POWDER 01, MODEL: I000510901, PACKING: 6.2G X 1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압축형 울트라 HD 마이크로 피니싱 파우더 01, 모델명은 I000510901이고 6.2G씩 케이스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ST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6.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 (3304.91-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POW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ISCARE BABY POW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G X 1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ISCARE PERFUMED POWDER FLORAL SWEET, MODEL: 212060GR, PACKING: 50G X 1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라이스케어 퍼퓨드 파우더 플로랄 스위트, 모델명은 212060GR 이고 50g씩 케이스에 담아 10개를 1 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7. 기타 메이크업용 파우더 (3304.9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UP POW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TURE COLOUR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G X 20CASE/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TURE COLOUR LONG-WEAR POWDER BLUSH PINK, MODEL: C200000136, PACKING: 10G X 20CASE/BAG,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컨투어 컬러 롱웨어 파우더 블러쉬 핑크, 모델명은 C200000136 이고 10G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4625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8.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N CAR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OSMETIC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PRODUC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기초화장품 여부 파악을 위해 종별코드(T121~T131) 기재 예) T121(수렴·유연·영양 화장수), T122(마사지크림), T123(에센스), T124(오일), T125(파우더), T126(바디), T127(팩), T128(마스크), T129(눈 주위 제품), T130(로션), T131(크림), T132(클렌징워터메이크업리무버), T133(클렌징오일메이크업리무버), T134(클렌징로션메이크업리무버), T135(클렌징크림메이크업리무버), T136(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T140(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ML X 5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DRATING EYE CREAM, MODEL: E65Y010000, T129, PACKING: 15ML X 5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하이드레이팅 아이크림, 모델명은 E65Y010000이고 15ML씩 케이스에 담아 5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은 제3003호·제3004호로 분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종별코드(T121~T131)는 이 호로 분류하고, 기능성화장품류(K132~K140) 3304.99-9000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299. 메이크업용 제품류 (3304.9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UP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UND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G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DIO PERFECT SPF50/PA++ HYDRATING CUSHION COMPACT - NC30, MODEL: S2CH0400, PACKING: 12G X 2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UDIO 퍼펙트 SPF50/PA++ 하이드레이팅 쿠션 컴팩트 NC30, 모델명은 S2CH0400이고 12G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05 PIGMENT BLACK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문신용 염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문신용 염료가 아닌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0. 어린이용 미용제품 (3304.99-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IO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FACIAL C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ML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 BABY & KIDS FACIAL CREAM, MODEL: 73206, PACKING: 50ML X 2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에코 베이비&키즈 얼굴용 크림, 모델명은 73206이고 50ML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M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은 제3003호·제30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1. 기타 미용제품 (3304.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SING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AKE UP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종별코드(K132~K140)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K121(수렴·유연·영양 화장품), K122(마사지크림), K123(에센스), K124(오일), K125(파우더), K126(바디), K127(팩), K128(마스크), K129(눈 주위 제품), K130(로션), K131(크림), K132(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 K133(클렌징 오일 메이크업 리무버), K134(클렌징 로션 메이크업 리무버), K135(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K136(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K140(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ML X 5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EA CALMING CLEANSING OIL, MODEL: 3293400, K133, PACKING: 15ML X 5EA/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화장품용인 그린티 카밍 클렌징 오일, 모델명은 3293400이고 종별코드는 K133, 15ML씩 담아 5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은 제3003호·제3004호, 어린이용 미용제품은 3304.99-3000으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2. 샴푸 (3305.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MPO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MPO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0ML X 2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 BOUTIQUE ALOE LEAF & GREEN TEA, MODEL: 3700NDE, PACKING: 120ML X 20EA/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에코 부티크 알로에 잎 &그린티 샴푸, 모델명은 3700NDE 이고 120ML씩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MPOO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 ■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3307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3. 퍼머넌트 웨이빙용이나 스트레이트닝용 두발용 제품류 (3305.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PERMANENT STRAIGHT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L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IGHT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HEMICAL PRODU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0ML X 30PACK/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SEIDO CRYSTALLIZING STRAIGHT ALPHA NEUTRALIZING EM, MODEL: 36513, PACKING: 400ML X 30PACK/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시세이도 크리스탈라이징 스트레이트 알파 뉴트럴라이징 EM 크림, 모델명은 36513이고 400ML씩 팩에 담아 3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W TG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3307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4. 헤어린스 [3305.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RI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PREPARATION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RI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ML X 20TUB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GI COPYRIGHT MOISTURE CONDITIONER, MODEL: 742102, PACKING: 250ML X 20TUB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TIGI 카피라이트 모이스처 컨디셔너, 모델명은 742102이고 250ML 씩 튜브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60-01-000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3307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5. 헤어크림 (3305.9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RE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OSMETIC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RE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OSMETIC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G X 20TUB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CIDO-L HAIR TREATMENT CREAM, MODEL: 7010790, PACKING: 150G X 20TUB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루씨도-L 헤어트리트먼트 크림, 모델명은 7010790이고 150G씩 튜브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C 1KG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⑮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3307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6. 기타 두발용 제품 (3305.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머리염색약 및 표백제: HAIR DYES AND BLEACHES 2. 헤어오일: HAIR OILS 3. 헤어드레싱: HAIR DRESSING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D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SENSCENE EASY&SPEEDY FOAM 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0G X 12CAN/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SENSCENE EASY&SPEEDY FOAM HAIR COLOR 4N DARK BROWN, MODEL: F03850, PACKING: 120G X 12CAN/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미장센 이지&스피드 폼 헤어 컬러 4N 다크 브라운 염색 크림, 모델명은 F03850이고 120G씩 캔에 담아 12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01 BU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피 이외의 체모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3307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7. 치약 (3306.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IFR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T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P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ST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10G X 20TUB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SITIVE PROPOLIS TOOTHPASTE, MODEL: 0441105, PACKING: 110G X 20TUBE/BOX, USE: MEDICINAL ○ 의약외품인 센시티브 프로폴리스 치약, 모델명은 0441105이고 110G씩 튜브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50BS18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GLYCERIN, SILICA, MENTHOL, PROPOLIS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의 표면을 세정이나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지, 충치예방처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같은 그 밖의 목적으로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음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308.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기타 치실 [3306.20-1019]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FLOSS OF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FLOSS OF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실의 굵기는 데시텍스로 표기 (예)75DTEX)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 WAXED NYLON FLOSS IN WHITE, MODEL: D201, 75DTEX, SIZE: 50M, PACKING: 1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트향 왁스가 발라진 흰색 나일론 치실, 모델명은 D201이고 실의 굵기는 75데시텍스, 사이즈는 50M이며 1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9-8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99%, WA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80-001BR74669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므로 성분을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DTEX: 실의 굵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09. 기타 치실 (3306.2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F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CKERS TWIN 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2EA/CAS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CKERS GENTLE SLIDE, MODEL: FR137, PACKING: 72EA/C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틀 슬라이드 치실, 모델명은 FR137 이고 72개씩 케이스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GT0045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므로 성분을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0. 구강위생용 제품류 (3306.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STERINE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P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50ML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STERINE NATURAL GREEN TEA, MODEL: B50BS18, PACKING: 750ML X 10EA/CT, USE: MEDICINAL ○ 의약외품인 리스테린 내추럴 그린 티, 모델명은 B50BS18이고 750ML씩 10개를 1카톤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003093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 구강위생용제품도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1. 치과위생용 제품류 (3306.9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HION COR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G X 100TUBE/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HION CORRECT, LOT NO. 8C06, PACKING: 12G X 100TUBE/CT, USE: MEDICINAL ○ 의약외품인 의치고정용 쿠션코렉트, LOT NO는 8C06이고 12G씩 튜브에 담아 100튜브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K & PICK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치고정용 페이스트·가루·정제를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2. 기타 면도용 제품 (3307.1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V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VE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ML X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LDOG ORIGINAL SHAVE OIL, MODEL: W301185500, PACKING: 30ML X 10EA/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불독 오리지널 면도용 오일, 모델명은 W301185500이고 30ML씩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00212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3401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3. 인체용 땀 억제제 (3307.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SONAL DEODO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ODORANT SP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N CARE COSMETIC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ML X 3SPRAY/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NIA CLUB PERFUMED DEODORANT SPRAY, MODEL: 26022, PACKING: 150ML X 3SPRAY/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코로니아 클럽 퍼퓨드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모델명은 26022이고 150ML씩 스프레이에 담아 3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319701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 탈취제는 향수와 유사하여 구별 확인이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4. 가향한 목욕용 염 (3307.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UMED BATH SA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TH PREPARATION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UMED BATH SA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TH PREPARATION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900G X 1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YSTAL BATH & MASSAGE SALT ROSE, MODEL: 4975541605082, PACKING: 900G X 1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인 장미향 크리스탈 배스&마사지 소금, 모델명은 4975541605082이고 900G씩 케이스에 담아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은 제3401호에 분류(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5. 기타 목욕용 제품 (3307.3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ROSES BATH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THE SK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ML X 10EA/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ROSES BATH OIL, MODEL: L4Y6-01-0000, PACKING: 250ML X 10EA/CT,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레드 로즈 베스 오일, 모델명은 L4Y6-01-0000이고 250ML씩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66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은 제3401호에 분류(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6.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3307.4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ARBAT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OMA INCENSE STI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ME FRAG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YURVEDA HERBAL BIG INCENSE SERIES CEDARWOOD, MODEL: 98534, SIZE: 8INCH, PACKING: 12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인치의 아유르베다 허브 빅 인센스 시리즈 세달우드 아가바티, 모델명은 98534이고 12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방향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기나는 (양)초는 제3406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7.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 (3307.4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PERFUMING 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U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ODOR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세번 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ML X 5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RIER ROSE CEDRE DIFFUSER GLASS BOTTLE, MODEL: JFD201, PACKING: 200ML X 5EA/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 로리에 로즈 세드르 디퓨저, 모델명은 JFD201이고 200ML씩 5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제 ○ 탈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방향제로 의약품이 아님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기나는 (양)초는 제3406호에 분류 ■ 향수(3303.00-1000) 및 화장수(3303.00-2000)와 유사하여 구별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8. 탈모제 (3307.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ILAT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DEPILAT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 X 20CASE/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GOLD HOT WAX, MODEL: 40266160, PACKING: 500G X 20CASE/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 액티브 골드 핫 왁스, 모델명은 40266160이고 110G씩 케이스에 담아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ICE: B241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물리적 힘을 이용한 제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모를 녹이는 기능성 제품(화장품법 요건확인 대상)과 물리력을 이용한 제품(화장품법 요건확인 비대상) 구별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19.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3307.90-3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CT LENS SOL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CT LENS SOL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35ML X 1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CT LENS SOLUTIONS RENU FRESH, MODEL: 623490H355ML, PACKING 335ML X 10EA/BOX, USE MEDICINAL ○ 의약용 콘택트렌즈 솔루션 리뉴 프레시, 모델명은 623490H355ML이고 335ML씩 10개를 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6492F2020-0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MB 20%, HAP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 MP18209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0. 기타 탈취제 (3307.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향한 종이: PERFUMED PAPERS 2.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PAPERS IMPREGNATED OR COATED WITH COSMETICS 3. 향수, 화장품을 침투,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ERFUME OR COSMETICS 4. 동물 화장용 제품: ANIMAL TOILET PREPARATIONS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L TOILET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S SHAMP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5ML X 2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TLE TOUCH DOG SHAMPOO, MODEL: SC026, PACKING: 505ML X 20EA/BOX, USE: COSMETICS ○ 화장품용 젠틀 터치 도그 샴푸, 모델명은 SC026이고 505ML씩 20개를 1 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 화장품법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용 물티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도그샴푸로 식당용 물티슈가 아니므로 비대상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도그샴푸로 탈취제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는 제340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1.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 [3401.1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 WOV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WASH UP CLOTH (W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G X 100PACK/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WASH UP CLOTH (WET), SIZE: W 25.6MM X L 1,050MM, PACKING: 1G X 100PACK/BOX,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세제를 침투시킨 부직포, 사이즈는 W 25.6MM X L 1,050MM이고 1G씩 팩에 담아 10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006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용 물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세탁용 세제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세탁용 세제로 식당용 물티슈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향을 첨가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는 제33류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2.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401.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AP IN OTHER FO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N CARE COSMETIC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AP NOOD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FICIAL FLOWER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CREAM(크림), GEL(젤), LIQUID(액체), LOTION(로션), PELLET(펠릿), POWDER(분말), SOLID(고체)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KG/BAG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LLET, SOAP NOODLES 80:20, LOT NO: SN180206-31N, PACKING: 50KG/BAG, USE: INDUSTRIAL ○ 공업용인 습 칩, LOT NO는 SN180206-31N 이고 50KG씩 포대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132-64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제조공정에 투입 되는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스톡은 제1522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3.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3401.3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LEAN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DY WA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품명이 나타나도록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LIQUID(액체), CREAM(크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ML X 2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QUID, BODY WASH BLGRIAN LAVENDER, MODEL: 3734NDE, PACKING: 100ML X 20EA/BOX,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라벤더향 바디 워시, 모델명은 3734NDE이고 100ML씩 2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77TWI 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건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 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4.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3402.1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RAW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COCOYL GLUTA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 아닌 모델명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COCOYL GLUTAMATE POWDER, LOT NO: 601X6, PACKING: 15KG/DRUM,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듐코코일글루타메이트로서 가루제형의 공업용으로 쓰이는 원료, LOT NO는 601X6이고 15KG 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AL 860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LAURYL ETHER SULFATE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원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으로 분류 ■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은 제3405호로 분류 ■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은 제3824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5. 양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3402.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IONIC ORGANIC SURFACE ACTIVE 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N LIQUID IL-P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METHYL DIALLYL AMMONIUM CHLOR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A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 아닌 모델명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PACK/BOX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METHYL DIALLYL AMMONIUM CHLORIDE POWDER, LOT NO: 20180226, PACKING: 12PACK/BOX,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릴디메틸염화암모늄 가루제형의 공업용 원료, LOT NO는 20180226이고 1박스에 12PACK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ATIS 13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METHYL DIALLYL AMMONIUM CHLORIDE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원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으로 분류 ■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은 제3405호로 분류 ■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석유술포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은 제3824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6. 기타 유기계면활성제 (3402.1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 BETA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ACE ACTIVE 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 BETAINE, MODEL: 5000263, PACKING: 200KG/DRUM, USE: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용인 코코베타인, 모델명은 5000263이고 200KG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TASPERSE 3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 BETAINE LPB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세제제 ○ 자동차용 위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 제조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화장품 제조용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화장품 원료로 세탁세제제나 자동차용 위셔액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으로 분류 ■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은 제3405호로 분류 ■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은 제3824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7. 소매용 조제 세제 (3402.2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PREPARATION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10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700ML X 9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BOTTLE AND DISHWASHING-SWEET LULLABY, MODEL: 13179, PACKING: 700ML X 9EA/CT,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스윗 플라비 유아용 세제, 모델명은 13179이고 700ML씩 9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77 DISHWASHING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행굼보조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STICK)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8. 소매용 조제 청정제 (3402.2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ING PREPARATION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WASHING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HOCLEAN OXYGEN WHITENING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900G/BOX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HOCLEAN OXYGEN WHITENING POWDER, LOT NO: 65006, PACKING: 900G/BOX,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에코클린 산소 표백 가루, LOT NO는 65006이고 900G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220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자동차용 워셔액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29. 소매용 조제계면활성제 (3402.2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ACE-ACTIVE PREPARATIONS FOR RETAIL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SOL STAINLESS POWER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L/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SOL STAINLESS POWER CLEANER, MODEL: 01222310 PACKING: 1L/CAN,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오토솔 스테인리스 가루 세정제, 모델명은 01222310이고 1L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SOL HAND CLEANING P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 ■ 이 그룹은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비누의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 피부세정제의 유기계면 활성제제품과 조제품을 포함하지 않음(소매포장용으로 된 액체 상태나 크림상태의 것으로 한정) (제3401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0. 기타 조제 계면활성제 (3402.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ACE-ACTIVE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TASOL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GOLD NON HAZ AQUEO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8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UE GOLD NON HAZ AQUEOUS(Low FOAM) SPRAY WASH CLEANER/DEGREASER, LOT NO: 102-72835, PACKING: 208L/DRUM, USE: INDUSTRIAL ○ 공업용인 수분을 함유한 블루 골드 논하즈 스프레이 클리너, LOT NO는 102-72835이고 208L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ACE-ACTIVE PREPARATIO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원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룹은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비누의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 피부세정제의 유기계면 활성제제품과 조제품을 포함하지 않음(소매포장용으로 된 액체 상태나 크림상태의 것으로 한정) (제3401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1. 기타 조제 세제 (3402.9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Z SOLVANT SEALER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CIRCLE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ML/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OX CLEAN PLASTIC, MODEL: A00141, PACKING: 1,000ML/DRUM, USE: INDUSTRIAL ○ 공업용 E-NOX 클린 플라스틱 세제, 모델명은 A00141이고 1,000ML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P 100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행균보조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STICK)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2. 기타 조제 청정제 (3402.9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700-F 20L ARTISTRI CART CLEANING SOLUT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ENZYM CLN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ING PREPARATIONS ○ 신고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COSMETICS,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L-DYN ENZYMATIC CLEANER, LOT NO: 9964401, PACKING: 1KG/DRUM,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CELL-DYN 효소 클리너, LOT NO는 9964401이고 1KG씩 드럼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GENT N2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자동차용 워셔액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3.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3403.19-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RUST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RUST ADD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PPRO V.C.I. POWDER, MODEL: V-849SF, PACKING: 25KG/DRUM,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VAPPRO V.C.I. 가루, 모델명은 V-849SF이고 25KG씩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RUS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VCI 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녹방지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의 활강방지제(미끄럼방지제)(제3824호)와 제3824호의 방청조제품은 제외 ■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제품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재료, 가죽, 모피 처리용 조제품은 3403.11호 분류 ○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 이 포함된 경우 3403.11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큼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4. 기타 조제 윤활유 (3403.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LUBRICAT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 GR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LYKOTE(TM)PD-930 LUBRICANT, LOT NO: 4240148425,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몰리코트(TM)PD-930 윤활제, LOT NO는 4240148425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O 70%, ETC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방지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조제품은 제3006호로 분류 ■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제품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재료, 가죽, 모피 처리용 조제품은 3403.11호 분류 ○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 이 포함된 경우 3403.11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큼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5.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FOR LEA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M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THER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㉚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ML X 12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UM EDITION SPECIALIST LEATHER CONDITIONING CREAM, MODEL: C6960, PACKING: 250ML X 12EA/CT,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프리디엄 에디션 스페셜리스트 가죽 컨디셔닝 크림, 모델명은 C6960이고 250ML씩 담아 12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E CARE DELICATE CREAM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㉜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㉞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용 더스터와 금속의 병 연아제(SCOURER)는 제외(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 ■ 신발용 정제 호분(胡粉)과 새미가죽 신발용 조제액상염료는 제3210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6.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FOR THE MAINTENANCE OF WOODEN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POLISH DARK O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CC/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POLISH DARK OAK, MODEL: 069972BB, PACKING: 500CC/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오크나무 광택제, 모델명은 069972BB이고 500CC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970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 목재용 방부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용 더스터와 금속의 병 연아제(SCOURER)는 제외(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7. 차체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5.3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PREPARATIONS FOR COACH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OZ. DURAGLOSS 253 TIRE & RUBBER MAT DRESSING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R FOR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TING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OZ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US PAINTWORK CLEANSER PREWAX MODEL: SON-4008, PACKING: 8OZ X 10EA/CT,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소너스 차체용 광택제, 모델명은 SON-4008이고 8OZ씩 담겨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25129 CAR WET WIPES SACHE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 의 더스터와 금속의 병 연아제(SCOURER)는 제외(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8. 규조토를 기본재료로 한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3405.90-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FOR METAL BASED ON KIESELGU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KIESELGU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 POWDER CLEAN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0G X 12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 POWDER CLEANSER FOR MIRROR, MODEL: 11042381, PACKING: 400G X 12PACK/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T/W 거울 광택용 가루, 모델명은 11042381이고 400G씩 팩에 담아 12팩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ING SLU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 셀룰러(CELLUAR)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것도 포함.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시킨 방직용 섬유용 더스터와 금속의 병 연아제(SCOURER)는 제외(제11부와 제15부에 각각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39.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재료로 한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3405.90-10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FOR METAL BASED ON DIAMOND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DIAMOND POWDER OR D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OND POLISHING POW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ING COMP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G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OND COMPOUND POLYCRYSTALLINE, MODEL: 90-21020/80-S-X, PACKING: 2G X 10EA/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다이아몬드 폴리크리스탈린 혼합 용액, 모델명은 90-21020/80-S-X이고 2G씩 담아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OND COMP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하지 않은 연마 가루는 주로 제25류나 제28류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0. 기타의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3405.9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ES FOR M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RASIVE GRAIN AND WATER SLU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L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SHING ALUMINA SLURRY (9247), LOT NO: 17121702, PACKING: 1L X 10EA/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알루미늄 광택제, LOT NO는 17121702이고 1L씩 담아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9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하지 않은 연마 가루는 주로 제25류나 제28류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1. 기타의 연마가루와 유사한 조제품 (3405.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OLISHES FOR G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ASS POLISHING COMP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G X 60PACK/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GLASS POLISHING COMPOUND (PVD-G03), MODEL: PN60150, PACKING: 100G X 60PACK/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3M 유리 광택 혼합제 분말, 모델명은 PM60150이고 100G씩 팩에 담겨 60팩이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하지 않은 연마 가루는 주로 제25류나 제28류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2.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6.0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ENS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S, TAPERS AND THE LIK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모두를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BENJAMIN DODICI CANDLE, MODEL: MB-C12, PACKING: 10EA/BOX ○ 맥스 벤자민 도디씨 양초, 모델명은 MB-C12이고 10개가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NEWARE 60%, WAX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 성분란에 원산지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초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식약으로 사용하는 초(ANTI-ASTHMATIC CANDLES)(제3004호), 왁스로 만든 성냥이나 밀랍 성냥(제3605호),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와 초(제3808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3.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3407.0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W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W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5G/BOX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3030.01, WAX IMPRESSION, S-U-CAD/CAM-WAX BEIGE CONE, MODEL: 600922E, PACKING: 45G/BOX,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인 인상용 왁스, 분류번호는 C13030.01인 S-U-CAD/CAM 베이지색 콘모양 왁스, 모델명은 600922E이고 45G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X 65%, PARAFFIN 25%, ETC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2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임프레션컴파운드, 인상용왁스, 축합형치과용실리콘인상재, 치과용인상용석고, 치과용산화아연유지놀계인상재, 치과용연마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 인상용·모형 제조용·그 밖의 치과용에 사용하며, 형태나 제시방법에 관계없이 분류. 그러한 조제품은 축진제나 지연제만을 소량 첨가한 라스터(PLASTER)와 혼동해서는 안 됨(제2520호),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료용 충전제(제3006호)를 제외 ■ 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판 모양·말굽 모양(속이 찬 것이나 속이 빈 것)·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 그 외의 모양으로 포장한 것은(예: 벌크 모양) 그 성분에 따라 분류(제3404호·제3824호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4.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 (3504.00-2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TEIN SUBST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 COLL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모델규격을 미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G X 130PACK/BAG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MEDICINAL, USE: COSMETICS,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COL HPMG PREMIUM FISH COLLAGEN, MODEL: 08G1002990AN, PACKING: 2G X 130PACK/BAG, USE: ED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인 나티콜 HPMG 프리미엄 피쉬 콜라겐, 모델명은 08G1002990AN이고 2G씩 팩에 담겨 130개가 1가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9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LAGEN PEPTIDE(FISH)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원료 ■ 사료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혈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 화장품법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콜라겐 가루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 열거한 물품이 의약품으로 만든 것은 제3003호이나 제30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5. 고무 재료의 소매용 조제 글루 · 접착제 (3506.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E BASED ON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ADHE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모델규격을 미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 NEOPRENE HIPRFRM RUBBER GASKET ADH YELLOW, MODEL: 62130085301, PACKING: 500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1300 노란색 네오프렌 고무 접착제, 모델명은 62130085301이고 500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9321P000 GLUE 90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UENE 30%, LIGHT SOLVENT NAPHTHA 20%, MG-RESINATE 20%, ACETONE 15%, POLYCHLOROPRENE 15%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제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6. 플라스틱 재료의 조제 글루 · 접착제 (3506.1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E BASED ON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D ON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EE BOND, MODEL: 3713B, PACKING: 500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THREE 본드, 모델명은 3713B이고 500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OXY RESIN 80%, HARDENER 15%, SILICA 5%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 ○ 미용접착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 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 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 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 덱스트린(DEXTRIN)(3505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7. 기타 재료의 조제 글루 · 접착제 (3506.1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 ADHES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G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WAGUCHI FABRIC ADHESIVE, MODEL: 19-538, PACKING: 60G X 10EA/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가와구치 섬유 접착제, 모델명은 19-538이고 60G씩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RIL OF POLYURETHANE RESIN 70%, WATER 20%, ETC 10%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 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 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 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 덱스트린(DEXTRIN)(3505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8.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접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3506.9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ICALLY CLEAR FREE-FILM ADHES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TITE DSO 190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TITE PREPARED ADHESIVE FILM, MODEL: SVR560-2K-B2L-N, PACKING: 1KG/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LOCTITE 필름 접착제, 모델명은 SVR560-2K-B2L-N이고 1카톤 당 1KG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63L-005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ZENE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KG/2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포장상태 기재
㉘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량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벤젠 함유율 3.7%로 5% 이하이므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49. 기타 폴리머 재료의 접착제 (3506.9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S BASED ON POLY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OMELT PUR 34-85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PRODU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OMELT PUR34-858B, MODEL: IDH1222998,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테크노멜트 접착제, 모델명은 IDH1222998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ENOLIC RESIN 66.9%, 2-PROPENENITRILE 25.5%, CARBON BLACK 6.5%, TALC 0.75% MISC 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KG/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벤젠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벤젠이 함유된 제품일 경우 함유량 필히 기재.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0. 비엔나 글루 (3506.9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ENNA GL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U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 DELO-ML5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O-ML5249, MODEL: 575F,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 공업용인 DELO-ML5249 분말, 모델명은 575F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ESIVE DELO-ML5249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MINUM SILICATE 70%, ECT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JP ○ 성분란에 원산지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접착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1. 기타의 접착제 (3506.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REPARED ADHES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ADHESIVE G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KG/CAN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HOT MELT ADHESIVE JQ7350, MODEL: HM-409, PACKING: 1KG/CAN,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인 폴리우레탄 핫멜트 접착제 JQ7350, 모델명은 HM-409이고 1KG씩 캔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 MELT ADHES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70%, ECT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COMMERCIAL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⑯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제 ○ 미용접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면제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 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 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집은 끈끈이(제1302호)· 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 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 덱스트린(DEXTRIN)(3505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 ○ 섬유용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 등(제3809호)이나 주물용 코어 접결제(제3824호), 제3214호의 매스티(MASTIC)· 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2. 알파아밀라제 (3507.90-10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AMYL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TA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ENZYM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CT, PACKING: 150G X 2EA/VAC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TA 1500 FOR INSPECTION RADIOACTIVITY MEASUREMENT SAMPLE, LOT NO: 17091961, PACKING: 20KG/BAG, USE: RESEARCH ○ 방사능 측정 견본 검사를 위한 연구시험용 베타 1500, LOT NO는 17091961이고 20KG씩 포대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ENZYME FRED ACID-STABL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AMYLAS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KG BUCKET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사료관리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시험용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시험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3. 리파제 (3507.90-104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CEIT AC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B LINGUAL LIP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 MIX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KG/BJ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B LINGUAL LIPASE(PGE), BATCH NO: 925375, PACKING: 10KG/BJ, USE: EDIBLE ○ 식용인 양의 혀로 만든 리파제, BATCH NO는 925375이고 10KG씩 양동이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AS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AT FLOUR 94%, LIPASE 3%, SODIUM CHLORID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8596SLBX4002,5456534014900343211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사료관리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식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4. 펩신 (3507.9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FROM POR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G/JAR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FROM PORCINE GASTRIC MUCOSA, MODEL: P7000, PACKING: 100G/JAR, USE: RESEARCH ○ 연구시험용인 돼지의 위 점막으로부터 얻은 펩신, 모델명은 P7000이고 100G씩 병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SI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1475BCBW9186,5456554044900318318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사료관리법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시험용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연구시험용 펩신 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사료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에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5. 맥아효소 (3507.9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T ENZY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IMALT B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T ENZYMES ○ 신고품명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KG/BJ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3019G190 OPTIMALT BBA BARLEY BETA-AMYLASE, BATCH NO: 4933109226, PACKING: 30KG/BJ, USE: RESEARCH ○ 연구실험용 A13019G190 옵티몰트 BBA 베타 아밀라아제, BATCH NO는 4933109226이고 30KG씩 양동이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3019G190OPTIMAL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T ENZY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KG BUCKET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에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효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제·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6. 파파인 (3507.90-4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AIN SOLUBLE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AIN SOLUBLE 1500 FIP-UNITS/GRAM UP, BATCH NO: 171227, PACKING: 20KG/DRUM, USE: RESEARCH ○ 그람 당 1500 FIP 단위를 가지는 연구시험용 물에 녹는 파파인, BATCH NO는 171227이고 20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AI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AIN ENZYM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180846,180927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에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효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립신)·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7. 펙틱효소 [3507.90-7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CTIC ENZY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E ADDITIVE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CTINEX ULTRA S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ML/JA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EDIBLE,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CTINEX ULTRA SP-L FOR BREAKDOWN PECTIN STRUCTURE, LOT NO: B13428-091514, PACKING: 60ML/JAR, USE: EDIBLE ○ 펙틴 구조를 분해하기 위한 식용 펙티넥스 울트라 SP-L, LOT NO는 B13428-091514이고 60ML씩 병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CTINASE AB1234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CTIN LYAS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FREIGHT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8. 기타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ENZY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URAL CELLULASE 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ZYMES FOR LABORATOR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시토크롬 시(C) 산화효소,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25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PRIMAFAST GOLD HSL NEUTRAL CELLULASE LIQUID, BATCH NO: 7203436171, PACKING: 25KG/DRUM, USE: INDUSTRIAL ○ PRIMAFAST GOLD HSL 공업용 중성 셀룰라아제 액체, BATCH NO는 7203436171이고 25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UTRAL CELLULAS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LULAS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LULASE ○ 함량 미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사료관리법 ■ 약사법 ○ 세리치오펜티다제 ○ 원료의약품, 동물성의약품 ■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사료관리법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사료관리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화장품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제2102호),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조소(COENZYMES)(제29류),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GLAND)과 그 밖의 물품,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절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59. 불꽃제품 [3604.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E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EWORKS, SIGNALLING FLARES, RAIN ROCKETS, FOG SI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4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E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ING INSTRUMENTS AND EDUCATIONAL MATERIAL ○ 송품장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USEMENT FIREWORKS, MODEL: SS2501, PACKING: 100EA/CT ○ 불꽃놀이용 제품, 모델명은 SS2501이고 100개가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염관, 신호화전, 기타 신호용 화공품 ○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 장난감용 꽃불류(완구용연화)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3604호는 오락용 및 신호용 등 물품이 해당되며, 화약이나 뇌관이 있는 방위사업법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HS3601호~3603호에 해당하므로 확인 필요 ■ 사진용 섬광재료(제3707호), 화학발광 현상에 의하여 조명 효과를 내는 물품(제3824호), 리베팅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폭약에 들어있는 공포(空包: BLANK CARTRIDGES) (제9306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0. 조색제 [3707.90-92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NICAMINOLTA C280 CARTRIDG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K T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PREPARATIONS ○ 송품장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0.1L X 20PLASTIC 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COLOR TONER, MODEL: CET6842, PACKING: 0.1L X 20PLASTIC BOTTLE/CT,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노란색 조색제, 모델명은 CET6842이고 0.1L씩 플라스틱 병에 담겨 2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 INK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인쇄용 잉크·토너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ARNISH)·수정용 페인트·연필 등],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FLASHBULBS),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귀금속의 염(SALTS)과 그 밖의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하였고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1. 세정제 (3707.90-93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RING AG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VER MASKS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RING AGENTS ○ 신고품명을 그대로 거래품명으로 사용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ML X 20PLASTIC BOTTL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T CALBENIUM, BATCH NO: 290917M, PACKING: 60ML X 20PLASTIC BOTTLE/CT,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민트 칼베니움 용액, BATCH NO는 290917M이고 60ML씩 플라스틱 병에 담겨 2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VE 55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세정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VARNISH)·수정용 페인트·연필 등],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FLASHBULBS),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열거된 물품[예: 귀금속의 염(SALTS)과 그 밖의 물품(소매 용으로 포장하였고 의도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2. 300G이하의 기타의 살충제 등 [3808.6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ECTICIDES NOT EXCEEDING 30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QUITO CO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G X 10PCS/BOX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QUITO COILS LAVENDER WITH VIOLET COLOR, BATCH NO: KPG8002, PACKING: 5G X 10PCS/BOX,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인 라벤다향 보라색 코일 모기향, BATCH NO는 KPG8002이고 5G씩 10개를 1상자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LLPOP MOSQUITO CO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CYPERMETHRIN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 BOXES PA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은 허가 필요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허가 필요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신고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기피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이며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만 분류되므로 포장단위 확인 필요 ■ 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베티오카브(ISO), 비펜트린(ISO), 클로르페니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 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온(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 프로폭수르(ISO)를 함유한 물품만 분류 가능하므로 성분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PACKING: 포장상태 및 무게”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3.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3808.9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INSEC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OXACA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EC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KG/DR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OXACARB EC, LOT NO: 3C85-2K, PACKING: 25KG/DRUM, USE: INDUSTRIAL ○ 농약원제인 농약제조용 인독사카브 용액, LOT NO는 3C85-2K이고 25KG씩 드럼통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OXACARB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제 원제등록증 제56살충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은 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인독사카브 용액으로 펜피록시메이트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로 한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4. 기타의 살충제 (3808.9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SEC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㉔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YING INSECTS GLUE TRAP R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EC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ROLL/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YING INSECTS GLUE TRAP ROLL, BATCH NO: 6XEGA, PACKING: 200ROLL/CT, USE: MEDICINAL ○ 의약외품인 살충제용 파리잡이 끈끈이, BATCH NO는 6XEGA이고 총 200롤이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AFFIN 30%, EVA 40%, GUMROSIN GLYCERI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ANIMAL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㉗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허가받은 농약 또는 원제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니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은 허가 필요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허가 필요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신고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5. 기타의 살균제 (3808.92-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FUNG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10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RACLE MOLD OUT G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0G X 100TUB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RACLE MOLD OUT GEL, BATCH NO: 017206A, PACKING: 120G X 100TUBE/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인 살충제용 미라클곰팡이 겔, BATCH NO는 017206A이고 120G씩 플라스틱 튜브에 담아 10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2% (STROBY 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DIUM HYDROXIDE 1~2%, SODIUM HYPOCHLORITE 1~2%, COLLOIDAL SILVER (0.0001%), POLYACRYLATE,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S/CAR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허가받은 농약 또는 원제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을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은 허가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원제는 3808.92-1000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농약관리법예의 등록 여부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6. 소독제 (3808.94-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㉓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INFECT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TOCIL IB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㉔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INFECTA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0ML X 10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CLEANER, BATCH NO: S201806101, PACKING: 250ML X 100EA/CT, USE: MEDICINAL ○ 의약외품인 소독용 키친 클리너 용액, BATCH NO는 S201806101이고 250ML씩 10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097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㉖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COHOL ETHANOL 75% PURIFIED WATER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 OF CHARGE, SAMPLE, NOT FOR SAL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㉗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허가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비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7. 살서제(쥐약) [3808.99-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DEN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IK MINIB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MAFEN PE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DEN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G X 100 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MAFEN PELLET, BATCH NO: 0018504427, PACKING: 500G X 100 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인 살서용 쿠마펜펠렛, BATCH NO는 0018504427이고 500G씩 담아 10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MAFEN PE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PHENOTHRIN 93% FLOCOUMAFEN 0.5%,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NO.:90035-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은 허가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의약외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8. 기타 살충제 등 유사한 물품 [3808.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비제: ACARICIDES 2. 연체동물 박멸제: MOLLUSCICIDES 3. 선충박멸제: NEMATOCIDES 4. 조류 박멸제: AVICIDES 5. 기타해충박멸제: OTHER PESTS(E.G., LAMPREYCIDES, PREDACIDES) 6.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R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SECTICI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ALLERGEN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946ML X 10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ALLERGEN SOLUTION, BATCH NO: 812701, PACKING: 946ML X 10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비용 안티-알레르겐 용액, BATCH NO는 812701이고 946ML씩 담아 10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01609009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ISOBUTYLENE 70% HYDROGENATED HYDROCARBONS 19% 2-METHYLOPROPENE 0.5% BUTYLENE-STYRENE 0.4% BLOCKCOPOLYMER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용도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허가 필요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기피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니트로펜 미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살서제(취약) 이외의 것이 분류 ■ 해당 물질의 성분 필히 기재 후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69. 섬유산업용 등의 완성이공제 등 [3809.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ISHING AGENT USED IN THE TEXT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OR LIKE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 SOFTE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E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8L X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OMA FLORAL FABRIC SOFTENER, MODEL: C38888103, PACKING: 2.8L X 5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 모델명은 C38888103이고 2.8L씩 담아 5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950 176DRYOL 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백제, 섬유유연제, 다림질보조제, 특수목적 코팅제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되는 산업종류에 따라 HS 3809.9 이후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방직용 섬유재료·원피·모피·그 밖의 재료의 기름 처리나 그리스 처리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제2710호나 제3403호),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안료·조제 착색제·페인트 등(제32류), 유기계면활성제나 조제 유기계면활성제(예: 제3402호의 염색보조제)) 등을 동 세번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0. 기타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3811.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⑩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D ADDITIVES FOR FU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⑪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TANE BOO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⑬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ML X 1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ESEL ANTI SMOKE, MODEL: 62094, BATCH NO: 3004162514, PACKING: 150ML X 10EA/CT,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디젤 안티 스모크 용액, 모델명은 62094이고 BATCH NO는 3004162514, 150ML씩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⑭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⑯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부동액 ○ 목재용 방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디젤연료첨가제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공업용 디젤연료첨가제로 동물용 의약품 아님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자동차용 부동액이나 목재용 방부제가 아닌 부식 방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FIDE)을 기본 재료로 한 윤활성 조제품(제3403호), 오일이나 그 밖의 매체에 현탁(懸濁: SUSPENSION)된 콜로이드(COLLOID) 혹은 반콜로이드(SEMI-COLLOID) 혹은(제3801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1. 부동(不凍) 조제품 (3820.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FREEZING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FOR MOTOR VEHICL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FREEZE AND COOL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Z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BATCH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BATCH NO가 있는 경우 “BATCH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L X 10EA/BOX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FREEZE AND COOLANT, MODEL: 1016-35, BATCH NO: 0000459575, PACKING: 3L X 10EA/BOX,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자동차 부동액, 모델명은 1016-35이고 BATCH NO는 0000459575, 3L씩 담아 10병을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LING SYSTEM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HYLENE GLYCOL 70%, WA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D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유(MINERAL OIL)나 광물유용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용액용의 조제 첨가제는 제외(제3811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2.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3824.99-62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S FOR MANUFACTURING CERAMIC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IRCONIA POWDER FOR ARTIFICIAL TEE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KG/PACK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IRCONIA POWDER ZPEX-GRAY, LOT NO: ZY308576B, PACKING: 5KG/PACK,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지르코니아 분말 ZPEX-GRAY, LOT NO는 ZY308576B이고 5KG씩 팩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9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IRCONIUM DIOXIDE 90%, HAFNIUM OXIDE 1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완성가공제와 그 밖의 물품이나 조제품(제3809호), 제6806호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제6812호의 석면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3.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3824.99-65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TI-RUST PREPA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MICAL PRODUC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T INHIBI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5G X 10SPRAY/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CI LIQUID FOR OUTDOOR PR, MODEL: 36812300039, PACKING: 55G X 10SPRAY/CT, USE: INDUSTRIAL ○ 공업용의 증기 위상 부식 억제 용액, 모델명은 36812300039, 55G씩 스프레이에 담아 1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X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 녹방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공업용으로 급수용 방청제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완성가공제와 그 밖의 물품이나 조제품(제3809호), 제6806호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제6812호의 석면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4.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 [3824.99-9041]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2. 니코틴 함유량 1% 미만: SOLUTIONS FOR ELECTRONIC CIGARETTES WITH NICOTINE (NICOTINE LESS THAN 1%) 3. 니코틴 함유량 1% 이상: SOLUTIONS FOR ELECTRONIC CIGARETTES WITH NICOTINE (NICOTINE NOT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UTIONS FOR ELECTRONIC CIGARETTES WITH NICOTINE (NICOTINE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NICOTI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I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UTIONS FOR ELECTRONIC CIGARETTE ○ 관세율표상의 9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MANUFACTURING METHOD(제조방법): 04, 05 천연⇒(04), 합성⇒(05)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니코틴 추출재료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천연니코틴인 경우 추출재료를 표기(LEAF, ROOT, STE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0ML/BTL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UFACTURING METHOD(04)/MINT, MODEL: ABC, CAS NO: 54-11-5, NICOTINE FROM LEAF, PACKING: 60ML/BTL ○ 천연 민트향 전자담배 용액, 모델명은 ABC이고 CAS NO는 54-11-5, 앞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60ML씩 병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NICOTINE:” 기재 후 니코틴 농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11-5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NICOTINE AND ITS SALTS)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니코틴 함량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니코틴 농도를 “NICOTINE:” 기재한 후 “%” 를 포함하여 반드시 신고 ■ 화학물질 필요정보를 기재서류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인하여 니코틴 함량 확인 ■ 합성니코틴(RS-니코틴, 22083-74-5)은 담배니코틴(S-FORM, 54-11-5)과 이의 광학이성질체인 R-니코틴(25162-00-9)이 1:1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임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 [3824.99-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HEMICAL PRODU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BON BLACK SLU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KG/DRUM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INDUSTRIAL, USE: EDIBL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DS-50, PACKING: 100KG/DRUM,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전극제조용 조제품으로 100KG 드럼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X19050-3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BON NANO TUBE 60%, SOLVENT 30%, CARBON BLACK BINDER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제오라이트,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석면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소활석(CALCINED TALC)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등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온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수처리제가 아닌 ■ 석면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하소활석이 아닌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공업용 화학제품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물질 미함유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방사선 미포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어린이용 온열팩이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완성가공제와 그 밖의 물품이나 조제품(제3809호), 제6806호의 단열용·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제6812호의 석면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6. 비데 (3922.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D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ABLE BID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 PORTABLE NON-ELECTRIC BIDET, MODEL: WB-5100, PACKING: 10EA/BOX ○ 미니 휴대용 비전기식 비데, 모델명은 WB-5100이고 1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ILET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LIVERY NO. 3028816748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비데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비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드팬(BED PAN)과 (실내용 변기(CHAMBER POT)와 같은 소형의 이동식 위생용품(제3924호)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7.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WARE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KING T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ARE STRIPE COOKING TRAY, MODEL: 70342948, PACKING: 30EA/BOX ○ 정사각형 줄무늬 요리 쟁반, 모델명은 70342948이고 3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5075HG7.4“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1,000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플라스틱제 쟁반으로 일회용품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포장이나 운반을 위한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3923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8.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품 [3924.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용세트: TOILET SETS (EWERS, BOWLS, ETC.) 8. 칫솔걸이: TOOTH BRUSH HOLDERS 2.~7., 9.: 생략 10.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TOOTHBRUSH HO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 TOOTHBRUSH HOL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 OF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UR BRUSH HOLDER WHITE, MODEL: VTB4-CC60, PACKING: 50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칫솔 홀더 흰색, 모델명은 VTB4-CC60이고 50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PLASTIC 10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칫솔거치대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칫솔거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79.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통과 지우개 (3926.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AS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OF PLASTIC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ASERS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ICE EQUIPMENT ○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품명으로 동 물품의 신고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4EA/BOX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OFFICE, USE: EXPER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HOLDER ERASER, MODEL: LT309, PACKING: 24EA/BOX, USE: OFFICE ○ 사무실용 플라스틱 홀더 지우개, 모델명은 LT309이고 24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HOLDER ERAS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PLASTIC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사무용 지우개로 어린이용 학용품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로 만든 지우개는 HS 4016.92-0000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3926.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SCREWS, BOLTS, WASHERS AND 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2. ~ 8. 생략 9. OTHER: 기타 ② 표준품명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SERVER T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OF WATER COOLER T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COOLER TRAY OF LLPDE, MODEL: D6220-3, PACKING: 20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재질의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받침대, 모델명은 D6220-3이고 20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61-ET010CL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수기 받침대로 비대상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수기 받침대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39류의 기타 세번으로 세율차가 있으므로 같은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분류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1. 콘돔 (4014.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EATH CONTRACEP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ARE FOIL COND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EATH CONTRACEPTIVES ○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품명으로 동 물품의 신고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LOT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LOT NO가 있는 경우 “LOT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BOX/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8010.01, CONTRACEPTIVE CONDOM MALE, ULTRA LATEX CONDOM FOR MALE, LOT NO: 1811/24, PACKING: 50BOX/CT, USE: MEDICINAL ○ 의약품인 남성용 콘돔의 분류번호는 B08010.01, 남성용 울트라 라텍스 콘돔, LOT NO는 1811/24이고 50 상자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737S VIA SKIN O9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 LENGTH 180MM(MIN)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남성용콘돔, 여성용콘돔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2. 젓꼭지 (4014.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PRODUC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MMY T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TS ○ 신고품명을 그대로 거래품명으로 사용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ACK/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OVER 6 MONTHS OLD FOR BABY, MODEL: 9562KBB-TEAT, PACKING: 2PACK/CT ○ 생후 6개월 이상 실리콘 젓꼭지, 모델명은 9562KBB-TEAT이고 1카톤 당 2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TS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RUBBER ○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 중 젓꼭지(포유젓꼭지)가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3. 고무 바닥깔개와 매트 [4016.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M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GA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RUBBER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AND M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그대로 거래품명으로 사용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ROLL/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RUBBER MAT BLACK MEDIUM, MODEL: 1109, PACKING: 4ROLL/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고무 매트 검정색 미듐, 모델명은 1109이고 1카톤 당 4개 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830*610*6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81%, COTTON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TZER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에 제조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자동차용 고무 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깔개는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분류는 해당류의 '주'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플라스틱제는 3918, 고무제는 4016, 가죽제는 4205, 모피제(천연) 4303, 모피제(인조) 4304, 조물재료 4601, 양탄자류 57류, 리놀륨 등 기포에 도포, 피복한 것 5904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4. 고무 지우개 [4016.9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AS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ERAS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RUBB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4EA X 100BOX/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OFFICE, USE: EXPER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ERASERS, MODEL: LT309, PACKING: 24EA X 100BOX/CT, USE: OFFICE ○ 사무실용의 고무지우개, 모델명은 LT309이고 24개씩 상자에 담아 100 상자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309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ULCANISED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 CZECH REPUBLIC ○ 성분란에 산지를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기타 사유: 사무실용 고무지우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우개는 HS 3926.10-1000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5. 가황한 고무의 기타 팽창성 제품 (4016.95-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LATABLE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TING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품명으로 동 물품의 신고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NGE DRAIN BAG DN 80, MODEL: 1500019900SET, PACKING: 5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랜지 드레인 백 DN 80, 모델명은 1500019900SET이고 5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9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ULCANISED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산지를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리프팅 백으로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가 아님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리프팅 백으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6. 기타 가황한 고무 제품 (4016.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용 새시 마운팅 고무: CHASSIS MOUNTING RUBBERS 2. ~ 8.: 생략 9.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BELLOW FOR JOYSTI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S OF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품명으로 동 물품의 신고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BELLOW FOR JOYSTICK WITH SCREWS, MODEL: AET00080, PACKING: 50EA/CT ○ 나사로 조이스틱을 만들기 위한 아래 고무, 모델명은 AET00080이고 1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ULCANISED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가 아님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어린이용 물놀이구구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7.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포켓 ·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2-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LLET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L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P ORIGINAL WALLET BLACK, MODEL: 381-02962-10, PACKING: 10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슱 오리지널 지갑 검정, 모델명은 381-02962-10이고 10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015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AMID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표면의 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동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8. 외부표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 · 이와 유사한 용기 [4202.92-102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S BAGS OF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F BA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 CADDY BAG SET BK, MODEL: 108, PACKING: 4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 캐디 백 세트 블랙, 모델명은 108이고 4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표면의 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동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89.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 · 이와 유사한 용기 [4202.92-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E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ING ROD C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BOX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IHARD ROD CASE 2 BLACK MODEL: 1424130, PACKING: 10EA/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경질 낚시 케이스2 검정, 모델명은 1424130이고 10개씩 상자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FABR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70%, POLYES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표면의 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동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0. 외부표면을 기타 재료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 · 이와 유사한 용기 [4202.9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JEWELRY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CH BOX BLACK LACQUERED IN MDF WOOD, MODEL: GPE00591, PACKING: 2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칠을 한 MDF 나무로 만든 검정색 시계 상자, 모델명은 GPE00591이고 20개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EXT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성분 및 함량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표면의 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동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1. 롤 모양 · 시트 모양의 화장지 · 안면용 티슈스톡 [4803.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ILET TISSUE STOCK FOR SANIT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ILET TISSUE JUMBO R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60000700SPATULA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15MM X L 65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ROLL/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PLY WHITE STANDARD ROLL, SIZE: W 500MM X L 115CM , PACKING: 20ROLL/CT, USE: HYGIENE ○ 위생용의 3PLY 화이트 스탠다드 롤, 사이즈는 W 500MM X L 115CM이고 1카톤 당 20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SU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PULP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PULP ○ 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종이냅킨, 화장지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물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화장품(물휴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만 적용 ■ 의약품용 침투·도포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 광택제·크림(CREAM)이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압지(押紙: BLOTTING PAPER)(제4805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2. 타월 ·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4803.0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ER USED FOR SANITARY PURPO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IER T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15MM X L 65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54 ROLL/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COSMETICS,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IER TISSUE 16GSM, SIZE: W 415MM X L 650MM, PACKING: 254 ROLL/CT,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평량 16인 이동용 티슈, 사이즈는 W 415MM X L 650MM이고 1카톤 당 24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PKIN TDJC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PULP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P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종이냅킨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물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화장품(물휴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만 적용 ■ 의약품용 침투·도포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 광택제·크림(CREAM)이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압지(押紙: BLOTTING PAPER)(제4805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3. 화장지 [4818.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ILET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SUE PAP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L TOILET T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AL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0CM X L 33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ROLL X 10BAG/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PLY TOILET PAPER EMBOSS WHEAT PATTERN, SIZE: W 10CM X L 33M, PACKING: 12ROLL X 10BAG/CT, USE: HYGIENE ○ 위생용인 3PLY 엠보싱 패턴 화장지, 사이즈는 W 10CM X L 33M이고 12롤을 포대에 담아 10포대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SUE PAPER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PULP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RGIN PULP ○ 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 일회용 종이냅킨, 화장지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U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U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STRIIP) 모양의 것·롤(ROLL) 모양의 것,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 향을 첨가한 제품은 HS3307.90-9000호, 비누가 함유된 제품은 HS3401.11-9000호으로 약사법 및 화장품법 대상이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4.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4818.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AL T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NCH NAPKIN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AL T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KERCHIEFS, CLEANSING OR FACIAL TISSUES AND TO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CM X D 2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5SHEET X 36 BOX/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AL TISSUE 2PLY, MODEL: 8806075712549, SIZE: W 20CM X D 20CM, PACKING: 85SHEET X 36 BOX/CT, USE: HYGIENE ○ 위생용인 2PLY 안면용 화장지, 모델명은 8806075712549이고 사이즈는 W 20CM X D 20CM, 85시트가 1상자에 담겨 36 상자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ING TISSU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WOOD PULP 80%, POLYESTER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WOOD PULP, POLYESTER ○ 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종이냅킨, 화장지, 일회용 타월(일회용 종이제, 셀룰로오스 타월), 일회용 행주(일회용 종이제, 셀룰로오스 타월), 식당용 물티슈화장지,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종이냅킨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물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안면용 화장지로 물휴지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STRIIP) 모양의 것·롤(ROLL) 모양의 것,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 의약품용 침투·도포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 광택제·크림(CREAM)이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압지(押紙: BLOTTING PAPER)(제4805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5. 제지용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로 만든 가정용품 · 위생용품 · 병원용품 [4818.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 ARTICLES OF PAPER P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P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5CM X D 35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8EA X 6BAG/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COSMETIC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G PAD, SIZE: W 35CM X D 35CM, PACKING: 48EA X 6BAG/CT, USE: HYGI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인 강아지 패드, 사이즈는 W 35CM X D 35CM이고 48개가 포대에 담겨 6포대를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 10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PULP 55%, POLYESTER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WOOD PULP,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팬티라이너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물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위생용 강아지패드로 대상 물품이 아님 ■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화장품(물휴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STRIIP) 모양의 것·롤(ROLL) 모양의 것,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 ■ 의약품용 침투·도포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한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비누나 세제를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 광택제·크림(CREAM)이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종이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압지(押紙: BLOTTING PAPER)(제4805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6. 장부 · 노트북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820.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ORANDUM PA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 IT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SPIRAL NOTEB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STERS, ACCOUNT BOOKS, NOTE BOOKS, ORDER BOOKS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0SHEET X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RAL NOTEBOOK 5MM-SQUARED, MODEL: N247ES, PACKING: 80SHEET X 50EA/CT ○ 사각형의 5MM 줄간격 스프링 노트북, 모델명은 N247ES이고 80장이 1개로 50개씩 1카톤으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ING PAPER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표장, 가입하지 않은 멀티쿠폰식 승차권 및 복권, 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과 톰볼라 티켓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7. 섬유의 플록(FLOCK) [5601.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ILE F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 MILLION HAIR ■ POLYESTER FLOCKING FUR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BUILDING FI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길이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3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G X 2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DRESSING OF RAYON FLOCK, MODEL: SUPER MILLION HAIR 123, SIZE:0.3-0.5MM, PACKING: 20G X 200EA/CT ○ 모델명 SUPER MILLION HAIR 123의 헤어용 레이온 플록(0.3-0.5MM)이며 20G을 200개씩 박스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FLOCKING FUR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T NO:218788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mm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만 해당하므로 길이 확인 필요 ■ 향료를 첨가한 방직용 플록은 제외(3307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SIZE: 섬유의 길이”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8. 사이잘마 등의 배의 밧줄 · 로프 · 케이블 [5607.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인용: FOR TOWING 2. 하적용: FOR LOADING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PES OF SI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ROPES OF SISAL (사이잘마 로프)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SAL R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섬유의 굵기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섬유의 굵기는 데시텍스로 표기 (예)25,000DTEX)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0MM X L 500MM 등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6KG/ROL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SAL ROPES WITH OIL, MODEL: ABC, 25,000DTEX, SIZE: W 6MM X L 200M, PACKING: 6.6KG/ROLL ○ 오일을 먹인 사이잘마의 로프로 모델명은 ABC, 섬유의 굵기는 2만5천데시텍스이며, 사이즈는 W 6MM X L 200M로 6.6킬로의 롤로 포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PE, SAFETY R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SA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M 21KG/ROLL 63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고 별표6에 계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CITES 비대상(일반 사이잘마가 원재료인 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섬유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한정적으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11부 주3 참조) ■ HS5607호는 원재료와 포장용 끈인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DTEX: 섬유의 굵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399. 기타 합성섬유제의 끈·밧줄·로프·케이블 [5607.5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PES OF OTHER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ROPE ME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섬유의 굵기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섬유의 굵기는 데시텍스로 표기 (예)25,000DTEX)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0MM X L 500MM 등 ○ [포장상태(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M/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ROPE MESH, MODEL: TD10RA, 15,000DTEX, SIZE: W 20MM X L 200M, PACKING: 200M/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스테르 메쉬제의 로프로 모델명은 TD10RA, 섬유의 굵기는 1만5천데시텍스이며 크기는 W 20MM X L 200M, 카톤당 200M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PE, SAFETY R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6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섬유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한정적으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11부 주3 참조) ■ HS5607호는 원재료와 포장용 끈인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DTEX: 섬유의 굵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0. 기타의 끈 · 밧줄 · 로프 · 케이블 [5607.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INE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TW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섬유의 굵기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섬유의 굵기는 데시텍스로 표기 (예)25,000DTEX)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0MM X L 5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M/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MS-W1, 25,000DTEX, SIZE: W 1MM X L 100M, PACKING: 200M/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은 TD10RA, 섬유의 굵기는 2만 5천데시텍스이며, 크기는 W 1MM X L 100M, 카톤 당 200M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PE, SAFETY R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 F186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은 섬유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한정적으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11부 주3 참조) ■ HS5607호는 원재료와 포장용 끈인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DTEX: 섬유의 굵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1. 켈렘 · 슈맥 · 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5702.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WOVEN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HAND-WOVEN RUG (손으로 직조한 러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WOVEN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HAND-WOVEN(손으로 짠 것)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WOVEN, WOOL RUG, MODEL: ABC, SIZE: W 200CM X L 200CM, PACKING: 5EA/CT ○ 손으로 직조한 모델명 ABC의 양모제 러그, 사이즈는 W 200CM X L 200CM,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160CM X 2184CM ■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매트, 러그, 카펫, 해당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작방식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2. 코코넛섬유(코이어)로 직조한 바닥 깔개 (5702.2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COCONUT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S OF COCONUT FIBRES(코코넛 섬유의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IR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WOVEN(직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T 3CM X W 500CM X L 1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TWO-SIDED TYPE MAT, MODEL: ABC, SIZE: W 500CM X L 1500CM X T 3CM PACKING: 2EA/CT ○ 직조된 TWO-SIDED TYPE의 매트로 사이즈는 W 500CM X L 1500CM X T 3CM이며 카톤 당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CONUT FIBR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160CM X 2184CM ■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코코아섬유제 매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코코아섬유제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3.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갈래(제품 제외) [5702.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RUG OF PILE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WOOL RUG OF PILE CONSTRUCTION (파일직물의 울 러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AN WOOL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V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NON ELECTRIC RUGS, MODEL: ABC, SIZE: W 110CM X L 180CM, PACKING: 2EAV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직물의 비전기식 RUG로 모델명은 ABC, 사이즈는 110CM X L 180CM이며, 카톤당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모델규격사항 기재 ■ WOOL,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4. 인조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제외) (5702.3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CARPET OF PILE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NYLON CARPET OF PILE CONSTRUCTION (파일직물의 나일론 카펫)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P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NON ELECTRIC CARPET, MODEL: ABC, SIZE: W 160CM X D 230CM, PACKING: 5EA/CT ○ 파일직물의 비전기식 카펫으로 모델명 ABC, 사이즈는 W 160CM X D 230CM 이며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RAYO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나일론제 카펫으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나일론제 카펫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5.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제외) [5702.3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의 것: OF COTTON 2. 기타 식물성섬유의 것: OF OTHER VEGETABLE TEXTILE MATERIALS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FLOOR COVERING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 OF COTTON (면으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BATH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BEIGE BATH MAT, MODEL: ABC-001, SIZE: W 400 CM X L 500CM, PACKING: 40EA/CT ○ 파일직물의 베이지 컬러 화장실용 매트, 모델명 ABC-001, 사이즈는 W 400 CM X L 500CM, 카톤 당 4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 COTTON 70%, POLYES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화장실용 매트로 비대상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화장실용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6.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5702.4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RUG OF PILE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WOOL RUG OF PILE CONSTRUCTION (파일직물의 울 러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HAND-MADE RUGS, MODEL: ABC, SIZE: W 110CM X L 180CM, PACKING: 5EA/CT ○ 파일직물의 손으로 짠 RUG로 모델명은 ABC, 사이즈는 W 110CM X L 180CM, 카톤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양모제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7. 인조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5702.4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CARPET OF PILE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NYLON CARPET OF PILE CONSTRUCTION (파일직물의 나일론 카펫)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NON-ELECTRIC WOVEN FLOOR MAT, MODEL: ABC, SIZE: W 160 X L 230CM, PACKING: 5EA/CT ○ 파일직물의 비전기식 직조된 바닥 깔개로 모델명 ABC, 사이즈는 W 160 X L 230CM,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RAYO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8.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5702.4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의 것: OF COTTON 2. 기타 식물성섬유의 것: OF OTHER VEGETABLE TEXTILE MATERIALS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 OF COTTON (면으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 FOOT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PILE(파일)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E, HAND-WOVEN MAT, MODEL: ABC, SIZE: W 150CM X L 200CM, PACKING: 10EA/CT ○ 파일직물의 비전기식 손으로 짠 바닥 깔개로 모델명 ABC, 사이즈는 W 150CM X L 200CM,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70%, POLYES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COTTO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파일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09.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직조한 기타 바닥 깔개(제품) (5702.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FLOOR COVERING OF WOOL (울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 WOVEN RU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WOVEN(직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NON-ELECTRIC RUGS, MODEL: ABC, SIZE: W 110CM X L 180CM, PACKING: 5EA/CT ○ 비전기식 WOVEN RUG로 모델명 ABC, 사이즈는 W 110CM X L 180CM,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80%, NYL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WOOL,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0. 인조섬유로 직조한 기타 바닥 깔개(제품) (5702.9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기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FLOOR COVERINGS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인조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COSE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WOVEN(직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GREY FLOOR MAT, MODEL: ABC, SIZE: W 160CM X L 230CM, PACKING: 10EA/CT ○ 직조한 회색 바닥깔개로 모델명은 ABC, 사이즈는 W 160CM X L 230CM,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RAYO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작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1.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직조한 기타 바닥 깔개(제품) (5702.9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의 것: OF COTTON 2. 기타 식물성섬유의 것: OF OTHER VEGETABLE TEXTILE MATERIALS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 OF COTTON (면으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WOVEN(직조)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ROUND BATHROOM MAT MODEL: B450, SIZE: W 60CM X L 60CM, PACKING: 30EA/CT ○ 직조한 라운드형 화장실용 매트로 모델명은 B450, 사이즈는 W 60CM X L 60CM,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70%, POLYES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 COTTO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2.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5703.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PETS OF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ARPETS OF WOOL (울로 만든 카페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FTED WOOL CARP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TUFTED(터프트)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0CM X L 5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FTED, NON-ELECTRIC CARPET, MODEL: CPT-55, SIZE: W 400CM X L 300CM, PACKING: 2EA/CT ○ 터프트한 비전기식 카페트로 모델명은 CPT-55, 사이즈는 W 400CM X L 300CM, 카톤 당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80%, NYL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러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트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3.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5703.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NY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S OF NYLON (나일론으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ILE FLOOR COV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TUFTED(터프트)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CM X D 70CM X H 3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FTED, CAR MAT, MODEL: KIT-PROTR, SIZE: W 50CM X D 70CM X H 3CM, PACKING: 50EA/CT ○ 터프트한 차량용 매트로 모델명은 KIT-PROTR이며, 사이즈는 W 50CM X D 70CM X H 3CM, 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차량용 보조 매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차량용 보조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페트,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트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고급용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4.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 (5703.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T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TUFTED(터프트)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0CM X L 6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FTED, 100% MICROFIBER MAT, MODEL: S532D, SIZE: W 40CM X L 60CM, PACKING: 5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트한 마이크로화이버의 매트 모델명은 S532D, 사이즈는 W 40CM X L 60CM, 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화장실용 매트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화장실용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트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5.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5703.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면제의 것: OF COTTON 2. 기타 식물성섬유의 것: OF OTHER VEGETABLE TEXTILE MATERIALS ○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COVERING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FLOOR COVERINGS OF COTTON (면으로 만든 바닥 깔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BATH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TUFTED(터프트)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 예) SIZE: W 40CM X L 7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FTED, REVERSIBLE BATH MAT, MODEL: LMI-401, SIZE: W 40CM X L 70CM, PACKING: 50EA/CT ○ 터프트한 양면 욕실매트로 모델명은 LMI-401, 사이즈는 W 40CM X L 70CM이며 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매트로 비대상 ■ 전파법 ○ 기타 사유: 비전기식 면제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프트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6.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펠트제의 바닥 깔개 (5704.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무나 플라스틱을 하면에 보강한 것 TEXTILE FLOOR BACKED OR IMPREGNATED ON THE UNDERSIDE WITH RUBBER OR PLASTIC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ILE FLOOR IMPREGNATED ON THE UNDERSIDE WITH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FLOOR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FELT(펠트)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6CM X L 57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LT, BLACK CAR MAT, MODEL: 10358310, SIZE: W 36CM X L 57CM, PACKING: 20EA/CT ○ 펠트로 만든 블랙 색상의 자동차 매트로, 모델명은 10358310, 사이즈는 W 36CM X L 57CM이며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68%, ACRYLIC RESIN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자동차 바닥용 매트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자동차 바닥용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직방식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7. 그 밖의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5705.0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착과일양탄자: BONDED PILE CARPETS 2. 부직포양탄자: NONWOVEN CARPETS 3. 후루킹해 만든 양탄자: CARPETS MADE BY FLOCKING 4. 니트 양탄자 및 양탄지지: KNITTED CARPETS AND CARPETING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WOVEN CARP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ARP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BONDED PILE(접착과일), NON-WOVEN(부직포), KNITTED(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20CM × L 180CM × T 1.2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WOVEN, BLACK DUST MAT, MODEL: ABC, SIZE: W 120CM × L 180CM × T 1.2CM, PACKING: 30EA/CT ○ 부직포로 검정색의 먼지털이 매트로, 모델명은 ABC, 사이즈는 W 120CM × L 180CM × T 1.2CM이며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1000V 이하 교류 및 직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방석,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플라스틱제 차량용 매트로 비대상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전기식 플라스틱제 차량용 매트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매트, 러그, 카펫, 해당 없음, 일반품목, 확인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융단은 개소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8.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5911.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공사 고정 필터: HOLLOW FIBER MEMBRANE 2. ~ 9. 생략 10.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ILE FILTERING E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TEXTILE FILTERING ELEMENTS (방직용 섬유로 만든 필터)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IN AIR FIL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ER FILTER, MODEL: ABC, SIZE: W 200MM × D 260MM X H 30MM, PACKING: 1,0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에어컨 필터로, 사이즈는 W 200MM × D 260MM X H 30MM, 카톤 당 1,0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품명만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5.22*8.29*2 ○ 부정확한 모델규격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60CMX2184CM, BEIGE,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직물인 경우 HS 6002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세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19.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106.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LONG SLEEVE BLOUSE, MODEL: 12345, PACKING:100PCS/CT ○ 메리야스 편물체 긴 소매의 블라우스, 모델명 12345,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체 구분기재 필요,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여성용·남성용에 따라 한-중 FTA 협정세율(FCN)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양허폭이 다르며, 오적용 적발 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106.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SHORT SLEEVE BLOUSE, MODEL: ABC, PACKING: 5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 짧은 소매의 블라우스, 모델명 ABC, 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90%, COTT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1.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브리프와 팬티 [6108.2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RIEF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DIES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OMEN BRIEFS, MODEL: ABC, PACKING: 1,0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의 여성용 브리프, 모델 명이며 카톤 당 1,0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RIE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2.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NIGHTDRES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NIGHTW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SHORT SLEEVE NIGHTDRESS, MODEL: ABC, PACKING: 4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 짧은 소매의 나이트드레스로 모델명 ABC, 카톤 당 4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JAMS ■ WOMEN'S PANTIES ■ STYLE NO.LU8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3.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네글리제 등과 유사한 의류 [6108.92-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ATHROBE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OMEN'S BATHROBE, MODEL: ABC,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 여성용 목용용 가운, 모델명 ABC이며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 STYLE NO.LU8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4. 면으로 만든 티셔츠 (6109.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HIR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 S T-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ATION: 100% COTTON 180 GSM ■ FGTS15DMF231M0 LV STAMP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U NECK SHORT SLEEVES T-SHIRTS, MODEL NO: FTS139,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의 U자 네크라인의 짧은 소매의 메리야스 편물제 티셔츠, 모델명 FTS139,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YS T-SHIRTS ■ CHILD T-SH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5%, RAY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 COTTON,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만 분류 ■ 티셔츠는 남성용, 여성용 및 원재료에 관계없이 HS제6109호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5.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 (6109.90-3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HIRTS OF MAN-MADE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TNESS T-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ATION: 100% POLY 180 GSM ■ FGTS15DMF231M0 LV STAMP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LONG SLEEVE BLOCK HIGH NECK T-SHIRT FOR WOMAN, MODEL: WWP19202, PACKING: 1,0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제의 여성용 하이넥크라인의 긴 소매 메리야스로 모델명 WWP19202, 카톤 당 1,0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 ACRYLIC 63% POLYESTER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는 성분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65%, RAYON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P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재료를 알 수 없음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만 분류 ■ 티셔츠는 남성용, 여성용 및 원재료에 관계없이 HS제6109호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6. 인조섬유로 만든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6109.90-3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싱글리트: SINGLETs 2. 런닝셔츠: RUNNING SHIRTS 3. 기타 조끼: OTHER VEST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Ts OF MAN-MADE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SINGLETs OF MAN-MADE FIBRES (인조섬유로 만든 싱글리트)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DIES BRA CAMIS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SI, SLEE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OMEN’ S SEAMLESS V NECK BRA CAMISOLE, MODEL: ABC, PACKING: 100PCS/CT ○ 편물제, 여성용 무봉제 V자 네크라인의 브라캐미솔,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AN SINGL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71%, POLYURETHANE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POLYESTER, ELAS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로 남성용, 여성용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7.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6109.90-9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HIRT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SHORT SLEEVE T-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SI, SLEEVE, K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OMEN'S TOP, MODEL: TM8842G175,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여성용의 티셔츠로 모델명은 TM8842G175,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RTS ■ KNITW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65%, POLYESTER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단 분류 ■ 티셔츠는 남성용, 여성용 및 원재료에 관계없이 HS제6109호로만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8.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6109.9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싱글리트: SINGLETs 2. 런닝셔츠: RUNNING SHIRTS 3. 기타 조끼: OTHER VEST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SINGLET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LADIES BRA CAMIS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SI ■ T-SHIRTS ■ UNDERW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OMEN’ S SEAMLESS V NECK BRA CAMISOLE, MODEL: ABC, PACKING: 100PCS/CT ○ 편물제 여성용 V자 네크라인의 브라캐미솔,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ST, KNIT TOP, SLEEVELESS SH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 LINEN 65%, POLYESTER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로 남성용, 여성용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29.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6111.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ANT COTTON 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월령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BLUE SHORTS, MODEL: ABC, STYLE NO .12345, 12~18M,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파란색 반바지로 모델명은 ABC, 스타일 번호는 12345, 월령은 12~18개월,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임의 사항만 기재되어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0%, RAY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RAYON,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 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 이외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6209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0.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6111.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S DR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 HEATTECH U-NECK L/S T-SH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월령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WHITE DRESSES, MODEL: ABC, STYLE NO .12345, 12~18M,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흰색 드레스로 모델명은 ABC, 스타일 번호는 12345, 월령은 12~18개월,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임의 사항만 기재되어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 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 이외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6209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1.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6111.9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S DR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상태] KNITTED(메리야스 편물), CROCHETED(뜨개질 편물) 등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월령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SUMMER ONE-PIECE, MODEL: ABC, STYLE NO.12345, 12~18M, PACKING: 5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여름원피스로 흰색 드레스로 모델명은 ABC, 스타일 번호는 12345, 월령은 12~18개월,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구분기재 필요, 임의 사항만 기재되어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 이외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6209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2. 단계압박 양말류 (6115.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FOR EXAMPLE, STOCKINGS FOR VARICOSE VE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DAGE COMPRESSION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TY HOSE FOR VARICOSE VE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DAGE ○ 당해물품의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 양모제, 동물의 부드러운 털제, 면제, 합성섬유제의 것, (02)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PANTY WITH BODY BANDAGE, MODEL: KO- 2017, PACKING: 500PCS/CT ○ 밴드가 있는 팬티호스 형태의 단계압박 양말류로 모델명 KO- 2017, 카톤 당 5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 신고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56%, COTTON 27%, LYCRA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LYCRA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 ■ 재질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세율차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3.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츠 [6115.2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GH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LEGG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TIGHTS, MODEL: 408, PACKING: 1,0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타이즈로 모델명 408이며 카톤 당 1,0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TTED LEGG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상의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5%, POLYURETHAN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4.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셔츠 [6205.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SHIR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WOVEN 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M NK SB, 11 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ODY JACKET SHIRT, MODEL: SF331-M,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 있는 자켓형 셔츠로 모델명 SF331-M이고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 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를 분류함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여성용·남성용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및 APTA 양허폭이 다르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5.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셔츠 (6205.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HS42WJLF9003L LVSE MUL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CHECK SHIRTS, MODEL: ABC, PACKING: 15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무늬 직물제 셔츠로 모델명은 ABC이며 카톤 당 1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MEN 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60%, COTTON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6.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206.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OF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WOOL OR FINE ANIMAL 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LONG SLEEVE, MODEL: ABC,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소매의 직물제 셔츠로 모델명 ABC이며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90%, POLYESTER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7.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206.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SHIR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SHI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UTTON DOWN SHIRTS MODEL: ABC,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버튼다운형 셔츠로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0%, RAY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RAY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여성용·남성용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및 APTA 양허폭이 다르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8.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206.4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LEEVELESS BLOUSE, MODEL: ABC, PACKING: 30PCS/CT ○ 직물제의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로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RAY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6206.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LEEVELESS BLOUSE, MODEL: ABC, PACKING: 30PCS/CT ○ 직물제의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로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L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90%, COTT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0.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1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UNDERPAN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WOVEN UNDER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MENS BOXER, MODEL: NU2664, PACKING: 2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남성용 언더팬츠, 모델명 NU2664,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TRUN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5%, POLYURETHAN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7호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1.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죄기·목욕용 기운·드레싱기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9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SINGLET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SING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PCT COTTON AND 35 PCT POLYESTER BIG WAFF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INGLET, MODEL: 110799 ,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싱글리트, 모델명 110799,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R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7호 또는 제6109호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2.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쇼트형 신발과 그 부의 죄끼·목용 기운·도리상온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99-3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YS' BATHROBE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ATHR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LOUNGE WEAR BATHROBE, MODEL: 110799 ,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목용용 기운, 모델명 110799,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 R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90%, COTT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OF FI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7호 또는 제6109호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3.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PYJAMA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PYJAMAS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HORT PANTS AND CAMISOLE SET, MODEL: ABC,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반바지와 캐미솔로 구성된 파자마 세트,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JAMS ■ STYLE NO.LU8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80%, RAY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RAY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8호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4.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PYJAMA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PYJAMS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WOVEN SLEEPWEAR CAMISOLE AND PANT SET, MODEL: ABC,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반바지와 캐미솔로 구성된 파자마 세트,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JAMS ■ WOMEN'S NIGHTD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8호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5.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싱글리트·네글리제·목욕용 기운·드레싱기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8.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BATHROBE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ATHROBE, MODEL: ABC,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목욕용 기운,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 SING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80%, RAY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8호 또는 제6109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6.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용 싱글리트·네글리제·목욕용 기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8.9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DRESSING GOWN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ESSING GOW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OR GIRLS' SINGLETS AND OTHER VESTS, SL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4단위 품명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GOWNS, MODE: 1791,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드레싱 가운, 모델명 1791,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 SING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8호 또는 제6109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7. 그밖의방통삼유로만든 여성용소형 싱글리트·네들리제·목욕용 기운·드레싱기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8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SINGLET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SING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INGLET, MODE: ABC,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싱글리트, 모델명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HROBE ■ SING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90%, COTT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 BLA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는 HS 제6108호 또는 제6109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8.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6209.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L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LOUSE, MODEL: ABC, STYLE NO.12345, 12~18M,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블라우스로 모델명 ABC, 스타일번호 12345, 월령 12~18개월,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IT 456879012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0%, RAY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RAY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49.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09.2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CLOTHING ACCESSORIE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S AND ACCESS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B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5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ID WOVEN BABY BIBS, MODEL: ABC, STYLE NO.12345, UNDER 36M, PACKING: 5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유아용 턱받이로 모델명 ABC, 스타일번호 12345, 월령 36개월 미만, 카톤 당 5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 STYLE NO:012M3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0%, RAY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RAY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0.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6209.30-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J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예) 12M, 12M~18M, UNDER 36M, 36MONTH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BABIES ZIP UP JACKET, MODEL: ABC, STYLE NO .12345, 12~18M,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체의 유아용 집업 자켓, 모델명 ABC, 스타일번호 12345, 월령은 12~18개월,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IT 456879012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60%, COTTON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1.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6209.3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CLOTHING ACCESSORIE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BI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POSABLE BIBS, MODEL: BB-11, PACKING: 5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유아용 턱받이, 모델명 BB-11, 카톤 당 5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 P/NO.470752398, S/NO.31072059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63%, POLYESTER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2.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유아용 의류 (6209.9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WOOL OR FINE ANIMAL 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JAC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WOOL OR FINE ANIMAL 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12M, 12M~18M, UNDER 36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WOOL JACKETS, MODEL: ABC, STYLE NO.12345, 12~18M,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의 유아용 양모 자켓, 모델명 ABC, 스타일번호 12345, 월령은 12~18개월,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C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 07K524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 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3.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6209.9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GARMENTS OF RAY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BL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유아용의류(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 해당 세번은 월령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12M, 12M~18M, UNDER 36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IES SHORT SLEEVE BLOUSE, MODEL: ABC, STYLE NO .12345, 12~18M, PACKING: 5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짧은 팔의 블라우스, 모델명 ABC, 스타일번호12345, 월령 12~18개월,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M352051, HT351216(SIZE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O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 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세번은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에 한해 적용 ■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은 HS 제6111호에 분류되며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M, MONTH, UNDER: 대상월령”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4.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의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6211.3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TAEKWONDO UNIFORM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GAR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EKWONDO UNI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M NK SB POLO SS A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S TAEKWONDO UNIFORM, MODEL: ABC, PACKING: 5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용 태권도복, 모델명 ABC, 카톤 당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RATE UNIFORMS ■ UNIFORMS J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 100%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70%, POLYESTER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의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은 HS 제6211.42-1000호에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5. 면으로 만든 브라지어 [6212.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SSIERE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FORT B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SPAN SOLID MOLD BRA, MODEL: CDWB9S203, PACKING: 2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의 단색 몰드 브라지어로 모델명은 CDWB9S203,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SSIERE ■ WOMAN BRASSI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5%, POLYURETHAN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관계없이 동 세번으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6.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브라지어 [6212.1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SSIERE OF SI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LE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SOFT CUP WIRELESS BRALETTE, MODEL: ABC, PACKING:2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제의 소프트 컵의 와이어 없는 브라렛으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SSIERE ■ WOMAN BRASSI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93%, POLYURETHANE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SPA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관계없이 동 세번으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7. 인조섬유로 만든 거들과 팬티거들 (6212.2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RDLE OF MAN-MADE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AN-MADE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GIR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MAN-MADE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RT GIRDLES SKIN COLOR MODEL: PG-002, PACKING: 3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짧은 거들로 스킨컬러, 모델명은 PG-002, 카톤 당 3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WEAR ■ GIRD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84%, POLYURETHANE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LON,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브리프와 팬티는 제직방법에 따라 HS6108호 또는 HS6208호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8.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거들과 팬티거들 [6212.2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RDLES OF SI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GIR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TE LONG GIRDLES FOR LADIES, MODEL: PG-002, PACKING: 3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여성용 긴 거들로 모델명은 PG-002, 카톤 당 3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WEAR ■ WOMENS GIRD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95%, SPANDEX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SPA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브리프와 팬티는 제직방법에 따라 HS6108호 또는 HS6208호로 분류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59. 면으로 만든 손수건 (6213.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KERCHIEFS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S WOVEN HANDKERCH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L 2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ARE WOVEN, MODEL: ABC, SIZE: W 200MM X L 200MM, PACKING: 3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사각형 손수건으로 모델명 ABC, 크기는 W 200MM X L 200MM이며 카톤 당 3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EL 손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불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95%, LINE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내의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물품이 분류되므로 사이즈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손수건 (6213.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KERCHIEFS OF OTHER TEXTILE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EL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S HANDKERCH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01, 02 양모제, 동물의 부드러운 털제, 면제, 합성섬유제의 것⇒(01)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0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 예) SIZE: W 200MM X L 2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SQUARE WOVEN, MODEL: ABC, SIZE: W 200MM X L 200MM, PACKING: 300PCS/CT ○ 직조한 사각형 손수건, 모델명 ABC, 크기는 W 200MM X L 200MM, 카톤 당 3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KERCHIEF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 SPANDEX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내의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물품이 분류되므로 사이즈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1. 합성섬유로 만든 슀 등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3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RVES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CA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900MM X L 9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WOVEN SCARF, MODEL: ABC, SIZE:: W 900MM X L 900MM,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여성용 스카프, 모델명 ABC, 크기는 W 900MM X L 900MM,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90%, WOO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W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방법과 섬유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2.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슈 등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WL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SHAW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40CM X L 20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SHAWLS, MODEL: ABC, SIZE: W 140CM X L 200CM,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한 모델명 ABC의 슈, 크기는 W 140CM X L 200CM,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SHAW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90%, COTT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방법과 섬유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원재료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SIZE: 크기”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3. 플라스틱 ·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장갑류 (6216.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VE IMPREGNATED WITH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ING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U X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L SIZE, MODEL: ABC, PACKING: 2U X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상의 L 사이즈의 모델명 ABC로 카톤 당 100켤레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55%, POLYAMIDE 35%, POLYURETHANE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POLYAMIDE, POLYURETH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물제 플라스틱 ·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장갑류는 HS 제6116.10-0000호로 분류, 한-중 FTA 협정세율(FCN) 세율차가 있으므로 제직방법 확인 필요 ■ HS 제6216호 장갑류는 플라스틱 · 고무의 침투, 도포, 피복 여부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4. 기타의 장갑류 (6216.0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GLOVES OF POLYE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UE TOU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U X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WN OVEN GLOVE, MODEL: TFG2-13-E, PACKING: 2U X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색의 오븐용 장갑으로 모델명 TFG2-13-E, 카톤 당 100켄레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불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6216호 장갑류는 플라스틱·고무의 침투, 도포, 피복 여부에 따라 세면이 변경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FAS)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5. 전기모포 [6301.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BLAN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EATED BLAN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40CM X L 19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 BLANKET, MODEL: ABC, VOLT: AC 220V, 100W, SIZE: W 140CM X L 190CM, PACKING: 2PCS/CT, USE: RESEARCH ○ 바닥에 까는 전기모포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AC 220V, 100W, 사이즈는 W 140CM X L 190CM이며 카톤 당 2개포장된 시험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BLANKET 135*180 ○ 필수기재 사항인 정격입력 등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모포(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모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모포는 재질에 관계없이 동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6.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 · 실내용 블라인드 ·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6303.9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TAINS OF SYNTHETIC FI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SYNTHETIC FIB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CURT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 RIDEAU VOI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서류의 용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75CM X L 235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SET/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POLYESTER CURTAIN, MODEL: JADE2, SIZE: W 275CM X L 235CM, PACKING: 20SET/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제 커튼으로 사이즈는 W 275CM X L 235CM, 모델명 JADE2, 카톤 당 20세트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ESTER 80%, COTTON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EXTILE MATERIAL ■ POLYESTER,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직방법과 원재료에 따라 세번과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7.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실내용 블라인드·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6303.9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TAINS OF L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OTHER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ORATION CU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 RIDEAU VOI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서류의 용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75CM X L 235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SET/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VEN LINEN CURTAIN, MODEL: 100405, SIZE: W 275CM X L 235CM, PACKING: 20SET/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조된 린넨 직물제의 커튼으로 사이즈는 W 275CM X L 235CM, 모델명 100405, 카톤 당 20세트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섬유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N 70%, COTTON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EXTILE MATERIAL ■ LINEN, COT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구성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직방법과 원재료에 따라 세번과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8.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트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6307.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H-CLO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H-CLO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PROPYLENE NET SCRUBBER, PACKING: 200PCS/CT ○ 접시 등 세척수세미로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편직된 그물상사 형상의 제품으로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 CLOTH, BLUE MOP ○ 거래품명을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수세미로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세율(A13%) 품목(면제 테리타월 직물의 섬유재료로 만든 주방리넨, 제6302.60-0000) 등을 저세율(A10%)인 동세번으로 신고오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69.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6307.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JAC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 LIFE 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어린이용 물품인 경우 “FOR CHILDREN” 라는 단어를 구체적 물품 설명의 마지막에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VEST WITH FRONT ZIP OPEN, MODEL: ABC, FOR CHILDREN,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퍼로 오픈하는 형태의 구명조끼로 모델명 ABC, 카톤 당 30개씩 포장,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V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용 구명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을 받은 구명조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제가 있는 낚시 조끼는 구명재킷(HS6307.20-0000호)으로 분류. 요건회피 목적으로 일반 의류(HS 6109호)로 수입신고 오류 주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0.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6307.9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 페난트류: FLAGS, PENNANTS AND BANNERS, 2. ~ 20.: 생략 21. 수술용 마스크(약사법 대상): SURGICAL OR MEDICAL MASKS 22. 보건용 마스크(약사법 대상): HEALTH MASKS 23. 기타 마스크(약사법 비대상): OTHER MASKS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표준품명 12번(CARRY COTS, PORTABLE CRADLES AND SIMILAR CARRIERS FOR CHILDREN) 해당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은 다음 품명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캐리어: TEXTILE BABY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SWABS ■ MEDICAL DRAPE ADHESIVE ■ TEXTILE BABY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MEDICAL DRAPE ADHESIVE (의료용 드레이프 접착제)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BUDS ■ MEDICAL DRAPE ADHESIVE ■ BABY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HIMO, ANK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CASE/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HYGIENE,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PCS PAPER STICK COTTON BUDS IN PP ROUND CASE, MODEL: ABC, USE: HYGIENE, PACKING: 30CASE/CT ○ 위생용품관리법 대상인 일회용 면봉 ■ B07060.01 DRAPE ADHESIVE, AEROSOL, MODEL: ABC, USE: MEDICINAL, PACKING: 50CASES/CT ○ 의료기기법 대상인 드레이프 접착제 ■ SOFT BABY CARRIER, MODEL: ABC, FOR CHILDREN, PACKING: 10EA/CT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유아용 캐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UAL BAG ■ CASE, CLO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면봉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비접촉식재사용가능외과용드레이프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캐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위생용품관리법 대상인 일회용 면봉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없음, 요건면제, 대상아님, 일회용품 아님, 대외무역관리규정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 제품의 기타 세 번으로 제외되는 물품과 포함되는 물품이 다양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1.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타 신발류 (6404.1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VAS SH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갑피·바깥 바닥의 원재료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UX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 TOP SNEAKERS, MODEL: SH85ES67, PACKING: 2UX3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우탑 스니커즈로 모델명은 SH85ES67, 카톤 당 30켄레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UA SH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523 230-280 G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 사항인 갑피와 바깥 바닥의 원재료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갑피와 바깥 바닥의 원재료와 성분비를 “UPPER:” 과 “OUTER SOLE:” 을 기재 한 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PER: POLYESTER 100%, OUTER SOLE: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 V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바닥과 갑피의 원재료 및 스포츠용 신발류 해당여부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2. 펠트제나 기타 방직용 섬유 의 직물로 만든 모자 (6505.0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HAT OF FE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MEN' S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01, 02 펠트(FELT)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레토우(PLATEAUX)로 만든 것만 해당하며, 안을 댄 것]⇒(01), 기타⇒(0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1)/FEDORA STYLE, MODEL: ABC, PACKING: 100EA/CT ○ 페도라 스타일의 펠트제의 모자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모자 원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 WOO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VY/G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된 직물을 엮어서 제작한 모자(HS6504.00-0000호)를 식물방역법 요건회피 목적으로 기타 모자인 등 세번으로 수입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3.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모자 (6506.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DGEAR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RUBBER OR OF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MMING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어린이용품 여부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SWIM CAP, MODEL: 12345, FOR CHILDREN, PACKING: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재질의 모델번호 12345의 어린이용 수영모자로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MMING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모자 원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DER:ADULT UNISEXSIZ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보호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어린이용 수영모자로 스포츠보호용품이 아니므로 비대상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어린이용 수영모자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의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4. 기타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자 [6506.9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T OF M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K 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 SIZE BLACK HAT, MODEL: ABC,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번호 ABC의 블랙컬러 모자로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모자 원재료의 성분 및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K FU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L/X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보호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밉크모자로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이 아니므로 비대상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밉크모자로 스포츠보호용품이 아니므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의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고급모피와 그 제품은 개소세 대상 ■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야 할 일회용 종이제 위생모를 저세율의 종이제 가정용품·위생용품 등(HS 4818.50-0000호, C 0%)으로 오신고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5.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산류(傘類) [6601.9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MBRELLAS OF HAVING A TELESCOPIC SH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MBRELL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LD UMBRE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RET MI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FOLDING AUTOMATIC UMBRELLA, MODEL: ABC, PACKING: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번호 ABC의 3단 접이식 우산으로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MBRE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으로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류(傘類)의 대가 절첩식인지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세번오류 사례 다수 발생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6.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속눈썹 (6704.19-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LSE EYELASHES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LASH EXTE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LASH EXTE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PAIRS/PACK, 500PACK/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URL EYELASH, MODEL: ABC, PACKING: 15PAIRS/PACK, 500PACK/CT ○ C-CURL의 속눈썹으로 모델명은 ABC이고, 포장은 팩당 15쌍, 카톤 당 500팩씩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 NO.LT180625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기재사항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AMID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P-9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사이즈, 색상 등 모델규격 사항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7. 도자제의 커피세트 · 티세트 [6912.0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AMIC TEA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BLEWARE AND KITCHEN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THEN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SET/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15PC SET, CUP&SAUCER FOR 6, MILK POT, SUGAR POT, 38OZ TEAPOT, MODEL: ABC, PACKING: 2SET/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인용 컵과 접시 등 15피스로 구성된 모델번호 ABC의 세트로 카톤 당 2 세트씩 포장된 샘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건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제의 커피세트 · 티세트는 HS6911.10-1000호로 분류되며 APTA 협정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개소세 대상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8. 도자제의 공기, 대접과 접시 (6912.00-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AMIC D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BLEWARE AND KITCHEN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UND D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THEN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20CM WHITE PLATE, MODEL: 102722, PACKING: 6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CM의 모델번호 102722인 흰색 접시로 카톤 당 6개 포장된 샘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HES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제의 공기, 대접과 접시는 HS6911.10-2000호로 분류되며 APTA 협정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개소세 대상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79.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912.00-1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㉑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컵: CUPS 2. 쟁반: TRAYS 3. ~ 11. 생략 1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AMIC KN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ERAMIC KNIFE(도자제 칼)
㉒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AMIC KN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㉓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CM KNIFE, MODEL: ABC, PACKING: 200EA/CT ○ 29CM의 모델번호 ABC의 도자제 칼로,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㉔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㉕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제의 기타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HS6911.10-9000호로 분류되며 APTA 협정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개소세 대상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0. 도자제의 가정용품 [6912.0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AMIC HOUSEHOLD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HOUSEHOLD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HT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THEN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K TOP SMOKING ASHTRAY, MODEL: ABC, PACKING: 2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상형 재떨이로 모델번호 ABC,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HT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탁상형 재떨이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제의 가정용품은 HS6911.90-1000호로 분류 ■ 개소세 대상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1. 모조신변장식용 팔찌 (7117.1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CELET OF BASE M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IN BRACE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EN' S IMITATION JEWELRY BRACELET, MODEL: KGB-22046, PACKING: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용 모조신변장식용 팔찌로 모델명 KGB-22046,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ORY ■ BRACELET ■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등을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중량이 많은 것부터 원재료의 성분 및 구성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STEEL 60%, BRASS 35%, GLASS 5%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은 품목에 따라 세번과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2.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 [7616.99-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은 다음 품명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캐리어: ALUMINUM BABY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MINUM CAMERA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MINUM CAMERA SUPPORT, PACKING: 1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 및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카메라 부품,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MINUM 100%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캐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알루미늄 카메라 파트로 유아용캐리어가 아니므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7616호의 특게된 다른 물품이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 ■ 타 세번으로 신고되어야 할 물품이 동 세번으로 오신고되는 사례 다수 발생, 확인 필요 (예) 카메라·정밀기기 등에 사용되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HS 9620.00-0000호)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3. 연필깎이 [8214.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CIL SHARPE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TTER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SHARPE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D POINTER TUB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0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EBROW PENCIL SHARPENER, MODEL: 9006, PACKING: 4,000EA/CT ○ 아이브로우펜슬용 연필깎이로 모델번호 9006, 카톤 당 4,0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CIL SHARPENERS ○ 거래품명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472호의 연필 깎는 기계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4. 기타의 팬 (8414.5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해진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산·가옥·사일로·선박의 환기용: FOR VENTILATING MINES AND PREMISES OF ALL KINDS, SILOS, SHIPS 2. ~ 5. 생략 7.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COMPACT BL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CORDLESS COMPACT BLOWER (무선 소형 송풍기)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풍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COMPACT BL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Y BLOWER 1.3KG, MODEL: ABC, VOLT: DC 18V, 265W, PACKING: 10EA/CT ○ 핸디형 송풍기로 무게는 1.3KG, 모델번호는 ABC, 정격전압은 DC 18V, 265W이며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WF0624H7D01 ○ 필수기재 사항인 정격전압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전기냉풍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격전압이 DC 18V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대상품목 아님, 용도비대상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에 따라 HS8414.5 하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5. 사용동력 11KW미만의 기타 공기조절기 (8415.10-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ING MACHINE OF CEILING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POWER LESS THAN 11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거래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 EQUIPMENT, MODEL: ABC, S/N: 123456, 123457, VOLT: AC 220V, 7.2KW,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조절설비로 모델명은 ABC, S/N: 123456, 123457. 정격전압은 AC220V, 7.2KW이며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ILING AIR CONDIT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 사항인 정격전압 등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동력(11킬로와트 기준으로 미만인 것과 이상인 것)에 따라 한-중 FTA 협정세율(FCN) 세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6. 사용동력 11KW이상의 기타 공기조절기 (8415.10-9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ING MACHINE OF CEILING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A POWER NOT LESS THAN 11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 VO/D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S/N: 123456, 123457 VOLT: AC 220V, 56KW, PACKING: 2EA/CT ○ 공기조절기로 모델명은 ABC, S/N: 123456, 123457, 정격전압은 AC220V, 56KW이며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ILING AIR CONDIT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 사항인 정격전압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동력(11킬로와트 기준으로 미만인 것과 이상인 것)에 따라 한-중 FTA 협정세율(FCN) 세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7. 냉각유닛을 결합한 공기조절기 (8415.8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ING MACHINE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16-08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거래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ABLE TYPE AIR CONDITIONER, MODEL: RPA-100D, VOLT: AC 220V, 1.5KW, PACKING: 2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공기조절기로 모델명은 RPA-100D, 정격전압은 AC 220V, 1.5KW,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ONDITIONER(PA-M07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기재 사항인 정격전압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냉방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8515.8 하위 세번은 냉각유닛 등의 결합 여부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8.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8419.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STERILIS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STERILISER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STERILISER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7 MINI ■ CYW-DUO,CYW-100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ANIMAL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4010.01 MOIST HEAT BEST-TYPE, MODEL: DS610, S/N: 1806410IL011, PACKING: 1EA/CT, USE: RESEARCH ○ 의료기기법 대상인 B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로 모델명은 DS610, SERIAL NO는 1806410IL01이며 연구시험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SO92 ○ 모델규격 사항을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N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S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89. 의류탈수기 (8421.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ES-DR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 DRYERS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80S1K(WHIT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 DRYER WITH STEEL TUB, MODEL: ABC, S/N: 12345, VOLT: AC220V, 60HZ, 180W, PACKING: 1EA/CT ○ 철강제 통의 의류탈수기로 모델명은 ABC, SERIAL NO는 12345, 정격전압은 AC220V, 60HZ, 180W이며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 DRYER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모델규격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탈수기, 전기세탁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탈수기, 전기세탁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0. 가정형의 물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TERING APPARATUS FOR WATER OF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THE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PUR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303-28-PI-FC-S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 기재사항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3CM X L 8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BRANE FILTER CARTRIDGE, MODEL: ABC, VOLT: AC220V, 50W, SIZE: W 53CM X L 8CM, PACKING: 3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멤브레인필터 카트리지가, 모델은 ABC, 정격전압은 AC220V, 50W, 사이즈는 W 53CM X L 8CM, 카톤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PUR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의 물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므로 용도 및 물 여과(정수)여부 확인 ■ 일반 여과기가 아닌 전기온수기는 HS제8516.10-0000호에 속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임으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1. 가정형의 기체 여과기나 청정기 [8421.3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IFYING MACHINERY OF GASES FOR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THE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PUR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NO.KW-JHQ03-G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30MM × D 180MM × H 55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SAR-1000, VOLT: AC220V, 50W, SIZE: W 330MM × D 180MM × H 55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은 SAR-1000, 정격전압은 AC220V, 50W, 사이즈는 W 330MM × D 180MM × H 550MM인 공기청정기로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모델규격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는 안전확인 대상 ○ 정격전압 A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HS 제8479.89-1010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2. 기타 원심분리기 등의 부분품 [8421.99-90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OF FILTERING MACHIN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FILTER FOR REFRIG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PA FILTER, MODEL: SS011, SIZE: W 365MM X D 280MM,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파 필터로 모델명은 SS011이며 사이즈는 W 365MM X D 280MM, 카톤 당 1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421.9 하위 호의 부분품 세번은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3.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 (8435.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SES FOR THE EXTRACTION OF FRUIT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RY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REW PRESS JUI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 포괄적인 품명을 기재, 당해물품의 거래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INLESS-STEEL JOINT WATER PRESS, MODEL: HYDROPRESS 201S, PACKING: 10EA/CT ○ 스테인리스스틸제의 프레스, 모델명은 HYDROPRESS 201S,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REW PRESS JUICER ○ 거래품명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품은 HS제8435.90-0000호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4. 과일주스 추출용 크리셔 (8435.1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RS FOR THE EXTRACTION OF FRUIT JU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RY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CRU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 포괄적인 품명을 기재, 당해물품의 거래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CENTRIFUGAL JUICER CRUSHERS, MODEL: J100 ULTRA, PACKING: 10EA/CT ○ 자동 원심분리형의 과일주스 크리셔로 모델명은 J100 ULTRA,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CRUSHER ○ 거래품명 기재, 당해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품은 HS제8435.90-0000호로 분류되며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5.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완전자동 세탁기 (8450.1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Y-AUTOMATIC WASH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Y-AUTOMATIC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 65GAWCA-S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세탁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세탁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CAPACITY: 8KG, VOLT: AC 220V, 60HZ 1770W,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ABC인 세탁능력 8KG의 세탁기로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770W이고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QB35-G308 ■ 1254CF2;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만 분류 ■ 세탁능력에 따라 HS8450.1 및 HS8450.20으로 부분품은 HS8450.90-0000으로 분류,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세탁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6.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원심탈수기를 내장한 세탁기 (8450.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MACHINES WITH BUILT-IN CENTRIFUGAL D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I AUTO 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 65GAWCA-S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세탁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세탁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CAPACITY: 8KG, VOLT: AC 220V, 60HZ 1770W, PACKING: 2EA/CT,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ABC인 세탁능력 8KG의 세탁기로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770W이고 카톤 당 2개 포장되었으며 연구실험용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QB35-G308 ■ 1254CF2: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만 분류 ■ 세탁능력에 따라 HS8450.1 및 HS8450.20으로 부분품은 HS8450.90-0000으로 분류,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세탁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7.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기타 세탁기 (8450.1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 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세탁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세탁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CAPACITY: 3KG, VOLT: AC 220V, 60HZ 350W, PACKING: 10EA/CT ○ 모델명 ABC인 세탁능력 3KG의 세탁기로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350W이고,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1501C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만 분류 ■ 세탁능력에 따라 HS8450.1 및 HS8450.20으로 부분품은 HS8450.90-0000으로 분류,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세탁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8. 1회 세탁능력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 (8450.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WASH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세탁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세탁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CAPACITY: 15KG, VOLT: AC 220V, 60HZ 1770W,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ABC인 세탁능력 15KG의 세탁기로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770W이고,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9868120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만 분류 ■ 세탁능력에 따라 HS8450.1 및 HS8450.20으로 부분품은 HS8450.90-0000으로 분류, 한-중 FTA 협정세율(FCN) 등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세탁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499. 1회 건조능력이 10KG 이하인 건조기 [8451.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ING MACHINES CAPACITY NOT EXCEEDING 1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JEWCH-S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건조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건조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DRYER, MODEL: ABC, CAPACITY: 6KG, VOLT: AC 220V, 60HZ 1600W,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건조기로, 모델명 ABC, 건조능력 6KG,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600W이고,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8101537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기임에도 모델규격란의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용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전기건조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소비전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용 전기건조기(의류의 것), 전기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건조능력이 10KG 이하인 건조기만 등 세번으로, 그 외는 HS8451.29-0000호로 분류하며 부분품은 HS8451.90-2000호로 한-중 FTA 협정세율(FCN)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건조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0. 기타 건조기 (8451.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DRY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건조능력,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1회 건조능력을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 기준으로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DRYING MACHINES, MODEL: ABC, S/N: 123456, CAPACITY: 150KG, VOLT: AC 220V, 50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건조기로, 모델명 ABC, S/N: 123456, 건조능력 150KG, 정격전압은 AC 220V, 50KW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8101537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기임에도 모델규격란의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용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전기건조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소비전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용 전기건조기(의류의 것), 전기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소비전력이 50KW인 공업용 건조기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에 전용되고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PACITY: 건조능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1. 스팀 프레스 (8451.3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PR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 CLEANING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PRESSES FOR CLEANING SHOPS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NO. HT-400P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IRTS STEAM PRESS, MODEL: ABC, S/NO: 12345, VOLT: AC 220V, 1.5KW ○ 셔츠용 스팀프레스기로 모델번호는 ABC, S/NO는 12345이며, 정격전압은 AC 220V, 1.5KW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WF-RP180XKDWF-RP180XK ○ 전기식 프레스기임에도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소비전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에 전용되고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2. 기타 다림질기와 프레스 (8451.3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ON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ON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IRONER, MODEL: ABC, VOLT: AC 220V, 1KW,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다림질기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1KW이고 2개씩 카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ON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다리미임에도 모델규격란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소비전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에 전용되고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3. 세척기 (8451.4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HING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NDRY EQUIPMENT ■ USED ASIS INDUSTRIAL LAUNDRY WASHING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NDRY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CBW MILNOR TYPE 76028S3F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MEDIUM CAPACITY WASHERS, MODEL: ABC, PACKING: 2EA/CT ○ 중소형용량의 세척기로 모델명은 ABC 이며 카톤 당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NDRY MACHINES ○ 거래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그대로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에 전용되고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4. 기타 직물관련 기계 (8451.80-9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REFRE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REFRE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B-123, SIZE: W 595MM X D 615MM X H 1.960MM,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관리기로 모델명 B-123이며, 사이즈는 W 595MM X D 615MM X H 1.960MM이고 카톤 당 1대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OTH REFRE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그대로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가 방직용 섬유사·직물이나 직물 제품에 전용되고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5.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 [8467.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LL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DR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22S80 BARE,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MOND CORE DRILL, MODEL: ABC, VOLT: AC 220V, 2100W,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날을 장착한 코어드릴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220V, 정격입력은 2100W,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DR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구체적 규격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드릴 ○ 안전인증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정격입력 1.5KW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대상: 정격전압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드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격입력 2100W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만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6. 전동기를 갖춘 톱 (8467.22-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W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CHAIN S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1012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CUTTING SAW, MODEL: ABC, VOLT: AC 220V, 1750W,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커팅용 톱,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220V, 정격입력은 1750W, 카톤 당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CHAIN S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구체적 규격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원형톱, 전기왕복톱, 전기체인톱 ○ 안전인증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정격입력 1.5KW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대상: 정격전압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원형톱, 전기왕복톱, 전기체인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격입력 1750W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톱만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7. 기타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 (8467.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IVER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IMPACT DRI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IMPACT DRIVER WITH ADAPTER, MODEL: ABC, VOLT: DC 10.8V, 800W, PACKING: 2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댑터와 함께 수입되는 무선드라이버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10.8V, 정격입력은 800W,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IMPACT DRI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구체적 규격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깎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 안전인증 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정격입력 1.5KW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대상: 정격전압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드라이버, 전기잔디깎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격전압 DC 10.8V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각종 수지식 공구만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8. 스캐너 (8471.60-104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N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OR OUTPUT UNIT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UMENT SCAN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X8210-4200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DPI, 30PPM, MODEL: SC123, VOLT: AC220~240V, 50~60HZ, 17W, PACKING: 1EA/CT, USE: RESEARCH ○ 600DPI, 30PPM 사양의 스캐너로 모델명은 SC123, 정격전압은 AC220~240V, 50~60HZ, 17W이며, 카톤 당 1개 포장되어 연구용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RCODE HANDY SCANNER AT21B-SM ○ 거래품명 그대로 기재 및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캐너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캐너, 바코드스캐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코드스캐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지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비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09. 혼합기 [8479.8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HAK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END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D MILL MICROMEDIA X3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LIQUEFIED MIXER MACHINES, CAPACITY: 500L, MODEL: ABC, S/NO: 12345, PACKING: 1EA/CT ○ 공업용 액상 혼합기로 용량은 500L, 모델명은 ABC이며, S/NO는 12345, 카톤 당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ING MACHINE ○ 거래품명을 그대로 기재,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용 믹서의 경우 HS 제8509.40-0000(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0. 파쇄기와 분쇄기 (8479.82-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ACH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1800XL WITH 170HP CUMMINS D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 표기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 SHAFT PRIMARY SHREDDER, MODEL: ABC, S/NO: 12345, CAPACITY: 60KG, USE: INDUST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의 대용량 파쇄기로 모델번호는 ABC, S/NO는 12345, 시간당 60KG 파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S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그대로 기재,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 초과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폐기물 파쇄기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폐기물 및 폐수처리용 파쇄기 및 분쇄기의 경우에만 국제협력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유의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HS제8479.89.1090호, 가정용 식품용 그라인더는 HS제8509.40-0000호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전기용품안전관리법및전파법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1. 제습과 가습기능이 있는 가정형의 공기청정기 [8479.89-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PURIFIERS (HAVING FUNCTIONS OF HUMIDIFYING AND DEHUMIDIFY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LEANER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50MM X D 250MM X H 5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VOLT: AC220V, 60HZ, 60W, SIZE: W 250MM X D 250MM X H 500MM, PACKING: 2EA/CT ○ 모델번호 ABC, 정격전압 AC220V, 60HZ, 60W의 공기청정기로 사이즈는 W 250MM X D 250MM X H 500MM,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PURIFIER UNP-A9830 ○ 거래품명과 모델명만 기재,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가정형 공기청정기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2. 기타 가정형의 기기 (8479.89-1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㉑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ID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㉒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ID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㉓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00MM X D 100MM X H 15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B HUMIDIFIER, MODEL: ABC, VOLT: DC 5V, 2W, SIZE: W 100MM X D 100MM X H 150MM, PACKING: 200EA/CT ○ USB 미니가습기로 모델번호 ABC, 정격전압 DC 5V, 2W이며 사이즈는 W 100MM X D 100MM X H 150MM,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IDIFIER BLUE ■ USB HUMIDIFIER (BLACK) ■ KJ550F-A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이나 모델명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㉔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㉕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가습기는 안전 인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 대상: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프레셔가 내장된 것),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함)는 안전확인 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프레셔가 내장된 것),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정격전압 5V USB 전원 사용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의 기타 기기를 분류 ■ 관세율표상 10단위 특게품명은 '기타'이나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많으므로 정확한 신고품명 기재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3.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 (8479.89-90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LD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 예) MOLDING MACHINE(몰딩 머신)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PSTICK MOLD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등을 함께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2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 예) USE: INDUSTRI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S/N: 123456, 123457, PACKING: 2EA/CT, USE: INDUSTRIAL ○ 공업용 립스틱 몰딩 머신으로 모델번호 ABC, S/NO: 123456, 123457, 카톤 당 2 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ACHINES, MACHINERY PARTS, OTHER INDIVIDUAL FUNCTION MACHINES,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MULTIPURPOSE SAMPLER ○ 기계의 용도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CIT세율 및 FCN세율 적용 시 유의 ■ 국제협력관세는 특정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4.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용 배터리 충전기 [8504.40-3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CHARGE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RG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AP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W TYPE C ○ 모델규격 사항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MICRO-B TYPE 5PIN, MODEL: ABC, VOLT: AC100-240V, 9V, DC1.67A, PACKING: 10EA/CT, ○ 정격전압 100~240V, 출력전압 9V, 출력전류 1.67A, 5핀의 마이크로B타입 충전단자로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CHARGER PPC-V12-CT ○ 거래품명이나 모델명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대상(정격입력 10KW 이하):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및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안전확인대상(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과법 ○ 전기충전기,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 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은 동일하나 ‘제8471호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한-중 FTA 협정세율(FCN)의 세율차가 있으므로 유의 ■ 배터리 충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의 여부에 따라 WTO 협정세율(CIT)은 세율차가 있으며, HS 8504.40-3090호로 신고할 물품을 동세번으로 신고할 사례 다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5.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 (8504.40-30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CHARG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CHARGER 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B TYPE 5PIN, MODEL: ABC, VOLT: DC 12-24V, 5V, PACKING: 5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DC 12~24V, 출력전압 5V, 5핀의 마이크로B타입 충전단자로 카톤 당 5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CHARGER FOR RECHARGEABLE T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정격입력 10KW 이하):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및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안전확인대상(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충전기,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 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충전기는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의 여부에 따라 WTO 협정세율(CIT)은 세율차가 있으므로 동 세번으로 신고할 물품을 HS 8504.40-3010호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6. 니켈-카드뮴 축전지 (8507.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KEL-CADMIUM ELECTRIC ACCUMUL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CRAFT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KEL CADMIUM BATTERY P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170K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747 AIRCRAFT PART, S/N: 09050101,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부분품인 축전지로 S/NO는 09050101, 카톤 당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품명 등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카드뮴 축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07호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4단위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며 부분품은 HS제8507.90호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를 목적으로 동 세번을 HS제8506호로 수입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7. 리튬폴리머 축전지 (8507.6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HIUM POLYMER ELECTRIC ACCUMUL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HIUM POLYMER 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170K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HIUM POLYMER BATTERY 3.7V DC 1,750MAH, MODEL: ABC, PACKING: 1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V DC 1,750MAH 사양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품명 등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폴리머 축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07호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4단위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며 부분품은 HS제8507.90호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를 목적으로 동 세번을 HS제8506호로 수입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8.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8507.6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HIUM ION ELECTRIC ACCUMUL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ION 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HARGEABLE BATTERY 3.8V 1.47AH 290MAH, MODEL: ABC,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V 1.47AH 290MAH 사양의 리튬이온 충전지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품명 등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축전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07호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4단위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며 부분품은 HS제8507.90호로 분류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를 목적으로 동 세번을 HS제8506호로 수입신고, 적발사태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19. 전동기를 갖춘 출력 1,500W이하 · 20L이하 저장조의 로봇형 진공청소기 (8508.11-1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CUUM CLEANERS OF ROBOT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H-121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BOT VACUUM CLEA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R,KOREA,220V/60HZ,40,CYCL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란 기재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저장조 용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품목분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저장조의 리터단위 용량 표기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BOTIC VACUUM CLEANERS , MODEL: VC123, VOLT: AC 100-240V, 50-60HZ, 130W, CAPACITY: 0.3L,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형 진공청소기로 모델명은 VC123, 정격전압은 100-240V, 50-60HZ, 130W이며, 저장조 용량은 0.3L,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J-S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안전인증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정격전압 AC 30V이하, DC 42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것 · 로봇트형 · 출력 등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 목적으로 진공청소기(HS8508.11~, HS8508.19~)를 요건이 없는 기타 청소기(HS8508.60, 전동기가 없는 것)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0. 전동기를 갖춘 출력 1,500W이하 · 20L이하 저장조의 기타 진공청소기 [8508.11-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VACUUM CLEANERS OF OTHER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VACUUM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H-121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저장조 용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품목분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저장조의 리터단위 용량 표기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VACUUM CLEANER, MODEL: VC123, VOLT: AC 100-240V, 50-60HZ, 130W, CAPACITY: 0.3L, PACKING: 2EA/CT,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진공청소기로 모델명은 VC123, 정격전압은 100-240V, 50-60HZ, 130W이며, 저장조 용량은 0.3L, 카톤 당 2개 포장되었으며 용도는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CLEANER, NKV-79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모델명 등만을 기재,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안전인증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정격전압 AC 30V이하, DC 42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것·로보트형·출력 등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 목적으로 진공청소기(HS8508.11~, HS8508.19~)를 요건이 없는 기타 청소기(HS 8508.60, 전동기가 없는 것)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1. 전동기를 갖춘 기타 로봇형 진공청소기 (8508.1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CUUM CLEANERS OF ROBOT TYPE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ROBOT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BOTIC VACUUM CLEA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H-121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출력, 저장조 용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품목분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출력 기재 - 품목분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저장조의 리터단위 용량 표기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MMING POOL CLEANER, MODEL: ABC, VOLT: 1700W, CAPACITY: 0.3L, PACKING: 4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청소기로 모델명은 ABC, 출력은 1700W, 저장조 용량은 0.3L,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것·로봇형·출력 등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 목적으로 진공청소기(HS8508.11~, HS8508.19~)를 요건이 없는 기타 청소기(HS 8508.60, 전동기가 없는 것)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2. 전동기를 갖춘 기타 진공청소기 (8508.19-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CUUM CLEANERS OF OTHER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CUUM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H-121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저장조 용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품목분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CAPACITY:”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저장조의 리터단위 용량 표기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CLEANER, MODEL: VC123, VOLT: AC220V, 60HZ, 2400W, CAPACITY: 78L, PACKING: 4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청소기로 모델명은 VC123,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2400W이며, 저장조 용량은 78리터,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CLEANER, NKV-79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모델명 등만을 기재,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안전인증대상: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정격전압 AC 30V이하, DC 42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것·로보트형·출력 등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 목적으로 진공청소기(HS8508.11~, HS8508.19~)를 요건이 없는 기타 청소기(HS 8508.60, 전동기가 없는 것)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3. 그 밖의 진공청소기 (8508.6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VACUUM CLEA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VACUUM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 30/1 ME CLASSIC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SERIAL NO, 작동방식,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ROL ENGINE CLEANER, MODEL: VC123, PACKING: 4PCS/CT ○ 가솔린 엔진의 진공청소기로 모델명은 VC123,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것·로봇트형·출력 등에 따라 세번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요건회피 목적으로 진공청소기(HS8508.11~, HS8508.19~)를 요건이 없는 기타 청소기(HS 8508.60, 전동기가 없는 것)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4.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8509.4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MIXER WITH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TICAL MIX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COJET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30MM X D 385MM X H 42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TICAL MIXER, MODEL: V-7500, VOLT: AC 220-240V, 60HZ, 500W, SIZE: W 230MM X D 385MM X H 420MM, PACKING: 3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은 V-7500, 정격전압은 AC 220-240V, 60HZ, 500W, 사이즈는 W 230MM X D 385MM X H 420MM이며, 카톤 당 3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TICAL MIX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전기탈수기 ○ 안전확인대상(정격전압 DC 42V초과 ~ 1000V이하 직류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세부품목 상동, 전기탈수기 제외) ○ 공급자정합성확인대상(정격전압 DC 42V이하 직류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 대상과 같음 ■ 전과법: 전안법 안전인증 대상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의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가 중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며 공업용의 것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5. 커피분쇄기 (8509.8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GRINDERS WITH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COFFEE GRI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FIM SCODY II ON DEMAND GRI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 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중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CM X D 20CM X H 30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MODEL: ZENITH6, 3.45KG, VOLT: AC 220V, 60HZ, 500W, SIZE: W 20CM X D 20CM X H 30CM,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용 커피분쇄기로 모델명은 ZENITH6, 중량은 3.45KG,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500W, 사이즈는 W 20CM X D 20CM X H 30CM이며,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GRIN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분쇄기(다만,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6. 얼음분쇄기 (8509.8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GRINDERS WITH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SHAV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JB-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중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50MM X D 310MM X H 63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S-200, 1KG, VOLT: AC 220V, 60HZ, 500W, SIZE: W 250MM X D 310MM X H 630MM, PACKING: 2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은 S-200, 중량은 1KG이며,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500W, 사이즈는 W 250MM X D 310MM X H 630MM이며 카톤 당 2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 SHA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삭기(다만,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7. 바닥광택기 (8509.8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POLISHERS WITH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MOP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40MM X D 97MM X H 348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POLISHERS CORDLESS VIBRATION MOP, MODE: ABC, VOLT: AC100-240V, 50-60HZ, 130W, SIZE: W 340MM X D 97MM X H 348MM,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 바닥광택기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AC100-240V, 50-60HZ, 130W, 사이즈는 W 340MM X D 97MM X H 348MM이며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MOP CLE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을 모델규격란에 기재,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의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8.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509.80-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CHEN WASTE DISPOSERS WITH ELECTRIC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OF THE 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WASTE DISPO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 W D 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명, 모델번호, 상품번호 등 을 거래품명 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중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20KG이하의 주방용 쓰레기처리기는 이호에 분류로 중량 표기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700MM X D 3100MM X H 350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VOLT: AC 220V, 60HZ, 500W, 4KG, SIZE: W 2700MM X D 3100MM X H 3500MM, PACKING: 4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220V, 60HZ, 500W, 중량은 4KG이며, 사이즈는 W 2700MM X D 3100MM X H 3500MM이며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 그 외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방폭형 제외)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으로 중량이 20KG 이하의 것만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KG: 중량”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2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509.8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자 또는 기타 채소용의 탈피기, 치퍼 및 절단기: PEELERS, CHIPPERS, CUTTERS, ETC., FOR POTATOES OR OTHER VEGETABLES 2. ~ 4. 생략 5. 공기가습기와 공기제습기: AIR HUMIDIFIERS AND DEHUMIDIFIERS 6. 기타: OTHER ②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 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HUMIDIF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HUMID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중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일부품목의 경우 20KG이하의 경우 8509호에 분류됨에 따라 중량 표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90MM × L 105MM × H 21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B HUMIDIFIER, MODEL: ABC, VOLT: DC 12V, 6W, 600G, SIZE: W 90MM × L 105MM × H 210MM, PACKING: 20PCS/CT ○ USB 가습기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DC 12V, 6W, 중량은 600KG이며, 사이즈는 W 90MM × L 105MM × H 210MM이며 카톤 당 2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 그 외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등 ○ 안전확인대상: 과일껍질깎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등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탈수기, 육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과일껍질깎기, 전동칫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USB 가정용가습기로 비대상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DC 12V의 가정용 가습기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USB 가정용가습기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기를 갖춘 가정 것 분류 ■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KG: 중량”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0.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 (8510.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V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ZO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HA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A2000 (1.5V)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LSM-634(PS3216), VOLT: AC 110-240V, 50-60HZ, 9W, PACKING: 3PCS/CT ○ 모델명 LSM-634(PS3216)인 전기면도기로, 정격전압 110-240V, 50-60HZ, 9W, 카톤당 3PCS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 SHAVERS ○ 품명만 입력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면도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면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 사용대상(사람, 가축 등)에는 한정이 없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1. 전동기를 갖춘 이발기 (8510.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LIPP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DRESS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CLI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A2000 (1.6V)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VOLT: AC100-220V, 50-60HZ, 15W, PACKING: 4PCS/CT ○ 모델명 ABC인 이발기로 정격전압은 AC100-220V, 50-60HZ, 15W, 카톤 당 4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P1621 ○ 모델명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발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 사용대상(사람, 가축 등)에는 한정이 없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2. 전동기를 갖춘 모발제거기 (8510.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REMOVING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AL-HAIR REM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688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REMOVER, MODEL: W-001, PACKING: 200PCS/CT ○ 모발제거기로 모델명 W-001,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 NO 123456 ○ P/O 번호만 기재, 모델규격란에 적절한 기재사항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 사용대상(사람, 가축 등)에는 한정이 없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3.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516.1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INSTANTANEOUS WATER HE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T UNITS ■ HEATER ■ HEAT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WATER HE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FL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BED HEATER, MODEL: HR-8000D, VOLT: 220V, 50HZ, 800W, PACKING: 3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용 전기식 물가열기로 모델명 HR-8000D, 정격전압은 220V, 50HZ, 800W, 카톤 당 3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2K ■ 23 07 006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전기순간온수기,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가습기 ○ 안전확인대상: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전기순간온수기,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가습기, 사우나기기(전기스팀 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4.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516.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TORAGE HEATING RADI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E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RADI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HA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PIN ELECTRIC RADIATOR, MODEL: ABC, VOLT: AC 220V, 60HZ, 3KW,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PIN의 전기식 라디에이터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220V, 60HZ, 3KW,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H-R100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구모양 히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기구(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전기라디에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5. 기타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 난방기(팬 가열기 및 방사가열기): ELECTRIC FIRES (FAN HEATERS AND RADIANT HEATERS) 2. ~ 7. 생략 8.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FIRES (FAN HEATERS AND RADIANT HE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PATIO HE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 GOLDEN TUBE(E.G.0/1200W), MODEL: ABC, VOLT: AC220-240V, 1200W,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글 골든 튜브,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220-240V, 1200W,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전열보드 ○ 안전확인대상: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소용돌이용 전기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 포함), 전기반신(전신)욕조, 전기발욕조 ○ 정격전압: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11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보드, 소용돌이용 전기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 포함), 전기반신(전신)욕조, 전기발욕조,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6. 헤어드라이어 (8516.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AIR DR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AIR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D 50MM X H 150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VER HAIR DRYER, MODEL: ABC, VOLT: AC 220V, 60HZ, 1600W, SIZE: W 200MM X D 50MM X H 150MM, PACKING: 2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색 헤어드라이어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600W, 사이즈는 W 200MM X D 50MM X H 150MM, 카톤 당 2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HD - 1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발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7. 그 밖의 이용기기 (8516.3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AIR-DRESSING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HAIR CURLING IR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TY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CURLING IRONS, MODEL: ABC, VOLT: AC220V, 60HZ, 125W,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아이롱기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25W, 카톤당 1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IRON PM-N4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만 기재,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 안전확인대상: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8. 손 건조기 (8516.33-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AND-DRYING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HAND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W U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TH1500D, VOLT: AC 220V, 1300W, PACKING: 4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NO. TH1500D인 핸드드라이어로 전압은 220V 출력은 1300W이고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HAND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 모델규격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요건회피 목적으로 LED램프를 사용하는 젤 전용 네일건조기(HS8543.70-2020)를 동 손 건조기 세번으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39. 전기다리미 (8516.4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MOOTHING IR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TEAM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TEA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FS-HA01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HELD STEAMER MODEL: ABC, VOLT: AC 220-240V, 60HZ, 2200-2400W, PACKING: 3PCS/CT ○ 손바닥크기의 전기다리미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240V, 60HZ, 2200-2400W이고 카톤 당 3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MOOTHING IRONS ○ 신고 품명만 그대로 기재한 경우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건조다리미, 스틱다리미, 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16.5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WAVE OV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AL FUEL RANGE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WAVE OV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O(COMMON),0.8,230V, 50HZ, WHITE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89MM X D 275MM X H 374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L MICROWAVE OVEN, MODEL: ABC, VOLT: 220V, 60HZ, 1100W, SIZE: W 489MM X D 275MM X H 374MM, PACKING: 3PCS/CT ○ 20리터의 마이크로웨이브오븐으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1000W이고 사이즈는 W 489MM X D 275MM X H 374MM, 카톤 당 3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A200WB ○ 모델명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V이하, DC 42V초과-1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1. 전기오븐 (8516.6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OV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OV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FA43XEH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19MM X D 325MM X H 414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L OVEN, MODEL: ABC, VOLT: 220V, 60HZ, 1,500W, SIZE: W 519MM X D 325MM X H 414MM, PACKING: 1EA/CT ○ 30리터의 전기오븐으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500W이고 사이즈는 W 519MM X D 325MM X H 414MM, 카톤 당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OVEN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무상반입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2.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6.60-2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RICE COO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K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E COOKER WITH WAR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P-JHR0620FD ○ 모델규격사항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66MM X D 256MM X H 378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PRESSURE COOKER, MODEL: ABC, VOLT: AC220V, 60HZ, 1090W, SIZE: W 266MM X D 256MM X H 378MM, PACKING: 2PCS/CT ○ 전기압력밥솥으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090W이고 사이즈는 W 266MM X D 256MM X H 378MM, 카톤 당 2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S1000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3. 기타의 쿠커 등 [8516.6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GRILL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MULTI GR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50MM X D 250MM X H 73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DE GRILL, MODEL: ABC, VOLT: AC220V, 60HZ, 1500W, SIZE: W 450MM X D 250MM X H 73MM,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드 그릴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500W이고 사이즈는 W 450MM X D 250MM X H 73MM, 카톤 당 2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NO: 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 전기액체가열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 핫플레이트, 전기액체가열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4.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8516.7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개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COFFEE MA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 ARTI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521, K150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2CM X D 29CM X H 22C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EHOLD APPLIANCES ESPRESSO COFFEE MAKER, MODEL: ABC, VOLT: AC 220V, 60HZ, 1350W, SIZE: W 22CM X D 29CM X H 22CM, PACKING: 2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커피메이커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V, 60HZ, 1350W이고 사이즈는 W 22CM X D 29CM X H 22CM,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150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메이커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5. 토스터 (8516.7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OAS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UMINIUM COOKWARE TOAS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85MM X D 320MM X H 205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FOR 4-SLICE TOASTERS, MODEL: ABC, VOLT: AC 220-240V, 60HZ, 800W, SIZE: W 185MM X D 320MM X H 205MM, PACKING: 2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구 토스터기 샘플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240V, 60HZ, 800W이고 사이즈는 W 185MM X D 320MM X H 205MM, 카톤 당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NO. DET-D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토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 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6.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KET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DLESS JUG KET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30MM X D 230MM X H 265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L ELECTRIC KETTLE, MODEL: ABC, VOLT: AC 220-240V, 60HZ, 1800W, SIZE: W 230MM X D 230MM X H 265MM, PACKING: 20PCS/CT ○ 1.7L 용량의 전기주전자로 모델명 ABC, 정격전압은 AC 220-240V, 60HZ, 1800W이고 사이즈는 W 230MM X D 230MM X H 265MM,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회전형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 전기건조기 등 ○ 안전확인 대상: 왁스 용해기, 초코렛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등 ■ 전파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전기보온기, 회전형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 분류되므로 용도확인 필요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7. 다리미 · 헤어드라이어 등의 부분품 [8516.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FOR HAND DR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NT C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사용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 RISEN CASE ,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 RISEN 소재의 케이스이며 모델명은 없음, 키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NT C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회피 목적으로 HS제8516호의 타 세번으로 신고되어야 할 물품을 부분품 세번으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HS제8516호의 부분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8. 음향증폭세트 (8518.5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P, SOUND AMP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AMPL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GRAM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SET/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WAY SPEAKER SYSTEM, MODEL: ABC, VOLT: AC100-240V, 300W, PACKING: 1SET/CT, USE: RESEARCH ○ 2-WAY방식의 스피커 시스템으로 모델번호 ABC, 정격전압은 AC 100-240V, 300W이고 카톤 당 1세트로 포장되어 연구실험용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604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또는 유리 등에 부착할 수 있고, 마이크이폰이 내장되어 진동으로 전달되는 음성을 모으고 증폭할 수 있는 장치가 결합된 소형장치 (콘크리트마이크형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앰프내장형 스피커로 콘크리트마이크형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형 스피커(제8518.22-0000호)와 음향증폭세트(제8518.50-0000호)는 WTO 협정세율(CIT) 등 세율차가 있으므로 HS 8518.22-0000호로 신고할 물품을 동 세번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49. 기타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8521.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REPRODUCING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PHOTO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 HNR-4530, LV-R2004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DIGITAL PHOTO FRAME WITH POWER ADAPTOR, MODEL: ABC, VOLT: AC 100-240V, PACKING: 3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치 디지털 전자액자로 모델명은 ABC, 정격전압은 AC 100-240V이고, 카톤 당 3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 디스크 플레이어 ○ 안전인증대상: 영상기록계, 어학실습기, 실물화상기(OHP), 입체영상기(OHP)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3 PLAYER, 디스크플레이어, 영상기록계, 어학실습기, 실물화상기(OHP), 입체영상기(OHP),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전자액자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전자액자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8525.8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VISION CAMERAS FOR VIDEO TAPE RECO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YGATE-02PT, CS-CV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HD CMOS STAND CCTV CAMERA, MODEL: ABC,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HD CMOS의 CCTV로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비디오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S)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음(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이나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1. 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 (8525.80-1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VISION CAMERAS FOR MONI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REAR VIEW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MONITOR TELE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RVIEW CAMERA (CAR GOODS), MODEL: M200, PACKING: 2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후방카메라로 모델명은 M200,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 REAR VIEW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자동차 후방 카메라로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2.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8525.8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BILE SMART 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BILE SMART 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MP CMOS, 1.3MEGA PIXELS, MODEL: ABC, PACKING: 100PCS/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 프레임 안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 사양은 카메라센서 1.3MP CMOS, 화소는 1.3MEGA PIXELS이며 모델명은 ABC, 카톤 당 1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213011-2016310422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만 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피부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 비대상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피부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3.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8525.80-2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작성 가이드 ① 표준품명 1.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STILL IMAGE VIDEO CAME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LL IMAGE VIDEO CAMER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STILL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SHAPE(체형): 01, 02 디지털방식의 것⇒(01), 기타⇒(02)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저장장치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1)/INDUSTRIAL DIGITAL STILL CAMERA, MEMORY CARD, MODEL: DG-123, PACKING: 1EA/CT ○ 산업용 디지털카메라로 모델명은 DG-123, CF 메모리카드가 내부저장장치임,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CAMERA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디지털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4. 기타 디지털 카메라 (8525.80-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AROID SNAP TOU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저장장치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DG-123, SD CARD,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디지털카메라로 모델명은 DG-123, SD카드가 내부저장장치,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CAM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5.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작성 가이드 ① 표준품명 1.비디오카메라레코더: VIDEO CAMERA RECOR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CAMERA RECOR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RA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CAMERA RECOR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디지털방식이 아닌 것),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저장장치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INDUSTRIAL VIDEO CAMERA RECORDERS 3.5" LCD MONITOR, MODEL: ABC, SD CARD, PACKING: 1EA/CT ○ 모델명 ABC의 산업용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로 SD 카드에 저장,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CAMERA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디지털카메라, CCTV 카메라, NETWORK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제8525.80호는 카메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6.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기타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8528.71-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TOP BOX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구체적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TOP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천연색, (02)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3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MODEL: T1, PACKING: 30PCS/CT ○ 모델명 T1의 셋톱박스, 카톤 당 3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TOP BOX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 장비내부에 안테나이어폰이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영상 및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영상 및 음성 수신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 기타 사유: 차량용 부분품으로 영상 및 음성 수신 감청설비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8528.7호 하위 세번은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었는지와 디스플레이 방식 등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7. 천연색의 기타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8528.72-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LED TV, MODEL: TV123, VOLT: AC220-240V, 60HZ, 42W,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TV123의 32인치 LED TV로, 전압220-240V, 60HZ, 42W,이며,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모델규격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 텔레비전 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태이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CATV방송수신기, TV용 셋톱박스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수상기, CATV방송수신기, TV용 셋톱박스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내부에 안테나이퍼온이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영상 및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영상 및 음성 수신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LED TV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8528.72호 하위 세번은 디스플레이 방식 등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8. 백열램프 [8539.2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ANDESCENT L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LL LAMP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ANDESCENT BU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 ○ 송품장 기재내용이 아닌 임의내용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26 INCAN LAMP, MODEL: 123, VOLT: AC220V, 40W, PACKING: 10PCS/CT ○ 220V, 40W를 사용하는 소켓지름이 26MM인 가정용 백열전구로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26 INCAN LAMP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열전구, 보울 전구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59. 열음극형의 형광램프 (8539.3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UORESCENT, HOT CATH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LAMP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ACT FLUORESCENT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LIGHT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G11 COMPACT LAMP MODEL:123, VOLT: AC220V, 36W, PACKING: 5PCS/CT ○ 220V*36W, 2G11 소켓을 사용하는 가정용 형광램프로 카톤 당 5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ACT FLUORESCENT LAMP ○ 거래품명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 안정기내장형램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형광램프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기내장형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음극형 형광램프를 분류하며 냉음극형 형광램프는 HS제8539.39-1010호 및 HS제8539.39-1090호로 분류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0. 가정형 전기식 미용기기 (8543.70-202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BEAUTY APPLIANCE FOR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Y M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M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TRALIF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23MM X D 314MM X H 172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4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MASK SET, MODEL: 123, VOLT: DC 5V, SIZE: W 223MM X D 314MM X H 172MM, PACKING: 4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번호 123의 가정용 LED 마스크로 정격전압은 DC 5V, 사이즈는 W 223MM X D 314MM X H 172MM이며 카톤 당 4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IC M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 손톱정리기, 피부관리기, 안면사우나기, 모발가습기, 두피모발기, 전기머리손질기, 샴푸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DC 42V초과 ~ 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톱정리기, 피부관리기, 안면사우나기, 모발가습기, 두피모발기, 전기머리손질기, 샴푸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DC 5V의 피부케어용 마스크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DC 5V의 피부케어용 마스크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회피를 목적으로 HS제9018.90-8090호(의료기기법 대상)을 동 세번으로 신고, 적발사례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1.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 가정형 전기기기 (8543.70-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BRUSH STERILIZER FOR HOUSEHOL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BRUSH STERILIZ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사이즈] “SIZ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8MM X D 48MM X H 25MM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 LED TOOTHBRUSH STERILIZER, MODEL: TS 900, VOLT: DC 12V, SIZE: W 208MM X D 48MM X H 25MM, PACKING: 15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번호 TS900의 UV LED 칫솔살균기로 정격전압은 DC 12V, 사이즈는 W 208MM X D 48MM X H 25MM이며, 카톤 당 15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 BRUSH(LZ-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교류전원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등 ○ 안전확인대상: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등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애완동물목욕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DC 12V 휴대용 칫솔살균기로 비대상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휴대용칫솔살균기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기기는 HS제8509호에 분류 ■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2.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 (8543.70-401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담배기기(니코틴 함유량 1% 미만): ELECTRONIC CIGARETTES OF CONTAINING SOLUTIONS WITH NICOTINE(NICOTINE LESS THAN 1%) 2. 전자담배기기(니코틴 함유량 1% 이상): ELECTRONIC CIGARETTES OF CONTAINING SOLUTIONS WITH NICOTINE(NICOTINE NOT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IGARETTES OF CONTAINING SOLUTIONS WITH NICOTINE(NICOTINE LESS THA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S CIGARETTES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CONTAINING SOLUTIONS WITH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MANUFACTURING METHOD(제조방법): 01, 02, 03, 04 천연, 배터리내장형⇒(01), 천연, 배터리내장형 외⇒(02) 합성, 배터리내장형⇒(03), 합성, 배터리내장형 외⇒(04)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CAS NO, 니코틴 추출재료, 카트리지 용량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인 경우 “CAS NO:”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 등 - 천연니코틴인 경우 추출재료를 표기(LEAF, ROOT, STEM 등) - 카트리지 단위당 용량을 “○○ML/PC” 방식으로 기재하고 총량은 수입신고 35번, 41번, 42번란에 표시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UFACTURING METHOD(01)/ MODEL: ABC, CAS NO: 54-11-5, NICOTINE FROM LEAF, 1.1MM/PC, PACKING: 1,500EA/CT ○ 천연니코틴 추출 전자담배용액으로 모델번호 ABC, CAS NO는 54-11-5이고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 개당 1.1MM이며 카톤 당 1,5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OMIZ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NICOTINE:“ 기재 후 니코틴 농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OTINE: 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 농도 미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NICOTINE AND ITS SALTS)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니코틴 0.98%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란에 니코틴 농도를 “NICOTINE:“ 기재한 후 “%” 를 포함하여 반드시 신고, 성분항목 미기재시 오류통보 ■ 화학물질 필요정보를 기재서류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인하여 니코틴 함량 확인 ■ 합성니코틴(RS-니코틴, 22083-74-5)은 담배니코틴(S-FORM, 54-11-5)과 이의 광학이성질체인 R-니코틴(25162-00-9)이 1:1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임 ■ 충전지(내장된 것 포함) 및 충전기 포함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서(충전지)’, ‘안전인증서(충전기)’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CAS NO: 화학물질등록번호”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3. 기타 전자담배 (8543.70-4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담배(배터리 내장형, 니코틴용액 불포함): ELECTRONIC CIGARETTES(BATTERY BUILT-IN TYPE, WITHOUT NICOTINE) 2. 전자담배(배터리 내장형외, 니코틴용액 불포함): ELECTRONIC CIGARETTES(OTHER TYPE, WITHOUT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IGARETTES(BATTERY BUILT-IN TYPE, WITHOUT NICO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GARET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IGARETTE DE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5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NICOTINE LIQUID, MODEL: ABC, PACKING: 1,500EA/CT ○ 니코틴 용액이 없는 전자담배로 모델번호 ABC, 카톤 당 1,5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IGARE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육구저해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킬런형 전자담배용 디바이스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 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담배기기는 충전지(내장된 것 포함) 및 충전기 포함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서(충전지)’, ‘안전인증서(충전기)’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4.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 (8543.7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선분배기: SPLITTER 2. ~ 18. 생략 20.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QUITO KILLER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물품이 표준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MOSQUITO KILLER LAMP (모기퇴치 램프)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QUITO KILLER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MOSQUITO KILLER LAMP, MODEL: ABC, VOLT: DC 5V, 300MA, 1.5W, PACKING: 3EA/CT ○ LED 램프가 있는 모기퇴치기로 모델번호 ABC, 정격전압은 DC: 5V, 300MA, 1.5W이며 카톤 당 3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110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 모델명 등만 기재하고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등 ○ 안전확인대상: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어어커파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자시계, 콤프레셔게이트 등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기포발생기, 전격살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전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대외무역규정 별표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협정세율(CIT1)은 ‘주로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에 적용 ■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5. 그 밖의 전기기기의 기타 부분품 (8543.9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FOR SLIMMING MASS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 C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COVER FOR SLIMMING MASSAGER, PACKING: 20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지기의 플라스틱 커버, 모델명은 없고, 카톤 당 2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 C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외선통신방식 감청설비 ■ 약사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코틴 미합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육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마사지기 부분품으로 비대상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마사지기 부분품으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외무역법시행령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회피 목적으로 전안법, 전파법 등 요건대상 완제품을 동세련의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적발될 사례가 다수이므로 신고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6.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종이 절연전선 [8544.42-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ER INSULATED WIRE WITH CONN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NECTOR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전압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TELECOMMUNICATIO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INAX COPPER NETWORKING CABLE, MODEL: 123, VOLT: 220V, PACKING: 200EA/CT, USE: TELE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용 네트워크 케이블로 모델명은 123, 220볼트이며 카톤 당 2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HCONNECTOR,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자 부착여부, 용도, 전압에 따라 HS 8544.4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7.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 [8544.42-2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INSULATED WIRE WITH CONNECTORS FOR TELE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BLACK CAT5 PATCH W APPROVED RJ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등을 기재, 당해 물품의 거래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전압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EA/CT 등 ○ [용도] “US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TELECOMMUNICATIO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P CABLE 5M, MODEL: 123, VOLT: 8V, PACKING: 200EA/CT, USE: TELE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기, 허브 등을 연결하기 위한 길이 5M UTP케이블, 모델명은 123이고 8V, 전기통신용으로 카톤 당 20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자 부착여부, 용도, 전압에 따라 HS 8544.4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8.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8544.42-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INSULATED WIRE WITH CONN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SHAPE(체형): 01, 02, 03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01),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02), 기타⇒(03)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공칭단면적, 정격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02)/DATA CABLE, MODEL: ABC, 506Q VOLT: AC 220V, PACKING: 200PCS/CT ○ 모델번호 ABC의 데이터 케이블로 정격전압은 AC 220V이며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CABLE 1000298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규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전선·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mm² 이하)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mm² 이상 6mm² 이하) ○ 코드세트(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정격전압: AC 30V초과 ~ 1000V이하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자 부착여부, 용도, 전압에 따라 HS 8544.4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69.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기타 절연전선 [8544.42-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INSULATED WIRE WITH CONN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WORK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 EXT IPASS X4 HD TO HD 3.0 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등을 기재, 당해 물품의 거래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전압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을 위해 “VOLT:”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전압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0PCS/CT 등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TELECOMMUNICATIONS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L: ABC, VOLT: 8V, PACKING: 200PCS/CT, USE: TELE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번호 ABC의 전기통신용 네트워크 케이블로 전압은 8V이며 카톤 당 20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B C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자 부착여부, 용도, 전압에 따라 HS 8544.4 하위 세번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자전거 등 [8711.6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전과법 대상은 다음 품명으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킥보드: ELECTRIC KICK SCOOTER ○ 전동휠: SELF BALANCING SCO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KICK SCO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SCO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10단위 영문품명을 그대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W HUB MOTOR 36V 10.4AH 21AH LI-ION BATTERY, VOLT: AC 36V, 700W, MODEL: ABC,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W 모터와 36V 10.4AH 21AH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있는 전동킥보드로 정격전압은 AC 36V, 700W, 모델명은 ABC, 카톤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킥보드, 전동휠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이륜/외륜 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의 전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스쿠터는 HS제9503.00-1200호로 분류되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1.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0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모차: BABY CARRIAGE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ARRI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LL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W-HA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기재,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거래 품명으로 볼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SSIS BLACK WITH BROWN HANDLE, MODEL: ABC, FOR CHILDREN,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색 핸들과 검정색 몸체의 모델번호 ABC의 유모차로 카톤 당 1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품명을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휴대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자가소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같은 세번, 유모차는 어린이용품안전특별법 요건확인대상이나 부분품은 비대상임 ■ 반려동물을 태우는 용도의 손수레는 HS 제8716.80-9000호,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들을 싣고 사람이 손잡이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의 FOLDING WAGON은 HS 제8716.80-1000호에 분류되므로 저세율인 등 세번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2. 손수레 [8716.8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C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PING WAGON ■ FOLDING SHOPPING CART ○ 신고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LDING SHOPPING HAND C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XE RHSF TT CUSTOMER ○ 모델명 등 모델규격란에 기재될 내용을 거래품명란에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0PCS/C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PPING CART OF STAINLESS STEEL, MODEL: ABC, PACKING: 20PCS/CT ○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쇼핑카트로 모델번호 ABC, 카톤 당 2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LDING SHOPPING HAND CART ○ 거래품명만 기재, 당해 물품의 모델 규격으로 볼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세율(FCN) 적용 시 부분품과 세율차이 있으므로 신고 시 부분품 여부 확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3. 콘택트렌즈 (9001.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CT L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LEN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D CONTACT L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30 TORIC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77020.01 HARD CONTACT LENS, DAILY-WEAR, MODEL: BIO-065090PK, PACKING: 10EA/CT, USE: RESEARCH ○ 의료기기 분류번호 A77020.01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모델명 BIO-065090PK은 직경 14MM, 연구실험용으로 카톤 당 10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065090PK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치료용콘택트렌즈, 해파린 사용후방렌즈, 진단용콘택트렌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는 9001.30과 9001.40으로 구분, APTA 적용 가능여부 및 FCN 협정세율차 발생 ■ 콘택트렌즈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기법 대상인지를 모델규격 상에 영문제품명 신고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4. 기타 테와 장착구 (9003.1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MES OF OTHER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ICAL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58 □ 20 145 (단위: 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DA FRAMES WITH CASE, MODEL: MT 0PR52XV SVF101, FRAME: METAL, SIZE: 58 □ 20 145,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스를 포함한 프라다 안경테, 모델명 MT 0PR52XV SVF101, 금속프레임, 안경테 치수(다리길이 58MM, 렌즈너비 20MM, 렌즈사이의 거리 145MM),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 0PR52XV SVF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프레임 재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때로는 “안경(SPECTACLES)” 으로 호칭되나 제9004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의 장착구(MONTINGS)나 그 부분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의사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의 장착구나 부분품(9018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5. 기타 선글라스 (9004.1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GLASSES MADE OF NON PRECIOUS MET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G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FR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58 □ 20 145 (단위: 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NGLASSES SKU, MODEL: DP-6624-2, FRAME: PLASTIC, SIZE: 58 □ 20 145,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글라스, 모델명 DP-6624-2, 플라스틱 프레임, 안경테 치수(다리길이 58MM, 렌즈너비 20MM, 렌즈사이의 거리 145MM),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P-66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프레임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나 장착구와 그 부분품은 제9003호에 분류 ■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접안경(EYEPieces)은 제7015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6. 시력교정용 안경 (9004.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1.시력교정용 안경: SPECTACLES FOR CORRECTING VISIONS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TACLES FOR CORRECTING VI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NIF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DING G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TACLES FOR CORRECTING VI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규격] (01)귀금속을 사용한 것,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58 □ 20 145 (단위: 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A76010.01 SIGHT CORRECTIVE SPECTACLES, MODEL: HJW2011 SR3754, FRAME: METAL, SIZE: 58 □ 20 145,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76010.01 시력보정용안경, 귀금속 사용, 모델명 HJW2011 SR3754, 메탈 프레임, 안경테 치수(다리길이 58MM, 렌즈너비 20MM, 렌즈사이의 거리 145MM),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JW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귀금속 사용 여부, 사이즈, 프레임 재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보정용 안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의 실물 확인을 위한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일반 돋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보정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577. 그 밖의 투영기 (9008.5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GE PROJ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OTIVE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GOBO PROJ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GE PROJ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BO PROJECTOR, MODEL: DNKR-05, VOLT: AC100~240V, SLIDE PROJECTOR, PJT11,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보 투영기,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DNKR-05,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KR-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정격전압, 전파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 ■ 광학용 부분품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8.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9013.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RELESS PRESENT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 POI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S, OTHER THAN LASER DIOD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 POINTER, MODEL: XTL-F30, VOLT: AC100~240V, PACKING: 6EA/CT ○ 레이저포인터, 정격전압 교류 100~240V, 모델명 XTL-F30, 6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TL-F30 ○ 구체적 물품설명, 정격전압, 사이즈, 포장 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레이저포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기기는 기계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콤팩트 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예: 레이저 포인터)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79. 혈압 측정기기 [9018.19-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TONOGRAP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 PRESSUR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 PRESSURE MONI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TONOGRAPH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3010.01 SPHYGMOMANOMETER, MANUAL, ANEROID, MODEL: A1234, PACKING: 5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3010.01 아네로이드식 혈압계, 모델명 A1234,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234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네로이드식혈압계, 수은주식혈압계, 수동식전자혈압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외국으로부터 의뢰 받은 품질검사용(면제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0.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 (9018.19-8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진단용 청진기: DIGITAL STETHOSCOPES 2. 폐활량계: SPIROMETERS 3. 망막전위계: ELECTRORETINOGRAPH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RO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 MEDICAL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RO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7010.01 DIAGNOSTIC SPIROMETER, MODEL: A1234, OPERATION: ELECTRIC, PACKING: 2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7010.01 진단폐활량계, 모델명 A1234, 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심장박동기분석기, 심장박동기분석기, 생체신호처리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박람회 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체지방체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8.19 이하 세번에 따른 FCN, APTA 세율차 발생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9018.3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RI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INFUSION DEVIC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RI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INSTRU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4010.01 INJECTOR, MEDICATION/VACCINE, SYRINGE, MODEL: SYRINJET 50ML, PACKING: 5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4010.01 주사기, 모델명 SYRINJET 50ML, 5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RINJET 50ML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기, 유리주사기, 분사식주사기, 카트리지형주사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박람회 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으로 만든 바늘이나 봉합용 바늘의 경우 제9018.32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2. 주사침 (9018.32-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LES FOR INJ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LER CANNULA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OHY NEED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LES FOR INJECTION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1010.37 ENDOTHERAPY NEEDLE, GENERAL-PURPOSE, SINGLE-USE, MODEL: KN-2325RB, PACKING: 5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31010.37 일회용내시경주사침, 모델명 KN-2325RB, 5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2325RB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재사용가능담관조영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NEEDLES)은 용도에 따라 세 번이 분류 되므로 모델규격에 구체적인 물품설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합용, 결합용, 중두접종용, 혈액검사용, 피하주사용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3. 기타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9018.32-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혈침: NEEDLES FOR BLOOD-LETTING 2. 투관침: TROCARS 3. 생검침: BIOPSY NEEDLE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LES FOR BLOOD-LET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C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3030.02 BLOOD COLLECTION NEEDLE, SINGLE-USE, MODEL: LANCET 30G, PACKING: 5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3030.02 일회용채혈침, 모델명 LANCET 30G, 5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CET 3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가능채혈침, 일회용채혈침, 재사용가능천자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NEEDLES)은 용도에 따라 세 번이 분류 되므로 모델규격에 구체적인 물품설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합용, 결합용, 중두점중용, 혈액검사용, 피하주사용 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4.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9018.3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OD TRANSFUSION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USION SE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POSABLE SILICONE INFU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INSTRU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66030.01 BLOOD TRANSFUSION SET, MODEL: TKF- 05-0001, PACKING: 5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66030.01 수혈세트, 모델명 TKF- 05-0001, 5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KF- 05-0001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수혈세트, 수액세트, 수액펌프용수액세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수리 후 재수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세트란 도입침 캡, 도입침, 여과기, 점적통, 연결관, 유량조절기, 라텍스 튜브, 슛접합부, 보호덮개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임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5. 카테터(CATHETER) (9018.39-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H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 TREK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HETER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7020.01 CATHETER, GASTROINTESTINAL, MODEL: NC TREK345, PACKING: 5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7020.01 단기사용위장용튜브·카테터, 모델명 NC TREK345,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HETER 2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회장루용튜브·카테터, 단기사용위장용튜브·카테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외국에서 전시회 후 반송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6. 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9-8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케놀러: CANNULAE 2. 흡인기: SUCTION SYSTEM 3. ~ 8. 생략 9.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NUL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YGEN TUBE AND CANNUL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NUL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3070.01 LANCET, MANUALLY-OPERATED, REUSABLE, MODEL: 200AK-25, PACKING: 5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3070.01 재사용가능수동랜셋, 모델명 200AK-25,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AK-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가능수동랜셋, 일회용수동랜셋, 재사용가능자동랜셋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제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7. 주사기 · 바늘 · 카테터 · 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9018.3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FOR CATH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AND ACCESS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IDED CONNECTING TU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FOR MED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IDED CONNECTING TUBE, MODEL: HPCT8.8-120-M-FM, PACKING: 5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조 연결관, 모델명 HPCT8.8-120-M-FM, 5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CT8.8-120-M-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8. 치과용 버(BUR) (9018.4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B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B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5050.01 ABRASIVE DEVICE, MODEL: RS-SS31,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5050.01 의료용절삭기구, 모델명 RS-SS31, 1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SS31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의료용절삭기구, 치과연마용브러쉬, 치과연마용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과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 ■ 9018.49 이하 세번에 따른 FCN, APTA 세율차 발생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89. 치석 제거기 (9018.49-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LERS FOR TREATING TART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SCA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55040.01 DENTAL SCALER, MANUAL, REUSABLE, MODEL: GRACEY 13/14,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55040.01 수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 모델명 GRACEY 13/14, 1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CEY 13/14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수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 전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료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0. 기타 치과용 기기 (9018.49-8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RUMENTS USED IN DENTAL 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INLESS F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5020.07 TOOTH EXTRACTION FORCEPS, MODEL: M3LP25-L5,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45020.07 발치용 겸자, 모델명 M3LP25-L5, 1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3LP25-L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조명기,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 치아미백처치용온열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과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1. 안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9018.5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HTHALMIC LASER OPERATED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AND ACCESS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SX LA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 OPERATED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8140.01 LASER, OPHTHALMIC, MODEL: M3LP25-L5, PACKING: 5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8140.01 시계조사레이저장치, 모델명 M3LP25-L5,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3LP25-L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용아르곤레이저수술기, 안과용엔디야그래이저수술기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용 기기는 외과용 기기·진단용 기기·시력교정용이나 시력검정용 기기 등이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2. 기타 안과용 기기 (9018.5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HTHALMIC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HTHALMIC MICRO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GICAL CONSUM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용 소모품으로 포괄적으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8010.02 MICROSCOPE, LIGHT, OPHTHALMIC, OPERATING: LIGHT, MODEL: YC-1800, PACKING: 1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8010.02 안과용 광학현미경, 모델명 YC-1800,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C-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등현미경, 안과용광학현미경, 각막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용 칼·가위와 같은 도구 및 시력표 포함 ■ 색각검사에 사용하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안경검정계나 시력표는 49류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3.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9018.90-2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GICAL LASER OPERATED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APY LA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 OPERATED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7010.01 LASER, SURGICAL, CARBON DIOXIDE, MODEL: AZ-200, PACKING: 5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37010.01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모델명 AZ-200,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체내충격파쇄석기,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4. 기타 외과수술용 기기 (9018.90-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외과용 수술용 나이프 및 메스: SURGICAL KNIVES AND SCALPELS OF ALL KINDS 2. 외과용 스테이플러: SURGICAL STAPLERS 3. 클립: CLIPS 4. 견인기: RETRACTORS 5. 겸자: FORCEPS 6. 거울: SPECULA 7. 소변수거기: URINARY DRAINAGE BAG 8.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C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MENT FORC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C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5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5020.02 FORCEPS, SINGLE-USE, MODEL: KM-71, PACKING: 5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45020.02 일회용의료용겸자, 모델명 KM-71, 5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식피부절제기, 전동식피부절제기, 식피확장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외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품질검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의료용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외과용 공구(예: 가위·겸자·핀셋·집게·끝·정·망치·해머·톱·스크레이퍼 등)가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5. 산부인과용 기기 (9018.9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YNAECOLOGIC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 SURGICAL SYSTEM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YNAECOLOGICAL INSTR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YNAECOLOGICAL OR OBSTETRICAL INSTRUME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8210.01 UMBILICAL CORD CLIP, MODEL: EVA-PLUS,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38210.01 클립형배꼽페색기, 모델명 EVA-PLUS,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A-PLUS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부강압챔버, 요실금방지용구, 클립형배꼽페색기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부인과 관련 기기 중 임신진단기의 경우 9018.90-1000호로 따로 분류되므로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6.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9018.90-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OSCO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O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OSCOP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1090.01 ULTRASONIC ENDOSCOPE, MODEL: GIF-H290,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31090.01 초음파내시경(외과용), 모델명 GIF-H290,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F-H29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내시경, 경성구강경, 연성구강경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도관을 갖춘 내시경이 이 호에 분류 ■ 비의료용 내시경은 제외(9013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7. 전기신경자극기 [9018.90-6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6180.01 VAGUS NERVE ELECTRICAL STIMULATION SYSTEM, ANTISEIZURE, MODEL: BTL-5000,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16180.01 항발작용 미주신경 전기자극장치, 모델명 BTL-5000,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500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발작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8.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9018.90-8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ER OPERATED INSTRUMENTS OF DERMATOLOGIC 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UTY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RMATOLOGIC LASER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HINERIES FOR MEDICAL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7010.02 LASER, SURGICAL, DYE, MODEL: ML-589, PACKING: 1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37010.02 색소레이저 수술기, 모델명 ML-589,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5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수술기, 색소레이저수술기, 아르곤레이저수술기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 작동식 기기는 안과용, 외과수술용, 피부과용에 따라 세 번이 달라지므로 품명에 구체적으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599. 기타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9018.90-908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RUMENTS USED IN MED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USION P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9230.01 WATER PURIFICATION SYSTEM, HEMODIALYSIS, MODEL: LM-ARTE, PACKING: 1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09230.01 인공신장기용정수장치, 모델명 LM-ARTE,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AR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신장기용정수장치, 유헤스케어게이트웨이, 피임용격막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중 다른 세 번에 가지 않을 경우에 분류하는 기타 세 번이므로 다른 세 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0. 마사지용 기기 (9019.1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SAGE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SAGE C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SAGE APPARATU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SAGE CHAIR, MODEL: CMC-A6000,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 마사지 의자,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CMC-A6000,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C-A6000 ○ 구체적 물품설명, 정격전압, 전파법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 전기 마사지기 ○ 안전인증대상: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마사지기,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욕조용기포발생기포함),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식·동력식·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 모두 포함하여 이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1. 산소 흡입기 [9019.2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YGEN THERAPY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K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YGEN CONCENT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YGEN THERAPY APPARATU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7040.01 OXYGEN CONCENTRATOR, MODEL: AEROPLUS 5,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07040.01 의료용산소발생기, 모델명 AEROPLUS 5,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ROPLUS 5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공급기, 의료용산소발생기, 의료용고압산소챔버, 경피산소챔버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2. 인공호흡기 (9019.20-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FICIAL RESPIRATION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NTILATO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NTIL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FICIAL RESPIRATION APPARATU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7010.01 VENTILATOR, CONTINUOUS, FACILITY USE, MODEL: AIRSENSE 10 AUTASET APAC,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07010.01 범용인공호흡기, 모델명 AIRSENSE 10 AUTASET APAC,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SENSE 1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인공호흡기, 개인용인공호흡기, 고빈도인공호흡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외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품질검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3.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 [9021.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THOPAEDIC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FT NECK COL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LDED SPL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THOPAEDIC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5040.03 SPLINT, MOULDABLE, MODEL: HAS-01, PACKING: 6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B05040.03 성형부목, 모델명 HAS-01, 6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S-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일회용체외고정기구, 이식용체외고정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구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룹에는 목발(CRUTCHES·CRUCH-STICKS)도 포함. 보통의 지팡이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제6602호) ■ 이 그룹에는 동물의 정형외과용 기기도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4. 기타 의치와 치과용품 [9021.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관: DENTAL FITTINGS ; DENTAL CROWN 2. 치근: DENTAL FITTINGS ; DENTAL FIXTURE 3. 치아교정용구: DENTAL APPLIANCES FOR CORRECTING DEFORMITIES OF THE TEETH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FITTINGS ; DENTAL CROW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THODONTIC W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7010.01 BAND, ORTHODONTIC, MODEL: DENT8052, PACKING: 12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C17010.01 교정용밴드, 모델명 DENT8052, 1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80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특수재질인공안면아래턱관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 시멘트(DENTAL CEMENTS)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FILLINGS)는 제3006호 ; “치과용 왁스(DENTAL WAX)” 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 와 같은 조제품(세트의 것, 소매용 포장의 것, 판상·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과 플라스터(PLASTER)[소석고(燒石膏)이나 황산칼슘제의 것]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5. 기타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심장판막: PROSTHETIC HEART VALVE 2. 의안 (모조눈): ARTIFICIAL EYES 3. 인공수정체: ARTIFICIAL LENS 4. 인공각막: ARTIFICIAL CORNEA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STHETIC HEART VAL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STHETIC HEART VAL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4030.01 PROSTHESIS, VALVE, CARDIAC, NON-BIOLOGICAL, MODEL: LUCIS 6D, PACKING: 12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B04030.01, 비생체 재질 인공심장판막, 모델명 LUCIS 6D, 1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CIS 6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달팽이관장치,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와 뼈 재생용 시멘트(제3006호)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6.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9021.4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RING 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RING 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FOR ORTHOPAEDIC APPLIANCES ○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외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당해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78010.01 HEARING AID, BONE-CONDUCTION, MODEL: AUDEO B90, PACKING: 12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78010.01 골도형보청기, 모델명 AUDEO B90, 1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DEO B9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도형보청기, 기도형보청기, 구화훈련용보청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청기 주 구성품(마이크로폰, 리시버, 전지)이 없는 경우 (9021.90-8000호) ○ 보청기 부분품 및 부속품은 9021.90-9000의 특게 세번으로 신고하되, 84,85,90.91류에 속하는 물품은 각 해당호로 분류 (단 8487.8548.9033호는 제외, 90류 주2 가) - 예시 [보청기용 마이크로폰: 8518.10-9090, 보청기용 스피커(리시버): 8518.29-9000]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7. 스크루 · 스테이플 · 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9021.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REW INSERTED INSIDE THE HUMAN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R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H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테터는 제9018.39-2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3100.02 ORTHOPAEDIC BONE SCREW, BIODEGRADABLE, MODEL: ZBS10060, PACKING: 12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B03100.02 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모델명 ZBS10060, 1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BS10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용가능의료용봉합기, 일회용의료용봉합기, 비흡수성의료용봉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8. 기타의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등 [9021.90-8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THOPAEDIC APPLI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AL FIX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UT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발은 제9021.1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3160.01 SPINAL INTERNAL FIXATION SYSTEM, INTERVERTEBRAL BODY, MODEL: DLF1006, PACKING: 12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B03160.01 추간체고정재, 모델명 DLF1006, 12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LF1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간체고정재, 특수재질추간체고정재, 추간체유합보형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제품의 실물 확인을 위한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09.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원자력안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른 용량, 용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QUANTITY: 5KEV 이하, PURPOSE: MEDICAL(의료용)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1010.01 CT SYSTEM, FULL-BODY, MODEL: NM 830, QUANTITY: 15KEV, PURPOSE: MEDICAL, PACKING: 1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11010.01 전신용 전산화단층 엑스선촬영장치, 모델명 NM 830,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M 83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부위 한정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일렉트론빔엑스선전산화단층촬영장치, 단층촬영용엑스선장치 ■ 원자력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발생장치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0. 기타의 내과용·외과용 기기 (9022.14-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AY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GE INTENSIFIER X-RAY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원자력안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른 용량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QUANTITY: 5KEV 이하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1020.01 X-RAY SYSTEM, GENERAL-PURPOSE, ANALOGUE, MODEL: PXM-20BT, QUANTITY: 15KEV, PACKING: 1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11020.01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모델명 PXM-20BT, 방사선 에너지 용량 15KEV, 1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XM-20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발생장치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형광관식엑스선투시촬영장치, 진단용엑스선투시촬영장치 등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1. 물리·화학시험용 엑스선 사용기기 (9022.1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FOR PHYSICAL TE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TE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AY DIFFRACTOME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PHYSICAL OR CHEMICAL TE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원자력안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방사선 에너지 용량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QUANTITY: 15KEV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AY DIFFRACTOMETER SYSTEM, MODEL: EMPYREAN, QUANTITY: 5KEV, PACKING: 1EA/CT, USE: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선 회절분석기(화학실험용), 최대 방사선 에너지 5KEV, 모델명 EMPYREAN, 1개씩 포장, 연구실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YR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선형광분석기기, 엑스선재료배합분석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 제9030호에 분류(엑스선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2. 온도계 (9025.1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1. 온도계 : THERMO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MO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MPERATURE SEN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OF AEROPLANE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슬래쉬(/)를 표기하여 추가 모델규격사항 기재 ○ [필수규격] (01)센서, (02)기타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A21010.03 THERMOMETER, ELECTRONIC, MODEL: WT2110,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1010.03 전자체온계, 모델명 WT2110, 1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2110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자가사용(외국 체류 중 사용하던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 요건면제 사유: 온도계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613. 기타 고온계 (9025.19-2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RO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ROMETER CELLA T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SURE SEN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 센서는 고온계와 상이하므로 당해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1020.01 THERMOMETER, LIQUID CRYSTAL, STATIONARY, MODEL: RTD TR10-B, PACKING: 10EA/CT, USE: MEDICI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분류번호 A21020.01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모델명 RTD TR10-B, 10개씩 포장, 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TD TR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의료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4. 멜로디카 [9205.90-30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LODIC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ANICA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LODIC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ICAL INSTRU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LODICAS, MODEL: P-37D(BROWN), PACKING: 1EA/CT ○ 멜로디카, 모델명 P-37D(BROWN), 카톤 당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LODICAS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5. 뮤지컬박스 (9208.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ICAL BOX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IC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MAS DECORATION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요건확인을 위해 동력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POWER: ELECTRICITY(전기), INERTIA(관성), SPRING(태엽)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MM X D 150MM X H 1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TATING HEAD MUSIC BOX, MODEL: JY22-29, POWER: SPRING, FOR CHILDREN, SIZE: W 150MM X D 150MM X H 150MM, PACKING: 2EA/CT ○ 뮤지컬박스(어린이용), 모델명 JY22-29, 동력은 스프링, SIZE: W 150MM X D 150MM X H 15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Y22-29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전기, 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장치와 결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거나 장식적(예: 클럭(CLOCK)·소형목제가구·인조꽃을 담고 있는 유리화병·도자제의 작은 알갱이 모양)인 물품은 이 호에서 가리키는 의미의 뮤지컬박스로는 간주하지 않음. 이러한 물품은 뮤지컬 장치와 결합하고 있지 않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동일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6. 공기총 (9304.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 GU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ING AIR PISTOL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RESSED AIR G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W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총포화약법」상 허가대상 공기총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구경을 구체적 물품 설명의 마지막에 기재 예) CAL.: 4.5MM, 5.0MM, 5.5MM, 6.4MM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L 60CM(총 전체의 길이)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 「방위사업법」상 허가대상(군용) 해당 여부 등 관련된 사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ILITARY, USE: SPORT, USE: GAM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RESSED AIR GUN, MODEL: P75, CAL: 4.5MM, SIZE: L 60CM, PACKING: 1EA/CT, USE: SPORT ○ 압축 공기총(경기용), 구경은 4.5MM, 총 전체길이 60CM, 모델명 P75,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75 ○ 구체적 물품 설명, 허가대상 공기총 여부, 사이즈, 용도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의 것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경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비대상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7. 기타 그 밖의 무기 (9304.00-9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㉓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총: GAS GUNS 2. 에어로졸 최루가스 분사기: AEROSOL SPRAY 3. 슬링샷 및 투석기: SLINGSHOTS AND CATAPULTS 4. 경찰봉: TRUNCHEONS 5.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볼 발사총: PAINTBALL MARKERS 6. 스프링총: SPRING GUNS 7. 너클더스터: KNUCKLEDUSTERS 8.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UNCHE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㉔ 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UNCHE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㉕ 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인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총포화약법」 상 허가대상 물품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구경, 금지대상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기재 예) CAL.(구경): 4.5MM, 5.0MM, 5.5MM, 6.4MM -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탄환의 직경·무게·운동에너지·앞부분 처리·순간폭발음·가연성 불꽃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 예) 5.7MM, 0.2G, 0.02KGM, ISN'T ROUNDED, 90 DB, FLAMMABLE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L 65CM(총 전체의 길이)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방위사업법」 상 허가대상(군용) 해당 여부 등 관련된 사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MILITARY, USE: SPORT, USE: GAM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EL TRUNCHEONS, MODEL: AGENT A50, SIZE: L 65CM, PACKING: 12EA/CT, USE: DEFENSE ○ 철재 경찰봉(호신용), 모델명 AGENT A50, 전체 길이 65C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물품 설명, 총포화약법 적용(허가, 금지) 대상 물품 여부, 용도를 알 수 없음
㉖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㉗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의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화약법(허가대상): 스프링총, 가스총,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용 분사기), 전자충격기(총포, 막대형, 기타 휴대용 전자 충격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포로 분류되는 것 ○ 총포화약법(소지의 금지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호신용 철재 경찰봉으로 군용의 것 아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호신용 철재 경찰봉으로 해당 법령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8. 기타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 [9401.6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TS WITH WOODEN FR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IVIA C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IR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H 9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STOOL, MODEL: W-1-4, FOR CHILDREN, SIZE: H 9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의자(어린이용), 모델명 W-1-4, 사이즈는 H 9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유아용 의자 여부, 프레임의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가구인 경우 개소세 해당여부 확인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19. 기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그 밖의 의재(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9401.71-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용 의자: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BABY CHAIRS 2. 팔걸이 의자: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ARM-CHAIRS 3. 유아용 높은 의자: INFANTS' HIGH CHAIR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TS, WITH METAL FRAMES; BABY CH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H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H-410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H 9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STOOL, MODEL: YH-4100A, FOR CHILDREN, SIZE: H 900MM, PACKING: 12EA/CT ○ 철제 의자(어린이용), 모델명 YH-4100A, 사이즈는 H 9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H-410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유아용 의자 여부, 프레임의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점화식의 의료기기로 조립완성 될 수 있는 좌훈기(점화식 온구기)의 경우 제9018.90-9080에 분류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0. 가죽으로 덮어씌운 기타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9401.7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TS COVERED WITH LEA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ERED WITH LEA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DE C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THER CHARMING CHAIR, MODEL: LU-118, FRAME: STEEL,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으로 덮어씌운 철제 의자, 모델명 LU-118,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재질(프레임, 커버),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9402호의 의자 제외 ■ 스톨, चेस्ट(9403호)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1. 기타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9401.79-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TS WITH METAL FR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PING CH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N SOFA, MODEL: AZM-123, FRAME: STEEL,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의자, 모델명 AZM-123,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M-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프레임의 재질,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2. 기타 그 밖의 의자 (9401.8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용 의자(프레임이 플라스틱제의 것): OTHER SEATS, WITH PLASTICS FRAMES; BABY CHAIRS 2. 어린이보호용 시트: OTHER SEATS; CHILDREN SAFETY SEATS 3. 플라스틱제 에어소파: OTHER SEATS; AIR SOFA OF PLASTIC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SEATS; CHILDREN SAFETY S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CAR S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80MM X D 650MM X H 6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요건확인을 위해 용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CAR(차량용), ETC(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LAXY CAR SEAT, MODEL: JH43, FOR CHILDREN, SIZE: W 580MM X D 650MM X H 650MM, PACKING: 12EA/CT, USE: CAR ○ 카시트, 모델명 JH43, SIZE: W 580MM X D 650MM X H 650MM, 12개씩 포장, 차량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H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카시트)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카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품은 양허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부분품을 완제품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3. 금속으로 만든 침대 (9403.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B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METAL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JUSTABLE BUNK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BUNK BED, MODEL: ZY-002, FRAME: METAL, VOLT: AC100~240V, ELECTRIC BED, MAT11, FOR CHILDREN,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2단 침대(어린이용),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ZY-002,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Y-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정격전압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이단침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와 함께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오는지 확인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4. 침실용 목제 침대 (9403.5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BEDS IN THE BEDR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BED, MODEL: GT-106, FRAME: METAL, VOLT: AC100~240V, FOR CHILDREN,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제 2단 침대(어린이용),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GT-106, SIZE: W 300MM X D 600MM X H 30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정격전압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인 것), 어린이용 이단침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와 함께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오는지 확인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5. 기타 그 밖의 목제가구 (9403.60-9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BI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8MM X D 106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EN CABINET, MODEL: H808, FRAME: WOOD, FOR CHILDREN, SIZE: W 208MM X D 106MM X H 30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제 장식장(어린이용), 모델명 H808, SIZE: W 208MM X D 106MM X H 30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인 것), 어린이용 이단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책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6. 보행기 [9403.7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S STEP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OF PLASTICS ○ 관세율표 10단위에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6단위의 품명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VON WAL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ROLLING360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660MM X D 800MM X H 6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WALKER, MODEL: SF-930N, FOR CHILDREN, SIZE: W 660MM X D 800MM X H 600MM, PACKING: 1EA/CT ○ 보행기(어린이용), 모델명 SF-930N, SIZE: W 660MM X D 800MM X H 60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F-930N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보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7.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9403.7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용 놀이터: PLAY-PEN 2. 진열장: SHOW-CASES OF PLASTICS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D OF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NK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N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프레임의 재질이 있는 경우 “FRAM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재질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BUNK BED, MODEL: HY-Z162, FRAME: PLASTIC, VOLT: AC100~240V, FOR CHILDREN, PACKING: 2EA/CT ○ 플라스틱제 2단 침대(어린이용),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HY-Z162,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Z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인 것), 어린이용 이단침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지통은 3926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8. 매트리스 서포트 (9404.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TRESS SUPPORT OF ELECTRIC 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TRESS SUPPORT SEMI-FLEX GRID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F 9" FDN QUEEN &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RESSED MATTRESS SUPPORT, MODEL: FMBT38PM,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리스 서포트, 모델명 FMBT38P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BT38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모델, 크기를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서는 체어나 그 밖의 의자용으로 함께 조립한 나선형의 스프링(제9401호)과 직조한 강선제의 망으로 장착하지 않은 것(제7314호)을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29.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리스(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LLULAR RUBBER MATTRESS OF ELECTRIC 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HION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MAT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BIB MATTRES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RING MATTRESS, MODEL: 66142KOMM, VOLT: AC100~240V, 150W, PACKING: 1EA/CT ○ 스프링 매트리스,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66142KO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142KOMM ○ 구체적 물품설명, 정격전압,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파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재를 구체적으로 기재 	

63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매트리스 (9404.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ERIAL MATTRESS OF ELECTRIC 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EAT MAT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17 BRASS FM 210*210 BLUE 01 40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HEAT MATTRESS, MODEL: SF OAK,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 전기식 매트리스,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SF OAK,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F O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정격전압,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파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충전재를 구체적으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1. 침낭 (9404.3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식의 것: OF ELECTRIC HEAT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EEPING BAGS OF ELECTRIC H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PING G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WN SLEEPING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EECE EZ SLEEP BAG, MODEL: COZY III, PACKING: 3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낭, 모델명 COZY II, 3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ZY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물품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2. 기타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4.9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불: QUILTS 2. 베개: PILLOWS 3. 쿠션: CUSHIONS 4. 침대커버: BEDSPREADS 5. 솜털이불: EIDERDOWNS 6. 깃털이불: DUVETS 7.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RB2400 NEST BED IN F18 16 CS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MAT, MODEL: SEK-001-12,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매트,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SEK-001-12,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K-0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운수매트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정격입력 10KW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운수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건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건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것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꺼운 방석용의 가죽으로 된 커버(제4205호), 담요(제6301호), 베갯잇아이다솜털이나 깃털 이불용의 커버(제6302호), 쿠션용의 커버(제6304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3. 필라멘트 램프의 상들리에 등 천장·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9405.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DELIERS OF FILAMENT L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ILING LIGH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ILING LIGHTING, MODEL: BLJ18035,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BLJ18035,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J18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백열전구 전기스텐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인것), 백열등기구·스텐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인 것) ○ 안전확인대상: 백열전구 전기스텐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인것), 백열등기구·스텐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인 것), 샹데리아등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4. 발광다이오드(LED)의 상들리에 등 천장·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9405.1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DELIERS OF LIGHT-EMITTING DIODE (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L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LIGHTING LAMP, MODEL: T5 900MM,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T5 90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5 900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등기구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등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5. 필라멘트 램프의 전기식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ABLE LAMP OF FILAMENT L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BLE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BLE LAMP, MODEL: XH-A57,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XH-A57,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H-A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열전구 전기스탠드, 백열등기구 · 스탠드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열등기구 · 전기스탠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6. 발광다이오드(LED)의 전기식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ABLE LAMP OF LIGHT-EMITTING DIODE (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L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LIGHTING LAMP, MODEL: DLED-3C, VOLTAGE: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DLED-3C,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LED-3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등기구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등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7. 기타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ABLE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CH WARMER TABLE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BLE LAMP, MODEL: H-32M,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램프,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H-32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3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대상: 전기스탠드(전기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PLS조명기구, 할로젠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안전확인대상: 전기스탠드(전기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할로젠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함)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스탠드, PLS조명기구, 할로젠등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8. 투광형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4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LAMP OF FLOOD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D LIGH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D LIGHTING, MODEL: XFL-7,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광형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XFL-7,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FL-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 안전확인 대상: 투광조명등(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LED램프(모듈)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광조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합 세번 해당 여부 검토(HSK9405.40-9000호)후 신고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39.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4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LIGHTING FIT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FIT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FITTING, MODEL: GALT-1158, VOLT: AC100~240V,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등,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GALT-1158,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LT-1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모듈(램프)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모듈(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기구와 전기스텐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임에 유의 ■ 부분품으로 신고된 물품 중 안정기가 부착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에 해당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VOLT: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5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LECTRICAL L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LE LIGH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MP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3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ORATION CANDLE LIGHTING, MODEL: 504041 LUP, PACKING: 3EA/CT ○ 장식용 촛불조명등, 모델명 504041 LUP, 3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ZY II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기식이란 9405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전기를 제외한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의미.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광원 중 태양광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태양광도 포함 ■ 용도 및 램프 종류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1.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9503.00-11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 ' S TRICY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CYCL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 ' S TRI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800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90MM X D 720MM X H 58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 TRICYCLE, MODEL: R1200 GS, FOR CHILDREN, SIZE: W 490MM X D 720MM X H 580MM, PACKING: 1EA/CT ○ 세발자전거(어린이용), 모델명 R1200 GS, 사이즈는 W 490MM X D 720MM X H 58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1200 GS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삼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르면 5세 이하 유아가 페달을 돌려서 사용하는 발판식 삼륜차에 대해 요건필요 ■ 요건 회피목적으로 페달을 분리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2. 스쿠터 (9503.00-12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O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D SCOO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00MM X D 600MM X H 5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D SCOOTER, MODE: YX-S07, FOR CHILDREN, SIZE: W 400MM X D 600MM X H 500MM, PACKING: 1EA/CT ○ 스쿠터(어린이용), 모델명 YX-S07, 사이즈는 W 400MM X D 600MM X H 50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X-S07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KC)이며, 썩쟁카는 완구로써 안전확인대상품목(KC, 인증번호)임 ○ 두 가지 제품의 차이는 바퀴에 베어링이 들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들어간 경우 키보드, 들어가지 않은 경우 썩쟁카로 완구인증을 득해야 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3. 페달차 (9503.00-13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DAL C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DE ON CAR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S PEDAL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50MM X D 1,000MM X H 5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S PEDAL CAR, MODEL: ADL1688, FOR CHILDREN, SIZE: W 550MM X D 1,000MM X H 500MM, PACKING: 1EA/CT ○ 페달차(어린이용), 모델명 ADL1688, 사이즈는 W 550MM X D 1,000MM X H 50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L1688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 유아용 삼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4. 인형용 차 (9503.00-14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CARRI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ILAR WHEELED TOY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HANDC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50MM X D 600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HANDCART, MODE: PY031903, FOR CHILDREN, SIZE: W 450MM X D 600MM X H 300MM, PACKING: 1EA/CT ○ 인형용 차(어린이용), 모델명 PY031903, 사이즈는 W 450MM X D 600MM X H 300MM,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031903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용 차는 인형을 태우고 어린이가 직접 밀며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인형용 유모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탈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하중으로 설계 제작된 바퀴 달린 손수레모양의 완구는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9503.00-1800분류 가능성)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5.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기타의 완구와 인형용 차 (9503.00-18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터 동력 어린이용 차: CHILDREN'S CARS POWERED BY A MOTOR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S CARS POWERED BY A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REN'S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670MM X D 1,220MM X H 53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SCHE 718, MODEL: XZ-117-B, FOR CHILDREN, SIZE: W 670MM X D 1,220MM X H 53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쉐 718(어린이용), 모델명 XZ-117-B, 사이즈는 W 670MM X D 1,220MM X H 53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Z-1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과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그웨이(SEGWAY),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기타 모터로 구동하는 전동기기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6.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와 인형용 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19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FOR WHEELED TOYS DESIGNED TO BE RIDDEN BY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LE B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LE BAR, MODEL: C2A3005, PACKING: 6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들바, 모델명 C2A300, 6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A3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21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EET CANDY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00MM X H 1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DY DOLL, MODEL: GGMT180124, FOR CHILDREN, SIZE: W 100MM X H 1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디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GGMT180124, 사이즈는 W 100MM X H 1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MT180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98800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8. 고무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212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OF RUB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FIG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MM X H 2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FIGURES, MODEL: DWF59 BRB, FOR CHILDREN, SIZE: W 150MM X H 2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제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DWF59 BRB, 사이즈는 W 150MM X H 2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WF59 B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49.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213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OF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FIG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H 31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FIGURES, MODEL: MX45, FOR CHILDREN, SIZE: W 200MM X H 31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MX45, 사이즈는 W 200MM X H 31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X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0. 나무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216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OF W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FIG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H 31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FIGURES, MODEL: 595-N2431C, FOR CHILDREN, SIZE: W 200MM X H 31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제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595-N2431C, 사이즈는 W 200MM X H 31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5-N2431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061R2995-7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1. 기타의 재료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21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을 기재하되, 표준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기재하거나 일반적인 품명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지제의 것: OF PAPERBOARD 2. 혼용지의 것: OF PAPIER MACHE 3.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S OF SILIC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MM X H 2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DOLL MODEL: MX45, FOR CHILDREN, SIZE: W 150MM X H 250MM, PACKING: 12EA/CT ○ 실리콘제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MX45, 사이즈는 W 150MM X H 2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X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CHINA)90104575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503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완구로 방직용 섬유, 고무, 플라스틱,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확인 대상 물품임. 재질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여부가 상이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2.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503.00-29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S FOR DO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FOR RAG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GAR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MM X H 1,0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BBY GIRL CLOTHES, MODEL: ZEN-555, SIZE: W 20MM X H 1,0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의류(어린이용), 모델명 ZEN-555, 사이즈는 W 20MM X H 1,0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N-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세율인 기타의 것(9503.00-2990 WTO협정세율 0%)으로 신고 될 수 있으니 주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3. 사람모형 인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29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FOR DO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40MM X H 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BBY GIRL HEAD, MODEL: TR-6RAG, FOR CHILDREN, SIZE: W 40MM X H 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머리(어린이용), 모델명 TR-6RAG, 사이즈는 W 40MM X H 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6R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는 제9503.00-2910호(A 8%)에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4. 전기식 기차 완구(9503.00-31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RAINS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ADISE RAIL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MM X L 2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ADISE RAIL TRAIN, MODEL: TY0202816, FOR CHILDREN, SIZE: W 50MM X L 2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어린이용), 모델명 TY0202816, 사이즈는 W 50MM X L 2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0202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5. 전기식 기차완구의 부속품 [9503.00-31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ORIES OF ELECTRIC TRAINS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P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TRAIN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VED TRACK, MODEL: DGTL D2, SIZE: L 4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형 트랙(어린이용), 모델명 DGTL D2, 사이즈는 L 4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GTL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6.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9503.00-32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UCED-SIZE MODEL ASSEMBLY K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TRUCTION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TRUCTION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00MM X H 2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TRUCTION TOYS, MODEL: HGSD021, FOR CHILDREN, SIZE: W 300MM X H 2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장난감(어린이용), 모델명 HGSD021, 사이즈는 W 300MM X H 2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GSD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건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형이 아닌 완성품일 때는 제9503.00-3800호, 축소모형이 아닌 경우에는 제9503.00-330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7.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9503.00-33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블록: BLOCKS 2.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TRUCTIONAL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H 2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RNING BLOCKS, MODEL: A4-6532, FOR CHILDREN, SIZE: W 200MM X H 2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용 블록(어린이용), 모델명 A4-6532, 사이즈는 W 200MM X H 2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65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8. 방직용 섬유재료로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11)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FFED TOYS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PHANTS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100MM X H 1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SIMBA MODEL: 19-1868LK, SIZE: W 100MM X H 1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 심바, 모델명 19-1868LK, 방직용 섬유 재질, 사이즈는 W 100MM X H 1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868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59.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기타의 완구 [9503.00-341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STUFFED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KANGAROO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KANGAROO TOY, MODEL: P-2208, FOR BABY,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 캥거루 완구(유아용), 모델명 P-2208, 플라스틱 재질,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100*30*75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용 섬유재료를 제외한 재료로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가 분류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91]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FFED ANIMAL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NOSAUR TOY, MODEL: 1356-1 9 GUGUDA,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완구, 모델명 1356-1 9 GUGUDA, 방직용 섬유 재질,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6-1 9 GUGU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재질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TON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CAMBO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이 채워져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제9503.00-3411호로 분류될 수 있음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1. 고무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92]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OF RUB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PONY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H 1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NY TOY, MODEL: PIGPZ10181, FOR CHILDREN, SIZE: W 200MM X H 1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랑말 완구(어린이용), 모델명 PIGPZ10181, 고무 재질, 사이즈는 W 200MM X H 1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PZ10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재질, 포장 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BBER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2.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93]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OF PLA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ANIMAL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DINOSAUR TOY, MODEL: ACC282617 T25, FOR CHILDREN, SIZE: W 200MM X H 3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 공룡 인형(어린이용), 모델명 ACC282617 T25, 플라스틱 재질, 사이즈는 W 200MM X H 3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282617 T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재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STIC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Z003-MD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용 키트가 작동완구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용 키트라 하더라도 성인용으로 의도되어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은 완구로 보지 않아 자율안전확인대상 아님에 유의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3. 금속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94]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OF M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ROBOT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MM X H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SPACE ROBOT, MODEL: MF-17ST, FOR CHILDREN, SIZE: W 150MM X H 3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우주 로봇(어린이용), 모델명 MF-17ST, 금속 재질, 사이즈는 W 150MM X H 3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17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재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A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COLOR BOX AND SMALL WHEELS-1 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4. 나무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497]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OF W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ROBOT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00MM X H 31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SPACE ROBOT, MODEL: WF-17ST, FOR CHILDREN, SIZE: W 100MM X H 31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제 우주 로봇(어린이용), 모델명 WF-17ST, 나무 재질, 사이즈는 W 100MM X H 31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17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재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D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X3211GT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울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5.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기타의 완구 [9503.00-3499]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REPRESENTING ANIM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L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재질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TOY, MODEL: BN0336, FOR CHILDREN, SIZE: W 50MM X H 10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완구(어린이용), 모델명 BN0336, 실리콘 재질, 사이즈는 W 50MM X H 1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N0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ICO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에 따라 세번 및 세율 상이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6. 완구용 악기류 (9503.00-35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MUSIC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MUSIC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00MM X D 30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UM TOY, MODEL: DWL-0965, FOR CHILDREN, SIZE: W 300MM X D 300MM, PACKING: 12EA/CT ○ 드럼 완구(어린이용), 모델명 DWL-0965, 사이즈는 W 300MM X D 30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WL-0965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공연을 위해 연주 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완구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소리 또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음계를 가진 놀이용 제품(플라스틱류로 세밀하지 않게 만들어진 오키리나, 마라카스, 트럼펫 등)은 완구로 분류 ○ 특히 마라카스는 유아용 딸랑이로 사용이 가능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학습용 교구로 사용되는 악기류는 “안전확인 학용품”의 규정에 따름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7. 퍼즐 (9503.00-36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ZZ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ORIES FOR TOY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T PUZZ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T PUZZLE, MODEL: PC253, FOR CHILDREN, PACKING: 12EA/CT ○ 캐스트 퍼즐(어린이용), 모델명 PC253,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253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오락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은 제9503.00-37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8.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503.00-37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ING TOYS PUT UP IN 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ING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0MM X D 31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ING PLAY, MODEL: WD-P16, FOR CHILDREN, SIZE: W 200MM X D 31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놀이 완구(어린이용), 모델명 WD-P16, 사이즈는 W 200MM X D 31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D-P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를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제9503.00-3300호)로 잘 못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05년 제12회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결정된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서, ‘세트 또는 아웃피트’에 대하여 “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 이라고 규정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69.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503.00-38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CING CAR INCORPORATING A 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CING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50MM X D 100MM X H 3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IC RACING CAR, MODEL: BD-SCRPION, FOR CHILDREN, SIZE: W 50MM X D 100MM X H 30MM,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경주차(어린이용), 모델명 BD-SCRPION, 사이즈는 W 50MM X D 100MM X H 30M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D-SCRP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파법 적용 대상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RC용 완구, 기타 어린이용 전동형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식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완구용 저금상자는 제9503.00-3800호로 분류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0. 풍선 · 완구용 공 · 연과 이와 유사한 완구 [9503.00-3911]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BA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150MM X H 15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UNCING BALL, MODEL: BF-CONY, FOR CHILDREN, SIZE: W 150MM X H 15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는 공(어린이용), 모델명 BF-CONY, 사이즈는 W 150MM X H 15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F-C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 전용리모컨으로 조정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모터가 결합된 비행 완구는 제9503.00-38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 · 모양 · 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1. 그 밖의 완구 (9503.00-3919)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① 표준품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용 완구: EDUCATIONAL TOYS 2. 축소모형(조립용의 것을 제외): REDUCED-SIZE (“SCALE”) MODELS, EXCLUDING ASSEMBLY 3. 완구용 권총과 총: TOY PISTOLS AND GUNS 4.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PISTOLS AND GU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ULATED G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총포화약법」상 허가대상 물품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구경, 금지대상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기재 예) CAL.(구경): 4.5MM, 5.0MM, 5.5MM, 6.4MM -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탄환의 직경·무게·운동에너지·앞부분 처리·순간폭발음·가연성 불꽃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 예) 5.7MM, 0.2G, 0.02KGM, ISN’T ROUNDED, 90DB, FLAMMABL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L23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GUN - AIR SOFT GUN, MODEL: HK45, SIZE: L23CM, PACKING: 2EA/CT ○ 권총, 모델명 HK45, 사이즈는 L23CM,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모의총포,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비비탄총, 완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비탄총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모의총포 아님(총포협회 모의총포 비대상 확인-7984,18.10.23)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2. 그 밖의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9503.00-399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PART」 또는 「PART FOR~」로 일괄 기재 	■ PARTS FOR TO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S AND ACCESSORIES (EXCLUDING THOSE OF SUBHEA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RC MODEL CAR P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0MM X H 20M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 CAR WHEEL, MODEL: PSS10, FOR CHILDREN, SIZE: W 20MM X H 20MM,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싱카 바퀴(어린이용), 모델명 PSS10, 사이즈는 W 20MM X H 20MM,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S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3. 그 밖의 오락용구 ·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9504.90-3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GAME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G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S AND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VOLT:”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정격전압 AC/DC 구분 기재하고 정격입력 등을 같이 기재 - 「총포화약법」 상 허가대상 물품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구경, 금지대상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CAL.(구경): 4.5MM, 5.0MM, 5.5MM, 6.4MM -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탄환의 직경 · 무게 · 운동에너지 · 앞부분 처리 · 순간폭발음 · 가연성 불꽃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5.7MM, 0.2G, 0.02KGM, ISN'T ROUNDED, 90DB, FLAMMABLE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RT, MODEL: ZENITH-61788, VOLT: AC100~240V,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트 완구, 정격전압 AC100~240V, 모델명 ZENITH-61788,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EM NO.61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전기용품, 전파법, 총포화약법 적용 대상 물품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 게임기기 ○ 정격전압: AC 30V초과~1000V이하, DC 42V초과~1000V이하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 게임기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실내보드게임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관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 투전, 트럼프류를 포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4. 기타 축제용품 · 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9505.9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STIVE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EPROOF STAGE CU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THDAY PARTY HAT, MODEL: JT-60-71,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일파티용 모자, 모델명 JT-60-71,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6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 눈 스프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생일파티용 모자로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오락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은 완구(제9503호)에 분류될 수 있음 ■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은 제3604호에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5. 스키 [9506.1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S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W-S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TER SPORTS GOOD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X FUSION ELX SNOW-SKI, MODEL: AAKEBTA8, PACKING: 2EA/CT ○ 스키, 모델명 AAKEBTA8,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KEBTA8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6.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9506.12-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FASTE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S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BI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 17.0 FREEFLEX EVO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FLEX, MODEL: DD662016, ER 17.0, PACKING: 2EA/CT ○ 스키바인딩, 모델명 DD662016,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662016, ER 17.0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7. 기타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W-SKI EQUIP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OW BO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ROD JR SNOWBOARD, MODEL: CD883818,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노보드, 모델명 CD883818,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883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용 장갑·병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 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8. 기타 수상스키 · 서프보드 · 세일보드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BO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F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DIAMOND EPS, MODEL: FCS II(57990), FOR CHILDREN,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프보드(어린이용), 모델명 FCS II(57990),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S II(57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를 주입하여 물놀이를 위한 간이 수영장으로써 '지상'에서만 사용되는 원형풀은 제9506.99-0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수상스키 · 서프보드(SURF-BOARDS)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품 [예: 다이빙 대(플랫폼) · 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용 마스크 · 수영용이나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클(SNORKELS)로 알려져 있음)] ■ 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79.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9506.70-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SKATE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N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SKATE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AKE SHARMER, MODEL: RKP-1 Y14-136G, FOR CHILDREN,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이트보드(어린이용), 모델명 RKP-1 Y14-136G,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KP-1 Y14-136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여부,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이트보드”란 체중이 20kg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서 힘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를 말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부속서 4(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9506.91-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FOR PHYSICAL EXER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S EQUIPMEN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RCISE B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EXERCISE OF EQUIPMENT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ASAN BAND, MODEL: FEB20431, PACKING: 2EA/CT ○ 운동용 밴드, 모델명 FEB20431, 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B20431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모양의 볼에 공기를 주입한 후 바닥, 매트 위에 놓고 스트레칭 등 신체 균형 및 근력강화 등의 전신운동을 하기 위한 물품인 짐볼은 제9506.62-9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 이외에 사용하는 기타의 물품 [9506.99-0000]

항 목	작성 요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FOR PHYSICAL EXER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RTS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YDERBALL 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EXERCISE OF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의료기기법」 대상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YDERBALL AIR, MODEL: 65622, PACKING: 1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파이더볼(탁구, 배구를 결합하여 만든 오락 스포츠 완구), 모델명 65622, 1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502 PEDIATRIC FLEXIBLE UTENS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어린이제품, 의료기기, 총포 여부,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오락용 스포츠완구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가 아니므로 비대상 ■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오락용 스포츠완구로 의료기기법 대상 의료기기가 아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유: 오락용 스포츠완구로 석궁이 아니므로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장구”란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를 말함(다만, 롤러 하키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부속서 3(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운동용구나 옥외게임용구가 분류되는 바, 제9503.80-0000호(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기타의 완구 및 모형) 및 제8703.21-9000호(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차량으로 배기량1000CC이하의 기타차량)과 경합되므로 주의가 필요 ■ 신제 보호용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방직용 섬유제 운동복은 방직용 섬유제품 세번에 분류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볼링 용구와 그 밖의 실내게임 용구는 제9504호에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2.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OTH BRU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DENTAL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TAL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24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PRO, MODEL: TPB-178, PACKING: 24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프로 치간칫솔, 모델명 TPB-178, 24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B-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구강 세정기(전동칫솔)은 제8509.80-9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3.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 (9603.29-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BRU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MAN HAIR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6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EDA HAIR BRUSH, MODEL: A09A700000, PACKING: 6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다 머리빗, 모델명 A09A700000, 6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9A7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용으로 쓰이는 브러시가 특게된 세번으로 청소용이나 회화용 등 인체 이외에 쓰이는 브러시는 이 세번에 해당되지 않음 ■ 인체용으로 쓰이지만 치과용, 내과용 등 전문적으로 쓰이는 브러시는 제9018호 의료용기기 세번에 포함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4. 볼펜 (9608.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 POINT P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LLER 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XE3-400-07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POINT PEN, MODEL: NKG-450E-EN, PACKING: 12EA/CT ○ 볼펜, 모델명 NKG-450E-EN,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KG-450E-EN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 PEN, TOUCH PEN 등 끝에 볼이 있는 잉크관이 없는 펜은 이 세번에 해당되지 않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5. 연필 (9609.1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C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SE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OFFICE, USE: EXPER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PHIC PENCILS, MODEL: 34170 4B, FOR CHILDREN, PACKING: 12EA/CT ○ 연필(어린이용), 모델명 34170 4B,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170 4B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 학용품 여부, 사무용 또는 전문가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썹을 그리는 연필에 해당하는 아이브로우 펜슬은 제3304.20-9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6. 색연필 (9609.1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 PENC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SET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 PE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OFFICE, USE: EXPER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OR PENCILS, MODEL: WCP-01, FOR CHILDREN, PACKING: 12EA/CT ○ 색연필(어린이용), 모델명 WCP-01,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CP-01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 학용품 여부, 사무용 또는 전문가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썹을 그리는 연필에 해당하는 아이브로우 펜슬은 제3304.20-9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결을 목재·종이·플라스틱 등으로 짠 필기도구를 말하며,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 ○ 근거규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7. 크레용 · 오일파스텔 (9609.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Y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Y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ION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인 경우 “FOR CHILDREN” 또는 “FOR BABY”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종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USE: OFFICE, USE: EXPER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YONS, MODEL: A6-0102, FOR CHILDREN,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용(어린이용), 모델명 A6-0102,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6-0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 설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학용품 여부, 사무용 또는 전문가용 여부,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용품”이란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구류 등을 말함.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1(학용품)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8. 스탬프 [9611.0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K PAD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CHIHATA ST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7-4821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CHIHATA STAMP, MODEL: S-530-7, PACKING: 12EA/CT ○ 사치하타 스탬프, 모델명 S-530-7,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530-7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이와 유사한 스탬프와 조판용 스틱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독립적으로 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이와 유사한 스탬프로서 테이블·책상 등에 고정시키기 위한 스탠드를 갖추고 있는 것이나 스탠드 위에 놓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제8472호 해설))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89.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 [9615.11-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S OF PLA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HN CO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07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규격을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물품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재질 기재 예) HARD RUBBER(경화 고무), PLASTIC(플라스틱) ○ [포장방식(권고)]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CODILE COMBS, MODEL: PP5519530, PLASTIC,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어빗, 모델명 PP5519530,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5519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이외의 재질로 만든 빗은 이 세번에 해당되지 않음 ■ 표준품명 COMB의 사전적 정의는 가늘고 뾰족한 줄이 한쪽 면에 나란히 나있는 납작한 빗으로 BRUSH와 구분이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0.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SLIDES OF HARD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SL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물품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재질 기재 - 예) HARD RUBBER(경화 고무), PLASTIC(플라스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SLIDE, MODEL: A6-9412, PLASTIC,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핀, 모델명 A6-9412,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6-9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화고무나 플라스틱제 이외의 빛은 제9615.19-1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1. 기타 빗 (9615.19-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S OF W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BRU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물품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재질 기재 예) METAL(금속), WOOD(나무) 등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ONZE COMB, MODEL: 11BA911EDA-RAT, METAL,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동빗, 모델명 11BA911EDA-RAT,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BA911EDA-RA-MT-Y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가 내장되어 마사지 기능이 있는 빗은 제9019.10-2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경화고무나 플라스틱제의 빗은 제9615.11-1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2. 머리핀 [9615.90-1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P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ACCESSORY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ACCESS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GOOD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IGATOR CLIP STAR, MODEL: AC11-79, GOLD(PAIR), PACKING: 12EA/CT ○ 악어클립, 모델명 AC11-79, GOLD(PAIR),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11-79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함유하는 것은 제71류에 분류(미미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3. 기타 컬링핀 · 컬링그립 · 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90-9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CURLING G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HAIR CURLING G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IR DEC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SH CURLER, MODEL: MML6010000,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눈썹 컬러, 모델명 MML6010000,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L60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화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제9615.11.9000호로 분류될 수 있음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 천연이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 · 합성 · 재생의 것)을 함유하는 것은 제71류에 분류(미미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4.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9616.1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ENT SPRA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GER SPRA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SUBSIDI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VEL ATOMISER, MODEL: REF.65151049,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용 분무기, 모델명 REF.65151049,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65151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용 분무기를 분류하며 제8424호의 분사, 살포 분무용의 기기와 구별이 필요 ■ 향수 분무기용 저장조는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함을 유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5.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20-0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DER-PUFF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HION COMPACT SPO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ME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UP PUFFS, MODEL: A1-00650, PACKING: 12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용 퍼프, 모델명 A1-00650, 12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00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조나 물오리슴털·스킨·동물의 털·파일(PILE)직물·폼 고무(FOAM RUBBER)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뼈·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나 트리밍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6.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9619.00-1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PKINS FOR BABIES OF PAPER P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P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DI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TRAINING 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은 재질별로 품목분류 될 수 있음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3CM X L 37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MPERS DIAPER, MODEL: BB-054, SIZE: W 33CM X L 37CM,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퍼스 기저귀, 모델명 BB-054, 사이즈는 W 33CM X L 37CM, 8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LP 38.62%, FELT 18.74%, SAP 25.71%, OTHER 1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PC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방식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 종이,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재질로 만든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를 분류 ■ 이 호는 저세율(C 0%)이나 같은 품명의 제9619.00-9010호는 고세율(C 6.5%)이므로 성분을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7. 제지용 펄프·종이 등으로 만든 위생 타월(패드)·탐폰과 이와 유사한 물품 [9619.00-109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으로 표준품명을 선택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유패드: ABSORBENT HYGIENIC NURSING PADS 2. 성인용 기저귀: DIAPERS FOR ADULTS 3. 팬티라이너: PANTYLINERS 4. 애완동물 배변 패드: PET PADS 5. 기타: OTHER ②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APERS FOR AD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ULT DI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33CM X L 62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RA ADULT DIAPER, MODEL: 1212, SIZE: W 33CM X L 62CM,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라 성인용 기저귀, 모델명 1212, 사이즈는 W 33CM X L 62CM, 8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X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LP 38.62%, FELT 18.74%, SAP 25.71%, OTHER 1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PC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방식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폰, 생리대, 팬티라이너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견본품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기저귀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619.00-1090호에는 제지용 펄프, 종이, 셀룰로오스 섬유 등의 웹 재질로 만든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외의 물품을 분류하므로 성분 기재 필요 ■ 유아용(FOR BABIES)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유아용 기타 위생용품은 제9619.00-1010에 분류 될 수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8.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만든 위생 타월 · 탐폰과 이와 유사한 물품 [9619.00-2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개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개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개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 SANITARY TOWELS OF WAD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 SANITARY NAPK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8CM X L 50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LARGE TRAINING PANT, MODEL: 39-44 LB, SIZE: W 28CM X L 50CM,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팬티, 모델명 39-44 LB, 사이즈는 W 28CM X L 50CM, 8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44 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 RAYON 38.62%, FELT 18.74%, SAP 25.71%, OTHER 1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PC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방식은 모델규격 란에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클레임 재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면제 사유: 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기저귀 해당 여부 확인 곤란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관리법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어떤 제품인지 명확히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요건확인 사유를 “해당없음, 비대상, 해당사항없음, 대상아님” 으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699.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9619.00-4000]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 예시	오류 예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4단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ITARY TOWEL MADE UP TEXTILE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ITARY TOW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ILE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MPAROOZ G2 SANITARY TOWEL, MODEL: C4025SP, 1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타월, 모델명 C4025SP, 1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4025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URETHANE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PCS/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방식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의 위생용품은 세관장확인대상이므로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생리대: 약사법 ○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품관리법 ■ 원재료에 따라 세번 및 세울차가 있으므로 성분 기재 필요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700. 기타의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9619.00-9010)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오 류 예 시
㉔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 ○ 10단위 특게된 품명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PKINS FOR BAB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DIAPERS ○ 관세율표상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품명 기재
㉕거래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DI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Y TRAINING PANTS ○ 송품장의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㉖모델·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용도 등을 기재 ○ [구체적 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델명 등을 함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이 있는 경우 “MODEL:”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모델명을 기재 ○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SIZE: W 28CM X L 50CM ○ [포장방식(권고)] “PACKING:” 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PACKING: 80E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MPERS DIAPERS EASY UP 3T4T, MODEL: C46296001, SIZE: W 28CM X L 50CM PACKING: 80EA/CT ○ 팜퍼스 기저귀, 모델명 C46296001, 사이즈는 W 28CM X L 50CM, 80개씩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46296001 ○ 구체적 물품설명, 사이즈, 포장방식 등을 알 수 없음
㉗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 ■ 혼합물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요건확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수기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YMER 20%, POLYETHYLENE SHEET AND TAPE 6%, TISSU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PCS/BAG ○ 포장방식은 모델규격 란에 기재 요망
㉘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 종이, 셀룰로오스 섬유외의 웹 이외의 재질로 만든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를 분류 ■ 이 호는 고세율(C 6.5%)이나 같은 품명의 제9619.00-1010호는 저세율(C 0%)이므로 성분을 반드시 기재 ■ 품명 및 거래품명을 “OTHER” 로 신고하는 경우,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예상오류로 선별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참고

집중관리품목(HSK 700개)

연번	HSK	품명	품목군
1	0201.20-1000	신선·냉장 쇠고기 갈비	식품
2	0203.29-9000	냉동 기타 돼지고기	식품
3	0207.14-1090	냉동 닭의 기타 절단육	식품
4	0210.12-0000	염장·염수장·건조·훈제 돼지고기의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식품
5	0210.19-0000	염장·염수장·건조·훈제 기타 돼지고기	식품
6	0301.92-9090	활 기타 뱀장어(양귀라 종)	식품
7	0301.93-0000	활 잉어	식품
8	0301.99-7000	활 먹장어	식품
9	0301.99-9070	활 미꾸라지	식품
10	0302.55-0000	신선·냉장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식품
11	0302.82-0000	신선·냉장 가오리와 홍어(라지대 과)	식품
12	0302.89-2000	신선·냉장 갈치	식품
13	0303.67-0000	냉동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식품
14	0303.82-2000	냉동 홍어(라지대 과)	식품
15	0303.89-3010	냉동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식품
16	0303.89-5000	냉동 조기	식품
17	0303.89-9050	냉동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식품
18	0303.89-9091	냉동 민어	식품
19	0303.89-9099	냉동 기타 어류	식품
20	0303.99-0000	냉동 어류의 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	식품
21	0305.59-3000	건조 명태(북어)	식품
22	0305.59-9000	건조 기타 어류	식품
23	0306.11-9000	냉동 기타 닭새우류(팔리누루스 종·파누리루스 종·자수스 종)	식품
24	0306.14-3090	냉동 기타 꽃게	식품
25	0306.95-1020	건조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 종·크란곤 크란곤)	식품
26	0306.95-9030	염장·염수장 기타 새우류	식품
27	0307.21-0000	활·신선·냉장 가리비	식품
28	0307.43-2010	냉동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로리고·노토토다루스·세피오투디스 종)	식품
29	0307.43-2090	냉동 기타 오징어	식품
30	0307.51-1000	활·신선·냉장 낙지	식품
31	0307.52-1000	냉동 문어	식품
32	0307.71-4000	활·신선·냉장 바지락	식품
33	0307.71-9000	활·신선·냉장 기타 조개류	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34	0308.90-1019	활·신선·냉장 기타 우렁쉥이(멍게)	식품
35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식품
36	0409.00-0000	천연꿀	건강기능식품
37	0410.00-9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기타 동물성 생산품	건강기능식품
38	0507.90-1110	녹용 전지	식품
39	0703.10-1000	신선·냉장 양파	식품
40	0703.20-1000	껍질을 깐 신선·냉장 마늘	식품
41	0703.20-9000	신선·냉장 기타 마늘	식품
42	0706.10-1000	신선·냉장 당근	식품
43	0706.90-1000	신선·냉장 무	식품
44	0706.90-4000	신선·냉장 도라지	식품
45	0710.10-0000	냉동 감자	식품
46	0710.29-0000	냉동 기타 채두류	식품
47	0710.80-2000	냉동 마늘	식품
48	0710.80-7000	냉동 고추류	식품
49	0711.90-5099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	식품
50	0712.32-0000	건조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 종)	식품
51	0712.90-2010	건조 고사리	식품
52	0712.90-2060	건조 양배추	식품
53	0712.90-2070	건조 토란줄기	식품
54	0712.90-2099	건조 기타 채소	식품
55	0713.31-9000	건조 기타 녹두	식품
56	0713.32-9000	건조 기타 팥	식품
57	0714.20-4000	냉동 고구마	식품
58	0811.90-9000	냉동 기타 과실과 견과류	식품
59	0813.40-1000	건조 감	식품
6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커피	식품
61	0902.10-0000	발효하지 않은 녹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 내용물에 직접 포장)	식품
62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이하, 내용물에 직접 포장)	건강기능식품
63	0902.40-000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 발효차	식품
64	0903.00-0000	마테	건강기능식품
65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후추	식품
66	0904.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 고추류	식품
67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건조 고추류	식품
68	0906.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계피(신나모름 제이나이콤 블룸)	식품
69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육두구	건강기능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7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커민의 씨	식품
71	0910.11-1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신선·냉장 생강	식품
72	0910.20-0000	사프란	건강기능식품
73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식품
74	1004.90-0000	기타 귀리	식품
75	1008.10-0000	메밀	식품
76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식품
77	1104.23-0000	가공 옥수수	식품
78	1104.29-9000	기타 곡물로 만든 가공 곡물	식품
79	1106.20-9000	사고·뿌리나 괴경의 고운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4호의 것)	식품
80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식품
81	1109.00-0000	밀의 글루텐	식품
82	1201.90-3000	콩나물용 기타 대두	식품
83	1201.90-9000	기타 대두	식품
84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기타 땅콩	식품
85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기타 땅콩	식품
86	1204.00-0000	아마씨	식품
87	1206.00-0000	해바라기씨	식품
88	1207.40-0000	참깨	식품
89	1207.91-0000	양귀비씨	식품
90	1207.99-1000	들깨	식품
91	1207.99-9000	채유에 적합한 기타 종자와 과일	식품
92	1208.90-0000	채유에 적합한 기타 종자와 과일의 고운 가루와 거친가루	식품
93	1211.50-1000	신선·냉장·건조 마황(麻黃)	식품
94	1211.90-1100	신선·냉장·건조 부자(附子)	식품
95	1211.90-1910	신선·냉장·건조 용안육(龍眼肉)	식품
96	1211.90-1940	신선·냉장·건조 박하	식품
97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식품
98	1211.90-1970	신선·냉장·건조 구기자	식품
99	1211.90-1999	신선·냉장·건조 식물성생산물	식품
100	1211.90-9090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식물성 생산물	식품
101	1212.29-9099	냉동하지 않은 기타 해조류와 그 밖의 조류	식품
102	1212.99-3000	꽃가루	건강기능식품
103	1214.90-9011	사료용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식품
104	1302.19-1120	인삼 추출물 가루	식품
105	1302.19-2000	캐슈너트 쉼액	건강기능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106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07	1302.19-9020	콜라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08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09	1302.19-9039	기타 식물(제1211호)의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1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11	1302.19-9099	기타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12	1302.39-0000	기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	식품
113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
114	1506.00-9000	기타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건강기능식품
115	1509.10-0000	버진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식품
116	1509.9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식품
117	1512.19-1010	정제 해바라기씨유	식품
118	1512.19-9010	기타 해바라기씨유	식품
119	1513.11-0000	야자로 만든 조유(粗油)	식품
120	1513.19-9000	기타 야자유	식품
121	1515.19-0000	기타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식품
122	1515.90-9090	기타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	건강기능식품
123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식품
124	1517.90-9000	기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식용 혼합물·조제품	건강기능식품
125	1601.00-1000	소시지	식품
126	1602.41-1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돼지의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식품
127	1602.50-9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소고기	식품
128	1602.90-9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육·설육·피	식품
129	1604.19-9010	쥐치포	식품
130	1604.19-909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어류	식품
131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식품
132	1605.54-2091	조미오징어	식품
133	1605.54-2099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오징어	식품
134	1701.12-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사탕무당	식품
135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식품
136	1701.14-1000	당도가 98.5도 이하인 기타 사탕수수당	식품
137	1701.14-2000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기타 사탕수수당	식품
138	1701.91-0000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설탕	식품
139	1701.99-0000	기타 설탕	식품
140	1702.20-2000	단풍당시럽	식품
141	1806.32-1000	속을 채우지 않은 블록·슬래브·막대 모양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142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밀크·크림 조제품	건강기능식품
143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밀크·크림 조제품	건강기능식품
144	1901.90-9091	쌀가루로 만든 조제 식료품	식품
145	1901.90-9099	기타 곡물가루로 만든 조제 식료품	식품
146	1902.11-1000	스파게티	식품
147	1902.19-1000	국수	식품
148	1902.30-1010	라면	식품
149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	식품
15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식품
151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식품
152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식품
153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식품
154	1905.90-9090	전분 페이스트로부터 만든 유사한 물품	식품
155	2001.90-906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마늘	식품
156	2001.90-9090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	식품
157	2005.40-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완두	식품
158	2005.51-2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껍데기를 벗긴 팥	식품
159	2005.59-2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팥	식품
160	2005.91-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죽순	건강기능식품
161	2005.99-1000	김치	식품
162	2005.99-9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식품
163	2006.00-909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과피	식품
164	2007.10-0000	과실의 균질화한 조제품	식품
165	2007.91-1000	감귤류의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	식품
166	2007.99-1000	기타 과실의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	식품
167	2007.99-9000	기타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페이스트	건강기능식품
168	2008.11-1000	피넛버터	건강기능식품
169	2008.11-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땅콩	식품
170	2008.19-1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밤	건강기능식품
171	2008.19-2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코코넛	건강기능식품
172	2008.19-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견과류	식품
173	2008.60-0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체리	식품
174	2008.99-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과실·채소	건강기능식품
175	2009.19-0000	기타 오렌지주스	식품
176	2009.31-1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레몬주스	식품
177	2009.31-900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178	2009.89-1090	크랜베리 이외의 기타 과실주스	건강기능식품
179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식품
180	2101.11-9000	커피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식품
181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식품
182	2101.20-9090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식품
183	2102.10-3000	제빵효모	건강기능식품
184	2102.20-1000	불활성 효모	건강기능식품
185	2102.20-3090	기타 클로렐라	건강기능식품
186	2102.20-9000	기타 단세포 미생물	건강기능식품
187	2103.20-2000	토마토소스	식품
188	2103.90-9010	마요네스	식품
189	2103.90-9030	혼합조미료	식품
190	2103.90-9090	기타 혼합조미료	식품
191	2104.10-9000	기타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식품
192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식품
193	2105.00-1090	기타 아이스크림	식품
194	2106.90-102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식품
195	2106.90-109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의 베이스	식품
196	2106.90-3029	기타 홍삼 조제품	건강기능식품
197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식품
198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199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건강기능식품
200	2106.90-9099	기타 조제 식료품	건강기능식품
201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식품
202	2202.99-9000	기타 무알코올 음료	식품
203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건강기능식품
204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건강기능식품
205	2208.30-3000	라이(RYE)위스키	식품
206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건강기능식품
207	2501.00-1010	암염(岩鹽)	식품
208	2501.00-1020	천일염	식품
209	2524.10-0000	청(靑)석면	생활화학제품
210	2524.90-1000	갈(褐)석면	생활화학제품
211	2524.90-2000	백(白)석면	생활화학제품
212	2710.19-7410	방청유	생활화학제품
213	2809.10-0000	오산화인	생활화학제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214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생활화학제품
215	2827.20-0000	염화칼슘	생활화학제품
216	2827.31-0000	마그네슘염화물	생활화학제품
217	2841.50-1000	크롬산칼륨	생활화학제품
218	2850.00-3000	아지드화물	생활화학제품
219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생활화학제품
220	2903.39-3000	요드메탄	생활화학제품
221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생활화학제품
222	2923.20-1000	레시틴	건강기능식품
223	2930.90-9010	티오산	생활화학제품
224	2936.27-9000	기타 비타민C와 이들의 유도체	건강기능식품
225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생활화학제품
226	3002.12-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의약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포장)	의약의약외품
227	3002.12-9010	면역혈청	의약의약외품
228	3002.12-904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의약의약외품
229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포장)	의약의약외품
230	3002.19-9000	기타 면역물품	의약의약외품
231	3002.20-0000	인체의약품 백신	의약의약외품
232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의약의약외품
233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의약의약외품
234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35	3003.20-9000	기타 항생물질 함유한 혼합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36	3003.90-9300	비타민제제	의약의약외품
237	3003.90-9900	기타 혼합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38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소매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39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의약의약외품
240	3004.20-9900	기타 항생물질 함유한 소매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41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소매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42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의약의약외품
243	3004.50-9000	기타 비타민 함유한 소매의약품	의약의약외품
244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의약의약외품
245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의약의약외품
246	3004.90-9900	기타 소매용 의약품	여성용품
247	3005.10-1000	반창고	의약의약외품
248	3005.10-9000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의약의약외품
249	3005.90-1000	탈지면	의약의약외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250	3005.90-2000	거즈	의약의약외품
251	3005.90-3000	붕대	의약의약외품
252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의약의약외품
253	3005.90-9000	기타 소매용 의료 용품	의약의약외품
254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	의료기기
255	3006.10-5090	살균한 외과용·치과용 기타 유착방지제	의료기기
256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의약의약외품
257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의료기기
258	3006.30-2000	환자 투여용 진단용 시약	의약의약외품
259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의료기기
26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의료기기
261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의료기기
262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의료기기
263	3006.60-0000	피임성 화학조제품	여성용품
264	3006.92-4000	폐(廢)의료용품(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의료기기
265	3204.12-1000	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66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67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6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69	3204.19-9000	기타 합성 유기 착색제	생활화학제품
270	3204.90-9000	기타 합성 유기 생산품	생활화학제품
271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 색소	생활화학제품
272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73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74	3206.49-9000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75	3209.90-9019	기타 에나멜 함유 페인트	생활화학제품
276	3210.00-1099	기타 페인트	생활화학제품
277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여성용품
278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생활화학제품
279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생활화학제품
280	3215.11-0000	인쇄용 흑색 잉크	생활화학제품
281	3215.19-0000	인쇄용 기타색 잉크	생활화학제품
282	3215.90-9000	기타 잉크	생활화학제품
283	3301.19-0000	기타 감귤류 정유	화장품
284	3301.29-9000	기타 감귤류 외의 정유	화장품
285	3301.90-4800	기타 올레오레진	화장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286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287	3303.00-1000	향수	화장품
288	3303.00-2000	화장수	화장품
289	3304.10-1000	립스틱	화장품
290	3304.10-9000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	화장품
291	3304.20-1000	아이새도	화장품
292	3304.20-9000	기타 눈화장용 제품	화장품
293	3304.30-1000	네일 에나멜	화장품
294	3304.30-9000	기타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제품	화장품
295	3304.91-1000	페이스파우더	화장품
296	3304.91-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	화장품
297	3304.91-9000	기타 메이크업용 파우더	화장품
298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화장품
299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화장품
300	3304.99-3000	어린이용 미용제품	화장품
301	3304.99-9000	기타 미용제품	화장품
302	3305.10-0000	샴푸	화장품
303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용이나 스트레이트닝용 두발용 제품류	화장품
304	3305.90-1000	헤어린스	화장품
305	3305.90-2000	헤어크림	화장품
306	3305.90-9000	기타 두발용 제품	의약의약외품
307	3306.10-0000	치약	의약의약외품
308	3306.20-1019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기타 치실	의약의약외품
309	3306.20-9000	기타 치실	의약의약외품
31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의약의약외품
311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의약의약외품
312	3307.10-9000	기타 면도용 제품	화장품
313	3307.20-0000	인체용 땀 억제제	의약의약외품
314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화장품
315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품	의약의약외품
316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화장품
317	3307.49-0000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	화장품
318	3307.90-1000	탈모제	여성용품
319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의약의약외품
320	3307.90-9000	기타 탈취제	여성용품
321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	의약의약외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322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화장품
323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화장품
324	3402.11-0000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325	3402.12-0000	양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326	3402.19-0000	기타 유기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327	3402.20-1000	소매용 조제 세제	생활화학제품
328	3402.20-2000	소매용 조제 청정제	생활화학제품
329	3402.20-9000	소매용 조제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330	3402.90-1000	기타 조제 계면활성제	생활화학제품
331	3402.90-2000	기타 조제 세제	생활화학제품
332	3402.90-3000	기타 조제 청정제	생활화학제품
333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생활화학제품
334	3403.99-9000	기타 조제 윤활유	생활화학제품
335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36	3405.20-0000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37	3405.30-0000	차체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38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재료로 한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생활화학제품
339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재료로 한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생활화학제품
340	3405.90-1090	기타의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생활화학제품
341	3405.90-9000	기타의 연마가루와 유사한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42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생활화학제품
343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의료기기
344	3504.00-2090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	건강기능식품
345	3506.10-1000	고무 재료의 소매용 조제 글루·접착제	생활화학제품
346	3506.10-2000	플라스틱 재료의 조제 글루·접착제	생활화학제품
347	3506.10-9000	기타 재료의 조제 글루·접착제	생활화학제품
348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점착제	생활화학제품
349	3506.91-9000	기타 폴리머 재료의 접착제	생활화학제품
350	3506.99-1000	비엔나 글루	생활화학제품
351	3506.99-9000	기타의 접착제	생활화학제품
352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건강기능식품
353	3507.90-1040	리파제	건강기능식품
354	3507.90-2000	펩신	건강기능식품
355	3507.90-3000	맥아효소	건강기능식품
356	3507.90-4010	파파인	건강기능식품
357	3507.90-7000	펙틴효소	건강기능식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358	3507.90-9000	기타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건강기능식품
359	3604.10-0000	불꽃제품	어린이제품
360	3707.90-9200	조색제	생활화학제품
361	3707.90-9300	세정제	생활화학제품
362	3808.61-9000	300G이하의 기타의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363	3808.91-1000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생활화학제품
364	3808.91-9000	기타의 살충제	생활화학제품
365	3808.92-9000	기타의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366	3808.94-0000	소독제	생활화학제품
367	3808.99-1000	살서제(취약)	생활화학제품
368	3808.99-9000	기타 살충제 등 유사한 물품	생활화학제품
369	3809.91-0000	섬유산업용 등의 완성가공제 등	생활화학제품
370	3811.90-0000	기타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등	생활화학제품
371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72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의료기기
373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생활화학제품
374	3824.99-9041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	생활화학제품
375	3824.99-90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	생활화학제품
376	3922.90-1000	비데	전기용품
377	3924.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생활화학제품
378	3924.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여성용품
379	3926.1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통과 지우개	어린이제품
380	3926.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여성용품
381	4014.10-0000	콘돔	의료기기
382	4014.90-1000	젓꼭지	어린이제품
383	4016.91-0000	고무 바닥 깔개와 매트	어린이제품
384	4016.92-0000	고무 지우개	어린이제품
385	4016.95-9000	가황한 고무의 기타 팽창성 제품	어린이제품
386	4016.99-9000	기타 가황한 고무 제품	어린이제품
387	4202.32-2000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포켓·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섬유제품
388	4202.92-1020	외부표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이와 유사한 용기	생활화학제품
389	4202.92-2000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이와 유사한 용기	어린이제품
390	4202.99-9000	외부표면을 기타 재료로 만든 기타의 케이스·이와 유사한 용기	어린이제품
391	4803.00-1000	롤 모양·시트 모양의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화장품
392	4803.00-9000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어린이제품
393	4818.10-0000	화장지	화장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394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화장품
395	4818.90-0000	제지용펄프·종이·셀룰로오스로 만든 가정용품·위생용품·병원용품	여성용품
396	4820.10-0000	장부·노트북·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어린이제품
397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화장품
398	5607.29-0000	사이잘마 등의 배의 밧줄·로프·케이블	섬유제품
399	5607.50-0000	기타 합성섬유제의 끈·밧줄·로프·케이블	섬유제품
400	5607.90-9000	기타의 끈·밧줄·로프·케이블	섬유제품
401	5702.10-0000	컬럼·슈맥·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어린이제품
402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직조한 바닥 깔개	섬유제품
403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제외)	어린이제품
404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제외)	어린이제품
405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제외)	어린이제품
406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어린이제품
407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어린이제품
408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직물 바닥 깔개(제품)	섬유제품
409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직조한 기타 바닥 깔개(제품)	섬유제품
410	5702.92-0000	인조섬유로 직조한 바닥 깔개(제품)	섬유제품
411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직조한 바닥 깔개(제품)	섬유제품
412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3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4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5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6	570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펠트제의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7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바닥 깔개	섬유제품
418	591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생활화학제품
419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섬유제품
420	6106.90-900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섬유제품
421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브리프와 팬티	섬유제품
422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섬유제품
423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네글리제 등과 유사한 의류	섬유제품
424	6109.10-1000	면으로 만든 티셔츠	섬유제품
425	6109.90-3010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	섬유제품
426	6109.90-3090	인조섬유로 만든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섬유제품
427	6109.90-901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섬유제품
428	6109.90-90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섬유제품
429	6111.20-1000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430	611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31	6111.90-1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32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	섬유제품
433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츠	여성용품
434	6205.20-0000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셔츠	섬유제품
435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셔츠	섬유제품
436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여성용품
437	6206.30-0000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여성용품
438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여성용품
439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블라우스 등	여성용품
44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섬유제품
441	6207.91-0000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섬유제품
442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소년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섬유제품
443	6208.21-0000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여성용품
444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여성용품
445	6208.91-0000	면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싱글리트·네글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446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싱글리트·네글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447	6208.99-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싱글리트·네글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448	6209.20-1000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49	6209.20-2000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어린이제품
450	6209.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51	6209.30-2000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부속품	어린이제품
452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53	6209.90-10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어린이제품
454	6211.32-1000	면으로 만든 남성용(소년용)의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섬유제품
455	6212.10-1000	면으로 만든 브래지어	여성용품
456	6212.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브래지어	여성용품
457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거들과 팬티거들	여성용품
458	6212.20-900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거들과 팬티거들	여성용품
459	6213.20-0000	면으로 만든 손수건	섬유제품
46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손수건	섬유제품
461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슌 등과 이와 유사한 물품	섬유제품
462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슌 등과 이와 유사한 물품	섬유제품
463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장갑류	섬유제품
464	6216.00-9000	기타의 장갑류	섬유제품
465	6301.10-0000	전기모포	전기용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466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실내용 블라인드·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섬유제품
467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실내용 블라인드·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섬유제품
468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트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섬유제품
469	6307.20-0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어린이제품
470	6307.9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여성용품
471	6404.19-9000	바깥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 감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타 신발류	섬유제품
472	6505.00-9090	펠트제나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	섬유제품
473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모자	어린이제품
474	6506.99-9000	기타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자	어린이제품
475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산류(傘類)	어린이제품
476	6704.19-4000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속눈썹	여성용품
477	6912.00-1010	도자제의 커피세트·티세트	생활화학제품
478	6912.00-1020	도자제의 공기, 대접과 접시	생활화학제품
479	6912.00-1090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생활화학제품
480	6912.00-2000	도자제의 가정용품	생활화학제품
481	7117.19-2000	모조신변장식용 팔찌	여성용품
482	7616.99-9090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	어린이제품
483	8214.10-1000	연필깎이	어린이제품
484	8414.59-9000	기타의 팬	전기용품
485	8415.10-9010	사용동력 11KW미만의 기타 공기조절기	전기용품
486	8415.10-9020	사용동력 11KW이상의 기타 공기조절기	전기용품
487	8415.82-0000	냉각유닛을 결합한 공기조절기	전기용품
488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의료기기
489	8421.12-0000	의류탈수기	전기용품
490	8421.21-1000	가정형의 물 여과기나 청정기	전기용품
491	8421.39-1000	가정형의 기체 여과기나 청정기	전기용품
492	8421.99-9099	기타 원심분리기 등의 부분품	생활화학제품
493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	전기용품
494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	전기용품
495	8450.11-0000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완전자동 세탁기	전기용품
496	8450.12-0000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원심탈수기를 내장한 세탁기	전기용품
497	8450.19-0000	1회 세탁능력이 10KG 이하인 기타 세탁기	전기용품
498	8450.20-0000	1회 세탁능력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	전기용품
499	8451.21-0000	1회 건조능력이 10KG 이하인 건조기	전기용품
500	8451.29-0000	기타 건조기	전기용품
501	8451.30-1000	스팀 프레스	전기용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502	8451.30-9000	기타 다림질기와 프레스	전기용품
503	8451.40-1000	세척기	전기용품
504	8451.80-9090	기타 직물관련 기계	전기용품
505	8467.21-0000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	전기용품
506	8467.22-0000	전동기를 갖춘 톱	전기용품
507	8467.29-0000	기타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	전기용품
508	8471.60-1040	스캐너	전기용품
509	8479.82-1000	혼합기	전기용품
51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전기용품
511	8479.89-1010	제습과 가습기능이 있는 가정형의 공기청정기	전기용품
512	8479.89-1090	기타 가정형의 기기	전기용품
513	8479.89-9099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	전기용품
514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용 배터리 충전기	전기용품
515	8504.40-3090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	전기용품
516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전기용품
517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전기용품
518	8507.60-9000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	전기용품
519	8508.11-1000	전동기를 갖춘 출력 1,500W이하·20L이하 저장조의 로봇트형 진공청소기	전기용품
520	8508.11-9000	전동기를 갖춘 출력 1,500W이하·20L이하 저장조의 기타 진공청소기	전기용품
521	8508.19-2000	전동기를 갖춘 기타 로봇트형 진공청소기	전기용품
522	8508.19-9000	전동기를 갖춘 기타 진공청소기	전기용품
523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전기용품
524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전기용품
525	8509.80-1000	커피분쇄기	전기용품
526	8509.80-2000	얼음분쇄기	전기용품
527	8509.80-3000	바닥광택기	전기용품
528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전기용품
529	8509.80-900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전기용품
530	8510.10-0000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	전기용품
531	8510.20-0000	전동기를 갖춘 이발기	전기용품
532	8510.30-0000	전동기를 갖춘 모발제거기	전기용품
533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용품
534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전기용품
535	8516.29-0000	기타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용품
536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전기용품
537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전기용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538	8516.33-0000	손 건조기	전기용품
539	8516.40-0000	전기다리미	전기용품
54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기용품
541	8516.60-1000	전기오븐	전기용품
542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전기용품
543	8516.60-9000	기타의 쿠키 등	전기용품
544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전기용품
545	8516.72-0000	토스터	전기용품
546	8516.79-9000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기용품
547	8516.90-0000	다리미·헤어드라이어 등의 부분품	전기용품
548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전기용품
549	8521.90-9000	기타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전기용품
550	8525.80-101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전기용품
551	8525.80-1020	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	전기용품
552	8525.80-1090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전기용품
553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전기용품
554	8525.80-2090	기타 디지털 카메라	전기용품
555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전기용품
556	8528.71-9000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기타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전기용품
557	8528.72-9000	천연색의 기타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전기용품
558	8539.22-1000	백열램프	전기용품
559	8539.31-0000	열음극형의 형광램프	전기용품
560	8543.70-2020	가정형 전기식 미용기기	전기용품
561	8543.70-2090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 가정형 전기기기	전기용품
562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	생활화학제품
563	8543.70-4090	기타 전자담배	생활화학제품
564	8543.70-9090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	전기용품
565	8543.90-9090	그 밖의 전기기기의 기타 부분품	전기용품
566	8544.42-1010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종이 절연전선	전기용품
567	8544.42-2010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용품
568	8544.42-2090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전기용품
569	8544.42-9010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기타 절연전선	전기용품
570	8711.60-900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자전거 등	전기용품
571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어린이제품
572	8716.80-1000	손수레	어린이제품
573	9001.30-0000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연번	HSK	품명	품목군
574	9003.19-9000	기타 테와 장착구	어린이제품
575	9004.10-9000	기타 선글라스	어린이제품
576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의료기기
577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전기용품
578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의료기기
579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의료기기
580	9018.19-8000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	의료기기
581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의료기기
582	9018.32-1000	주사침	의료기기
583	9018.32-9000	기타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의료기기
584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의료기기
585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의료기기
586	9018.39-8000	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의료기기
587	9018.39-9000	주사기·바늘·카테터·케놀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
588	9018.49-1000	치과용 버(BUR)	의료기기
589	9018.49-3000	치석 제거기	의료기기
590	9018.49-8000	기타 치과용 기기	의료기기
591	9018.50-1010	안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의료기기
592	9018.50-1090	기타 안과용 기기	의료기기
593	9018.90-2010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의료기기
594	9018.90-2090	기타 외과수술용 기기	의료기기
595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의료기기
596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
597	9018.90-6000	전기신경자극기	의료기기
598	9018.90-8010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의료기기
599	9018.90-9080	기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의료기기
60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의료기기
601	9019.20-2000	산소 흡입기	의료기기
602	9019.20-4000	인공호흡기	의료기기
603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	의료기기
604	9021.29-0000	기타 의치와 치과용품	의료기기
605	9021.39-0000	기타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의료기기
606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의료기기
607	9021.90-1000	스크루·스테인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의료기기
608	9021.90-8000	기타의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등	의료기기
609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의료기기

연번	HSK	품명	품목군
610	9022.14-1090	기타의 내과용·외과용 기기	의료기기
611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엑스선 사용기기	의료기기
612	9025.19-1000	온도계	의료기기
613	9025.19-2090	기타 고온계	의료기기
614	9205.90-3020	멜로디카	어린이제품
615	9208.10-0000	뮤지컬박스	어린이제품
616	9304.00-1000	공기총	어린이제품
617	9304.00-9000	기타 그 밖의 무기	어린이제품
618	9401.69-9000	기타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	어린이제품
619	9401.71-9000	기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어린이제품
62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기타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어린이제품
621	9401.79-9000	기타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	어린이제품
622	9401.80-9000	기타 그 밖의 의자	어린이제품
623	9403.20-1000	금속으로 만든 침대	어린이제품
624	9403.50-1000	침실용 목제 침대	어린이제품
625	9403.60-9090	기타 그 밖의 목제가구	어린이제품
626	9403.70-1000	보행기	어린이제품
627	9403.70-900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어린이제품
628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섬유제품
629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리스(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섬유제품
63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매트리스	섬유제품
631	9404.30-0000	침낭	섬유제품
632	9404.90-0000	기타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섬유제품
633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상들리에 등 천장·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전기용품
634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LED)의 상들리에 등 천장·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전기용품
635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전기식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전기용품
636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LED)의 전기식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전기용품
637	9405.20-9000	기타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전기용품
638	9405.40-2000	투광형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전기용품
639	9405.40-900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전기용품
64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전기용품
641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어린이제품
642	9503.00-1200	스쿠터	어린이제품
643	9503.00-1300	페달차	어린이제품
644	9503.00-1400	인형용 차	어린이제품
645	9503.00-1800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기타의 완구와 인형용 차	어린이제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646	9503.00-1900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와 인형용 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어린이제품
647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어린이제품
648	9503.00-2120	고무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어린이제품
649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어린이제품
65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어린이제품
651	9503.00-2190	기타의 재료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	어린이제품
652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어린이제품
653	9503.00-2990	사람모형 인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어린이제품
654	9503.00-3110	전기식 기차 완구	어린이제품
655	9503.00-3190	전기식 기차완구의 부속품	어린이제품
656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657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어린이제품
658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59	9503.00-3419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기타의 완구	어린이제품
660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61	9503.00-3492	고무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62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63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64	9503.00-3497	나무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어린이제품
665	9503.00-3499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기타의 완구	어린이제품
666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어린이제품
667	9503.00-3600	퍼즐	어린이제품
668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어린이제품
669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어린이제품
67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완구	어린이제품
671	9503.00-3919	그 밖의 완구	어린이제품
672	9503.00-3990	그 밖의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673	9504.90-3000	그 밖의 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전기용품
674	9505.90-0000	기타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생활화학제품
675	9506.11-0000	스키	어린이제품
676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어린이제품
677	9506.19-0000	기타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어린이제품
678	9506.29-0000	기타 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어린이제품
679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어린이제품
68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어린이제품
681	9506.99-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 이외에 사용하는 기타의 물품	어린이제품

연번	HSK	품명	품목군
682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어린이제품
683	9603.29-0000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	여성용품
684	9608.10-0000	볼펜	어린이제품
685	9609.10-1000	연필	어린이제품
686	9609.10-2000	색연필	어린이제품
687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어린이제품
688	9611.00-1000	스탬프	여성용품
689	9615.11-1000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	여성용품
690	9615.11-9000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691	9615.19-1000	기타 빗	여성용품
692	9615.90-1000	머리핀	여성용품
693	9615.90-9000	기타 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694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여성용품
695	9616.20-0000	화장용 분침과 패드	여성용품
696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어린이제품
697	9619.00-1090	제지용 펄프·종이 등으로 만든 위생 타월(패드)·탐폰과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698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만든 위생 타월·탐폰과 이와 유사한 물품	여성용품
699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여성용품
700	9619.00-9010	기타의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어린이제품

끝.